

대한민국 정부와
걸프아랍국가협력회의 정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한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과,

다른 쪽 당사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바레인왕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오만왕국,

카타르국,

쿠웨이트국(이하 공동으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또는 각각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이라 한다)은,

이하 한쪽 당사국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또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각자와 다른 쪽 당사국인 한국을 개별적으로 “당사국” 이라 하고 집합적으로 “당사국들” 이라 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들의 강한 동반자 관계를 인식하고,

그들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지역 및 국제 협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WTO를 통하여 수립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하고 강화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자유무역지대가 그들 국가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임을 확신하며,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고,

그들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정립할 것과 그들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사업환경을 증진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그들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

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연계를 도모할 것을 희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과 국제 무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상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며,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위의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이 협정 제2장에 따라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와 원활화를 달성하는 것
- 나. 이 협정 제8장에 따라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다.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투자 기회의 실질적 증대를 달성하는 것
- 라. 당사국들의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 마. 이 협정 제12장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
- 바. 이 협정 제10장에 따라 이해 당사국들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그리고

- 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고, 이 목적을 당사국들의 무역에 통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

제1.3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및 그 주해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관세
- 다. 1994년도 GATT 제8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의 조들에 대한 언급은 그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사국들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이 협정의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¹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국민

원산지란 제1장(일반규정) 및 제2장(상품 무역)의 목적상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

¹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²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WTO 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이 항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3. 이 협정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이 다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을 한국에 부여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

제1.5조
지리적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당사국들의 영역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2.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대하여,
 - 1)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 2)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영해의 밖

제1.6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제1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조

에 따른 모든 요청 및 정보의 제공은 당사국들이 지정한 연락처를 통하여 전달된다.

제1.7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7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그 부속서) 및 제9장(디지털 무역)³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되고,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1.8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1조, GATS 제14조의2제1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7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9조

과세

1.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³ 제 1.5 조(일반적 예외)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2. 이 조의 목적상,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당사국들 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나.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3조(일반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정의 중 예외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 2)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의 경우, 세금 및/또는 세관을 담당하는 국가 정부 기관

제1.10조

정보의 공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당사국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경제 운영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11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자국의 영역 내에서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2장 상품 무역

제1절 공통규정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절 내국민 대우

제2.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3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든 자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인하 또는 철폐를 한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

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4절

특별 제도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일시 반입을 촉진하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가 있으며,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상품이 관세 및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

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동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나.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수입자가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해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6조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 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하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비관세조치

제2.7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한쪽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을 필요한 한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그 이유를 그 금지 또는 제한의 성격 및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제안된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2.8조

수입허가

1. 각 당사국은 모든 자동 및 비자동 수입허가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자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

관세평가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의 규정과 관세평가협정의 제1부 규정 및 부속서I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2.10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 목적상 제한조치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상품 무역을 위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따른다.

제2.11조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

고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6절 제도 규정

제2.12조 상품무역위원회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과 제3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시간, 장소 및 방법에 따라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과 제3장(무역구제)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 및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보고 및 권고하는 것
 - 나.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 다.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 라. 시의적절하게 전환 지침을 채택 및 검토하고 당사국들의 관세양허표를 전환하며 전환된 관세양허표 및 연계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양허표를

최신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 그리고

- 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부속서 2-가-1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한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즉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인하되어,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3.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한국의 경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한국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7. 이 부속서는 2021년 1월 1일에 개정된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 라 한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2-가-2

걸프협력회의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에 따른 걸프협력회의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 가.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나.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라.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15”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마.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2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바.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TR”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이행 10년차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퍼센트로 유지된다.

사.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그 품목에 대하여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아. 단계별 양허유형 “PROH(금지품목)” 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단계별 양허유형 “SpGo(특별관심품목)” 인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협정의 발효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이 한 해의 4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후 두번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3. 이 부속서 및 그에 포함된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품목에 대한 각 관세 인하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그 품목에 대하여 양허표에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단위로, 바레인의 경우 바레인 디나르 단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 리알 단위로, 오만의 경우 오만 리알 단위로, 카타르의 경우 카타르 리알 단위로, 쿠웨이트의 경우 쿠웨이트 디나르 단위로, 최소한 가장 근접하게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22년 1월 1일에 유효한 걸프협력회의의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7. 이 부속서는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걸프협력회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이하 “GCC HS” 라 한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GCC HS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GCC HS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GCC H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2-가-1

한국 관세양허표

HSK 2021	품목명	기준세율 (2021 MFN 적용세율, %)	양허유형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0
0101219000	기타	8	5
0101291000	경주말	8	5
0101299000	기타	8	5
0101301000	번식용	8	5
0101309000	기타	8	E
0101900000	기타	8	E
0102211000	젖소	89.1	0
0102212000	육우(肉牛)	89.1	0
0102219000	기타	89.1	0
0102291000	젖소	40	E
0102292000	육우(肉牛)	40	E
0102299000	기타	0	0
0102310000	번식용	89.1	0
0102391000	젖소	40	E
0102392000	육우(肉牛)	40	E
0102399000	기타	0	0
0102901000	번식용	89.1	0
0102909010	젖소	40	E
0102909020	육우(肉牛)	40	E
0102909090	기타	0	0
0103100000	번식용	18	0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18	E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8	E
0104101000	번식용	0	0
0104109000	기타	8	5
0104201000	젖산양	8	5
0104209000	기타	8	0
0105111000	번식용	9	0
0105119000	기타	9	0
0105120000	칠면조	9	0
0105131000	번식용	0	0
0105139000	기타	18	5
0105140000	거위	9	0
0105150000	기니아새	9	0
0105941000	번식용	9	5

0105949000	기타	9	5
0105991010	번식용	0	0
0105991090	기타	18	5
0105992000	칠면조	9	0
0105999000	기타	9	0
0106110000	영장류	8	0
010612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8	0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8	5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8	5
0106141000	번식용	0	0
0106149000	기타	8	5
0106191000	개	8	5
0106193000	사슴	8	5
0106194000	곰	8	0
0106195010	번식용	0	0
0106195090	기타	8	5
0106196010	번식용	0	0
0106196090	기타	8	5
0106199000	기타	8	5
0106201000	뱀	8	0
0106202000	자라	8	5
0106203000	거북	8	0
0106209000	기타	8	0
0106310000	맹금류	8	15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프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8	15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애(Dromaius novaehollandiae)]	8	0
0106390000	기타	8	0
0106411000	꿀벌	8	5
0106419000	기타	8	0
0106490000	기타	8	0
0106901000	양서류	8	0
0106903010	갯지렁이	8	5
0106903020	실지렁이	8	0
0106903090	기타	8	0
0106909000	기타	8	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1201000	갈비	40	E
0201209000	기타	40	E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E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E

0202201000	갈비	40	E
0202209000	기타	40	E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E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3191000	삼겹살	22.5	E
0203199000	기타	22.5	E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E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E
0203291000	삼겹살	25	E
0203299000	기타	25	E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E
02042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E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22.5	E
0204430000	뼈 없는 것	22.5	E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2.5	E
0204502000	냉동한 것	22.5	E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27	E
0205002000	냉동한 것	27	E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210000	혀	18	E
0206220000	간	18	E
0206291000	꼬리	18	E
0206292000	족	18	E
0206299000	기타	18	E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410000	간	18	E
0206491000	족	18	E
0206499000	기타	18	E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11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18	E
0207119000	기타	18	E
0207121000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20	E
0207129000	기타	20	E
0207131010	다리	18	E

0207131020	가슴	18	E
0207131030	날개	18	E
0207131090	기타	18	E
0207132010	간	22.5	E
0207132090	기타	27	E
0207141010	다리	20	E
0207141020	가슴	20	E
0207141030	날개	20	E
0207141090	기타	20	E
0207142010	간	22.5	E
0207142090	기타	27	E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261000	절단육	18	E
0207262010	간	22.5	E
0207262090	기타	27	E
0207271000	절단육	18	E
0207272010	간	22.5	E
0207272090	기타	27	E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7441000	절단육	18	E
0207442010	간	22.5	E
0207442090	기타	27	E
0207451000	절단육	18	E
0207452010	간	22.5	E
0207452090	기타	27	E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2.5	E
0207541000	절단육	18	E
0207542010	간	22.5	E
0207542090	기타	27	E
0207551000	절단육	18	E
0207552010	간	22.5	E
0207552090	기타	27	E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E
0207603100	절단육	18	E
0207603210	간	22.5	E

0207603290	기타	27	E
0207604100	절단육	18	E
0207604210	간	22.5	E
0207604290	기타	27	E
0208100000	토끼의 것	22.5	E
0208300000	영장류의 것	18	5
020840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0
020840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18	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18	E
0208901000	사슴의 것	27	E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30	0
0208909090	기타	18	E
0209100000	돼지의 것	3	0
0209900000	기타	3	0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E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E
0210190000	기타	25	E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7	E
0210209000	기타	27	E
0210910000	영장류의 것	22.5	E
021092100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E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E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22.5	E
0210991010	소의 것	22.5	E
0210991020	돼지의 것	22.5	E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1090	기타	22.5	E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22.5	E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22.5	E
0210999090	기타	22.5	E
0301111000	비단잉어	10	0
0301119000	기타	10	E
0301190000	기타	10	E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10	0

03019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10	0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5	E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10	E
0301929090	기타	20	E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10	5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i>Thunnus thynnus</i>)]	10	0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10	E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10	0
0301992000	방어	10	0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301995000	붕장어	10	0
0301996000	갯장어	10	0
0301997000	먹장어	10	5
0301998000	넙치류	10	E
0301999010	능성어	10	E
0301999020	복어	10	E
0301999030	틸라피아	10	0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E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301999059	기타	28	E
0301999060	송어	10	10
0301999070	미꾸라지	10	5
0301999080	메기	10	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i>Hexagrammos</i>)종 · 아그라무스(<i>Agrammus</i>)종]	10	E
0301999092	붕어	10	5
0301999093	연어	10	0
0301999094	초어	10	0
0301999095	민어	10	E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은 제외한다]	10	5
0301999099	기타	10	E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20	0
0302112000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0
030213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20	5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5
0302190000	기타	20	E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E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20	0
03022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E
0302290000	기타	20	E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20	0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0
03023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20	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0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20	0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E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20	0

0302390000	기타	20	E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0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종]	20	E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20	0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20	E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20	0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20	E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20	0
0302491000	삼치[스콤버로모루스(<i>Scomberomorus</i>)종]	20	E
0302492000	병어[팜푸스(<i>Pampus</i>)종]	20	E
0302493000	공치[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20	5
0302499000	기타	20	E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5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i>Melanogrammus aeglefinus</i>)]	20	0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i>Pollachius virens</i>)]	20	0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20	E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20	E
0302560000	블루 화이트스(<i>blue whittings</i>)[마이크로메스티우스 포우타소우(<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i>Micromesistius australis</i>)]	20	E
0302590000	기타	20	E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20	E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20	E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20	E
0302740000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20	0
0302790000	기타	20	E
0302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0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E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0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20	E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	E
0302891000	방어	20	0
0302892000	갈치	20	E
0302893000	붕장어	20	0
0302894000	갯장어	20	0
0302895000	학꽂치(Hyporhamphus sajori)	20	5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E
0302899020	복어	20	5
0302899040	아귀	20	E
0302899090	기타	20	E
0302911000	간	20	0
0302912000	어란(魚卵) · 어백(魚白)	20	0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20	0
0302990000	기타	20	0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10	5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10	20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10	5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10	5
0303190000	기타	10	10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E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E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10	E
0303260000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10	10
0303290000	기타	10	E
0303310000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E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E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10	5
03033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E
0303390000	기타	10	E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10	1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E
03034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10	1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20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10	10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10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5
0303490000	기타	10	10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E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E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E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종]	10	E

0303560000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E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E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10	E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24	E
0303599000	기타	10	E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E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5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5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5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2	E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E
0303691000	새꼬리민태	10	5
0303699000	기타	22	E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10
0303821000	가오리	10	E
0303822000	홍어	10	E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10	5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0	E
0303891000	은대구	10	5
0303892000	갈치	10	E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E
0303893090	기타	10	E
0303894000	붕장어	10	E
0303895000	조기	10	E
0303896000	학꽁치(Hyporhamphus sajori)	10	E
0303898000	복어	10	E
0303899010	보리멸	10	5
0303899020	홍살치	10	5
0303899030	달고기	10	5
0303899040	임연수어	10	10
0303899050	불낙(적어를 포함한다)	10	E
0303899060	아귀	10	E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10	5
0303899080	밀크피쉬	10	0
0303899091	민어	10	E

0303899092	까나리	10	5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10	5
0303899099	기타	10	E
0303911000	간	10	0
0303912010	명란	10	5
0303912090	기타	10	20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10	10
0303990000	기타	10	0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10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10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20	10
0304390000	기타	20	10
0304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10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10
0304431000	가자미	20	0
0304439000	기타	20	10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10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0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0
030447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20	10
0304481000	가오리	20	10
0304482000	홍어	20	10
0304491000	붕장어	20	E
0304492000	참다랑어	20	0
0304499000	기타	20	10

0304511000	연육	20	15
0304519000	기타	20	15
0304521000	연육	20	20
0304529000	기타	20	20
0304531000	연육	20	20
0304539000	기타	20	20
0304541000	연육	20	0
0304549000	기타	20	0
0304551000	연육	20	0
0304559000	기타	20	0
0304561000	연육	20	20
0304569000	기타	20	20
0304571010	연육	20	20
0304571090	기타	20	20
0304572010	연육	20	20
0304572090	기타	20	20
0304591010	연육	20	0
0304591090	기타	20	0
0304592010	연육	20	0
0304592090	기타	20	0
0304593010	연육	20	0
0304593090	기타	20	0
0304599010	연육	20	15
0304599090	기타	20	15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5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E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10	E
0304690000	기타	10	E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5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10	E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10	E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10	E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E
0304790000	기타	10	5

03048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10	E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 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 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 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 스테르(<i>Oncorhynchus chrysogaster</i>)]	10	E
0304831000	가자미	10	5
0304839000	기타	10	E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10	E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	10	0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 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10	E
0304871000	참다랑어	10	10
0304879000	기타	10	E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10	E
0304882000	가오리	10	E
0304883000	홍어	10	E
0304891000	붕장어의 것	10	5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종은 제외 한다]의 것	10	0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은 제 외한다]의 것	10	5
0304894000	쥐치의 것	10	5
0304899000	기타	10	E
0304911000	냉동 연육	10	E
0304919000	기타	10	E
0304921000	냉동 연육	10	0
0304929000	기타	10	0
0304931000	냉동 연육	10	E
0304939000	기타	10	15
0304941000	냉동 연육	10	E
0304949000	기타	10	E
0304951000	냉동 연육	10	E
0304959000	기타	10	20
0304961000	냉동 연육	10	E
0304969000	기타	10	20

0304971010	냉동 연육	10	E
0304971090	기타	10	20
0304972010	냉동 연육	10	E
0304972090	기타	10	20
0304991000	냉동 연육	10	E
0304999000	기타	10	15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0
0305201000	간	20	0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0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20	0
0305204010	명태의 것	20	0
0305204020	조기의 것	20	0
0305204030	청어의 것	20	0
0305204090	기타	20	0
0305311000	건조한 것	20	10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321000	건조한 것	20	10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391000	건조한 것	20	10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5410000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20	E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20	0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20	10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10
0305491000	멸치	20	E
0305492000	명태	20	0
0305499000	기타	20	10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5
030552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0	E
03055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20	E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	E
0305549000	기타	20	E
0305593000	명태(북어)	20	E
0305594000	조기(굴비)	20	E
0305595000	북어	20	0
0305596000	갯장어	20	0

0305597000	까나리	20	0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20	0
0305599000	기타	20	E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2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0	0
0305631000	멸치젓	20	E
0305639000	기타	20	E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20	15
0305691000	연어	20	0
0305692000	송어	20	0
0305693000	갈치	20	E
0305694000	정어리	20	0
0305695000	고등어	20	E
0305696000	조기	20	5
0305697000	전갱이	20	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0	0
0305699000	기타	20	20
0305711000	훈제한 것	20	10
0305712000	건조한 것	20	0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의 것	20	0
0305729000	기타	20	0
0305790000	기타	20	0
0306111000	훈제한 것	20	10
0306119000	기타	20	10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6129000	기타	20	E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6141090	기타	20	E
0306142010	훈제한 것	20	15
0306142090	기타	20	E
0306143010	훈제한 것	20	15
0306143090	기타	14	E
0306149010	훈제한 것	20	15
0306149090	기타	14	E
0306151000	훈제한 것	20	10
0306159000	기타	20	E
0306161010	훈제한 것	20	E
0306161090	기타	20	E
0306169010	훈제한 것	20	E
0306169090	기타	20	E
0306171010	훈제한 것	20	E
0306171090	기타	20	E
0306179010	훈제한 것	20	E
0306179090	기타	20	E
0306191000	훈제한 것	20	10
0306199000	기타	20	E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Jasus)종]	20	20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20	E
0306331000	꽃게	20	E
0306332000	대게	20	E
0306339000	기타	20	E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20	E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랑곤 크랑곤(Crangon crangon)]	20	15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20	15
0306390000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20	E
0306912000	건조한 것	20	15
03069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15
0306914000	훈제한 것	20	10
0306922000	건조한 것	20	E
030692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6924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0306924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6932000	건조한 것	20	20
030693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693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030693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6934090	기타	20	20

0306942000	건조한 것	20	E
03069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6944000	훈제한 것	20	10
0306951020	건조한 것	20	E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E
0306951040	훈제한 것	20	E
0306959020	건조한 것	20	E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2	E
0306959040	훈제한 것	20	E
0306992000	건조한 것	20	E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6994000	훈제한 것	20	10
0307111010	종패용	0	0
0307111090	기타	5	0
0307119000	기타	20	0
0307120000	냉동한 것	20	0
0307192000	건조한 것	20	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0
0307194000	훈제한 것	20	0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10
0307220000	냉동한 것	20	E
0307292000	건조한 것	20	0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0
0307294000	훈제한 것	20	10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
0307320000	냉동한 것	20	E
0307392000	건조한 것	20	0
0307393000	훈제한 것	20	0
0307399000	기타	20	0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 (<i>Sepiola</i>)종	10	10
0307421090	기타	20	20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 (<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 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0
0307422090	기타	20	20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 (<i>Sepiola</i>)종	10	E
0307431090	기타	20	E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 (<i>Loligo</i>)종 · 노토토다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 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22	E
0307432090	기타	22	E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타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E
0307492090	기타	20	E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타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10	E
0307493090	기타	20	15
0307494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i>Sepia officinalis</i>) · 로시아 마크로소마(<i>Rossia macrosoma</i>) · 세피올라(<i>Sepiola</i>)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i>Ommastrephes</i>)종 · 로리고(<i>Loligo</i>)종 · 노토타루스(<i>Nototodarus</i>)종 · 세피오투디스(<i>Sepioteuthis</i>)종]	20	0
0307494090	기타	20	10
0307511000	낙지	20	10
0307512000	주꾸미	20	10
0307519000	기타	20	10
0307521000	문어	20	E
0307522000	낙지	20	E
0307523000	쭈꾸미	20	E
0307529000	기타	20	E
0307592000	건조한 것	20	0
0307593000	훈제한 것	20	10
0307599000	기타	20	15
0307601000	훈제한 것	20	10
0307609000	기타	20	0
0307711010	치패(稚貝)	20	0
0307711090	기타	20	10
0307712010	종패용	0	0
0307712090	기타	20	10
0307713000	새조개	20	0
0307714000	바지락	20	10
0307715000	개조개	20	20
0307719000	기타	20	20
0307721000	새조개	20	0
0307722000	개량조개	20	0
0307723000	바지락	20	E
0307724000	피조개	20	10
0307725000	개조개	20	E
0307729000	기타	20	E

0307792010	개량조개	20	0
0307792020	바지락	20	0
0307792030	개조개	20	20
0307792090	기타	20	20
0307793010	개량조개	20	0
0307793020	바지락	20	10
0307793030	개조개	20	E
0307793090	기타	20	E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7794090	기타	20	10
030781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E
0307820000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20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20	E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20	E
0307871000	건조한 것	20	15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7873000	훈제한 것	20	10
0307881000	건조한 것	20	20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7883000	훈제한 것	20	10
0307911000	소라	20	0
0307912010	총패용	0	0
0307912090	기타	20	0
0307913000	개아지살	20	0
0307914000	재첩	20	0
0307919000	기타	20	20
0307921000	개아지살	20	E
0307922000	소라	20	0
0307929000	기타	20	E
0307992100	개아지살	20	0
0307992900	기타	20	15
0307993100	소라	20	0
0307993900	기타	20	E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0
0307994900	기타	20	10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
0308120000	냉동한 것	20	0
0308192000	건조한 것	20	0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0
0308194000	훈제한 것	20	10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
0308220000	냉동한 것	20	E
0308292000	건조한 것	20	20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0
0308294000	훈제한 것	20	10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0
0308302000	냉동한 것	20	E
0308303000	건조한 것	20	20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5
0308305000	훈제한 것	20	10
0308901011	종묘(種苗)	0	0
0308901019	기타	20	10
0308901090	기타	20	E
0308902010	우렁쉥이(멍게)	20	0
0308902090	기타	20	E
0308903010	우렁쉥이(멍게)	20	0
0308903090	기타	20	20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E
0308905000	훈제한 것	20	10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36	E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36	E
0401401000	냉동크림	36	E
0401409000	기타	36	E
0401501000	냉동크림	36	E
0401509000	기타	36	E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E
0402101090	기타	176	E
0402109000	기타	176	E
0402211000	전지분유	176	E
0402219000	기타	176	E
0402290000	기타	176	E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E
0402919000	기타	89	E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E
0402999000	기타	89	E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E
0403102000	냉동한 것	36	E
0403109000	기타	36	E
0403901000	버터밀크	89	E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36	E
0403903000	케피어(kephir)	36	E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36	E
0404101011	사료용	49.5	E

0404101019	기타	49.5	E
0404101091	사료용	49.5	E
0404101099	기타	49.5	E
0404102111	사료용	49.5	E
0404102119	기타	49.5	E
0404102121	사료용	49.5	E
0404102129	기타	49.5	E
0404102131	사료용	49.5	E
0404102139	기타	49.5	E
0404102191	사료용	49.5	E
0404102199	기타	49.5	E
0404102910	사료용	49.5	E
0404102990	기타	49.5	E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36	E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36	E
0405100000	버터	89	E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8	5
0405900000	기타	89	15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E
0406101020	크림 치즈	36	E
0406101090	기타	36	E
0406102000	커드(curd)	36	E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E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E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36	E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E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E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E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E
0406909000	기타	36	E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190000	기타	27	E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E
0407290000	기타	27	E
0407900000	기타	27	E
0408110000	건조한 것	27	E
0408190000	기타	27	E
0408910000	건조한 것	27	E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41.6	E
0408999000	기타	27	E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410002000	칼새둥지	8	0
0410003000	로열젤리	8	E
0410009000	기타	8	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 트(waste)	3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3	0
0502902000	염소털	3	0
0502909000	기타	3	0
0504001010	소의 것	27	E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27	E
0504001029	기타	27	E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27	E
0504001039	기타	27	E
0504001090	기타	27	E
0504002000	방광	27	E
0504003000	위	27	E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3	15
0505901000	깃털 가루	5	10
0505909000	기타	5	15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0
0506901020	소의 것	9	0
0506901090	기타	3	0
0506902000	뺏가루	25.6	E
0506909000	기타	3	0
0507101000	상아	8	0
0507109000	기타	8	0
0507901110	전지(全枝)	20	E
0507901190	기타	20	E
0507901200	녹각	20	E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8	0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8	0
0507902090	기타	8	0
0508001000	산호	8	0
0508002010	진주패각	8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8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8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8	0
0508002050	트로커스(Trochus) 패각	8	0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8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ياس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8	0
0508002090	기타	8	E
0508009000	기타	8	0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8	0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8	0
0510003000	사향	8	0
0510004000	우황	8	0
0510005000	오령지	8	0
0510009010	채장	8	0
0510009020	담즙	8	0
0510009030	합개(蛤蚧)	8	0
0510009090	기타	8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8	0
0511911090	기타	8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5	5
0511919000	기타	8	E
0511991000	동물의 피	8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511992090	기타	0	0
0511993010	소의 것	18	0
0511993020	돼지의 것	18	0
0511993090	기타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18	E
0511995011	정돈한 것	3	0
0511995019	기타	3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3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8	0
0511999010	잠종(蠶種)	18	0
0511999020	누에번데기	8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8	0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8	0
0511999090	기타	8	0
0601101000	튤립의 것	8	0
0601102000	백합의 것	4	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8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8	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8	0

0601109000	기타	8	0
0601201000	튤립의 것	8	0
0601202000	백합의 것	8	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8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8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8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8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8	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8	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8	0
0601209090	기타	8	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8	0
0602109000	기타	8	E
0602201000	사과나무	18	0
0602202000	배나무	18	0
0602203000	복숭아나무	18	0
0602204000	포도나무	8	0
0602205000	감나무	8	0
0602206000	귤나무	18	0
0602207010	밤나무	8	15
0602207020	호두나무	8	15
0602207030	잣나무	8	15
0602209000	기타	8	5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15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8	0
0602901010	난초	8	0
0602901020	카네이션	8	0
0602901030	구즈마니아	8	0
0602901040	안개초	8	0
0602901050	국화	8	0
0602901060	선인장류	8	0
0602901090	기타	8	0
0602902011	분재용	8	E
0602902019	기타	8	15
0602902020	낙엽송	8	15
0602902030	삼나무	8	15
0602902040	편백	8	15
0602902050	리기테다	8	15
0602902061	분재용	8	E
0602902069	기타	8	15
0602902071	분재용	8	E
0602902079	기타	8	15
0602902081	분재용	8	E

0602902089	기타	8	15
0602902091	분재용	8	E
0602902099	기타	8	15
0602909010	목단	8	15
0602909020	동백	8	15
0602909030	뽕나무	18	0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8	0
0602909090	기타	8	0
0603110000	장미	25	5
0603120000	카네이션	25	5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5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5	5
0603139000	기타	25	5
0603140000	국화	25	5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25	5
0603191000	튤립	25	5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25	5
0603194000	안개초	25	5
0603199000	기타	25	5
0603900000	기타	25	5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15
0604202010	은행잎	8	15
0604202090	기타	8	15
0604209000	기타	8	5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8	15
0604909000	기타	8	15
0701100000	종자용	304	E
0701900000	기타	304	E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5	5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102000	쪽파	27	5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901000	리크(leek)	27	5
0703909000	기타	27	5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7	5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7	E
0704901000	양배추	27	5
0704902000	배추	27	5
0704909000	기타	27	5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45	E
0705190000	기타	45	E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8	5
0705290000	기타	8	5
0706101000	당근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5
0706102000	순무	27	5
0706901000	무	30	E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27	0
0706903000	더덕	27	E
0706904000	도라지	27	E
0706909000	기타	27	5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7	E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5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0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27	10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7	E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27	5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27	5
0709517000	양송이버섯	30	10
0709519000	기타	30	E
0709591000	송이버섯	30	E
0709592000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593000	영지버섯	30	1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30	10
0709594090	기타	30	10
0709595000	팽이버섯	30	10
0709596000	송로(松露)	27	E
0709599000	기타	30	E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700000	시금치류	27	5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27	E
0709920000	올리브	27	E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7	5
0709991000	고사리	30	E
0709992000	고비	27	E
0709999000	기타	27	5

0710100000	감자	27	5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7	5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7	5
0710290000	기타	27	5
0710300000	시금치류	27	0
0710400000	스위트콘	30	5
0710801000	양파	27	E
0710802000	마늘	27	E
0710803000	죽순	27	E
0710804000	당근	27	5
0710805000	고사리	30	E
0710806000	송이버섯	27	E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E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27	20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27	20
0710809000	기타	27	5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5
0711200000	올리브	27	0
0711400000	오이류	30	E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30	10
0711591000	송로(松露)	27	E
0711599000	기타	30	E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3000	죽순	27	E
0711904000	당근	27	E
0711905010	고사리	27	E
0711905020	고비	27	E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5099	기타	27	0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0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11000	양송이 버섯	30	E
071231900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5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10	송이버섯	30	E

0712391020	표고버섯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30	영지버섯	30% 또는 842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40	느타리버섯	30	E
0712391050	팽이버섯	30	E
0712391090	기타	30% 또는 1,218원/kg 양자 중 고액(율)	5
0712392000	송로(松露)	27	E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20	무	30	5
0712902030	파	30% 또는 1,159원/kg 양자 중 고액(율)	5
0712902040	당근	30% 또는 8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50	호박	30	E
0712902060	양배추	30	E
0712902070	토란줄기	30	E
0712902080	고구마줄기	30	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E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E
0712902093	감자	27	5
0712902094	고비	30%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902095	더덕	30	E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30	E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30	E
0712902099	기타	30	E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27	5
0713101000	종자용	27	5
0713102000	사료용	0	0
0713109000	기타	27	E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27	E
0713311000	종자용	607.5	E
0713319000	기타	607.5	E
0713321000	종자용	420.8	E
0713329000	기타	420.8	E
0713331000	종자용	27	5
0713339000	기타	27	E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테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제이아 서브테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5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5
0713390000	기타	27	5
0713400000	렌즈콩	27	E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27	5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27	5
0713900000	기타	27	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E
0714102010	칩	887.4	E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E
0714102090	기타	887.4	E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E
0714104000	냉동한 것	45	5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E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E
0714204000	냉동한 것	45	E
0714301000	냉동한 것	45	5
0714309000	기타	385	E
0714401000	냉동한 것	45	5
0714409000	기타	385	E
0714501000	냉동한 것	45	5
0714509000	기타	385	E
0714901010	냉동한 것	45	E
0714901090	기타	18	E
0714909010	냉동한 것	45	5
0714909090	기타	385	E
0801110000	말린 것	30	5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30	5
0801190000	기타	30	5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5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5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5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5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15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15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E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E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E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E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15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15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E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E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30	E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30	E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30	E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30	E
0802909000	기타	30	E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5
0803900000	기타	30	5
0804100000	대추야자	30	20
0804200000	무화과	30	5
0804300000	파인애플	30	E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30	E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5
0804502000	망고(mango)	30	E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E
0805100000	오렌지	50	E
0805211000	감귤	144	E
0805219000	기타	144	E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144	E
0805290000	기타	144	E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30	5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30	E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30	E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144	E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E
0806200000	건조한 것	21	5
0807110000	수박	45	E

0807190000	기타	45	E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5
0808100000	사과	45	E
0808300000	배	45	E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45	5
0809100000	살구	45	5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4	5
0809290000	기타	24	5
0809300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E
0809401000	자두	45	E
0809402000	슬로(sloe)	45	5
0810100000	초본류 딸기	45	E
0810200000	나무딸기 · 검은나무딸기 · 오디 · 로간베리(loganberry)	45	E
0810300000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45	E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 · 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45	E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45	E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5
0810701000	단감	45	E
0810709000	기타	50	E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0905000	매실	50	E
0810909000	기타	45	E
0811100000	초본류 딸기	30	5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 · 백색 ·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30	5
0811901000	밤	30	E
0811902000	대추	30	E
0811903000	잣	30	E
0811909000	기타	30	5
0812100000	체리	30	5
0812901000	초본류 딸기	30	E
0812909000	기타	30	5
0813100000	살구	45	5
0813200000	프룬(prune)	18	5
0813300000	사과	45	E
0813401000	감	50	E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813409000	기타	45	5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45	0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30	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30	5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2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2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8	5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8	5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3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8	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40	15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40	5
0903000000	마테(maté)	25	5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6110000	계피[신나모ם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8	0
0906191000	계피[신나모ם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8	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8	0
0906201000	계피	8	5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8	0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8	5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8	5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5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5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5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8	5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8	5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8	5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200000	사프란(saffron)	8	5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8	5
0910911000	카레	8	5
0910919000	기타	8	5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8	5
0910999000	기타	8	5
1001110000	종자	3	0
1001190000	기타	3	0
1001911000	메슬린(meslin)	3	0
1001919000	기타	1.8	0
1001991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1090	기타	0	0
1001992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2090	기타	1.8	0
1001999010	메슬린(meslin)	3	0
1001999090	기타	1.8	0
1002100000	종자	108.7	5
1002900000	기타	3	0
1003101000	맥주보리	513	E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109000	기타	299.7	E
1003901000	맥주보리	513	E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003909000	기타	299.7	E
1004100000	종자	554.8	5
1004900000	기타	3	0
1005100000	종자용	328	E
1005901000	사료용	328	E
1005902000	팝콘	630	E
1005909000	기타	328	E
1006100000	벼	513	E
1006201000	메현미	513	E
1006202000	찰현미	513	E
1006301000	멥쌀	513	E
1006302000	찹쌀	513	E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513	E
1007100000	종자	779.4	E
1007900000	기타	3	0
1008100000	메밀	256.1	E
1008211000	조	18	5
1008219000	기타	3	0
1008291000	조	3	0
1008299000	기타	3	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3	0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800.3	E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 (Chenopodium quinoa)]	800.3	E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800.3	E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E
1101001000	밀가루	3	0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5	5
1102200000	옥수수가루	5	5
1102901000	보릿가루	260	E
1102902000	쌀가루	513	E
1102903000	호밀가루	5	5
1102909000	기타	800.3	E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88.2	E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E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513	E
1103199000	기타	800.3	5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88.2	E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513	E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60	E
1103209000	기타	800.3	E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513	E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E
1104199000	기타	800.3	E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5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E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E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E
1104299000	기타	800.3	E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E
1104309000	기타	5	0
110510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304	E
110520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304	E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106201000	참깨리의 것	8	20
1106209000	기타	8	20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8	5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E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E
1107209000	기타	27	5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E
1108121000	식품용	226	E
1108129000	기타	226	E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E
1108141000	식품용	455	E
1108149000	기타	455	E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E
1108199000	기타	800.3	E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E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8	0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E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E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E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E
1203000000	코프라(copra)	3	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3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109000	기타	10	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1205909000	기타	10	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5	5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3	0
1207210000	종자	3	0
1207291000	사료용	2	0
1207299000	기타	3	0
1207300000	피마자	3	0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7500000	겨자씨	3	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us tinctorius)] 종자	3	0
1207700000	멜론 종자	3	0
1207910000	양귀비씨	3	0
1207991000	들깨	40% 또는 41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3	0
1207999000	기타	3	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3	0
1208900000	기타	3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움(Trifolium)종] 종자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 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움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움 페레네 엘 (Lolium perenne L.)]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0
1209299000	기타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1209911090	기타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1209913000	고추 · 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0
1209919000	기타	0	0
1209991010	참나무의 종자	0	0
1209991090	기타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1209999000	기타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30	E
1210201000	홉(hop)	30	5
1210202000	루플린(lupulin)	30	0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E
1211201190	기타	222.8	E
1211201211	본삼	222.8	E
1211201219	기타	222.8	E
1211201291	본삼	222.8	E
1211201299	기타	222.8	E
1211201311	본삼	754.3	E
1211201319	기타	754.3	E
1211201391	본삼	754.3	E
1211201399	기타	754.3	E
1211202110	가루	18	E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E
1211202190	기타	18	E
1211202210	가루	754.3	E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E
1211202290	기타	754.3	E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754.3	E
1211203200	종자	754.3	E
12112093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754.3	E
1211209900	기타	754.3	E
12113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0
1211309000	기타	3	5
12114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0

1211409000	기타	3	5
1211501000	신선 ·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8	0
1211509000	기타	3	5
1211901100	부자(附子)	8	0
1211901200	황련(黃連)	8	0
1211901300	원지(遠志)	8	0
1211901400	패모(貝母)	8	0
1211901500	두충(杜沖)	8	20
1211901600	감초	8	0
1211901700	사인(砂仁)	8	0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8	0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8	0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8	0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8	0
1211901940	박하	8	0
1211901950	초피(椒皮)	8	20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8	E
1211901970	구기자	8	20
1211901980	오미자	8	20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8	0
1211901992	백수오	8	0
1211901993	하수오	8	0
1211901999	기타	8	0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45	E
1211909090	기타	3	20
1212211010	건조한 것	20	5
1212211020	냉장한 것	20	0
1212211030	냉동한 것	10	0
1212211090	기타	20	0
1212212010	건조한 것	20	5
1212212020	염장한 것	20	5
1212212030	냉장한 것	20	0
1212212040	냉동한 것	45	0
1212212090	기타	20	0
1212213010	건조한 것	20	E
1212213020	냉장한 것	20	0
1212213030	냉동한 것	45	0
1212213090	기타	20	0
1212214010	신선한 것	20	0
1212214020	냉장한 것	20	0
1212214030	냉동한 것	45	0
1212214090	기타	20	0
1212215010	염장한 것	20	0

1212215020	냉장한 것	20	0
1212215030	냉동한 것	45	0
1212215090	기타	20	E
1212216010	냉동한 것	45	0
1212216090	기타	20	E
1212217011	냉동한 것	45	0
1212217019	기타	20	0
1212217021	냉동한 것	45	0
1212217029	기타	20	0
1212217031	냉동한 것	45	0
1212217039	기타	20	0
1212218011	냉동한 것	45	0
1212218019	기타	20	0
1212218021	냉동한 것	45	0
1212218029	기타	20	0
1212218031	냉동한 것	45	0
1212218039	기타	20	0
1212219011	냉동한 것	45	0
1212219019	기타	20	E
1212219091	냉동한 것	45	E
1212219099	기타	20	E
1212291010	냉동한 것	10	0
1212291090	기타	20	0
1212292010	냉동한 것	45	0
1212292090	기타	20	0
1212293010	냉동한 것	45	0
1212293090	기타	20	0
1212294010	냉동한 것	45	0
1212294090	기타	20	0
1212295010	냉동한 것	45	0
1212295090	기타	20	0
1212296010	냉동한 것	45	0
1212296090	기타	20	E
1212297011	냉동한 것	45	0
1212297019	기타	20	0
1212297021	냉동한 것	45	0
1212297029	기타	20	0
1212297031	냉동한 것	45	0
1212297039	기타	20	0
1212298011	냉동한 것	45	0
1212298019	기타	20	0
1212298021	냉동한 것	45	0
1212298029	기타	20	0

1212298031	냉동한 것	45	0
1212298039	기타	20	0
1212299011	냉동한 것	45	0
1212299019	기타	20	E
1212299091	냉동한 것	45	E
1212299099	기타	20	E
1212910000	사탕무	3	0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20	5
1212930000	사탕수수	3	0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8	0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8	0
1212993000	꽃가루	8	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자두의 핵(核)	8	5
1212999000	기타	8	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 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 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8	5
1214101000	사료용	1	5
1214109000	기타	10	5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100.5	E
1214909011	사료용	1	5
1214909019	기타	18	5
1214909090	기타	100.5	E
1301200000	아라비아 검	3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3	E
1301902010	셀락(shellac)	3	0
1301902090	기타	3	5
1301909000	기타	3	E
1302110000	아편	8	0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8	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30	5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8	5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E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20	E
1302191190	기타	20	E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E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E
1302191290	기타	754.3	E
1302191900	기타	20	E
13021920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	8	0
1302193000	생칠(生漆)	8	15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8	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8	0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8	5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8	5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8	5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8	5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8	5
1302199039	기타	8	5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8	0
1302199099	기타	8	5
1302200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8	0
1302311000	실 한천	8	0
1302312000	가루 한천	8	0
1302319000	기타	8	0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 없다)	8	0
1302390000	기타	8	0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15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8	15
1401109000	기타	8	15
1401201000	쪄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8	15
1401209000	기타	8	15
1401900000	기타	8	15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3	0
1404901000	조각용 종자 · 껍질 · 너트(예: 상아야자)	3	E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3	E
1404902090	기타	3	E
1404903010	떡갈잎	5	15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5	15
1404903090	기타	5	15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 · 식물성 헤어 · 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 없다]	3	15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 · 피아사바(piassava) · 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 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 없다)	3	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3	15
1404906020	아몬드 핵(almond hull)	3	15
1404906090	기타	3	15
1404909000	기타	3	15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3	0
1501109000	기타	3	0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3	0

1501900000	기타	3	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2	0
1502101090	기타	2	0
1502109000	기타	3	0
1502901000	소의 것	2	0
1502909000	기타	3	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3	0
1503009000	기타	3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3	0
1504109000	기타	3	E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5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3	0
1504309000	기타	3	E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3	0
1505009000	기타	3	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3	0
1506009000	기타	3	0
1507101000	식품용	5	E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E
1507109000	기타	5	E
1507901010	식품용	5	E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E
1507901090	기타	5	E
1507909000	기타	5	E
1508100000	조유(粗油)	27	5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27	5
1508909000	기타	27	5
1509100000	버진(virgin)	5	5
1509900000	기타	5	0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5
1511100000	조유(粗油)	3	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2	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2	0
1511909000	기타	2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12000	잇꽃유	5	5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91020	잇꽃유	5	0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5	5
1512199020	잇꽃유	5	5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5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5	5
1512299000	기타	5	5
1513110000	조유(粗油)	3	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3	0
1513199000	기타	3	0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5	0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8	0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5	0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8	0
1513299000	기타	8	0
1514110000	조유(粗油)	5	E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5
1514199000	기타	5	5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E
1514912000	겨자유	5	0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5
1514991020	겨자유	5	0
1514999000	기타	5	5
1515110000	조유(粗油)	5	5
1515190000	기타	5	5
1515210000	조유(粗油)	5	5
1515290000	기타	5	E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5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5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8	5
1515909090	기타	5	5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8	0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8	0
1516109000	기타	8	0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36	0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36	0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36	0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5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36	15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8	0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8	5
1516202090	기타	8	0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8	5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8	0
1517902000	쇼트닝	8	5
1517909000	기타	8	5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8	0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8	0
1518009010	사료용	5	0
1518009090	기타	8	0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8	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8	0
1521102000	팜왁스	8	0
1521109000	기타	8	0
1521901000	경납(鯨蠟)	8	0
1521902000	밀랍(蜜蠟)	8	0
1521909000	기타	8	0
1522001000	데그라스(degras)	8	0
1522009000	기타	8	0
1601001000	소시지	18	5
1601009000	기타	30	E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E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209000	기타	30	E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319000	기타	30	5
1602321010	삼계탕	30	E
1602321090	기타	30	E
1602329000	기타	30	E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399000	기타	30	E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19000	기타	27	E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29000	기타	27	E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99000	기타	27	E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E
1602509000	기타	72	E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909000	기타	30	E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E

1603002000	육즙	30	E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30	0
1603004000	어류의 즙	30	5
1603009000	기타	30	E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4119000	기타	20	0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4129000	기타	20	0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4139000	기타	20	0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12	삶은 것	20	0
1604141019	기타	20	E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22	삶은 것	20	0
1604141029	기타	20	0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0
1604141032	삶은 것	20	0
1604141039	기타	20	E
1604149000	기타	20	10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4159000	기타	20	E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E
1604169000	기타	20	E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4179000	기타	20	10
16041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4189000	기타	20	10
1604191010	콩치	20	0
1604191020	전갱이	20	0
1604191090	기타	20	15
1604199010	쥐치포	20	10
1604199090	기타	20	E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20	0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20	0
1604203000	생선소시지	20	0
1604204010	게맛의 것	20	0
1604204090	기타	20	0
1604209000	기타	20	E
1604310000	캐비아	20	E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20	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101091	붉은대게살	20	E

1605101099	기타	20	E
1605109000	기타	20	20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20	E
1605219000	기타	20	15
1605290000	기타	20	E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309000	기타	20	0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1605409000	기타	20	10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519000	기타	20	E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29000	기타	20	E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539000	기타	20	10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41090	기타	20	E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E
1605542099	기타	20	E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59000	기타	20	E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561090	기타	20	E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562090	기타	20	E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69090	기타	20	E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79000	기타	20	E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89000	기타	20	E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91090	기타	20	10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0
1605592090	기타	20	E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599090	기타	20	E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619000	기타	20	10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629000	기타	20	E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639000	기타	20	E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10
1605699000	기타	20	E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3	0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3	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0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E
1701990000	기타	30	E
1702111000	유당(乳糖)	49.5	5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20	E
1702191000	유당(乳糖)	49.5	5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20	E
1702201000	단풍당	8	5
1702202000	단풍당시럽	8	5
1702301000	포도당	8	0
1702302000	포도당시럽	8	0
1702401000	포도당	8	0
1702402000	포도당시럽	8	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8	5
1702601000	과당	8	5
1702602000	과당시럽	8	5
1702901000	인조꿀	243	E
1702902000	캐러멜당	8	5
1702903000	맥아당	8	5
1702909000	기타	8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109000	기타	3	5
1703901000	주정 제조용	3	0
1703909000	기타	3	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5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8	E
1704902010	드롭스(drops)	8	5
1704902020	캐러멜	8	5
1704902090	기타	8	5
1704909000	기타	8	5
1801001000	생 것	2	0
1801002000	볶은 것	8	0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8	0
1802009000	기타	8	0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0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0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5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8	5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8	5
1806209090	기타	8	5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19000	기타	8	5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329000	기타	8	5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806902111	조제 분유	36	E
1806902119	기타	40	E
1806902191	오트밀의 것	8	0
1806902199	기타	8	0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290	기타	513	E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30	5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36	E
1806902991	오트밀의 것	8	0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8	5
1806902999	기타	513	E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5.4	5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8	E
1806903099	기타	8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8	5
1806909090	기타	8	10
1901101010	조제 분유	36	E
1901101090	기타	40	E
1901109010	오트밀의 것	8	5
1901109090	기타	8	5
1901201000	쌀가루의 것	513	E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8	5
1901209000	기타	513	E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5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36	E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36	E
1901909010	오트밀	8	5
1901909091	쌀가루의 것	513	E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8	5

1901909099	기타	513	E
1902111000	스파게티	5	5
1902112000	마카로니	5	5
1902119000	기타	5	5
1902191000	국수	5	5
1902192000	당면	26% 또는 206원/kg 양자 중 고액(율)	5
1902193000	냉면	5	5
1902199000	기타	5	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1902301010	라면	5	0
1902301090	기타	5	0
1902309000	기타	5	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5	5
1903001000	타피오카	8	5
1903009000	기타	8	5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5.4	0
1904102000	콘 칩	5.4	0
1904103000	튀긴 쌀	5.4	5
1904109000	기타	5.4	0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45	5
1904209000	기타	5.4	0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8	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E
1904901090	기타	8	E
1904909000	기타	8	0
1905100000	귀리빵	8	5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5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8	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8	5
1905400000	러스크(rusk) · 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8	5
1905901010	빵	8	5
1905901020	건빵	8	5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8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5	5
1905901050	쌀과자	8	5
1905901090	기타	8	5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8	5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5
1905909090	기타	8	5
2001100000	오이류	30	5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0
2001909010	쪽파	30	5
2001909020	토마토	30	5
2001909030	꽃양배추	30	5
2001909040	스위트콘	30	5
2001909050	염교(rakkyo)	30	5
2001909060	마늘	30	E
2001909070	양파	30	E
2001909090	기타	30	5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8	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002909000	기타	8	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20	5
2003109000	기타	20	5
2003901000	표고버섯	20	E
2003902000	송이버섯	20	E
2003903000	송로(松露)	20	E
2003909000	기타	20	5
2004100000	감자	18	0
2004901000	스위트콘	30	5
2004909000	기타	30	5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20	5
2005109000	기타	20	5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20	5
2005209000	기타	20	5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5
2005511000	녹두	20	5
2005512000	팥	20	5
2005519000	기타	20	5
2005591000	녹두	20	5
2005592000	팥	20	5
2005599000	기타	20	5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E
2005700000	올리브	20	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5
2005910000	죽순	20	E
2005991000	김치	20	E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20	5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20	20
2005999000	기타	20	20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E
2006002000	파인애플	30	5

2006003000	생강	30	5
2006004000	연 뿌리	30	5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20	5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20	5
2006006090	기타	20	5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5
2006008000	올리브	20	5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5
2006009020	죽순	20	E
2006009030	그 밖의 채소의 것	20	5
2006009090	기타	30	5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5
2007911000	잼 · 과일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E
2007919000	기타	30	5
2007991000	잼 · 과일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E
2007999000	기타	30	E
2008111000	피넛 버터	50	E
2008119000	기타	63.9	E
2008191000	밤	50	E
2008192000	코코넛	45	5
2008199000	기타	45	E
2008200000	파인애플	45	E
2008301000	유자	45	E
2008309000	기타	45	E
2008400000	배	45	E
2008500000	살구	45	5
2008600000	체리	45	E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E
2008709000	기타	45	5
2008800000	초본류 딸기	45	E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45	E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E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5
2008971090	기타	45	5
2008972000	과실 샐러드	45	5
2008979000	기타	45	5
2008991000	포도	45	5
2008992000	사과	45	5
2008993000	팝콘	45	5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E
2008995010	김	8	0

2008995090	기타	8	E
2008999000	기타	45	E
2009110000	냉동한 것	54	E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4	E
2009190000	기타	54	E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30	E
2009290000	기타	30	E
2009311000	레몬주스	50	5
2009312000	라임주스	50	5
2009319000	기타	54	15
2009391000	레몬주스	50	5
2009392000	라임주스	50	0
2009399000	기타	54	20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5
2009490000	기타	50	E
2009500000	토마토주스	30	5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E
2009690000	기타	45	0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5	E
2009790000	기타	45	5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E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15
2009891020	딸기주스	50	15
2009891090	기타	50	E
2009892000	채소 주스	30	E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50	E
2009901090	기타	50	E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30	5
2009909000	기타	50	E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8	5
2101119000	기타	8	5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8	5
2101129010	밀크 ·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8	5
2101129090	기타	8	5
2101201000	설탕 · 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40	5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5
2101209019	기타	40	5
2101209090	기타	40	5
2101301000	보리의 것	8	5

2101309000	기타	8	E
2102101000	양조효모	8	5
2102102000	증류효모	8	E
2102103000	제빵효모	8	5
2102104000	배양효모	8	E
2102109000	기타	8	5
2102201000	불활성 효모	8	5
2102202000	누룩	8	E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3090	기타	8	5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8	5
2102204090	기타	8	5
2102209000	기타	8	5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8	E
2103100000	간장	8	5
2103201000	토마토 케첩	8	5
2103202000	토마토 소스	8	5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8	0
2103302000	조제한 겨자	8	0
2103901010	된장	8	E
2103901020	춘장	8	0
2103901030	고추장	32	5
2103901090	기타	45	5
2103909010	마요네스	8	E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5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5
2103909040	메주	8	E
2103909090	기타	45	5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18	5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30	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18	5
2104109000	기타	18	5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5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5
2105001090	기타	8	5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8	5
2105009090	기타	8	5
2106101000	두부	8	5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8	5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8	5
2106901010	콜라 베이스	8	5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8	5
2106901090	기타	8	5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5
2106903011	인삼차	8	E
2106903019	기타	8	0
2106903021	홍삼차	754.3	E
2106903029	기타	754.3	E
2106909010	커피크리머	8	5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8	5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8	5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8	5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8	5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5
2106909060	도토리 가루	8	15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5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0	5
2106909091	로열젤리·벌꿀의 조제품	8	E
2106909099	기타	8	5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8	5
2201901000	얼음과 눈	8	E
2201909000	기타	8	5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8	0
2202109000	기타	8	0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8	5
2202991000	인삼음료	8	5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9	E
2202993000	식혜	8	E
2202999000	기타	8	5
2203000000	맥주	30	E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15	5
2204211000	붉은 포도주	15	5
2204212000	흰 포도주	15	5
2204219000	기타	15	5
2204221000	붉은 포도주	15	5
2204222000	흰 포도주	15	5
2204229000	기타	15	5
2204291000	붉은 포도주	15	5
2204292000	흰 포도주	15	5
2204299000	기타	15	5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30	5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15	E
2205900000	기타	15	E
2206001010	사과주	15	0
2206001020	배술	15	0
2206001090	기타	15	0
2206002010	청주	15	0
2206002020	약주	15	0
2206002030	탁주	15	0
2206002090	기타	15	0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15	0
2206009090	기타	15	0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E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E
2207109090	기타	30	E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8	10
2208201000	꼬냇	15	5
2208209000	기타	15	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20	5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20	5
2208309000	기타	20	5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5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5
2208600000	보드카	20	5
2208701000	인삼주	20	5
2208702000	오가피주	20	E
2208709000	기타	20	5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E
2208904000	소주	30	0
2208906000	고량주	30	5
2208907000	데킬라	20	5
2208909000	기타	30	5
2209001000	양조식초	8	5
2209009000	기타	8	E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9	5
2301102000	수지박(greaves)	5	0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0
2301209000	기타	5	0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0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2	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5	5
2302409000	기타	5	0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0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0
2303301000	사료용	2	0
2303309000	기타	5	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0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2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0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 씨에서 나온 것	0	0
2306490000	기타	0	0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2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63% 또는 72원/kg 양자 중 고액(율)	E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5	0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5	0
2306909000	기타	5	0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5	0
2308001000	도토리	5	E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5	E
2308003000	목화씨 껍질	5	0
2308009000	기타	46.4	E
2309101000	개사료	5	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5	0
2309901010	양돈용	4.2	0
2309901020	양계용	4.2	0
2309901030	어류용	5	0
2309901040	축우용	4.2	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71	E
2309901099	기타	5	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E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E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5	0
2309902099	기타	50.6	E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5	0
2309903090	기타	5	0
2309909010	낙시용 떡밥	5	E
2309909090	기타	50.6	E
2401101000	황색종(種)	20	5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5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20	0
2401109000	기타	20	5
2401201000	황색종	20	5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20	5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20	0
2401209000	기타	20	5
2401301000	앞의 주맥(主脈)	20	5
2401302000	앞 부스러기	20	5
2401309000	기타	20	5
2402101000	시가(cigar)	40	0
2402102000	셔루트(cheroot)	40	0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40	0
2402201000	필터담배	40	0
2402209000	기타	40	0
2402900000	기타	40	0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0	0
2403191000	파이프 담배	40	0
2403199000	기타	40	0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32.8	0
2403919000	기타	40	0
2403991000	씹는 담배	40	0
2403992000	코 담배	40	0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40	0
2403994000	입안에 머금은 담배(예: 스누스)	40	0
2403999000	기타	40	0
2501001010	암염(岩鹽)	1	0
2501001020	천일염	1	0
2501009010	식염	8	E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8	0
2501009090	기타	8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 황은 제외한다]	2	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109000	기타	3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3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3	0
2504909000	기타	3	0
2505100000	규사	2	0
2505901010	점토사	3	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3	0
2505901090	기타	3	0
2505909000	기타	3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3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3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3	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0
2506209000	기타	3	0
250700101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3	0
2507001090	기타	3	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3	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3	0
2507002090	기타	3	0
2507009000	기타	3	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3	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3	0
2508401000	산성백토	3	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3	0
2508409000	기타	3	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3	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3	0
2508503000	규선석(珪線石)	3	0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3	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3	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3	0
2509000000	초크	3	0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2510109000	기타	1	0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3	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3	0
2510209000	기타	3	0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3	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3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겔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범스키)을 포함한다]	3	0
2513109000	기타	3	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1090	기타	3	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3	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3	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3	0
2513202090	기타	3	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0
2514009000	기타	3	20
2515111000	대리석	3	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2515121000	대리석	3	E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3	0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3	0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0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2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0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2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3	20
2516909000	기타	3	20
2517101000	자갈	3	0
2517102000	쇄석(碎石)	3	0
2517109000	기타	3	0
2517200000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 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3	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3	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3	2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3	20
2517499000	기타	3	20
2518100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3	0
2518200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3	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3	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3	0
2519901000	용융(溶融) ·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3	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3	0
2519909000	기타	3	0
2520101000	석고	5	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5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2520209000	기타	5	0
2521001000	석회석	3	0
2521009000	기타	3	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3	E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3	0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3	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E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2523290000	기타	5	E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8	20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20
2523909000	기타	5	15
2524100000	청(靑)석면	5	0
2524901000	갈(褐)석면	5	0
2524902000	백(白)석면	5	0
2524909000	기타	5	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3	0
2525200000	운모 가루	3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3	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3	0
2526109000	기타	3	0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5	0
2528001000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0
2528002000	봉산칼슘	3	0
2528003000	염화봉산마그네슘	3	0
2528004000	천연 봉산	3	0
2528009000	기타	3	0
2529100000	장석(長石)	3	0
2529211000	가루	2	0
2529219000	기타	2	0
2529221000	가루	2	0
2529229000	기타	2	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2	0
2529302000	하석(霞石)	2	0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2	0
2530101000	질석(蛭石)	3	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3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3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3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3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3	0
2530904000	주사(朱沙)	3	0
2530905000	납석(蠟石)	3	0
2530906000	불석(沸石)	3	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3	0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3	0
2530909010	도석(陶石)	3	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3	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8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8	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3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3	0
2530909099	기타	3	0
2601111000	적(赤)철광	0	0
2601112000	자(磁)철광	0	0
2601119000	기타	0	0
2601121000	적(赤)철광	0	E
2601122000	자(磁)철광	0	0
2601129000	기타	0	E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1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0
2611009000	기타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0

2613900000	기타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0
2614009000	기타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0
2617909000	기타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	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2	5
2619001090	기타	2	5
2619002000	드로스(dross)	2	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2	0
2619009000	기타	2	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2	0
2620190000	기타	2	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2	0
2620290000	기타	2	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2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2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2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2	0
2620990000	기타	2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	0
2621900000	기타	2	0
2701110000	무연탄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0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2701129090	기타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0

2701201000	연탄	1	0
2701202000	조개탄(ovoid)	1	0
2701209000	기타	1	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1	0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1	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1	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1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3	0
2704001090	기타	3	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3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5	0
2706009000	기타	5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3	E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3	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20
2707400000	나프탈렌	5	0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5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5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8	0
2707999000	기타	5	E
2708100000	피치(pitch)	5	E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E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3	E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3	E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3	E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3	E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3	E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3	E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3	E

2709001080	섬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3	E
2709001090	기타	3	E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3	E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E
2710122000	항공 휘발유	3	E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E
2710124000	나프타	0.5	TR
2710125000	엔지엘(NGL)	0.5	0
2710129000	기타	5	E
2710191010	제트 연료유	5	E
2710191090	기타	5	E
2710192010	등유	3	E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E
27101920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0
2710192090	기타	5	E
2710193000	경유	3	E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3	E
2710194020	중유(벵커비유)	3	E
2710194030	벵커시유	3	10
2710194090	기타	5	E
2710195010	조유(粗油)	7	E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E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8	E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7	E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7	E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7	E
2710197210	실린더오일	7	E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7	15
2710197230	기어오일	7	E
2710197240	터빈오일	7	E
2710197250	냉동기오일	7	E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7	15
2710197320	유동파라핀	7	E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E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7	E
2710197420	절삭유	7	E
2710197430	세척유	7	15
2710197440	주형이형유	7	15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7	15
2710197510	프로세스유	7	E
2710197520	전기전열유	7	15
2710197530	열처리유	7	15
2710197540	열매체유	7	15

2710197900	기타	7	15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15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8	15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15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8	E
2710198090	기타	8	E
2710199000	기타	8	E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E
2710201020	항공 휘발유	5	E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5	E
2710201040	나프타	0.5	0
2710201050	엔지엘(NGL)	0.5	0
2710201090	기타	5	E
2710209110	제트 연료유	5	E
2710209190	기타	5	E
2710209210	등유	5	E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E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5	0
2710209290	기타	5	E
2710209300	경유	5	E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5	E
2710209420	중유(벵커비유)	5	E
2710209430	벵커시유	5	E
2710209490	기타	5	E
2710209510	조유(粗油)	7	E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E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8	E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7	E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7	E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7	E
2710209721	실린더오일	7	E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7	15
2710209723	기어오일	7	E
2710209724	터빈오일	7	E
2710209725	냉동기오일	7	E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7	15
2710209732	유동파라핀	7	E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7	E
2710209741	방청유	7	E
2710209742	절삭유	7	E
2710209743	세척유	7	15
2710209744	주형이형유	7	15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7	15

2710209751	프로세스유	7	E
2710209752	전기전열유	7	15
2710209753	열처리유	7	15
2710209754	열매체유	7	15
2710209790	기타	7	15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8	15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8	15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8	15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8	E
2710209890	기타	8	E
2710209900	기타	8	E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3	E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11090	기타	5	E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20
2710912090	기타	5	E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3	15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 중유(벙커비유) · 벙커시유의 것	3	15
2710914090	기타	5	15
271091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15
2710919000	기타	8	15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3	E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2710991090	기타	5	E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3	20
2710992090	기타	5	E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3	15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 중유(벙커비유) · 벙커시유의 것	3	15
2710994090	기타	5	15
271099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7	15
2710999000	기타	8	E
2711110000	천연가스	3	15
2711120000	프로판	3	5
2711130000	부탄	3	5
2711141000	에틸렌	5	E
2711142000	프로필렌	5	10
2711143000	부틸렌	5	10
2711144000	부타디엔	5	15
2711190000	기타	5	E
2711210000	천연가스	3	0
2711290000	기타	5	E

2712101000	바셀린	8	E
2712109000	기타	8	E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8	E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8	E
2712901090	기타	8	E
2712909010	몬탄왁스	8	E
2712909020	토탄왁스	8	E
2712909030	세레신왁스	8	E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8	E
2712909090	기타	8	E
27131100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5	E
2713120000	하소(煨燒)한 것	5	E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5	15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E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E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E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5	E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5	E
2715001000	컷백(cut-back)	5	E
2715002000	아스팔트 · 역청(瀝靑) · 피치(pitch) ·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5	E
2715003000	매스틱(mastic)	5	E
2715009000	기타	5	E
2716000000	전기에너지	5	0
2801100000	염소	5.5	0
2801200000	요드	5.5	0
2801301000	플루오르	5.5	0
2801302000	브롬	5.5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5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5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5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5.5	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03009019	기타	5.5	0
2803009090	기타	5.5	0
2804100000	수소	5.5	0
2804210000	아르곤	5.5	0
2804291000	헬륨	5.5	0
2804292000	네온	5.5	0
2804293000	크립톤	5.5	0
2804294000	크세논	5.5	0
2804299000	기타	5.5	0

2804300000	질소	5.5	0
2804400000	산소	5.5	0
2804501000	붕소	5.5	0
2804502000	텔루르	5.5	0
2804611010	잉곳(ingot) 또는 브릭(brick)	3	0
2804611090	기타	3	0
2804619000	기타	3	0
2804690000	기타	5	0
2804701000	황린	5	0
2804709000	기타	5.5	0
2804800000	비소	5.5	0
2804900000	셀렌	5.5	0
2805110000	나트륨	5.5	0
2805120000	칼슘	5.5	0
2805190000	기타	5.5	0
2805301000	세륨그룹	5.5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5.5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5.5	0
2805304000	이트륨	5.5	0
2805305000	스칸듐	5.5	0
2805309000	기타	5.5	0
2805400000	수은	5.5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5.5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5.5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7001090	기타	5.5	0
2807002000	발연황산	5.5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8001090	기타	5.5	0
2808002000	황질산	5.5	0
2809100000	오산화인	5.5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5.5	0
2809201090	기타	5.5	0
2809202010	메타인산	5.5	0
2809202020	피로인산	5.5	0
2809202090	기타	5.5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5.5	0
2810001090	기타	5.5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5.5	0
2810003000	메타붕산	5.5	0
2810009000	기타	5.5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11119000	기타	5.5	0

2811120000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5.5	0
2811191000	황화수소	5.5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5.5	0
2811193000	숯파민산	5.5	0
2811194000	과염소산	5.5	0
2811195000	염소산	5.5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5.5	0
2811197000	아인산	5.5	0
2811198000	비산	5.5	0
2811199000	기타	5.5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5.5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5.5	0
2811229010	실리카겔	5.5	0
2811229090	기타	5.5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5.5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5.5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5.5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5.5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5.5	0
2811299000	기타	5.5	0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0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0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0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0
2812150000	셀퍼 모노클로라이드	5	0
2812160000	셀퍼 디클로라이드	5	0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5	0
2812190000	기타	5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5.5	0
2812902000	셀퍼헥사플루오라이드	5.5	0
2812909000	기타	5.5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5.5	0
2813901020	오황화인	5.5	0
2813901090	기타	5.5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5.5	0
2813902090	기타	5.5	0
2813903000	황화규소	5.5	0
2813909000	기타	5.5	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1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2	0
2815110000	고체	5.5	E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E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5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5.5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5.5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5.5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5.5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5	0
2817001000	산화아연	5.5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5.5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3	0
2818109000	기타	3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1	0
2818301000	알루미나겔	5.5	0
2818309000	기타	5.5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5.5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5.5	0
2819901090	기타	5.5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5.5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5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5.5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5.5	0
2820909000	기타	5.5	0
2821101000	산화철	5.5	0
2821102000	수산화철	5.5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5.5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5.5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3	0
2822001099	기타	5.5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5.5	0
2822002090	기타	5.5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5.5	0
2823009000	기타	5.5	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5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5.5	0
2824909000	기타	5.5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5.5	0
2825109010	히드라진	5.5	0
2825109020	히드라진의 무기염	5.5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5.5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5.5	0
2825109049	기타	5.5	0
2825201000	산화리튬	5.5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5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1	0
2825309000	기타	3	0
2825401000	산화니켈	5.5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5.5	0
2825501000	산화구리	5.5	E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5502090	기타	5.5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5.5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5.5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3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5.5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5.5	0
2825901010	산화칼슘	5.5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1	0
2825901030	산화주석	5.5	0
2825901090	기타	5.5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5.5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5.5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5.5	0
2825902040	수산화주석	5.5	0
2825902090	기타	5.5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5.5	0
2825903090	기타	5.5	0
2825909000	기타	5.5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5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5.5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5	0
2826193090	기타	5.5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5.5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 ₆)	5.5	0
2826199000	기타	5.5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5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5.5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5.5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5.5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5.5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5.5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5.5	0
2826909000	기타	5.5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5.5	0
2827200000	염화칼슘	5.5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5.5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5.5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5.5	0
2827391000	구리 염화물	5.5	0
2827399000	기타	5.5	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5.5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27412090	기타	5.5	0
2827491000	산화 염화물	5.5	0
2827492000	수산화 염화물	5.5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5.5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5.5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5.5	0
2827599000	기타	5.5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5.5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5.5	0
2827609090	기타	5.5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5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5	0
2828901090	기타	5.5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5.5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5.5	0
2828902090	기타	5.5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5.5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5.5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5.5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5.5	0
2829199000	기타	5.5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5.5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5.5	0
2829901090	기타	5.5	0
2829902010	브롬산염	5.5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5.5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5.5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5.5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5.5	0
2830109000	기타	5.5	0
2830901000	황화물	5.5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5.5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5.5	0
2831102000	술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5.5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5.5	0

2831902000	숯폭실탄염	5.5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2109000	기타	5.5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5.5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5.5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5.5	0
2832209000	기타	5.5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5.5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5.5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5.5	0
2832309000	기타	5.5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5.5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5.5	0
2833199000	기타	5.5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5.5	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29000	기타	5.5	0
2833240000	황산니켈	5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833259000	기타	5.5	0
2833270000	황산바륨	5.5	0
2833291000	황산철	5.5	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92090	기타	5.5	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3293090	기타	5.5	0
2833299000	기타	5.5	0
2833300000	명반	5.5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5.5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5.5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5.5	0
2833409000	기타	5.5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5.5	0
2834109000	기타	5.5	0
2834210000	질산칼륨	5.5	0
2834291000	질산바륨	5.5	0
2834299000	기타	5.5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5.5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5.5	0
2835101090	기타	5.5	0
2835102000	아인산염	5.5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5.5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5.5	0
2835240000	인산칼륨	5.5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5	0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5.5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5.5	0
2835299000	기타	5.5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5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5.5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5.5	0
2835399000	기타	5.5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3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5	0
2836400000	탄산칼륨	5.5	0
2836500000	탄산칼슘	5.5	0
2836600000	탄산바륨	5.5	0
2836910000	탄산리튬	5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5.5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5.5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5.5	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5	0
2836991039	기타	5.5	0
2836991090	기타	5.5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5.5	0
2837111000	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12000	산화시아나화나트륨	5.5	0
2837191010	시아나화칼륨	5.5	0
2837191020	시아나화구리	5.5	0
2837191030	시아나화아연	5.5	0
2837191090	기타	5.5	0
2837192000	산화시아나화물	5.5	0
2837201000	페로시아나화물	5.5	0
2837202000	페리시아나화물	5.5	0
2837209000	기타	5.5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5.5	0
2839190000	기타	5.5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5.5	0
2839902000	규산바륨	5.5	0
2839909000	기타	5.5	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5	0
2840190000	기타	5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5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5.5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5.5	0
2841509000	기타	5.5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5.5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5.5	0
2841692000	망간산염	5.5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5.5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5.5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0
2841901000	주석산염	5.5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5.5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5.5	0
2841902030	티탄산납	5.5	0
2841902090	기타	5.5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5.5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5.5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5.5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5.5	0
2841909000	기타	5.5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6.5	0
2842109000	기타	5.5	0
2842901000	셀렌산염	5.5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5000	셀렌의 겐염이나 착염	5.5	0
2842909000	기타	5.5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5.5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5.5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5.5	0
2843109000	기타	5.5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19000	기타	5.5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3299000	기타	5.5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5.5	0
2843309000	기타	5.5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5.5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5.5	0
2843909090	기타	5.5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0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109000	기타	0	0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209000	기타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309000	기타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2844409000	기타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2845909000	기타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5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5	0
2846909000	기타	5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847009000	기타	5.5	0
2849100000	탄화칼슘	5.5	0
2849200000	탄화규소	5	0
2849901000	복탄화물	5.5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5.5	0
2849909090	기타	5.5	0
2850001000	수소화물	5.5	0
2850002000	질화물	5.5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5.5	0
2850004000	규화물	5.5	0
2850005000	붕화물	5.5	0
28521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호의 것	5.5	0
2852102000	제2931호의 것, 소호 제2918.11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제3822.00.2091호의 것	6.5	0
285210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제3822.00.2092호의 것	6.5	0
28521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8	0

2852105000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제3822.00.2093호의 것	0	0
2852106000	제3822.00.1099호, 제3822.00.2099호의 것	8	0
2852901000	소호 제2830.90호, 제2835.39호, 제2842.10.90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제2853.90.2000호의 것	5.5	0
2852902000	제2842.10.1000호, 제2934.99.2000호, 제2934.99.9090호, 소호 제3201.90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2100호, 제3824.99.2290호부터 제3824.99.9090호까지의 것	6.5	0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20	5
28529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8	0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5	0
2853901000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5	0
2853902000	인화물(燐化合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5.5	0
2853909000	기타	5.5	0
2901101000	부탄	0	0
2901102000	헥산	0	0
2901103000	헵탄	0	0
2901109000	기타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2901291000	헥센	0	0
2901292000	옥텐	0	0
2901299000	기타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5	E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5	0
2902199000	기타	5	0
2902200000	벤젠	3	E
2902300000	톨루엔	3	E
2902410000	오рто-크실렌	5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5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E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티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2902909000	기타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E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E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드메탄	5.5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5.5	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5.5	0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5.5	0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5.5	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5.5	0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5.5	0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5	0
2903791100	클로로플루오르메탄	5.5	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5.5	0
2903791290	기타	5.5	0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5.5	0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5.5	0
2903799000	기타	5.5	0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5	0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5	0
2903830000	미렉스(ISO)	5.5	0
2903890000	기타	5.5	0

2903911000	클로로벤젠	5.5	0
2903919000	기타	5.5	0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5.5	0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5	0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5.5	0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5.5	0
2903991000	염화벤질	5.5	0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5.5	0
2903992090	기타	5.5	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5.5	0
2903999000	기타	5.5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5.5	0
2904109000	기타	5.5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5.5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5.5	0
2904209090	기타	5.5	0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5.5	0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5.5	0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5.5	0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5.5	0
290435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5.5	0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폰플루오라이드	5.5	0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5	0
2904990000	기타	5.5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2	1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5.5	1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E
2905122090	기타	5.5	E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E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E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E
2905169000	기타	5.5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5.5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5.5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5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5.5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5.5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5.5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5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3	0
2905199090	기타	5	0

2905221000	게라니올 · 시트로네올 · 리날롤 · 로디놀 · 네올	5	0
2905229000	기타	5	0
2905290000	기타	5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	E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5
2905391000	1,4-부탄디올	5.5	15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20
2905399000	기타	5.5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5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5.5	0
2905430000	만니톨	8	E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0
2905450000	글리세롤	8	0
2905490000	기타	5.5	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5.5	0
2905590000	기타	5.5	0
2906110000	멘톨	5.5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5	0
2906131000	스테롤	5.5	0
2906132000	이노시톨	5.5	0
2906191000	보르네올	5.5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5.5	0
2906199000	기타	5.5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5.5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5.5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5.5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5.5	0
2906299000	기타	5.5	0
2907111000	페놀	5.5	E
2907112000	페놀의 염	5.5	0
2907121000	크레졸	5.5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5.5	0
2907131000	옥틸페놀	5.5	0
2907132000	노닐페놀	5	0
2907139000	기타	5.5	0
2907151000	나프톨	5.5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5.5	0
2907191000	티몰	5.5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5.5	0
2907199000	기타	5.5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5.5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5.5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5.5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5.5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E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5.5	0
2907291000	카테콜	5.5	0
2907299000	기타	5.5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5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5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5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5	0
2908199000	기타	5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5.5	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5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5.5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5.5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5.5	0
2908999000	기타	5.5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5.5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5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5.5	E
2909199000	기타	5.5	E
2909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09301000	아니솔	5.5	0
2909302000	아네톨	5.5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5.5	0
2909304000	엠브렛 머스크	5.5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5.5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09309090	기타	5.5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콜)	5.5	E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5	E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5	0
2909449000	기타	5.5	1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5.5	E
2909499000	기타	5.5	10
2909501000	오이게놀	5.5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5.5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5.5	0

2909509000	기타	5.5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5.5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5.5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5.5	0
2909609000	기타	5.5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0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E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E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5.5	0
2910500000	엔드린(ISO)	5.5	0
2910900000	기타	5.5	10
2911001010	아세탈	5.5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5.5	0
2911009000	기타	5.5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5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5.5	0
2912192000	시틀알	5.5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5.5	0
2912199000	기타	5.5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5.5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5.5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5.5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5.5	0
2912299000	기타	5.5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메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5.5	0
2912499000	기타	5.5	0
2912501000	트리옥산	5.5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5.5	0
2912509000	기타	5.5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5.5	E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5.5	0
2914110000	아세톤	5.5	E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3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5	E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5.5	0
2914199000	기타	5.5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5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5	0

2914231000	이오논	5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5	0
2914291000	자스몬	5	0
2914299000	기타	5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5	0
2914390000	기타	5.5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5.5	0
2914409000	기타	5.5	0
2914501000	케톤-페놀	5.5	0
2914509000	기타	5.5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5.5	0
2914620000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5.5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5.5	0
2914699010	퀴논알코올 ·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5.5	0
2914699090	기타	5.5	0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5	0
29147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4799000	기타	5	0
2915110000	포름산	5.5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5.5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5.5	0
2915129000	기타	5.5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5.5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5.5	0
2915139000	기타	5.5	0
2915210000	초산	5.5	E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5.5	0
2915291000	초산칼슘	5.5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5.5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5.5	0
2915299000	기타	5.5	0
2915310000	초산에틸	5.5	E
2915320000	초산비닐	5.5	E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5.5	0
2915339000	기타	5.5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5.5	0
2915391000	초산아밀	5.5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5.5	0
2915393000	초산메틸	5.5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5.5	0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5.5	0
2915399000	기타	5.5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5.5	0
2915409000	기타	5.5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600000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5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5.5	5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5.5	5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5.5	5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5.5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5.5	5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5.5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5.5	5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5.5	5
2915702090	기타	5.5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5.5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5.5	0
2915909090	기타	5.5	5
2916111000	아크릴산	6.5	E
2916119000	기타	6.5	20
2916121000	아크릴 산에틸	6.5	E
2916122000	아크릴 산메틸	6.5	E
2916123000	아크릴 산부틸	6.5	E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E
2916129000	기타	6.5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E
2916139000	기타	6.5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E
2916149000	기타	6.5	E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5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53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6.5	5
2916190000	기타	6.5	5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6.5	0
2916202000	시클로 펜데닐 초산	6.5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6209090	기타	6.5	0
2916311000	벤조산	6.5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6.5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6.5	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16319090	기타	6.5	5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6.5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6.5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6.5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6.5	0
2916391000	계피산	6.5	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16399090	기타	6.5	0
2917111000	옥살산	6.5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6.5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6.5	0
2917121000	아디프산	6.5	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6.5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6.5	0
2917123090	기타	6.5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6.5	15
2917191000	말레산	6.5	0
2917192000	숙신산	6.5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6.5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6.5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6.5	0
2917199000	기타	6.5	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6.5	0
2917321000	오рто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10
2917329000	기타	6.5	0
2917331000	오рто프탈산디노닐	6.5	0
2917332000	오рто프탈산디데실	6.5	0
2917341000	오рто프탈산 디헥틸	6.5	0
2917342000	오рто프탈산 디이소데실	6.5	0
2917343000	오рто프탈산 디부틸	6.5	0
2917349000	기타	6.5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3	E
2917369000	기타	6.5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6.5	E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6.5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6.5	0
2917399000	기타	6.5	0

2918111000	락트산	6.5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6.5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6.5	5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6.5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40000	시트르산	6.5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6.5	0
2918151090	기타	6.5	5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61000	글루콘산	6.5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6.5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6.5	5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의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9000	기타	6.5	5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5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8999000	기타	6.5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6.5	5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19901019	기타	6.5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6.5	0
2919901090	기타	6.5	5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9909000	기타	6.5	5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19000	기타	6.5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0199000	기타	6.5	0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220000	디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6.5	0
292024000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6.5	0
2920290000	기타	6.5	E
2920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0309000	기타	6.5	20
2920901010	황산디메틸	6.5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6.5	0
2920901090	기타	6.5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6.5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E
2920909090	기타	6.5	E
2921111010	메틸아민	6.5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6.5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6.5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6.5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6.5	20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0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20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6.5	2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6.5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6.5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6.5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6.5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6.5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1199090	기타	6.5	1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6.5	E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6.5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6.5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6.5	0
2921229000	기타	6.5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5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5	10
2921299000	기타	5	10
2921301000	시클로 헥살아민	6.5	0
2921309000	기타	6.5	0
2921411000	아닐린	6.5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6.5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6.5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6.5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29090	기타	6.5	1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39010	톨루이딘	6.5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39099	기타	6.5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6.5	0
2921449000	기타	6.5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5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5	0
2921459090	기타	6.5	0
2921460000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텍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6.5	0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1499000	기타	6.5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6.5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6.5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6.5	0
2921519090	기타	6.5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6.5	0
2921599010	벤지딘	6.5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6.5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6.5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6.5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6.5	0
2921599090	기타	6.5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6.5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6.5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6.5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6.5	0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3	0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6.5	0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6.5	0
292218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6.5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22193090	기타	6.5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6.5	0
2922199000	기타	6.5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3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6.5	0
2922219000	기타	6.5	0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6.5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6.5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6.5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6.5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6.5	0
2922299090	기타	6.5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6.5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6.5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6.5	0
2922399000	기타	6.5	5
2922411000	리신	6.5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6.5	5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6.5	5
2922421000	글루탐산	5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6.5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6.5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6.5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6.5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6.5	0
2922491000	글리신	6.5	5
2922492000	알라닌	6.5	0
2922493000	류우신	6.5	0
2922494000	바린	6.5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6.5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6.5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6.5	0
2922499000	기타	6.5	0
2922501000	세린	6.5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6.5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6.5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6.5	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2509090	기타	6.5	0
2923101000	콜린	6.5	0
2923102000	콜린의 염	6.5	0
2923201000	레시틴	6.5	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6.5	0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5	5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5	5
2923900000	기타	6.5	5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6.5	5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6.5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6.5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6.5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6.5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6.5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4199090	기타	6.5	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4219000	기타	6.5	5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6.5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6.5	0
2924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4259000	기타	6.5	5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6.5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6.5	5
2924291090	기타	6.5	0
2924292000	아세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5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6.5	0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헉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4299099	기타	6.5	5
2925111000	사카린	6.5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6.5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6.5	0
2925191000	프탈이미드	6.5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199090	기타	6.5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6.5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6.5	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5299090	기타	6.5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6.5	E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6.5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 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6.5	0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트아세토니트릴	6.5	5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6.5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6.5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6.5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26909099	기타	6.5	5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6.5	0
2927001900	기타	6.5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6.5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6.5	0
2927002990	기타	6.5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6.5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6.5	0
2928009010	페릴랄틴	6.5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6.5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28009099	기타	6.5	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6.5	1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6.5	0
2929109000	기타	6.5	1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6.5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6.5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0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티오닌	6.5	0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 (INN)]	6.5	5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캅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 (ISO)	6.5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6.5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6.5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0902099	기타	6.5	5

2930903010	티오알코올	6.5	0
2930903020	티오페놀	6.5	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4020	티오아닐린	6.5	0
2930904090	기타	6.5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6.5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6.5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6.5	0
2930905090	기타	6.5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6.5	0
2930909010	티오산	6.5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6.5	0
2930909030	시스테인	6.5	5
2930909040	시스틴	6.5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6.5	5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6.5	0
293090907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	6.5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6.5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0909099	기타	6.5	0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6.5	0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6.5	0
2931310000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320000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6.5	0
29313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340000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6.5	0
293135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6.5	0
293136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370000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380000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 (1 : 1)	6.5	0
2931390000	기타	6.5	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6.5	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6.5	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1099	기타	6.5	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6.5	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6.5	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6.5	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6.5	0
2931902915	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정한다]	2	0
2931902919	기타	6.5	0
2931902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2999	기타	6.5	0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6.5	0
2931903090	기타	6.5	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6.5	0
2931904090	기타	6.5	0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6.5	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6.5	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1909099	기타	6.5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6.5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6.5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6.5	0

2932140000	수크랄로스	6.5	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199000	기타	6.5	0
2932201010	쿠마린	5	0
2932201020	메틸쿠마린	5	0
2932201030	에틸쿠마린	5	0
2932209010	노나락톤	5	0
2932209020	운데카락톤	5	0
2932209030	부티로락톤	5	0
2932209040	산토닌	5	0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5	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5	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5	0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209099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6.5	0
2932993000	시네올	5.5	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 피라조론-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6.5	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3199099	기타	6.5	5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91000	리시딘	6.5	0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3299090	기타	6.5	5
2933311000	피리딘	6.5	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6.5	0
2933321000	피페리딘	6.5	5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6.5	0
2933330000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6.5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6.5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6.5	0
2933394000	3-퀴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	0
2933395000	퀴누클리딘-3-올	6.5	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399090	기타	6.5	0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6.5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6.5	0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499090	기타	6.5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6.5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6.5	5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6.5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6.5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6.5	0
2933591910	피리미딘	6.5	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591999	기타	6.5	0
2933592010	피페라진	6.5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6.5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6.5	0

2933592090	기타	6.5	0
2933610000	멜라민	6.5	0
2933691000	염화시아눌	3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6.5	E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6.5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699099	기타	6.5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3	E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6.5	0
2933791000	이사틴	6.5	0
2933792000	2-히드록시퀴놀린	6.5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6.5	0
2933799000	기타	6.5	5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 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루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론(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6.5	5
2933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929000	기타	6.5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6.5	5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3999090	기타	6.5	0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6.5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109090	기타	6.5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6.5	0
2934202000	머캐프토 벤조티아졸	6.5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6.5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209090	기타	6.5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6.5	0
2934309000	기타	6.5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6.5	0
2934991000	모르포린	6.5	0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6.5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6.5	0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4999090	기타	6.5	0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0
2935200000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0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0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0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6.5	0
2935901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6.5	0
2935902000	술파메톡사졸	6.5	0
2935903010	술파티아졸	6.5	0
2935903090	기타	6.5	0
2935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2935909090	기타	6.5	0
2936210000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6.5	5
2936220000	비타민 B ₁ 과 이들의 유도체	6.5	5
2936230000	비타민 B ₂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 ₃ 나 비타민 B ₅)과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50000	비타민 B ₆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60000	비타민 B ₁₂ 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6.5	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6.5	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6.5	5
2936279000	기타	6.5	5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6.5	0
2936289000	기타	6.5	0
2936291010	비타민 B ₉	6.5	0
2936291090	기타	6.5	0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6.5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6.5	5
2936299000	기타	6.5	5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0
2936909000	기타	6.5	0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6.5	5
2937119000	기타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199000	기타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손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5.5	0
2937299000	기타	0	0
2937501000	소호 제2918.17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6.5	0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509000	기타	0	0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6.5	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0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6.5	0
2937902990	기타	0	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2937909000	기타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6.5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6.5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6.5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6.5	5
2938903000	사포닌	6.5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6.5	5
2938909000	기타	6.5	5
2939111000	모르핀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2939119000	기타	0	0
2939190000	기타	0	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90000	기타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00	기타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2939690000	기타	0	0
2939710000	코카인 · 액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 (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0	0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0	0
2939799000	기타	0	0
29398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39801090	기타	6.5	0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0	0
2939809000	기타	6.5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6.5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6.5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6.5	5
2940001090	기타	6.5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6.5	0
2940002090	기타	6.5	5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6.5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6.5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6.5	0
2941109090	기타	6.5	5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209000	기타	6.5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6.5	0
2941309000	기타	6.5	5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6.5	0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6.5	5
2941509000	기타	6.5	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 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6.5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6.5	0
2941909020	레더마이신	6.5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6.5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6.5	5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2941909099	기타	6.5	0
2942001000	케텐	6.5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6.5	0
2942009090	기타	6.5	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0
3001209000	기타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3001901090	기타	0	0
3001902010	웅담	0	0
3001902090	기타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3001909090	기타	0	0
3002110000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0	0
300212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	0
3002129010	면역혈청	0	0
3002129021	헤모글로빈	0	0
3002129022	글로불린(globulin)	0	0
300212903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	0
300212904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29090	기타	0	0
300213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139000	기타	0	0
300214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149000	기타	0	0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0	0
300219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5	0
3002199000	기타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3002309000	기타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2903020	리신(ricin)	8	0
3002903090	기타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3002907000	제2933.29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6.5	0
3002908000	소호 제3002.12.1000호, 제3002.12.9021호, 제3002.12.9022호, 3002.12.9030호의 것	0	0
3002909000	기타	0	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을 함유하는 것	8	5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8	5
3003209000	기타	8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5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8	5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3399000	기타	8	0
3003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3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3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3491000	항암제	8	5
3003499000	기타	8	0
3003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0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항암제	8	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8	0
3003909400	녹용제제	8	0
3003909500	인삼제제	8	5
3003909900	기타	8	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8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8	0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8	5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8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8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8	0
3004209900	기타	8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8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8	5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8	0
3004392000	수액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8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8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8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8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8	0
3004399000	기타	8	0
3004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4420000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4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8	0
3004491000	항암제	8	0
3004492010	코카인제제	8	0
30044920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8	0
3004492030	니코틴제제	8	0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8	5
3004499000	기타	8	0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8	5
3004502010	비타민 B ₁ 제제	8	0
3004502090	기타	8	5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8	0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8	0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8	0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8	0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8	0
3004509000	기타	8	0
3004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8	0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8	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8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8	0
3004909300	녹용제제	8	5
3004909400	인삼제제	8	0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8	0
3004909900	기타	8	0
3005101000	반창고	0	0
3005109000	기타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3005902000	거즈	0	0
3005903000	붕대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0
3005909000	기타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8	0
3006105090	기타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6.5	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6.5	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3006921090	기타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 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6.5	0
3006922032	리신(ricin)	8	0
3006922090	기타	0	0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8	0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0	0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 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0
3101001010	구아노(guano)	6.5	0
3101001090	기타	6.5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6.5	0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0
3102109000	기타	6.5	10
3102210000	황산암모늄	6.5	E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6.5	1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6.5	15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 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501000	천연의 것	6.5	0
3102509000	기타	6.5	0
3102600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6.5	0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 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6.5	0
3102909000	기타	6.5	0
3103110000	오산화인(P_2O_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6.5	0
3103190000	기타	6.5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6.5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 의 100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6.5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6.5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6.5	0
3103909000	기타	6.5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1	0
3104309000	기타	6.5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 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1	0

3104901090	기타	6.5	0
3104909000	기타	1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6.5	E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E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6.5	E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6.5	E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6.5	E
3105590000	기타	6.5	E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5	E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6.5	E
3105909000	기타	6.5	E
3201100000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6.5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6.5	0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6.5	0
3201901090	기타	6.5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6.5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6.5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6.5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6.5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6.5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6.5	0
3202109000	기타	6.5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6.5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6.5	0
3202909000	기타	6.5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6.5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6.5	0
3203001930	염록소	6.5	0
3203001990	기타	6.5	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6.5	0
3203002030	세피아(sepia)	6.5	0
3203002090	기타	6.5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6.5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4	0
3204119000	기타	8	0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10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3000	황화염료 · 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0
3204199000	기타	8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6.5	0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5	0
3204901090	기타	6.5	0
3204909000	기타	6.5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6.5	0
3205009000	기타	6.5	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총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6.5	5
3206190000	기타	6.5	15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11000	군청	6.5	0
3206419000	기타	6.5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6.5	0
3206429000	기타	6.5	0
3206491000	아연회	6.5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6.5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6.5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6.5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6.5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6.5	0
3206499000	기타	6.5	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6.5	0
320710000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6.5	0
3207202000	슬립	6.5	0
3207209000	기타	6.5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6.5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6.5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6.5	0
3207309000	기타	6.5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208101010	에나멜	6.5	0
3208101090	기타	6.5	0
320810200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201011	에나멜	6.5	0
3208201019	기타	6.5	0
32082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10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0
32091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09909011	에나멜	6.5	0
3209909019	기타	6.5	0
3209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1091	에나멜	6.5	0
321000109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ernish)	6.5	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6.5	0
3210002030	역청질·피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ernish)	6.5	0

3210003010	디스탬퍼(distemper)	6.5	0
3210003090	기타	6.5	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6.5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6.5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6.5	0
3212909000	기타	6.5	0
3213101000	유성 물감	6.5	0
3213102000	수성 물감	6.5	0
3213109000	기타	6.5	0
3213901000	유성 물감	6.5	0
3213902000	수성 물감	6.5	0
3213909000	기타	6.5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6.5	0
3214101090	기타	6.5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6.5	0
3214109000	기타	6.5	0
3214900000	기타	6.5	0
3215110000	흑색	0	0
3215190000	기타	0	5
3215901000	필기용 잉크	6.5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6.5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6.5	0
3215904010	유성	6.5	0
3215904020	수성	6.5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6.5	0
3215906010	유성	6.5	0
3215906020	수성	6.5	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6.5	0
3215909000	기타	6.5	0
3301120000	오렌지유	5	0
3301130000	레몬유	5	0
3301190000	기타	5	0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0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0
3301291000	바닐라유	5	0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5	0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5	0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5	0
3301299000	기타	5	0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8	0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8	0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8	0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8	0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8	0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8	0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30	0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8	0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20	0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E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20	E
33019046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8	0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8	0
3301904800	기타	8	0
3302101000	식품공업용	5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30	0
3302102019	기타	8	0
3302102090	기타	5	0
3302900000	기타	6.5	0
3303001000	향수	6.5	5
3303002000	화장수	6.5	0
3304101000	립스틱	6.5	0
3304109000	기타	6.5	0
3304201000	아이새도	6.5	0
3304209000	기타	6.5	0
3304301000	네일에나멜	6.5	0
3304309000	기타	6.5	0
3304911000	페이스파우더	6.5	0
330491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	6.5	0
3304919000	기타	6.5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6.5	5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6.5	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6.5	0
3304999000	기타	6.5	5
3305100000	샴푸	5	5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0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5	0
3305901000	헤어린스	5	0
3305902000	헤어크림	5	0
3305909000	기타	5	5

3306100000	치약	6.5	0
3306201011	70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8	0
3306201019	기타	8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8	0
3306209000	기타	8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6.5	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6.5	0
3307101000	애프터 세이빙로션	6.5	0
3307109000	기타	6.5	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6.5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6.5	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6.5	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6.5	0
3307490000	기타	6.5	0
3307901000	탈모제	6.5	0
3307902000	향낭	6.5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6.5	0
3307904000	마스크 팩	6.5	0
3307909000	기타	6.5	0
3401111000	약용비누	6.5	0
3401119000	기타	6.5	5
3401191010	세탁비누	6.5	0
3401191090	기타	6.5	0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6.5	0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0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	0
3402110000	음이온성	8	0
3402120000	양이온성	8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402139000	기타	8	0
3402190000	기타	8	0
3402201000	조제 세제	5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6.5	0
3402209000	기타	6.5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6.5	0
3402902000	조제 세제	5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6.5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119000	기타	6.5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192000	볼트·너트 방출제	6.5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6.5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6.5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199000	기타	6.5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6.5	0
3403919000	기타	6.5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6.5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6.5	0
3403999000	기타	6.5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6.5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6.5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6.5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6.5	0
3404901090	기타	6.5	0
3404902000	조제 왁스	6.5	5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6.5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6.5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405901090	기타	6.5	0
3405909000	기타	6.5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6.5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6.5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6.5	0
3501101000	커피 크림어 제조용	8	5
3501109000	기타	20	5
3501901110	커피 크림어 제조용	8	5
3501901190	기타	20	5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20	5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20	5
3502110000	건조한 것	8	5
3502190000	기타	8	5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8	5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8	0
3502909000	기타	8	0
3503001010	젤라틴	8	5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8	0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8	0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8	0
3504001010	펩톤(peptone)	8	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8	0
3504002010	케라틴	8	0
3504002020	핵산단백질	8	0
3504002030	유리단백질	8	0
3504002090	기타	8	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8	0
3505101000	덱스트린	8	5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8	E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E
3505104010	식품용	385.7	E
3505104090	기타	385.7	E
3505105010	식품용	385.7	E
3505105090	기타	385.7	E
3505109010	식품용	385.7	E
3505109090	기타	385.7	E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E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E
3505209000	기타	201.2	E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506109000	기타	6.5	0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5
3506919000	기타	6.5	5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6.5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6.5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6.5	0
3506999000	기타	6.5	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6.5	5
3507901010	트립신	6.5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6.5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6.5	0
3507901040	리파제	6.5	0
3507901090	기타	6.5	0
3507902000	펩신	6.5	0

3507903000	맥아효소	6.5	0
3507904010	파파인	6.5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6.5	0
3507904030	피신	6.5	0
3507906010	아밀라제	6.5	5
3507906020	프로테아제	6.5	0
3507907000	펙틴효소	6.5	5
3507909000	기타	6.5	0
3601001000	흑색화약	6.5	0
3601002000	무연화약	6.5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6.5	0
3603001000	도화선	6.5	0
3603002000	도폭선	6.5	0
3603003000	뇌관	6.5	0
3603004000	점화기	6.5	0
3603005000	전기뇌관	6.5	0
3604100000	불꽃제품	6.5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6.5	0
3604909000	기타	6.5	0
3605001000	황린(黃磷) 성냥	6.5	0
3605009000	기타	6.5	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6.5	0
3606901010	메타 연료	6.5	0
3606901020	헥사민	6.5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6.5	0
3606901090	기타	6.5	0
3606902010	라이터 돌	6.5	0
3606902090	기타	6.5	0
3606909010	라이터 돌	6.5	0
3606909090	기타	6.5	0
3701100000	엑스선용	6.5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1309100	인쇄제판용	0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0	0
370130993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0	0
3701309990	기타	0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6.5	0
3701919100	인쇄제판용	6.5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1919900	기타	6.5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1999100	인쇄제판용	0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0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0	0
3701999990	기타	0	0
3702100000	엑스선용	6.5	0
3702311110	네거티브	6.5	0
3702311120	포지티브	6.5	0
3702311210	네거티브	6.5	0
3702311220	포지티브	6.5	0
3702311910	네거티브	6.5	0
3702311920	포지티브	6.5	0
370231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19000	기타	6.5	0
3702321110	네거티브	6.5	0
3702321120	포지티브	6.5	0
3702321210	네거티브	6.5	0
3702321220	포지티브	6.5	0
3702321910	네거티브	6.5	0
3702321920	포지티브	6.5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6.5	0
3702329090	기타	6.5	0
3702391110	네거티브	6.5	0
3702391120	포지티브	6.5	0
3702391210	네거티브	6.5	0
3702391220	포지티브	6.5	0
3702391910	네거티브	6.5	0
3702391920	포지티브	6.5	0
370239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399000	기타	6.5	0
3702411000	영화필름	6.5	0
3702419000	기타	6.5	0
3702421000	영화필름	6.5	0
370242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29000	기타	6.5	0
3702431010	네거티브	6.5	0
3702431020	포지티브	6.5	0
370243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39000	기타	6.5	0
3702441010	네거티브	6.5	0
3702441020	포지티브	6.5	0
37024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6.5	0
3702449090	기타	6.5	0
3702521010	네거티브	6.5	0
3702521020	포지티브	6.5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29000	기타	6.5	0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6.5	0
3702541010	네거티브	6.5	0
3702541020	포지티브	6.5	0
370254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49010	광전복음용	6.5	0
3702549090	기타	6.5	0
3702551010	네거티브	6.5	0
3702551020	포지티브	6.5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559000	기타	6.5	0
3702561010	네거티브	6.5	0
3702561020	포지티브	6.5	0
370256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569000	기타	6.5	0
3702961010	네거티브	6.5	0
3702961020	포지티브	6.5	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69000	기타	6.5	0
3702971010	네거티브	6.5	0
3702971020	포지티브	6.5	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79010	광전복음용	6.5	0
3702979090	기타	6.5	0
3702981010	네거티브	6.5	0
3702981020	포지티브	6.5	0
3702982000	인쇄제판용	6.5	0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0
3702989000	기타	6.5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1040	기록용	6.5	0
3703101090	기타	6.5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6.5	0
3703109090	기타	6.5	0
3703201000	엑스선용	6.5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204000	기록용	6.5	0
3703209000	기타	6.5	0
3703901000	엑스선용	6.5	0
3703903000	사진복사용	6.5	0
3703904000	기록용	6.5	0
3703909000	기타	6.5	0
3704001100	영화용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0
3704001900	기타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6.5	0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6.5	0
3705001090	기타	0	0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3705009090	기타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195원/m 또는 6.5	0
3706102000	뉴스용	4원/m 또는 6.5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0
3706105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0
3706105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0
3706106010	네거티브	1,560원/m 또는 6.5	0
3706106020	포지티브	260원/m 또는 6.5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9원/m 또는 6.5	0
3706902000	뉴스용	5원/m 또는 6.5	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26원/m 또는 6.5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468원/m 또는 6.5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78원/m 또는 6.5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26원/m 또는 6.5	0
3706905010	네거티브	25원/m 또는 6.5	0
3706905020	포지티브	8원/m 또는 6.5	0

3706906010	네거티브	1,092원/m 또는 6.5	0
3706906020	포지티브	182원/m 또는 6.5	0
3707100000	감광유제	6.5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0
3707901090	기타	0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0	0
3707902910	엑스선용	0	0
3707902920	인쇄제판용	0	0
3707902990	기타	0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0	0
3707903910	엑스선용	0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0	0
3707903990	기타	0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0	0
3707909200	조색제	0	0
3707909300	세정제	0	0
3707909400	섬광재료	0	0
3707909900	기타	0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4	0
3801109000	기타	6.5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6.5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 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6.5	0
3801900000	기타	6.5	0
3802100000	활성탄	6.5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6.5	0
3802901020	활성토	6.5	0
3802901090	기타	6.5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6.5	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6.5	0
3804009000	기타	6.5	5
3805101000	검테레빈유	6.5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6.5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6.5	0
3805900000	기타	6.5	0
3806101000	로진(rosin)	6.5	15
3806102000	수지산	6.5	0
3806201000	로진염	6.5	0
3806202000	수지산염	6.5	0
3806209000	기타	6.5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6.5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6.5	0
3806909000	기타	6.5	0
3807001000	목(木)타르 · 목(木)타르유 · 목(木)크레오소트 (creosote)	6.5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6.5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6.5	0
3807009010	목초액	6.5	15
3807009090	기타	6.5	0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 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6.5	0
3808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599000	기타	6.5	0
38086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619000	기타	6.5	0
38086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629000	기타	6.5	0
38086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699000	기타	6.5	0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19000	기타	6.5	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08929000	기타	6.5	0
3808931000	제초제	6.5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6.5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6.5	0
3808940000	소독제	6.5	0
3808991000	살서제(취약)	6.5	0
3808999000	기타	6.5	5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5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6.5	0
3810109000	기타	6.5	0
3810901000	납불임 · 땀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6.5	0
3810909000	기타	6.5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1190000	기타	6.5	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0
3811290000	기타	5	0
3811900000	기타	6.5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2000	디티오키아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5000	머캅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6.5	0
3812109000	기타	6.5	0
3812200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0
381231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 (티엠큐)의 혼합물	6.5	0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6.5	0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6.5	5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6.5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6.5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6.5	0
3814001010	아세톤 · 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6.5	0
3814001020	초산메틸 · 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6.5	0
3814001090	기타	6.5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6.5	0
3814002190	기타	6.5	0
3814002900	기타	6.5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6.5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6.5	0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6.5	0
3815129000	기타	6.5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6.5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6.5	0
3815199000	기타	6.5	5
3815901000	반응시작제	6.5	0
3815909000	기타	6.5	0
3816001000	내화시멘트	6.5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6.5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6.5	0
3816009000	기타	6.5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E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0
3818002010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0	0
3818002090	기타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6.5	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6.5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6.5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6.5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6.5	5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제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1019	기타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5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제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1099	기타	8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제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3822002019	기타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6.5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5	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제의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3822002099	기타	8	5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1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2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3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4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5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5.4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6.5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7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8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1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2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27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3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36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4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50	0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제3706.90.6020호의 것	182원/m 또는 6.5	0
3822003059	제3706.10.2000호, 제3706.90.2000호의 것	4원/m 또는 6.5	0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제3706.90.4000호의 것	26원/m 또는 6.5	0
3822003061	제3706.10.3020호, 제3706.90.3020호의 것	468원/m 또는 6.5	0
3822003062	제3706.10.3030호, 제3706.90.3030호의 것	78원/m 또는 6.5	0
3822003063	제3706.10.5010호, 제3706.90.6010호의 것	1,092원/m 또는 6.5	0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1,560원/m 또는 6.5	0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260원/m 또는 6.5	0
3822003066	제3706.90.1000호, 제3706.90.5020호의 것	8원/m 또는 6.5	0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25원/m 또는 6.5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8	0
3823120000	올레인산	8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8	0
3823191000	팔미틴산	8	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0
3823199000	기타	8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5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5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5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0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0
3823709090	기타	5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6.5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 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824400000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6.5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6.5	5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5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6.5	0
3824719000	기타	6.5	5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5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6.5	5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6.5	5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6.5	5
3824790000	기타	6.5	5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6.5	5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 (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6.5	5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6.5	5
3824840000	앨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앨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6.5	0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6.5	0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6.5	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6.5	0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 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6.5	0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6.5	0
3824991000	크롬광 배소물	5	0
382499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6.5	0
38249922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5

3824992290	기타	6.5	5
3824992900	기타	6.5	0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93910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학품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6.5	0
3824993990	기타	6.5	0
382499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6.5	0
3824994200	이온교환체	6.5	0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6.5	0
3824994400	바니시(ve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6.5	0
3824995100	잉크제거제	6.5	0
3824995200	등사판원지 수정제	6.5	0
3824995300	수정액	6.5	0
382499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6.5	0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6.5	5
3824996300	소다석회	6.5	0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6.5	0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6.5	0
382499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6.5	0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6.5	0
3824997200	염화파라핀	6.5	0
3824997300	소포제	6.5	0
3824997400	발포제	6.5	0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6.5	0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6.5	0
382499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6.5	0
3824998000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0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6.5	0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6.5	0
3824999041	니코틴을 함유한 것	6.5	0
3824999049	기타	6.5	0
3824999090	기타	6.5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6.5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6.5	0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0	0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0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8	0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8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490000	기타	6.5	0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6.5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6.5	0
3825690000	기타	6.5	0
3825900000	기타	6.5	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E
3901109000	기타	6.5	E
3901201000	펄프의 것	6.5	E
3901209000	기타	6.5	E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E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6.5	E
3901900000	기타	6.5	E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E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6.5	E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E
3902900000	기타	6.5	E
3903110000	발포성의 것	6.5	E
3903190000	기타	6.5	E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6.5	E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5	E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6.5	E
3903909000	기타	6.5	E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E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6.5	E
3904220000	가소화한 것	6.5	E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E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6.5	E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6.5	E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6.5	E
3904690000	기타	6.5	E
3904900000	기타	6.5	E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6.5	E
3905190000	기타	6.5	E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6.5	E

3905290000	기타	6.5	E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E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6.5	E
3905990000	기타	6.5	E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E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8	E
3906909000	기타	8	E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6.5	E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6.5	E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E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6.5	E
3907209000	기타	6.5	E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6.5	E
3907309000	기타	6.5	E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E
3907500000	알키드수지	6.5	E
3907610000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6.5	E
3907690000	기타	6.5	E
3907700000	폴리(락트산)	6.5	E
3907910000	불포화의 것	6.5	E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6.5	E
3907992000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0	E
3907999000	기타	6.5	E
3908101000	폴리아미드-6	6.5	E
3908102000	폴리아미드-6,6	6.5	E
3908103000	폴리아미드-11, -12, -6,9, -6,10 또는 -6,12	6.5	E
3908900000	폴리아미드-11, -12, -6,9, -6,10 또는 -6,12	6.5	E
3909101000	요소수지	6.5	E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6.5	E
3909200000	멜라민수지	6.5	E
3909310000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6.5	E
3909390000	기타	6.5	E
3909400000	페놀수지	6.5	E
3909500000	폴리우레탄	6.5	E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6.5	E
3910009010	실리콘오일	6.5	E
3910009020	실리콘고무	6.5	E
3910009090	기타	6.5	E
3911101000	석유수지	8	20
3911102000	쿠마론 · 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8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8	0
3911901000	폴리숄파이드	6.5	0

3911902000	폴리숄폰	6.5	0
3911903000	푸란수지	6.5	0
3911909000	기타	6.5	E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5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6.5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6.5	0
3912319000	기타	6.5	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6.5	0
3912399000	기타	6.5	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6.5	0
3912909000	기타	6.5	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6.5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6.5	0
3913109000	기타	6.5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6.5	0
3913902010	염화고무	6.5	0
3913902040	환화고무	6.5	0
3913902090	기타	6.5	0
3913909010	덱스트란	6.5	0
3913909090	기타	6.5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6.5	0
3914009000	기타	6.5	0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 · 시트(sheet) · 판 · 박(箔) 상태의 것	6.5	E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 · 호스 상태의 것	6.5	E
3915109000	기타	6.5	E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6.5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E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5909000	기타	6.5	E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6909000	기타	6.5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6.5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6.5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17299000	기타	6.5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19000	기타	6.5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29000	기타	6.5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39000	기타	6.5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7399000	기타	6.5	10
3917400000	연결구류	6.5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6.5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18109000	기타	6.5	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6.5	0
3919900000	기타	6.5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1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6.5	0
3920490000	기타	6.5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590000	기타	6.5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6.5	0
3920799000	기타	6.5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6.5	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0991000	항공기용	6.5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 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0999090	기타	6.5	0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1090	기타	6.5	1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0
3921192090	기타	6.5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3090	기타	6.5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194090	기타	6.5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195090	기타	6.5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알로 만든 것	6.5	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199090	기타	6.5	15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5	0
3921904010	경질의 것	6.5	0
3921904020	연질의 것	6.5	15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5090	기타	6.5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6.5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5	0
3921906090	기타	6.5	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6.5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6.5	0
3921907090	기타	6.5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알로 만든 것	6.5	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6.5	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6.5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6.5	0
3921909090	기타	6.5	15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6.5	0
3922102000	세면대	6.5	0
3922103000	설거지통	6.5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6.5	0
3922901000	비데	6.5	0
3922909000	기타	6.5	0
3923100000	상자 · 케이스 · 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1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6.5	1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15
3923300000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400000	스풀(spool) · 콤펙트(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10
3923500000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6.5	0
3923900000	기타	6.5	1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6.5	1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6.5	0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5	0
3924909000	기타	6.5	15
3925100000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5	0
39252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6.5	0
3925300000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6.5	0
3925900000	기타	6.5	E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6.5	0
3926102000	바인더	6.5	0
3926109000	기타	6.5	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한다)	6.5	0
3926300000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6.5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6.5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6.5	10
3926902000	부채 ·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 · 자루(살 ·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6.5	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6.5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6.5	0

3926905000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6.5	0
3926906000	앨범	6.5	0
3926909000	기타	6.5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4001290000	기타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2	0
4001309000	기타	2	0
4002110000	라텍스	8	20
4002190000	기타	8	E
4002201000	라텍스	8	E
4002209000	기타	8	E
4002311000	라텍스	5	0
4002319000	기타	5	E
4002391000	라텍스	5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5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	E
4002410000	라텍스	8	0
4002490000	기타	8	0
4002510000	라텍스	8	20
4002590000	기타	8	20
4002601000	라텍스	8	0
4002609000	기타	8	0
4002701000	라텍스	8	0
4002709000	기타	8	E
4002801000	라텍스	8	0
4002809000	기타	8	0
4002910000	라텍스	8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8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8	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8	0
4002999000	기타	8	E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15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3	10
40051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4005109000	기타	8	0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8	0
400591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8	0
4005999000	기타	8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8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8	0
4006902000	고무관	8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8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와셔	8	0
4006905000	고무실	8	0
4006909000	기타	8	0
4007001000	고무실	5	0
4007002000	고무끈	8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19000	기타	8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199000	기타	8	0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19000	기타	8	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8	0
4008299000	기타	8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8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8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8	0
4010199000	기타	8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홀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30000	휠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010340000	휠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8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4010390000	기타	8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5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5	0
4011109000	기타	5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0
4011201090	기타	5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5	0
4011202090	기타	5	0
4011209000	기타	5	0
4011300000	항공기용	5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5	0
4011500000	자전거용	5	0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5	0
4011709000	기타	5	0
4011801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801090	기타	5	0
4011809010	림(rim)의 지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4011809090	기타	5	0
40119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5	0
4011909000	기타	5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120000	버스용·화물자동차용	8	0
4012130000	항공기용	5	0
4012190000	기타	8	0
4012201000	항공기용	5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8	0
4012209090	기타	8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5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5	0
4012901030	타이어트레드	5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5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8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8	0
4012909030	타이어트레드	8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8	0
4012909090	기타	8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8	0
4013102000	버스·화물차용	8	0
4013200000	자전거용	8	0
4013901000	항공기용	5	0
4013909010	모터싸이클·모터스쿠터용	8	0
4013909020	산업용·농경용	8	0
4013909090	기타	8	0
4014100000	콘돔	8	0
4014901000	젓꼭지	8	5
4014909000	기타	8	0
4015110000	외과용	8	0
4015190000	기타	8	0
4015901000	잠수복	8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8	5
4015909000	기타	8	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8	0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8	0
4016920000	지우개	8	0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8	5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8	0
4016952000	베개	8	0
4016953000	쿠션	8	0
4016959000	기타	8	0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0
4016991090	기타	8	0
4016992000	고무밴드	8	0
4016993000	병마개	8	0
4016999000	기타	8	0
4017001000	경질고무	8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8	0
41012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19	기타	0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0
4101501029	기타	0	0
4101501090	기타	0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0	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0
4101901099	기타	0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410221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229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201010	뱀의 원피	0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0
4103201090	기타	0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3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0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0
4103901090	기타	0	0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0
4104190000	기타	3	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3	0
4104490000	기타	3	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2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3	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3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5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190000	기타	5	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990000	기타	5	0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15
4113100000	산양의 가죽	5	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5	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5	0
4113900000	기타	5	0
411410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5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0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8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3	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E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8	E
4201009020	고삐줄	8	E
4201009030	끈	8	E
4201009040	재갈	8	E
4201009090	기타	8	E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111090	기타	8	0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121090	기타	8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199000	기타	8	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211090	기타	8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221090	기타	8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299000	기타	8	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311090	기타	8	0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321090	기타	8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399000	기타	8	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8	0
4202911090	기타	8	0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8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8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8	0
4202921090	기타	8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8	0
4202999000	기타	8	0
4203101010	코트류	13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1050	조끼류	13	0
4203101060	바지류	13	0
4203101070	스커트류	13	0
4203101080	오버롤류	13	0
4203101090	기타	13	0
4203102010	코트류	13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2050	조끼류	13	0
4203102060	바지류	13	0
4203102070	스커트류	13	0
4203102080	오버롤류	13	0
4203102090	기타	13	0
4203103010	코트류	13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3050	조끼류	13	0
4203103060	바지류	13	0
4203103070	스커트류	13	0
4203103080	오버롤류	13	0
4203103090	기타	13	0
4203109010	코트류	13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13	0
4203109050	조끼류	13	0
4203109060	바지류	13	0
4203109070	스커트류	13	0
4203109080	오버롤류	13	0
4203109090	기타	13	0
4203211000	야구장갑	13	0
4203212000	골프장갑	13	0
4203213000	스키장갑	13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13	0
4203215000	배팅장갑	13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13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13	0
4203219000	기타	13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13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13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13	0
4203299000	기타	13	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13	0
4203301090	기타	13	0
4203309000	기타	13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3	0
4205001110	벨트	8	0
4205001190	기타	8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8	0
4205002110	벨트	8	0
4205002190	기타	8	0
4205002900	그 밖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8	0
4206001000	캣거트(catgut)	8	0
4206009000	기타	8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3	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3	0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3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3	0
4301805000	토끼의 것	3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3	0
4301809000	기타	3	0
4301900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3	0
4302110000	밍크의 것	5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193000	여우의 것	5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5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5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5	0
4302199010	면양의 것	5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2199090	기타	5	0
4302201000	밍크의 것	5	0
4302202000	토끼의 것	5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5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5	0
4302205000	여우의 것	5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5	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5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5	0
4302209090	기타	5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3101100	밍크의 것	16	0
4303101200	토끼의 것	16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1600	여우의 것	16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16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1990	기타	16	0
4303102100	밍크의 것	16	0
4303102200	토끼의 것	16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16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16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16	0
4303102600	여우의 것	16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16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16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16	0
4303102990	기타	16	0
4303900000	기타	16	0
4304001000	인조모피	8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8	0
4401110000	침엽수류	2	10
4401120000	활엽수류	2	10
4401210000	침엽수류	2	10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0
4401229000	기타	2	10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2	10
4401390000	기타	2	10
440140000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10
4402101000	성형 목탄	2	15
4402109000	기타	2	15
4402901000	성형 목탄	2	15
4402909000	기타	2	10
4403110000	침엽수류	0	0
4403121000	열대산 목재	0	0
4403129000	기타	0	0
4403211000	적송	0	0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19000	기타	0	0
4403221000	적송	0	0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4403229000	기타	0	0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	0
440323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	0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0	0
440324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0	0
4403251000	삼나무	0	0
4403252000	미송	0	0
4403253000	낙엽송	0	0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	0
4403259000	기타	0	0
4403261000	삼나무	0	0
4403262000	미송	0	0
4403263000	낙엽송	0	0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0	0
4403269000	기타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0	0

4403492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폴(Kapur) · 티크(Teak)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0	0
4403493000	오쿠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 이로코(Iroko)	0	0
4403494000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Dibétou) · 림바(Limba) · 아조베(Azobé)	0	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0
4403499000	기타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0	0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440395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4403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4403971000	포플러	0	0
4403972000	사시나무	0	0
4403980000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4403991090	기타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4403999000	기타	0	0
4404100000	침엽수류	5	15
4404200000	활엽수류	5	15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5	15
4406110000	침엽수류	5	15
4406120000	활엽수류	5	15
4406910000	침엽수류	5	15
4406920000	활엽수류	5	15
4407111000	적송	5	15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15
4407119000	기타	5	15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5	15

4407122000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	5	15
4407191000	삼나무	5	15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5	15
4407192020	헴록(hemlock)	5	15
4407192090	기타	5	15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5	15
4407194000	낙엽송	5	15
4407195000	편백나무	5	15
4407199000	기타	5	15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15
4407220000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a) · 발사(Balsa)	5	1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 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 (Meranti Bakau)	5	15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 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5	15
4407270000	사펠리(Sapelli)	5	15
4407280000	이로코(Iroko)	5	15
4407291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풀(Kapur)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 (Jelutong) · 캄파스(Kempas)	5	15
4407292000	티크(Teak)	5	15
4407293000	오쿠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시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꼬레 (Makoré) ·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우(Dibétou) · 림바 (Limba) · 아조베(Azobé)	5	15
4407299000	기타	5	1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1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1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15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15
4407950000	울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15
4407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5	15
4407971000	포플러	5	15
4407972000	사시나무	5	15
4407991010	자단(rosewood)	5	15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15
4407991040	호두나무	5	15
4407991090	기타	5	15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15
4407993040	느릅나무	5	15
4407993060	피나무	5	15
4407994000	오동나무	5	15
4407999000	기타	5	15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5
4408109100	합판 제조용	2	15
4408109200	무늬목	3	15
4408109910	삼나무	5	15
4408109920	미송	5	15
4408109950	낙엽송	5	15
4408109960	가문비나무	5	15
4408109990	기타	5	15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5
4408319011	합판 제조용	2	15
4408319012	무늬목	3	15
4408319019	기타	5	15
4408319021	합판 제조용	2	15
4408319022	무늬목	3	15
4408319029	기타	5	15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5
440839901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12	무늬목	3	15
4408399019	기타	5	15
440839902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22	무늬목	3	15
4408399029	기타	5	15
440839903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32	무늬목	3	15
4408399039	기타	5	15
440839904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42	무늬목	3	15
4408399049	기타	5	15
440839905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52	무늬목	3	15
4408399059	기타	5	15
4408399091	합판 제조용	2	15
4408399092	무늬목	3	15
4408399099	기타	5	15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8	15
4408909150	합판 제조용	2	15
4408909160	무늬목	3	15
4408909191	자단(Rosewood)	5	15
4408909192	흑단(Ebony wood)	5	15
4408909193	물푸레나무	5	15
4408909194	호두나무	5	15

4408909195	참나무	5	15
4408909199	기타	5	15
4408909210	합판 제조용	2	15
4408909220	무늬목	3	15
4408909290	기타	5	15
4408909370	합판 제조용	2	15
4408909380	무늬목	3	15
4408909391	사시나무	5	15
4408909392	포플러	5	15
4408909393	단풍나무	5	15
4408909394	느릅나무	5	15
4408909395	자작나무	5	15
4408909396	피나무	5	15
4408909410	합판 제조용	2	15
4408909420	무늬목	3	15
4408909490	기타	5	15
4408909910	합판 제조용	2	15
4408909920	무늬목	3	15
4408909990	기타	5	15
4409101000	사이딩(Siding)	8	15
4409102000	플로어링(Flooring)	8	15
4409109000	기타	8	15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15
4409221000	사이딩(Siding)	8	15
4409222000	플로어링(Flooring)	8	15
4409229000	기타	8	15
4409291000	사이딩(Siding)	8	15
4409292000	플로어링(Flooring)	8	15
4409299000	기타	8	15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19000	기타	8	E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29000	기타	8	E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E
4410191090	기타	8	E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E
4410199090	기타	8	E
4410900000	기타	8	E
44111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29000	기타	8	E
44111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39000	기타	8	E
44111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149010	마루판	8	E
4411149090	기타	8	E
44119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29010	마루판	8	E
4411929090	기타	8	E
44119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39010	마루판	8	E
4411939090	기타	8	E
44119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8	E
4411949000	기타	8	E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102000	마루판	8	E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109090	기타	8	E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E
4412312090	기타	8	E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E
4412314019	기타	10	E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4029	기타	10	E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5090	기타	10	E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6090	기타	10	E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	E
4412317090	기타	10	E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E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8	E
4412399000	기타	10	E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8	E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8	E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8	E
4412994100	합판	10	E
4412994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4919	기타	8	E
4412994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4999	기타	8	E
4412995100	합판	10	E
4412995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5919	기타	8	E
4412995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5999	기타	8	E
4412996100	합판	10	E
4412996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8	E
4412996919	기타	8	E

4412996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6999	기타	8	E
4412999100	합판	10	E
4412999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9919	기타	8	E
4412999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E
4412999999	기타	8	E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E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E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8	E
4415200000	팔릿(pallet)·박스팔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8	E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텍(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8	E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8	E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8	15
4418200000	문·문틀·문지방	8	15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8	15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8	15
4418600000	기둥과 들보	8	15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5	15
4418739000	기타	5	15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49000	기타	8	15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59000	기타	8	15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8	15
4418799000	기타	8	15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8	15
4418991000	셀룰러우드패널	8	15
4418999000	기타	8	15
4419110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15
4419120000	젓가락	8	15
4419190000	기타	8	15
4419901000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8	15

4419902000	대접(공기)	8	15
4419903000	젓가락	8	15
4419909000	기타	8	15
4420101000	작은 조각상	8	15
4420109000	기타	8	15
442090100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8	15
4420902010	담배상자	8	15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5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5
4420902090	기타	8	15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8	15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8	15
4420909090	기타	8	15
4421100000	옷걸이	8	15
442191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 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5
442191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8	15
4421913000	이쑤시개	8	15
442191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5
442191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5
4421919000	기타	8	15
4421991000	스풀·콥·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 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15
442199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8	15
4421993000	이쑤시개	8	15
442199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8	15
442199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8	15
4421999000	기타	8	15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15
4501900000	기타	8	15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8	15
4503100000	마개	8	15
4503900000	기타	8	15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8	15
4504900000	기타	8	15
4601211000	매트류	8	0

4601212000	발	8	0
4601221000	매트류	8	0
4601222000	발	8	0
4601291000	매트류	8	0
4601292000	발	8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29000	기타	8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4601949000	기타	8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8	0
4601999000	기타	8	0
4602111000	바구니	8	15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	15
4602119000	기타	8	15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8	15
4602191000	골풀제품	8	0
4602199000	기타	8	0
4602900000	기타	8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 판지로 만든 것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 · 열 감응성 ·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1090	기타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49090	기타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4802551090	기타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59090	기타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4802561090	기타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69090	기타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4802571090	기타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79090	기타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1020	팬시지	0	0
4802581090	기타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2090	기타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589090	기타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11090	기타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19090	기타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21090	기타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29090	기타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4802691090	기타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2699090	기타	0	0
4803001000	화장지 · 안면용 티슈스톡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4803009000	기타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190000	기타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290000	기타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19000	기타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4804399000	기타	0	0
4804411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1090	기타	0	0

480441901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19090	기타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421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1090	기타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429090	기타	0	0
4804491000	중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0	0
4804499000	기타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04529000	기타	0	0
4804590000	기타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4805190000	기타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49000	기타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259000	기타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0
4805919090	기타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29000	기타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4805939000	기타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4806409000	기타	0	0

4807000000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 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 없다)	0	0
4808401000	자루(sack)용	0	0
4808409000	기타	0	0
4808900000	기타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0	0
4809902090	기타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09909000	기타	0	0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39000	기타	0	0
481014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49000	기타	0	0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지와 판지	0	0
4810199000	기타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지	0	0
4810290000	기타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 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19000	기타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 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4810329000	기타	0	0
4810390000	기타	0	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0	0
4810921090	기타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4810929000	기타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4810999000	기타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4811109000	기타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4811490000	기타	0	0
4811511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0	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11519019	기타	0	0
4811519090	기타	0	0
4811590000	기타	0	0
4811600000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stearin) · 기름 ·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나 판지	0	0
4811901010	괘선,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0
4811901090	기타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4811902090	기타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 플레이트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4813900000	기타	0	0
4814201000	벽지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0	0
4814209000	기타	0	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0
4814901090	기타	0	0
4814909000	기타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0	0
4816902090	기타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4816909000	기타	0	0
4817100000	봉투	0	0
4817200000	봉함엽서 · 우편엽서 · 통신용카드	0	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 필기첩 (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4818200000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	0
4818900000	기타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0
4819509000	기타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 (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 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4820900000	기타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4821900000	기타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0
4822900000	기타	0	0
4823200000	여과용 종지와 판지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 이얼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823690000	기타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0
4823901090	기타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19	기타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3029	기타	0	0
4823903090	기타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0	0
4823909019	기타	0	0
4823909090	기타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4901109000	기타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4901919000	기타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4901999000	기타	0	0
4902101010	신문	0	0

4902101090	기타	0	0
4902109000	기타	0	0
4902901010	잡지	0	0
4902901090	기타	0	0
4902909010	잡지	0	0
4902909090	기타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 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4905919000	기타	0	0
4905990000	기타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4906002000	도안	0	0
4906009000	기타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4907009000	기타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 화할 수 있는 것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0
4908909000	기타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 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4910009000	기타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와 유사한 것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4911919000	기타	0	0
4911990000	기타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 다)	51% 또는 5,276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3	0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51.7% 또는 17,215원/kg 양자 중 고액(율)	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3	0
5002009000	기타	8	0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얇은 것	2	0
5003009000	기타	2	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3	0
5005001000	견수방사	3	0
5005002000	견방사	3	0
5005003000	견방주사	3	0
5006001000	견사	8	0
5006002000	견수방사	8	0
5006003000	견방사	8	0
5006004000	견방주사	8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8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13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202010	홀치기가공	13	0
5007202020	사틴	13	0
5007202030	크렙 데신(crepe de chine)	13	0
5007202090	기타	13	0
5007209000	기타	13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13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13	0
5007909000	기타	13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5101190000	기타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5101290000	기타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2190000	기타	0	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510400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5105290000	기타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5105390000	기타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8	0
5106109000	기타	8	0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6209000	기타	8	0
5107101000	순모의 것	8	0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0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0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0
5109101000	양모사	8	0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5109901000	양모사	8	0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0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 [짐프한(gimi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0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1900000	기타	13	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13	0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112900000	기타	13	0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201001000	실면(實綿)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5202990000	기타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8	0
5204190000	기타	8	0
5204200000	소매용	8	0
5205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19000	기타	8	0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0
5205121090	기타	8	0
5205129000	기타	8	0
5205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39000	기타	8	0
5205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49000	기타	8	0
5205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159000	기타	8	0
5205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19000	기타	8	0
5205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20
5205229000	기타	8	5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20
5205239000	기타	8	5
5205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15
5205249000	기타	8	0
52052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69000	기타	8	0
52052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79000	기타	8	0
52052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289000	기타	8	0
5205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19000	기타	8	0
52053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 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1	0
5205321090	기타	8	0
5205329000	기타	8	0
5205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39000	기타	8	0
5205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49000	기타	8	0
5205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359000	기타	8	0
5205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19000	기타	8	0
5205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29000	기타	8	0
5205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39000	기타	8	0
5205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49000	기타	8	0
52054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69000	기타	8	0
52054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79000	기타	8	0
52054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5489000	기타	8	0
5206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19000	기타	8	0
52061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29000	기타	8	0
5206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39000	기타	8	0
5206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49000	기타	8	0
5206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159000	기타	8	0
5206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19000	기타	8	0
5206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29000	기타	8	0
5206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39000	기타	8	0
5206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49000	기타	8	0

52062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259000	기타	8	0
5206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19000	기타	8	0
52063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29000	기타	8	0
5206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39000	기타	8	0
5206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49000	기타	8	0
5206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359000	기타	8	0
5206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19000	기타	8	0
5206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29000	기타	8	0
5206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39000	기타	8	0
5206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49000	기타	8	0
52064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6459000	기타	8	0
52071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109000	기타	8	0
52079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0
5207909000	기타	8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20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1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2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2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5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3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2085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8599000	기타	10	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2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10	5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420000	데님(denim)	10	5
5209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09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1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199000	기타	10	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2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299000	기타	10	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4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0499000	기타	10	0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200000	표백한 것	10	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420000	데님(denim)	10	0
5211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10	0
5211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1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120000	표백한 것	10	0
5212130000	염색한 것	1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150000	날염한 것	1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5212220000	표백한 것	10	0
5212230000	염색한 것	1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212250000	날염한 것	10	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0
5301290000	기타	2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2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직한 것은 제외한다)	2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2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2	0
5303101000	황마	2	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	2	0

5303901010	황마	2	0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	2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0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2	0
5305002000	아바카의 것	2	0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2	0
5305009000	기타	2	0
5306101000	순아마사	8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8	0
5306201000	순아마사	8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8	0
5307101000	황마사	8	0
5307109000	기타	8	0
5307201000	황마사	8	0
5307209000	기타	8	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8	0
5308200000	대마사	8	0
5308901000	라미(ramie)사	8	0
5308909000	기타	8	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190000	기타	2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2	0
5309290000	기타	2	0
5310101000	황마직물	8	0
5310109000	기타	8	0
5310901000	황마직물	8	0
5310909000	기타	8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8	0
5311002000	대마의 것	8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8	0
5311009000	기타	8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2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2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20
5401109000	기타	8	2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8	0
5401209000	기타	8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8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12	어망사	8	0
5402191019	기타	8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8	0

5402191022	어망사	8	0
5402191029	기타	8	0
5402191090	기타	8	0
5402199000	기타	8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311090	기타	8	0
5402319000	기타	8	0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321090	기타	8	0
5402329000	기타	8	0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339000	기타	8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390000	기타	8	0
5402440000	탄성사	8	0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8	0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8	0
5402451090	기타	8	0
5402459000	기타	8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69000	기타	8	0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402479000	기타	8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499000	기타	8	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5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599000	기타	8	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0
5402699000	기타	8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1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19000	기타	1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1	0
5403329000	기타	1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39000	기타	8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399000	기타	8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1	0
5403419000	기타	1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29000	기타	8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8	0
5403499000	기타	8	0
5404110000	탄성사	8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8	2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8	2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8	20
5404199000	기타	8	2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8	5
5404909000	기타	8	5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8	0
5405009000	기타	8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8	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8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8	15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8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420000	염색한 것	8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440000	날염한 것	8	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520000	염색한 것	8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540000	날염한 것	8	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12000	염색한 것	8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14000	날염한 것	8	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7692000	염색한 것	8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7694000	날염한 것	8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19000	기타	8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29000	기타	8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39000	기타	8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749000	기타	8	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19000	기타	8	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29000	기타	8	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39000	기타	8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849000	기타	8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19000	기타	8	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29000	기타	8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39000	기타	8	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8	0
5407949000	기타	8	E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8	0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220000	염색한 것	8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240000	날염한 것	8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8	0
5408320000	염색한 것	8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8	0
5408340000	날염한 것	8	0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8	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1900000	기타	8	0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7.5	0
550210200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7.5	0
5502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7.5	0
5502909000	기타	7.5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19000	기타	8	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199000	기타	8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0
5503209090	기타	8	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1090	기타	8	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3302090	기타	8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20
5503900000	기타	8	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1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1	0
5504109000	기타	1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2	0
5504909000	기타	8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2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109000	기타	8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209000	기타	8	0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8	0

5506301090	기타	8	0
5506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6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8	0
5506900000	기타	8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8	0
5507001090	기타	8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07009000	기타	8	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2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2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8109000	기타	8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08209000	기타	8	0
5509111000	강력사	8	0
5509119000	기타	8	0
5509121000	강력사	8	0
5509129000	기타	8	0
5509211000	강력사	8	0
5509219000	기타	8	0
5509221000	강력사	8	0
5509229000	기타	8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410000	단사	8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בל사	8	0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0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8	0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8	0
5509590000	기타	8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8	0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8	0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19000	기타	8	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09929000	기타	8	0
5509990000	기타	8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119000	기타	8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129000	기타	8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209000	기타	8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309000	기타	8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8	0
5510909000	기타	8	0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109000	기타	8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8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8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8	0
5511209000	기타	8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8	0
5511309000	기타	8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2191000	염색한 것	1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512193000	날염한 것	1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10	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2290000	기타	10	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19000	기타	1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2999000	기타	1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199000	기타	1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3239000	기타	10	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299000	기타	1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399000	기타	1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3499000	기타	1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10	0
5514199000	기타	1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299000	기타	1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 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 文織)을 포함한다]	1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1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10	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10	0
5514499000	기타	1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19000	기타	1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29000	기타	1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39000	기타	1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199000	기타	1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19000	기타	1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29000	기타	1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299000	기타	1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19000	기타	1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5515999000	기타	1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19000	기타	1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29000	기타	10	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39000	기타	1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149000	기타	1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19000	기타	1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29000	기타	1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39000	기타	1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249000	기타	1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19000	기타	1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329000	기타	1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339000	기타	1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349000	기타	1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19000	기타	1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29000	기타	1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439000	기타	1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449000	기타	1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19000	기타	1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10	0
5516929000	기타	1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39000	기타	1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0	0
5516949000	기타	10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1290000	기타	8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8	0
5601309000	기타	8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8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8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8	0

5602219000	기타	8	0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5602900000	기타	8	0
5603111000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	8	0
5603119000	기타	8	0
5603121000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	8	0
5603129000	기타	8	0
5603131000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	8	0
5603139000	기타	8	15
5603141000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	8	0
5603149000	기타	8	0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8	0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8	5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 · 도포한 것)	8	0
5604909000	기타	8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 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 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8	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8	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8	0
5606009000	기타	8	0
5607210000	포장용 끈	10	0
5607290000	기타	10	0
5607410000	포장용 끈	10	0
5607490000	기타	10	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10	0
5607909000	기타	10	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19000	기타	10	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5608199000	기타	10	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5608909000	기타	10	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8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609009000	기타	8	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1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10	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10	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10	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5704900000	기타	10	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
5801101000	파일(pile)직물	13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5801272000	절단된 것	13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13	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13	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13	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13	0

5801372000	절단된 것	13	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13	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8	0
5802190000	기타	8	0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8	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8	0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8	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5804109000	기타	13	0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5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04299000	기타	13	5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13	0
5805001000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8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8	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109000	기타	8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8	0
5806399000	기타	8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8	0
5807101000	레이블(label)	8	0
5807109000	기타	8	0
5807901000	레이블(label)	8	0
5807909000	기타	8	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8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8	0
5808909000	기타	8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8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5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8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8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5811009000	기타	8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8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8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8	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8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8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8	0
5902900000	기타	8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10	5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5
5903900000	기타	10	0
5904100000	리놀룸	8	0
5904900000	기타	8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8	0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8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8	0
5906990000	기타	8	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8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8	0
5907009000	기타	8	0
5908001000	심지	8	0
5908009000	기타	8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15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8	0
5911109000	기타	8	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8	0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8	0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8	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8	0
5911900000	기타	8	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109000	기타	10	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15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6002900000	기타	10	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10	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0	0
6003900000	기타	1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5
6004900000	기타	1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220000	염색한 것	1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240000	날염한 것	10	0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352000	염색한 것	10	0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354000	날염한 것	10	0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5420000	염색한 것	1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5440000	날염한 것	10	0
6005900000	기타	10	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220000	염색한 것	1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240000	날염한 것	1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320000	염색한 것	1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340000	날염한 것	1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6006420000	염색한 것	1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10	0
6006440000	날염한 것	10	0
6006900000	기타	10	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199000	기타	13	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4499000	기타	13	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5909000	기타	13	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6909000	기타	13	5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7999000	기타	13	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199000	기타	13	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08999000	기타	13	0
6109101000	티셔츠	13	15
6109109000	기타	13	5
6109901010	티셔츠	13	0
6109901090	기타	13	5
6109902010	티셔츠	13	0
6109902090	기타	13	0
6109903010	티셔츠	13	0
6109903090	기타	13	0
6109909010	티셔츠	13	0
6109909090	기타	13	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13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13	0
6110190000	기타	13	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0909000	기타	13	0
6111201000	의류	8	0
6111202000	부속품	8	0
6111301000	의류	8	0
6111302000	부속품	8	0
6111901000	의류	8	0
6111902000	부속품	8	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209000	기타	13	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13	0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13	0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13	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5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4909000	기타	13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3	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309000	기타	13	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8	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8	0
6116929000	기타	8	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117109000	기타	13	0
6117801000	넥타이류	13	0
6117809000	기타	13	0
6117900000	부분품	13	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5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299000	기타	13	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15
6203429000	기타	13	5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5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199000	기타	13	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299000	기타	13	0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399000	기타	13	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5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499000	기타	13	0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599000	기타	13	0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13	15
6204629000	기타	13	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5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4699000	기타	13	0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5909000	기타	13	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13	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199000	기타	13	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7999000	기타	13	0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199000	기타	13	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15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13	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08999000	기타	13	0
6209201000	의류	8	0
6209202000	부속품	8	0
6209301000	의류	8	0
6209302000	부속품	8	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209901090	기타	8	0
6209902000	부속품	8	0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13	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119000	기타	13	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129000	기타	13	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209000	기타	13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0
6211329000	기타	13	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11399000	기타	13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13	0
6211429000	기타	13	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0
6211499000	기타	13	15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2109000	기타	13	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212209000	기타	13	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13	0
6212900000	기타	13	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8	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8	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8	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8	0
6216009000	기타	8	0
6217100000	부속품	13	0
6217900000	부분품	13	0
6301100000	전기모포	10	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10	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109000	기타	13	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3	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3	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199000	기타	13	0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0
6304190000	기타	13	0
630420000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13	0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13	0
6305100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8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8	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	0
6305390000	기타	8	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8	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300000	돗	13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13	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0
6306909000	기타	13	0
6307100000	마루뒹이포 · 접시뒹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10	0
6307200000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10	0
6307901000	신발류 끈	10	0
6307902000	보자기	1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10	0
6307904010	수술용 마스크	10	0
6307904020	보건용 마스크	10	0
6307904030	비말차단용 마스크	10	0
6307904090	그 밖의 안면마스크	10	0
6307909000	기타	10	0
630800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13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0
6310100000	선별한 것	8	0
6310900000	기타	8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8	0
6401921000	스키부츠	8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29090	기타	8	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8	0
6401991090	기타	8	0
6401999000	기타	8	0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0
6402190000	기타	13	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2911000	방한화	13	0
640291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19000	기타	13	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13	0
640299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2999000	기타	13	0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13	0
6403190000	기타	13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13	0
6403511000	드레스화	13	0
6403519000	기타	13	0
6403591000	드레스화	13	0
6403599000	기타	13	0
6403911000	드레스화	13	0
6403912000	등산화	13	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1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19000	기타	13	0
6403991000	드레스화	13	0
6403992000	등산화	13	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13	0
640399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3999000	기타	13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13	0
6404191000	실내화	13	0
6404199000	기타	13	0
6404201000	실내화	13	0
6404209000	기타	13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13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3	0
6405900000	기타	13	0
6406101000	갑피	8	0
6406102000	부분품	8	0
6406201000	바깥바닥	8	0
6406202000	뒷굽	8	0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8	0
6406909020	힐 쿠션	8	0
6406909030	각반	8	0
6406909040	레깅	8	0
6406909090	기타	8	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투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8	0

6502000000	모चे(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6505001000	헤어네트	8	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8	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8	0
6505009021	운동모	8	0
6505009022	베레모	8	0
6505009029	기타	8	0
6505009090	기타	8	0
6506100000	안전모자	8	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8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6506999000	기타	8	0
650700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8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13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13	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13	0
6601992000	양산	13	0
6601999000	기타	13	0
6602001000	지팡이	8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8	0
6602003000	채찍 · 승마용 채찍	8	0
6602009000	기타	8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13	0
6603900000	기타	13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8	0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8	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8	0
6702909000	기타	8	0
6703001010	세척 · 정돈한 것	8	0
6703001090	기타	8	0
6703009000	기타	8	0
6704110000	전체가발	8	0
6704191000	부분가발	8	0
6704192000	가수염	8	0

6704193000	가눈썹	8	0
6704194000	가속눈썹	8	0
6704199000	기타	8	0
6704201000	전체가발	8	0
6704202000	부분가발	8	0
6704203000	가수염	8	0
6704204000	가눈썹	8	0
6704205000	가속눈썹	8	0
6704209000	기타	8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68010000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8	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8	0
6802211000	대리석	8	E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6802230000	화강암	8	20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0
6802299000	기타	8	20
6802911000	대리석	8	E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8	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8	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8	0
6802930000	화강암	8	20
6802990000	그 밖의 돌	8	20
6803001000	벼루	8	20
6803009000	기타	8	20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8	0
6804210000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8	0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8	5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8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8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8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8	0
6806109000	기타	8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8	0
6806202000	팽창점토	8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8	0
6806209000	기타	8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8	0
6806909000	기타	8	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8	5
6807900000	기타	8	0
68080000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8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8	E
6809190000	기타	8	5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8	0
6810111000	블록	8	0
6810112000	벽돌	8	0
6810191000	타일	8	5
6810192000	판석	8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8	0
6810199000	기타	8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8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8	0
6810992000	파일	8	0
6810993000	전신주	8	0
6810994000	철도 받침목	8	0
6810995000	관	8	0
6810999000	기타	8	0
6811401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1090	기타	8	0
6811402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2090	기타	8	0
6811403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0
6811409010	지붕 · 천장 · 벽과 바닥재용	8	0
6811409090	기타	8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8	5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8	0
6811891000	관 · 관의 연결구류	8	0
6811899000	기타	8	0
6812801000	의류 · 의류부속품 · 신발 · 모자류	8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 섬유 조인트링(jointing)	8	0

6812809000	기타	8	0
6812910000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8	0
6812920000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8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 섬유 조인트링(jointing)	8	0
6812990000	기타	8	0
6813201010	자동차용	8	0
6813201090	기타	8	0
6813202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209010	자동차용	8	0
6813209090	기타	8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8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8	0
6813899000	기타	8	0
681410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8	0
6814900000	기타	8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8	0
6815102000	탄소섬유	8	0
6815109000	기타	8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8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8	0
6815990000	기타	8	20
6901001000	벽돌	8	0
6901002000	블록	8	0
6901003000	타일	8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8	0
6901009090	기타	8	0
690210000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0
6902200000	알루미나 · 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8	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2909000	기타	8	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8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3	0
6903102090	기타	8	0
6903103000	반응그릇	8	0
6903104000	머플	8	0
6903105000	노즐	8	0
6903106000	플러그(plug)	8	0
6903107000	관(管)	8	0

6903108000	막대(bar, rod)	8	0
6903109000	기타	8	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8	0
6903202000	도가니	8	0
6903203000	반응그릇	8	0
6903204000	머플	8	0
6903205000	노즐	8	0
6903206000	플러그(plug)	8	0
6903207000	관(管)	8	0
6903208000	막대(bar, rod)	8	0
6903209000	기타	8	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8	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8	0
6903909020	도가니	8	0
6903909030	반응그릇	8	0
6903909040	머플	8	0
6903909050	노즐	8	0
6903909060	플러그(plug)	8	0
6903909070	관(管)	8	0
6903909080	막대(bar, rod)	8	0
6903909090	기타	8	5
6904100000	건축용 벽돌	8	0
6904900000	기타	8	1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8	10
6905901000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8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8	0
6905909000	기타	8	0
6906001000	관(管) · 도관(導管) · 흡통	8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8	0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8	0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8	0
6907229000	기타	8	0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8	0
69073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309000	기타	8	0
6907401000	자기제의 것	8	0
6907409000	기타	8	0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8	0
6909190000	기타	8	0
6909900000	기타	8	0
6910101000	세면대	8	0

6910102000	목욕통	8	0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0
6910104000	소변기	8	0
6910109000	기타	8	0
6910900000	기타	8	0
6911101000	커피 세트 · 티세트	8	0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8	0
6911109000	기타	8	0
6911901000	가정용품	8	0
6911902000	화장용품	8	0
6911909000	기타	8	0
6912001010	커피 세트 · 티세트	8	0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8	0
6912001090	기타	8	0
6912002000	가정용품	8	0
6912003000	화장용품	8	0
6912009000	기타	8	0
69131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109090	기타	8	0
69139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8	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8	0
6913909090	기타	8	0
6914101000	화분	8	0
6914109000	기타	8	0
6914901000	화분	8	0
6914909000	기타	8	0
7001001000	괴(塊)	5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3	0
7002100000	구(球)	8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209000	기타	8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02319000	기타	8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02390000	기타	8	0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8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8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8	5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5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5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0
7005291091	맑은 유리	8	0
7005291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1099	기타	8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5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5292091	맑은 유리	8	0
7005292092	저철분 유리	8	0
7005292099	기타	8	0
7005293010	맑은 유리	8	5
7005293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3090	기타	8	5
7005294010	맑은 유리	8	5
7005294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4090	기타	8	5
7005295010	맑은 유리	8	5
7005295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5090	기타	8	5
7005296010	맑은 유리	8	5
7005296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6090	기타	8	5
7005297010	맑은 유리	8	5
7005297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7090	기타	8	5
7005298010	맑은 유리	8	5
7005298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8090	기타	8	5
7005299010	맑은 유리	8	5
7005299020	저철분 유리	8	5
7005299090	기타	8	5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8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3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4	0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8	0

7006009000	기타	8	0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0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0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10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0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0
700721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0
700729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0
700729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8	10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8	5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	5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8	5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8	5
7010100000	애플	8	0
7010200000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8	0
7010900000	기타	8	0
7011100000	전등용	8	0
7011201000	천연색용	8	0
7011209000	기타	8	0
7011900000	기타	8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8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280000	기타	8	5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370000	기타	8	5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0
7013420000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8	0
7013490000	기타	8	5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8	5
7013990000	기타	8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8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8	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8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8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8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화 이와 유사한 것	8	0
7015909000	기타	8	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 · 슬래브 · 벽돌 · 스퀘어(square) · 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8	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8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8	0
7016909090	기타	8	0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8	0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8	0
7017900000	기타	8	0
7018101000	비드(bead)	8	0
7018102000	모조 진주	8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8	0
7018104000	모조 산호	8	0
7018109000	기타	8	0
7018200000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8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8	0
7018909000	기타	8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120000	로빙(roving)	8	0
7019190000	기타	8	0
7019310000	매트(mat)	8	0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8	0
7019390000	기타	8	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8	0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8	0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019590000	기타	8	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8	0
7019909000	기타	8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3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3	0
7020001019	기타	8	0
7020001090	기타	8	0
7020009000	기타	8	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102000	가공한 것	8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8	0
7101220000	가공한 것	8	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1	0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갬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290000	기타	5	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갬 것으로 한정한다)	1	0
7102390000	기타	5	5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1	0
7103911000	공업용	5	0
7103919010	루비	5	0
7103919020	사파이어	5	0
7103919030	에메랄드	5	0
7103991000	공업용	5	0
7103999010	오팔	5	0
7103999020	비취	5	0
7103999030	옥수(玉髓)	5	0
7103999040	수정	5	0
7103999090	기타	5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5	0
7104209000	기타	5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1020	인조수정	5	0
7104901090	기타	5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5	0
7104909090	기타	5	0
7105101000	천연의 것	5	0
7105102000	합성한 것	5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5	0
7105909000	기타	5	0
7106100000	가루	3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0
7106919000	기타	3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692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0
7106923000	선	3	0
7106929000	기타	3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700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0
7107003000	선	3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3	0
7107009000	기타	3	0
7108110000	가루	3	0
7108121000	럼프(lump) · 빌릿(billet) · 알갱이	3	0
7108129000	기타	3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3	0
7108131090	기타	3	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3	0
710813902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3	0
7108139090	기타	3	0
7108200000	화폐용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190000	기타	3	0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290000	기타	3	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390000	기타	3	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3	0
7110490000	기타	3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	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2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19000	기타	3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29000	기타	3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2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패어링(paring) · 스크랩(scrap)의 것	6.5	0
7112999000	기타	3	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8	0
7113199000	기타	8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8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8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8	0
7113209000	기타	8	0
7114111000	식탁용	8	0
7114112000	화장실용	8	0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14000	깍연용	8	0
7114119000	기타	8	0
7114191000	식탁용	8	0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199000	기타	8	0
7114201000	식탁용	8	0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8	0
7114204000	깍연용	8	0
7114209000	기타	8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7115901010	백금 도가니	8	0
7115901090	기타	8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8	0
7115909090	기타	8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8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8	0
7116201000	공업용	8	0
7116209010	신변장식용	8	0
7116209090	기타	8	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8	0
7117191000	목걸이	8	0
7117192000	팔찌	8	0
7117193000	귀걸이	8	0
7117194000	브로치	8	0
7117195000	반지	8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8	0
7117199000	기타	8	0
7117900000	기타	8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1000	금화	0	0
7118902000	은화	0	0
7118909000	기타	0	0
7201101000	주물용	0	0
7201102000	제강용	0	0
7201109000	기타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2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0
7202190000	기타	5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2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3	0
7202299000	기타	3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2	0
7202490000	기타	2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2	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3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3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3	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3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3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0
7202999000	기타	3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7203900000	기타	1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7204290000	기타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204410000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7204490000	기타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7205101000	샷(shot)	5	0
7205102000	그릿(grit)	5	0
7205109000	기타	5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3	0
7205290000	기타	3	0
7206100000	잉곳(ingot)	0	0
7206900000	기타	0	0
7207111000	블룸(bloom)	0	0
7207112000	빌릿(billet)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07190000	기타	0	0
7207201000	블룸(bloom)	0	0
7207202000	빌릿(billet)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7207209000	기타	0	0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59000	기타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69000	기타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279000	기타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69000	기타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79000	기타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89000	기타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399000	기타	0	0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19000	기타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29000	기타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39000	기타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8549000	기타	0	0
7208900000	기타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59000	기타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69000	기타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79000	기타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189000	기타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59000	기타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69000	기타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79000	기타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09289000	기타	0	0
7209900000	기타	0	0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309000	기타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1090	기타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0499090	기타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 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690000	기타	0	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0909000	기타	0	0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 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49000	기타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199000	기타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39000	기타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299000	기타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1909000	기타	0	0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209000	기타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1090	기타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12309090	기타	0	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	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2509000	기타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72132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11090	기타	0	0
7213919000	기타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0	0
7213991090	기타	0	0
7213999000	기타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0
7214201000	철근	0	0
7214209000	기타	0	0
72143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0	0
7214999000	기타	0	0
7215100000	괘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5900000	기타	0	0
7216101000	유(U)형강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0
7216210000	엘(L)형강	0	0
7216220000	티(T)형강	0	0
7216310000	유(U)형강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0	0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216401000	엘(L)형강	0	0
7216402000	티(T)형강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7216690000	기타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7216990000	기타	0	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217309000	기타	0	0
7217900000	기타	0	0
7218101000	잉곳(ingot)	0	0
7218109000	기타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0
7218919000	기타	0	0
7218991000	블룸(bloom)	0	0
7218992000	빌릿(billet)	0	0
7218999000	기타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11090	기타	0	0
7219119000	기타	0	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21090	기타	0	0
7219129000	기타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31090	기타	0	0
7219139000	기타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141090	기타	0	0
7219149000	기타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11090	기타	0	0
7219219000	기타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21090	기타	0	0
7219229000	기타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31090	기타	0	0
7219239000	기타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241090	기타	0	0
7219249000	기타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11090	기타	0	0
7219319000	기타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21090	기타	0	0
7219329000	기타	0	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31090	기타	0	0
7219339000	기타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41090	기타	0	0
7219349000	기타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351090	기타	0	0
7219359000	기타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19901090	기타	0	0
7219909000	기타	0	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111090	기타	0	0
7220119000	기타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121090	기타	0	0
7220129000	기타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201090	기타	0	0
7220209000	기타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0	0
7220901090	기타	0	0
7220909000	기타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7222190000	기타	0	0
7222200000	붕[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2300000	그 밖의 붕	0	0
7222400000	형강(形鋼)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7224101000	잉곳(ingot)	0	0
7224109000	기타	0	0
7224901000	블룸(bloom)	0	0
7224902000	빌릿(billet)	0	0
7224903000	슬래브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0
7224909000	기타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5190000	기타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5309099	기타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5409099	기타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509000	기타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19090	기타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19	기타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7225929099	기타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5999000	기타	0	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7226190000	기타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7226919000	기타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0
7226999000	기타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미만의 것	0	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이상의 것	0	0
7227909090	기타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붕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붕	0	0
72283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309000	기타	0	0
72284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409000	기타	0	0
7228500000	그 밖의 붕[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609000	기타	0	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7228701090	기타	0	0
7228709000	기타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1090	기타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2090	기타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7229909090	기타	0	0
7301101000	유(U)형	0	0
7301109000	기타	0	0
7301201000	유(U)형강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0	0
7301209000	기타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1090	기타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2090	기타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3090	기타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7302104090	기타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8	5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7302900000	기타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8	5
7303001090	기타	8	5
7303002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5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4190000	기타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4290000	기타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390000	기타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490000	기타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7304590000	기타	0	0
7304900000	기타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5190000	기타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7305319000	기타	0	0
7305390000	기타	0	0
7305900000	기타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190000	기타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7306212000	튜브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7306292000	튜브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1090	기타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7306302090	기타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11090	기타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7306691090	기타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7306901000	이중벽(double wall) 강관	0	0
7306909000	기타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07190000	기타	8	0
7307210000	플랜지(flange)	8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229000	기타	8	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290000	기타	8	5
7307910000	플랜지(flange)	8	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7307929000	기타	8	0
73079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8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8	5
7307999000	기타	8	5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8	5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5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8	0
7308901000	수문	0	0
7308909000	기타	0	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땀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8	0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銃)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390000	기타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7314490000	기타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8	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8	0
7315190000	부분품	8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8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8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5890000	기타	8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7316001000	닢	8	0
7316002000	부분품	8	0
7317001011	도금 · 도포 ·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19	기타	0	0
7317001021	도금 · 도포 · 페인트한 것	0	0
7317001029	기타	0	0
7317002000	압정	0	0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7317009000	기타	0	0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8	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8	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8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8	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8	0
7318152000	볼트(bolt)	8	0
7318153000	볼트(bolt) · 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7318159000	기타	8	0
7318160000	너트(nut)	8	0
7318190000	기타	8	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8	0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8	0
7318230000	리벳(rivet)	8	0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8	0
7318290000	기타	8	0
7319401000	안전핀	8	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 ·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7319409000	기타	8	0
7319901010	수봉침	8	0
7319901020	수편침	8	0
7319901090	기타	8	0
7319909000	기타	8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2000	기관차·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8	0
7320109000	기타	8	0
7320201000	자동차용	8	0
7320202000	충격 흡수용	8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8	0
7320204000	가구용	8	0
7320209000	기타	8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8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8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8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8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8	0
7321900000	부분품	8	0
7322111000	방열기	8	0
7322112000	부분품	8	0
7322191000	방열기	8	0
7322192000	부분품	8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8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8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8	0
7322909030	부분품	8	0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 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8	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8	0
7323990000	기타	8	0
7324101000	설거지통	8	0
7324102000	세면대	8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8	0
7324299000	기타	8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8	0
7324908000	기타	8	5
7324909000	부분품	8	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8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 한 물품	8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8	5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8	5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8	5
7325999000	기타	8	5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326190000	기타	8	5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8	15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8	5
7326909000	기타	8	5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3	5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5	0
7403130000	빌릿(billet)	5	0
7403191000	슬래브	5	0
7403192000	잉곳(ingot)	5	0
7403199000	기타	5	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15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5	5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5	5
7403299000	기타	5	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0
7406100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1000	충상조직인 가루	8	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7299000	기타	8	0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408190000	기타	8	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08299000	기타	8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19000	기타	8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199000	기타	8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19000	기타	8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299000	기타	8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19000	기타	8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399000	기타	8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1090	기타	8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402090	기타	8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5	0
7409909000	기타	8	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8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19000	기타	8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8	0
7410229000	기타	8	5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	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8	5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8	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8	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8	0
7411299000	기타	8	5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	5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3	5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3	5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도포한 것	8	0
7415109000	기타	8	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8	0
7415290000	기타	8	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8	0
7415390000	기타	8	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41810901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5	0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8	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5	0
7418109099	기타	8	0
7418201000	위생용품	8	0
7418202000	부분품	8	0
7419101000	체인	8	0
7419102000	부분품	8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8	0
7419991090	기타	8	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8	0
7419999000	기타	8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1090	기타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2	0
7501209090	기타	0	0
7502101000	음극	3	5
7502109000	기타	3	5
7502200000	니켈 합금	3	5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504001000	가루	5	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5	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0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3	0
7506102000	박(箔)	5	0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5	0
7506202000	박(箔)	5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8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8	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8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8	0
7508909000	기타	8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1	10
7601201000	캐스팅 엘로이(casting alloy)	1	10

7601202000	빌릿(billet)	3	10
7601209000	기타	1	1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603100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8	15
7603201000	가루	8	15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604101000	봉	8	15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102090	기타	8	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8	0
7604291000	봉	8	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8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15
7605190000	기타	8	1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7605290000	기타	8	15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6119000	기타	8	1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1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6919000	기타	8	1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1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0
7607119000	기타	8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7199000	기타	8	1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8	10
7607209000	기타	8	1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15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0
761010000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8	0
7610901000	구조물	8	0
7610908000	기타	8	0
7610909000	부분품	8	15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1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8	1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8	10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8	10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8	10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8	10
7613001000	압축가스용	8	0
7613002000	액화가스용	8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8	0
7614900000	기타	8	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8	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5	0
7615109020	식탁용품·주방용품	8	0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8	0
7615109090	부분품	8	0
7615201000	위생용품	8	0
7615202000	부분품	8	0
7616100000	못·압정·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8	0
7616991000	보빈(bobbin)	8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8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8	0
7616999090	기타	8	15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15
7801109000	기타	3	15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3	5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1	5
7801992010	납-주석 합금	3	15
7801992090	기타	3	15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804111000	시트(sheet)·스트립	8	0
7804112000	박(箔)	8	0
7804190000	기타	8	0
7804201000	가루	8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8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8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806003010	붕	8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8	0
7806003030	선(線)	8	0
7806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0
7806009000	기타	8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3	15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3	5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3	5
7901209000	기타	3	15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8	0
7903901000	가루	8	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8	0
7904001000	봉	8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8	0
7904003000	선(線)	8	0
79050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7905002000	박(箔)	8	0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홀통 · 지붕덮개 · 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8	0
7907002010	관(管)	8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8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8	0
7907009090	기타	8	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	0
8001200000	주석 합금	3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1090	기타	8	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8	0
8003002090	기타	8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8	0
8007002000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007003010	박(箔)	8	0
8007003021	가루	8	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8	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8	0
8007009000	기타	8	0
8101100000	가루	3	0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3	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1969000	기타	8	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1991010	봉	8	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8	0
810199103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8101991040	박(箔)	8	0
8101999000	기타	8	0
8102100000	가루	3	0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3	0
8102951000	봉	8	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8	0
8102953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8	0
8102954000	박(箔)	8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8	0
8102969000	기타	8	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2990000	기타	8	0
8103201000	괴(塊)	3	0
8103202000	가루	3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3900000	기타	8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3	0
8104190000	기타	3	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104301000	줄밥(rasping) · 연삭설(tuning) · 알갱이	8	0
8104302000	가루	8	0
8104901000	봉	8	0
8104909000	기타	8	0
8105201000	괴(塊)	3	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3	0
8105203000	가루	2	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5900000	기타	3	0
8106001010	괴(塊)	3	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6001030	가루	3	0
8106009000	기타	3	0
8107201000	괴(塊)	3	0
8107202000	가루	3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7900000	기타	3	0
8108201000	괴(塊)	2	0

8108202000	가루	3	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8	0
8108902000	관	8	0
8108909000	기타	8	0
8109201000	괴(塊)	3	0
8109202000	가루	3	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09901010	관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스트립	0	0
8109901030	봉	0	0
8109901090	기타	0	0
8109909000	기타	3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3	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0900000	기타	3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	0
8112120000	괴(塊), 가루	3	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190000	기타	3	0
8112210000	괴(塊), 가루	3	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290000	기타	3	0
8112510000	괴(塊), 가루	3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0
8112590000	기타	3	0
8112921000	게르마늄	3	0
8112922000	바나듐	3	0
8112923000	갈륨	3	0
8112924000	하프늄	3	0
8112925000	인듐	3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27000	레늄	3	0
8112929000	기타	3	0
8112991000	게르마늄	3	0
8112992000	바나듐	3	0
8112993000	갈륨	3	0
8112994000	하프늄	3	0
8112995000	인듐	3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3	0
8112997000	레늄	3	0
8112999000	기타	3	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3	0
8201100000	가래와 삽	8	0
8201300000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8	0
8201400000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8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8	0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8	0
8201901000	낫	8	0
8201904000	포크	8	0
8201909000	기타	8	0
8202101000	목재용	8	0
8202102000	금속용	8	0
8202109000	기타	8	0
8202200000	띠톱의 날	8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8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8	0
8202392090	기타	8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8202399000	부분품	8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8	0
8202911000	쇠톱의 날	8	0
8202919000	기타	8	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5	0
8202999000	기타	8	0
8203101000	톱날용	8	0
8203109000	기타	8	0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8	0
8203202000	집게	8	0
8203203000	핀셋	8	0
8203209000	기타	8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8	0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8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8	0
8203403000	천공펀치	8	0
8203409000	기타	8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8	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8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205101000	드릴링용	8	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5103000	태핑용(tapping)	8	0
8205109000	기타	8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8	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8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8	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8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8	0
8205592000	땀인두	8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8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8	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8	0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8	0
8205599000	기타	8	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8	0
8205701000	바이스(vice)	8	0
8205702000	클램프(clamp)	8	0
8205709000	기타	8	0
8205901000	모루	8	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8	0
8205909010	이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8	0
8205909090	기타	8	0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8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8207199000	부분품	8	0
8207201000	인발(引拔)용	8	0
8207202000	압출용	8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8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8	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8	0
8207309000	기타	8	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8	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8	0
8207409000	기타	8	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8	0
8207501090	기타	8	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8	0
8207509000	기타	8	0
8207601000	리머(reamer)	8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8	0
8207609000	기타	8	0

8207701000	기어커터	8	0
8207702000	밀링커터	8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8	0
8207704000	로터리파일	8	0
8207709000	기타	8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8	0
8207809000	기타	8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8	0
8207909000	기타	8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8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8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8	0
820840000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8	0
8208900000	기타	8	0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코팅 처리된 것	8	0
8209001050	티타늄의 것	8	0
8209001090	기타	8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8	0
8209002050	티타늄의 것	8	0
8209002090	기타	8	0
8210001000	분쇄기 · 마쇄기	8	0
8210002000	추출기 · 압착기	8	0
8210003000	비터(beater) · 믹서	8	0
8210004000	세절기 · 커터	8	0
8210005000	오프너 · 코르크 · 실러	8	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8	0
8210009000	부분품	8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8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8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8	0
8211940000	칼날	8	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8	0
8212100000	면도기	8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213001000	가정용 · 사무용 가위	8	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8	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8	0
8213002090	기타	8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8	0
8213004000	가위날	8	0
8213009000	기타	8	0

8214101000	연필깎이	8	0
8214109000	기타	8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	0
8214901000	이발기	8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8	0
8214909000	기타	8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8	0
8215911000	스푼	8	0
8215912000	포크	8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15000	각종 집게	8	0
8215919000	기타	8	0
8215991000	스푼	8	0
8215992000	포크	8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8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8	0
8215995000	각종 집게	8	0
8215999000	기타	8	0
8301100000	자물쇠	8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8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8	0
8301401090	기타	8	0
8301409000	기타	8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8	0
8301600000	부분품	8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8	0
8302100000	경첩	8	0
8302200000	카스터(caster)	8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8	0
8302419000	기타	8	0
8302420000	기타(가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8	0
8302499000	기타	8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8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8	0

8303001000	금고	8	0
8303009000	기타	8	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8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8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8	0
8306100000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8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8	0
8306290000	기타	8	0
8306301000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8	0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8308101000	훅(hook)	8	0
8308102000	아이(eye) · 아일릿(eyelet)	8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8	0
8308901000	걸쇠나 걸쇠가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buckle)이나 버클(buckle)걸쇠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8	0
8309901000	캔뚜껑(E.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8	0
831130909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8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8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5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5	0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8	0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8	0
8403109000	기타	8	0
8403900000	부분품	8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5	0
8404102000	과열기	5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5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5	0
8404109000	기타	5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5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5	0
8404909000	기타	5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8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8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8	0
8405109000	기타	8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8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8	0
8405909000	기타	8	0
8406100000	선박추진용 터빈	5	0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0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8	0
8406909000	기타	5	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8	0
8407290000	기타	8	0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19000	기타	8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29000	기타	8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39000	기타	8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8	0
8407349000	기타	8	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0
8407909000	기타	8	0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8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	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8408901090	기타	5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0
840890902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4	0
8408909029	기타	8	0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8	0
8408909090	기타	8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5	0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8	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8	0
8409919000	기타	8	0
8409991000	철도차량용	5	0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	8	0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8	0
8409999010	발전용	8	0
8409999090	기타	8	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8410119000	기타	8	0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1090	기타	8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8410909090	기타	8	0
8411111000	항공기용	3	0
8411119010	선박용	8	0
8411119090	기타	8	0
8411121000	항공기용	3	0
8411129010	선박용	8	0
8411129090	기타	8	0
8411211000	항공기용	3	0
8411219010	선박용	8	0
8411219090	기타	8	0
8411221000	항공기용	3	0
8411229010	선박용	8	0
8411229090	기타	8	0
8411811000	항공기용	3	0
8411819010	선박용	8	0
8411819090	기타	8	0
8411821000	항공기용	3	0
8411829010	선박용	8	0
8411829090	기타	5	0
8411911000	항공기용	3	0
8411919000	기타	8	0
8411991000	항공기용	3	0
8411999000	기타	5	0
8412101000	항공기의 것	5	0
8412109000	기타	8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8	0
8412219000	기타	8	0
8412290000	기타	8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8	0
8412390000	기타	8	0
8412800000	기타	8	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5	0
8412901090	기타	5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8412909000	기타	5	0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	0
8413190000	기타	8	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413301000	항공기용	8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8	0
8413303000	선박용	8	0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8	0
8413309000	기타	8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8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509010	플런저펌프	8	0
8413509020	피스톤펌프	8	0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8	0
8413509090	기타	8	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609010	기어펌프	8	0
8413609020	베인펌프	8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8	0
8413609090	기타	8	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709010	터빈펌프	8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8	0
8413709090	기타	8	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8	0
8413819000	기타	8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8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8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8	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8	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8	0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8	0
8413919000	기타	8	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8	0
8414101000	항공기용	8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84141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8414109090	기타	8	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8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8	0
8414511000	항공기용	8	0
8414519000	기타	8	0
8414591000	항공기용	8	0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3.25	0
8414599000	기타	8	0
8414601000	항공기용	8	0
8414609000	기타	8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4809110	항공기용	8	0
8414809190	기타	8	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4809900	기타	8	0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8	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8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8	0
8414909090	기타	8	0
8415101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1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109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	0
8415109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8	0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8	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8	0
8415900000	부분품	8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8	0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8	0
8416202000	기체연료용	8	0
8416209000	기타	8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8	0
8416909000	기타	8	0
8417101010	철광석용	8	0
8417101090	기타	8	0

8417102010	철강용	8	0
8417102090	기타	8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8	0
8417801010	시멘트용	8	0
8417801020	유리용	8	0
8417801030	도자기용	8	0
8417801090	기타	8	0
8417802000	이화학용	8	0
8417809000	기타	5	0
8417900000	부분품	5	0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8	0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18109000	기타	8	0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8	0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8	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	0
8418299000	기타	8	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18501000	쇼케이스	8	0
8418509000	기타	8	0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	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8	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8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8	0
8418692030	냉수기	8	0
8418692090	기타	8	0
8418693000	열펌프	8	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8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8	0
8418999000	기타	8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8	0
8419190000	기타	5	0
841920000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0	0
8419310000	농산물용	8	0
8419320000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8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3	0
8419399000	기타	5	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8	0
8419501000	항공기용	8	0

841950200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0
8419509000	기타	8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5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8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8	0
8419899010	가열기	8	0
8419899020	냉각기	5	0
8419899030	증발기	5	0
8419899040	응축기	5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8	0
8419899060	고온항온기 · 저온항온기	8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8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8	0
8419899090	기타	5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8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5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8	0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8419909090	기타	5	0
8420101000	제지용	8	0
8420102000	직물용	8	0
8420103000	가죽용	8	0
8420104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8	0
84201050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	0	0
8420109000	기타	8	0
8420910000	실린더	8	0
8420990000	기타	8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8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8	0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 이화학용	8	0
8421192000	식품공업용	8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8	0
8421199000	기타	8	0
8421211000	가정형	5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5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3	0
8421219090	기타	5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8	0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232000	항공기용	8	0

8421239000	기타	8	0
8421291000	낙농용	8	0
842129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5	0
8421292090	기타	5	0
8421293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0
8421293090	기타	0	0
8421294000	항공기용	8	0
842129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0	0
8421299090	기타	5	0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8	0
8421312000	항공기용	8	0
8421319000	기타	8	0
8421391000	가정형	5	0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5	0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0
8421399019	기타	5	0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0
8421399029	기타	0	0
8421399030	항공기용	8	0
842139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0	0
8421399099	기타	5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8	0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5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5	0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8421999029	기타	5	0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8421999039	기타	0	0

842199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8421999099	기타	5	0
8422110000	가정형	8	0
8422190000	기타	8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8	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8	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 · 봉지용 기계	8	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 · 레이블 첨부용 기계	8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8	0
8422309000	기타	8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8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8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8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8	0
8422409090	기타	8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8	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8	0
8422909000	기타	8	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8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8	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 · 피드웨이어(feed weigher)	8	0
8423209000	기타	8	0
842330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0
8423309000	기타	8	0
842381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0
8423819000	기타	8	0
842382100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0	0
8423829000	기타	8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8	0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0	0
8423899090	기타	8	0
842390101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0
8423901019	기타	8	0
842390109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0
8423901099	기타	8	0

842390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0	0
8423909090	기타	8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0
8424201000	스프레이건	8	0
8424202010	로보트형	8	0
8424202090	기타	8	0
8424209000	기타	8	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8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8	0
8424309000	기타	8	0
8424410000	휴대용 방제기	8	0
842449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8	0
8424499000	기타	8	0
8424820000	농업용이나 원예용	8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89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	0
8424899000	기타	8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8	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8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8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2490902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0	0
8424909090	기타	8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8425111090	기타	0	0
8425112010	체인블록	0	0
8425112090	기타	0	0
8425190000	기타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19000	기타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25399000	기타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8426190000	기타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8426499000	기타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0
8426999000	기타	0	0
8427101010	신품	8	0
8427101020	중고품	8	0
8427102010	신품	8	0
8427102020	중고품	8	0
8427201011	신품	8	0
8427201012	중고품	8	0
8427201021	신품	8	0
8427201022	중고품	8	0
8427209000	기타	8	0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8	0
8427909000	기타	8	0
8428101000	리프트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0	0
8428332000	컨베이어	0	0
8428390000	기타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8428909000	기타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0
8429190000	기타	0	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0
8429511011	신품	0	0
8429511012	중고품	0	0
8429511021	신품	0	0
8429511022	중고품	0	0
8429511031	신품	0	0
8429511032	중고품	0	0
8429511091	신품	0	0
8429511092	중고품	0	0
8429519000	기타	0	0
8429521011	신품	0	0
8429521012	중고품	0	0
8429521021	신품	0	0
8429521022	중고품	0	0
8429521090	기타	0	0
8429529000	기타	0	0
8429590000	기타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0
8430390000	기타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8430499000	기타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8430690000	기타	0	0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0	0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8	0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8431390000	기타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0
8431419000	기타	0	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0

8431499000	기타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8432299000	기타	0	0
8432310000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0	0
8432391000	파종기	0	0
8432392000	식부기(植付機)·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다)	0	0
8432410000	퇴비 살포기	0	0
8432420000	비료 살포기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8432909000	기타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33190000	기타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8433590000	기타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8433609090	기타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8433909000	기타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8434209000	기타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8434909000	기타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8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8	0
8435109000	기타	8	0
8435900000	부분품	8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8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8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8	0
8436109000	기타	8	0
8436211000	부란기	8	0
8436219000	기타	8	0
8436290000	기타	8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8	0
8436990000	기타	8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8	0
8437109000	기타	8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8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8	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8	0
8437909000	기타	8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8	0
8438109000	기타	8	0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8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8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8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8	0
8438509000	기타	8	0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8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8	0
8438809000	기타	8	0
8438900000	부분품	8	0
8439101000	쇄목기	8	0
8439102000	절단기	8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8	0
8439109000	기타	8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8	0
8439202000	초지기	8	0
8439209000	기타	8	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8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8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8	0
8439309000	기타	8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8	0
8439990000	기타	8	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8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8	0

8440109000	기타	8	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8	0
8440909000	기타	8	0
8441100000	절단기	8	0
8441201000	종이백 · 봉지 제조용 기계	8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8	0
8441300000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 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8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 용 기계	8	0
8441801000	종이 · 판지의 트리밍기	8	0
8441809000	기타	8	0
8441900000	부분품	8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0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0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0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8442309000	기타	0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 장치의 것	0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 장치의 것	0	0
8442409000	기타	0	0
8442500000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 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 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0	0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하 다]	8	0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 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 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8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 은 제외한다]	8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 쇄용은 제외한다]	8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8	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8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8	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룸 등의 재 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 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8	0
8443199000	기타	8	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11090	기타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8443321090	기타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25090	기타	0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0
8443391090	기타	0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8443393020	밀착식	0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0	0
8443399000	기타	0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0	0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0	0
8443911090	기타	0	0
8443919000	기타	0	0
8443991000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의 것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8443994090	기타	0	0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	0	0
8443999000	기타	0	0
8444001000	방사(紡絲)기	5	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5	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5	0
8444004000	절단기	5	0
8444009000	기타	5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5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5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5	0
8445191000	혼타면기	5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5	0
8445193000	조면기	8	0
8445199000	기타	5	0
8445201010	정방기	5	0
8445201090	기타	5	0
8445202000	모방용	5	0
8445203000	견방용	5	0
8445209000	기타	5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5	0
8445302000	방적사용	5	0
8445309000	기타	5	0
8445401000	콘 와인더	5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5	0
8445409000	기타	5	0
8445901000	정경기	8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8	0
8445903000	통경기	8	0
8445904000	연경기	8	0
8445909000	기타	8	0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8	0
8446211000	면직기	8	0
8446213000	견직기	8	0
8446219000	기타	8	0
8446290000	기타	8	0
8446301010	면직기	8	0
8446301020	견직기	8	0
8446301030	타올직기	8	0
8446301090	기타	8	0
8446302010	면직기	8	0
8446302020	견직기	8	0
8446302030	타올직기	8	0
8446302090	기타	8	0
8446303010	면직기	8	0
8446303020	견직기	8	0
8446303030	타올직기	8	0
8446303090	기타	8	0

8446309010	면직기	8	0
8446309020	견직기	8	0
8446309030	타올직기	8	0
8446309090	기타	8	0
8447111000	양말편기	8	0
8447119000	기타	8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0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8	0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8	0
8447201090	기타	8	0
8447202010	랏셀기	8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8	0
8447202090	기타	8	0
8447209000	기타	8	0
8447901000	레이스기	8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8	0
8447902090	기타	8	0
8447903000	결망기	8	0
8447909000	기타	8	0
8448111000	도비(dobby)기	8	0
8448112000	자카드기	8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8	0
8448119000	기타	8	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8	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5	0
8448199090	기타	8	0
8448201000	방사 니플	5	0
8448209000	기타	5	0
8448310000	침포	8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넷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5	0
8448329000	기타	8	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5	0
8448339010	스핀들	8	0
8448339020	스피닝링	8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8	0
8448391000	경사빔	8	0
8448399000	기타	8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8	0
8448491000	셔틀	8	0
8448499000	기타	8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8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8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8	0
8448519000	기타	8	0
8448590000	기타	8	0
8449001000	기계	8	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8	0
8449009000	부분품	8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	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50190000	기타	8	0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8	0
8450900000	부분품	8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	0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	0
8451290000	기타	8	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8	0
8451309000	기타	8	0
8451401000	세척기	8	0
8451402000	표백기	8	0
8451403000	염색기	8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8	0
8451502000	절단기	8	0
8451509000	기타	8	0
8451801000	열처리기	8	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8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8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8	0
8451809020	도포기, 침투기	8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8	0
8451809040	패딩기	8	0
8451809090	기타	8	0
8451901000	드라이클리닝기의 것	8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8	0
8451909000	기타	8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8	0
8452101030	프리암식	8	0
8452101090	기타	8	0
8452102000	수동식	8	0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	8	0
8452219000	기타	8	0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	8	0
8452299000	기타	8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8	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8	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8	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8	0
8453102000	유피기계	8	0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8	0
845320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8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53900000	부분품	8	0
8454100000	전로	8	0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8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8	0
8454301090	기타	8	0
8454309000	기타	8	0
8454901000	전로의 것	8	0
8454909000	기타	8	0
8455100000	관 압연기	8	0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8	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8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8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8	0
8455309000	기타	8	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8	0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456119000	기타	8	0
845612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456129000	기타	8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8	0
8456301090	기타	8	0
8456309000	기타	8	0
8456400000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8	0
8456500000	워터제트 절단기	8	0
8456900000	기타	8	0
8457101000	수직형	8	0
8457102000	수평형	8	0
8457103000	문형	8	0
8457109000	기타	8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8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	0

84581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190000	기타	8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8	0
8458990000	기타	8	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8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8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8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8	0
8459299000	기타	8	0
84593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390000	기타	8	0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8	0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8	0
8459419000	기타	8	0
8459490000	기타	8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8	0
8459590000	기타	8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19000	기타	8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8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8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8	0
8459694000	프로파일 밀링머신	8	0
8459699000	기타	8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8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8	0
8460120000	수치제어식	8	0
8460190000	기타	8	0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0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0
8460241000	내면연삭기	8	0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49000	기타	8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8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8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8	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8	0
8460299000	기타	8	0
8460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0390000	기타	8	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8	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8	0
8460900000	기타	8	0
846120000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8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8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8	0
8461401090	기타	8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8	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8	0
8461900000	기타	8	0
8462101000	에어해머	8	0
8462109000	기타	8	0
84622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290000	기타	8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8	0
8462390000	기타	8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1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6249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8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8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8	0
8462991090	기타	8	0
8462999000	기타	8	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8	0
8463300000	선 가공기	8	0
8463901000	3D 프린터	8	0
8463909000	기타	8	0
8464100000	톱기계	8	0
8464201000	광학유리용 · 안경유리용	8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8	0

8464209000	기타	8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8	0
8464909000	기타	8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109000	기타	8	0
846520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209000	기타	8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19000	기타	8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29000	기타	8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39000	기타	8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49000	기타	8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59000	기타	8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69000	기타	8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8	0
8465999000	기타	8	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8	0
8466201000	항공기용	8	0
8466209000	기타	8	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8	0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8	0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8	0
846693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0	0
8466939000	기타	8	0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8	0
8467111000	착암기	8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8	0
8467113000	그라인더	8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8	0
8467115000	드릴	8	0
8467119000	기타	8	0
8467191000	착암기	8	0
8467199000	기타	8	0
8467210000	각종 드릴	8	0

8467220000	톱	8	0
8467290000	기타	8	0
8467810000	체인톱	8	0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0	0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0
8467891090	기타	8	0
8467899000	기타	8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8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8	0
8467990000	기타	8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8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8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8	0
8468209000	기타	8	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468900000	부분품	8	0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0	0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0	0
8470104010	제8472.90.9000호의 것	0	0
8470104090	기타	0	0
847021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0
8470290000	기타	0	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8470909000	기타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19000	기타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491090	기타	0	0
8471499000	기타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8471509000	기타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8471601090	기타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8471603090	기타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 롬)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8471702039	기타	0	0
8471702090	기타	0	0
8471709000	기타	0	0
8471801000	사운드카드	0	0
8471802000	비디오 카드	0	0
8471809000	기타	0	0
8471900000	기타	0	0
8472100000	등사기	0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8	0
8472302000	소인기	8	0
8472309000	기타	8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 입금기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0	0
8472901090	기타	0	0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0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0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0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0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0	0
8472909000	기타	8	0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 · 제8470.21호 ·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8473302000	주기관(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8473304090	기타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0
8473309090	기타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3409000	기타	0	0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473509000	기타	0	0
8474100000	선별기 · 기계식 체 · 분리기 · 세척기	0	0
8474201000	파쇄 · 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0	0
8474209000	기타	0	0
8474311000	배치 플랜트	0	0
8474319000	기타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8474329000	기타	0	0
8474390000	기타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 · 형입기와 성형기	0	0
8474809000	기타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 · 튜브 · 밸브 ·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8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8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8	0
8475299000	기타	8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8	0
8475902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0	0
8475909000	기타	8	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8	0
8476290000	기타	8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19000	기타	8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8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0	0
8476899000	기타	8	0
8476901000	화폐교환기의 것	0	0
8476909000	기타	8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8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8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8	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8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	0
8477591000	3D 프린터	8	0
8477599000	기타	8	0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8	0
8477900000	부분품	8	0
8478100000	기계류	8	0
8478900000	부분품	8	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0
8479109000	기타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 · 조제용 기계류	8	0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 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 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 의 기계	8	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8	0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 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8	0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0
8479509000	기타	8	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	8	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8	0
8479790000	기타	8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8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3	0
8479812090	기타	8	0
8479813000	권선기	8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8	0
8479819000	기타	8	0

8479821000	혼합기	5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5	0
8479823000	균질기	5	0
8479824000	교반기	5	0
8479829000	기타	5	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8479891090	기타	8	0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5
8479892090	기타	8	5
8479899010	프레스 · 압출기	5	0
8479899020	선박용 · 어업용 기기	8	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 튜블러리베팅(tubular reletting)기	8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8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8	0
8479899070	3D 프린터	8	0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8	0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8	0
8479899099	기타	5	0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8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8	0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	8	0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8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8	0
8479904000	제8479.7호의 것	8	0
847990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479905090	기타	5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8	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8	0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5	0
8479909050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의 것	5	0
8479909060	프레스 · 압출기의 것	5	0
8479909070	선박용 · 어업 기기의 것	8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8	0
8479909090	기타	5	0
8480100000	금속 구조용 주형틀	8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8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8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490000	기타	8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8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8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8	0
8480790000	기타	8	0
8481100000	감압밸브	8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8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8	0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8	0
8481400000	안전밸브	8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8	0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8	0
8481801090	기타	8	0
8481802000	탭 · 코크와 트랩	8	0
8481809000	기타	8	0
8481900000	부분품	8	0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0
8482109000	기타	8	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	0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	0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8482910000	볼 · 니들 · 롤러	8	0
8482990000	기타	8	0
8483101000	항공기용	3	0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8	0
8483109090	기타	8	0
8483201000	항공기용	3	0
8483209000	기타	8	0
8483301000	항공기용	3	0
8483309000	기타	8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3	0
8483401090	기타	3	0
8483409010	기어	8	0
8483409020	기어박스	8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8	0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	8	0
8483409049	기타	8	0
8483409090	기타	8	0
8483501000	항공기용	8	0

8483509000	기타	8	0
8483601000	항공기용	3	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5	0
8483609000	기타	8	0
8483901000	항공기용	3	0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5	0
8483909000	기타	8	0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8	0
8484109000	기타	8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	0
8484900000	기타	8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8486103011	레이저 작동식 절단기	0	0
8486103019	기타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103090	기타	0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104019	기타	0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세척하는 기기	0	0
8486104029	기타	0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유전식 노(爐)와 오븐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8486109000	기타	0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0
8486202290	기타	0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8486202390	기타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190	기타	0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8486205990	기타	0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0	0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8486206099	기타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8486208190	기타	0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208490	기타	0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0
8486209190	기타	0	0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8486209321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8486209329	기타	0	0
8486209390	기타	0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8486209900	기타	0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0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0	0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0	0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0	0
8486303049	기타	0	0
8486304010	연마기·광택기	0	0
8486304090	기타	0	0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0
8486305019	기타	0	0
8486305020	도포·현상기	0	0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0	0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0	0
8486305049	기타	0	0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0	0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0	0
8486305059	기타	0	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액정 디스펜서	0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0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0	0
8486306090	기타	0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	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0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봇	0	0
8486309090	기타	0	0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 ·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848640103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 · 현상 · 경화시키는 기계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0	0
8486401090	기타	0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 와이어접착기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 · 제거시키는 기계	0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8486402039	기타	0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 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0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 · 분리하는 기계	0	0
8486402070	사출식 · 압축식의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8486402091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금속가공 공작 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8486402092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금속가공 공작 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0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이나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0
8486402099	기타	0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세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0	0
8486403090	기타	0	0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1호, 제8486.10.3019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1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제8486.10.5030호의 것	0	0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제8486.10.4029호, 제8486.10.9000호의 것	0	0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1호, 제8486.20.6099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120호, 제8486.20.8410호, 제8486.20.842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1호, 제8486.20.9329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제8486.20.9600호의 것	0	0
8486902020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8490호, 제8486.20.9390호, 제8486.20.9900호의 것	0	0
8486903010	제8486.30.1000호, 제8486.30.2000호의 것	0	0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3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602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제8486.30.9090호의 것	0	0
8486903030	제8486.30.5019호, 제8486.30.5020호, 제8486.30.5051호, 제8486.30.5052호, 제8486.30.505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30호, 제8486.30.6090호의 것	0	0
8486903040	제8486.30.3042호, 제8486.30.5011호, 제8486.30.5041호, 제8486.30.5042호, 제8486.30.5049호의 것	0	0
8486904010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2094호, 제8486.40.2095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20호, 제8486.40.3090호의 것	0	0
8486904020	제8486.40.1040호,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3호, 제8486.40.2099호의 것	0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8	0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8	0

8487909010	오일 실링	8	0
8487909090	기타	8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8	0
8501103000	교류 · 직류 겸용 전동기	8	0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311090	기타	8	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341000	직류 전동기	8	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8	0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0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1639000	기타	8	0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131090	기타	8	0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8502203090	기타	8	0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0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8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8	0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5	0
8503002090	기타	5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8	0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8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8	0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	0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1090	기타	2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19	기타	2	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2099	기타	2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3090	기타	3.25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4090	기타	3.25	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5090	기타	3.25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8504409019	기타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409099	기타	3.25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1090	기타	0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2090	기타	0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8504509090	기타	0	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8504.40호 · 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04909000	기타	0	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8	0
8505119000	기타	8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8	0
8505199000	기타	8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8	0
850590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0	0
8505901090	기타	8	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 · 클램프 · 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8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8	0
8505909000	부분품	8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0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0
8506109000	기타	8	5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8	5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8	5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8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8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8	5
8506809000	기타	8	0
8506900000	부분품	8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8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8	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8	5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8	0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8	0
8507609000	기타	8	0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8	0
8507901000	격리판	8	0
8507909000	기타	8	0
8508111000	로봇형	8	0
8508119000	기타	8	0
8508192000	로봇형	8	0
8508199000	기타	8	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8	0
8508701000	제8508.11.9000호의 것	8	0
8508702000	제8508.19.9000호, 제8508.60.0000호의 것	8	0
8508703000	제8508.11.1000호, 제8508.19.2000호의 것	8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8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8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8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8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8	0
8509809000	기타	8	0
8509900000	부분품	8	0
8510100000	면도기	8	0
8510200000	이발기	8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8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8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8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8	0
8511101000	항공기용	3	0
8511109000	기타	8	0
8511201000	항공기용	3	0
8511209000	기타	8	0
8511301000	항공기용	3	0
8511309000	기타	8	0
8511401000	항공기용	3	0
8511409000	기타	8	0
8511501000	항공기용	3	0
8511509000	기타	8	0
8511801000	항공기용	3	0
8511809000	기타	8	0
8511901000	항공기용	3	0
8511909000	기타	8	0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109000	기타	8	0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201090	기타	8	0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2202090	기타	8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8	0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8	0
8512900000	부분품	8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8	0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3102090	기타	8	0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8513109090	기타	8	0
8513900000	부분품	8	0
8514101000	실험실용	8	0
8514102000	금속공업용	8	0
85141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109000	기타	5	0
8514201000	실험실용	8	0
8514202000	금속공업용	8	0
8514203000	식품공업용	8	0
8514209000	기타	5	0
851430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0	0
8514309000	기타	5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409000	기타	8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851490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0	0
8514909000	기타	5	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8	0
8515191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0	0
8515199000	기타	8	0
8515211010	로봇형	8	0
8515211090	기타	8	0
8515212010	로봇형	8	0
8515212090	기타	8	0
8515213010	로봇형	8	0
8515213090	기타	8	0
8515219010	로봇형	8	0
8515219090	기타	8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8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8	0
8515293000	버트 용접기기	8	0

8515299000	기타	8	0
8515311010	로봇형	8	0
8515311090	기타	8	0
8515319010	로봇형	8	0
8515319090	기타	8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8	0
8515399000	기타	8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8	0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8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0
8515809000	기타	8	0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8	0
8515901090	기타	8	0
8515902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기의 것	0	0
8515909000	기타	8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8	0
8516290000	기타	8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8	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8	0
8516330000	손 건조기	8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8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8	0
8516601000	전기오븐	8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8	0
8516609000	기타	8	0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8	0
8516720000	토스터	8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8	0
8516799000	기타	8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8	0
8516900000	부분품	8	0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1090	기타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2090	기타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3090	기타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4090	기타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8517129090	기타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8517189000	기타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8517619000	기타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2090	기타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8517623190	기타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8517623290	기타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8517623390	기타	0	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	0
8517623420	코덱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8517623490	기타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0
8517623590	기타	0	0
8517623900	기타	0	0
8517624010	키-폰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4090	기타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8517626039	기타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0
8517626090	기타	0	0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629000	기타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0	0
8517691211	휴대용 무선통신기	0	0
8517691219	기타	0	0
8517691290	기타	0	0
8517691900	기타	0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8517699000	기타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8517701022	프레임	0	0
8517701023	디스플레이 모듈	0	0
8517701029	기타	0	0
8517701090	기타	0	0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2	사선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8517703029	기타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8517703039	기타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8517703049	기타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8517703061	디스플레이 모듈	0	0
8517703069	기타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8517703090	기타	0	0
8517704011	호출용 · 경보용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17704019	기타	0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8517704090	기타	0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4	0
8518109090	기타	4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299000	기타	4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8518309000	기타	4	15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2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0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909000	기타	0	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8	0
8519309000	기타	8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9812210	자동차용	0	0
8519812220	휴대용(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0	0
8519812290	기타	0	0
8519812310	자동차용	0	0
8519812320	휴대용	0	0
8519812390	기타	0	0
8519812900	기타	0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9814111	자동차용	0	0
8519814112	휴대용	0	0
8519814119	기타	0	0
8519814190	기타	0	0
8519814200	기타(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0	0
8519814300	기타	0	0
8519815020	디스크형	0	0
8519815030	카세트형	0	0
8519815090	기타	0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19891000	그 밖의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0	0
8521901000	디스크형	2	0
8521909000	기타	2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8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0	0

8522901090	기타	0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0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스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2909090	기타	0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523291200	마그네틱 디스크	0	0
8523291900	기타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19	기타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29	기타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139	기타	0	0
85232922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22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8523292239	기타	0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292919	기타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2999	기타	0	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1019	기타	0	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	0
8523491031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1039	기타	0	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499019	기타	0	0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85234990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499099	기타	0	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12190	기타	0	0
8523512920	명령 · 데이터 · 음성 ·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12990	기타	0	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0	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0	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592190	기타	0	0
8523592920	명령 · 데이터 · 음성 ·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592990	기타	0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0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8523802290	기타	0	0
8523802920	명령 · 데이터 · 음성 ·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3802990	기타	0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8525502000	텔레비전용	0	0
8525509000	기타	0	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0
8525609000	기타	0	0
8525801010	녹화기용	0	0
8525801020	모니터용	0	0
8525801090	기타	0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8525802090	기타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8526101000	항공기용	2.5	0
8526109000	기타	2.5	0
8526911010	항공기용	3.25	0
8526911090	기타	3.25	0
8526912010	항공기용	3.25	0
8526912090	기타	3.25	0
8526913010	항공기용	2	0

8526913020	자동차용	2	0
8526913090	기타	2	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2	0
8526919010	항공기용	3.25	0
8526919020	자동차용	3.25	0
8526919090	기타	3.25	15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5	15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0
8527131000	카세트형	0	0
8527132000	디스크형	0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0
8527139000	기타	0	0
8527190000	기타	0	0
8527211000	카세트형	8	0
852721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0
8527212090	기타	8	0
852721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0
8527213090	기타	8	0
852721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4	0
8527219090	기타	8	0
8527290000	기타	0	0
8527911010	카세트형	0	0
8527911020	디스크형	0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0
8527911090	기타	0	0
8527919000	기타	0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0
8527990000	기타	0	0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0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0
8528491090	기타	0	0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0	0
8528492090	기타	0	0
8528521000	액정모니터	0	0
8528529000	기타	0	0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0
8528591090	기타	8	0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8	0
8528592090	기타	8	0
85286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0

8528690000	기타	8	0
8528711000	비디오 튜너	0	0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0	0
8528712090	기타	0	0
8528719000	기타	0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5010	아날로그의 것	8	0
8528725020	디지털의 것	8	0
8528729000	기타	8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8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8	0
8528739000	기타	8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2.5	15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용	3.25	15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3.25	0
8529109290	기타	3.25	0
8529109300	무선전화용 ·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8529109900	기타	3.25	15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0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 ·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0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 ·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0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0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0	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0	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0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0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0	0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0	0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8	15
8529909649	기타	0	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0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8529909921	디스플레이 모듈	0	0
8529909929	기타	0	0

8529909990	기타	0	0
8530101010	지상장치용	8	0
8530101090	기타	8	0
8530109000	기타	8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8	0
8530900000	부분품	8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8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8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8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8	0
8531105000	사이렌	8	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8	0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8531802000	도어벨 · 차임 · 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8	0
8531809000	기타	0	0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0	0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0	0
8531909000	기타	0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 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8532290000	기타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8532309000	기타	0	0
8532901000	고정식	0	0
8532902000	가변식	0	0
8532909000	기타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 형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2000	서미스터	0	0
8533219000	기타	0	0
8533292000	서미스터	0	0
8533299000	기타	0	0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00	기타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8533409000	기타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8533909000	그 밖의 것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8534009000	기타	0	0
8535100000	퓨즈	8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8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8	0
853540000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8	0
8535901000	커넥터	8	0
8535902000	터미널	8	0
8535909000	기타	8	0
8536101000	관형	8	0
8536109000	기타	8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8	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0	0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8	0
8536490000	기타	8	0
8536501000	회전형	3.25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3.25	0
8536503000	마이크로형	3.25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3.25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9090	기타	3.25	0
8536610000	램프홀더	8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 인쇄회로용의 것	0	0
8536699000	기타	8	0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0
8536702000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8	0
8536703010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703090	기타	8	0
8536901000	접속함	0	0
8536902000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8	0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9090	기타	0	0
8537101000	배전반	8	0
8537102010	수치 제어반	8	0
8537102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8	0
8537102090	기타	8	0
8537103000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0	0
8537109000	기타	8	0
8537201000	배전반	8	0
8537202000	제어반	8	0
8537209000	기타	8	0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0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8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8	0
8538903000	계전기의 것	8	0
8538904000	제어반의 것	8	0
8538909000	기타	8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8	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8	0
8539221000	백열램프	8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8	0
8539223000	빔 램프	8	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8	0
8539229000	기타	8	0
8539290000	기타	8	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8	0
8539321000	수은램프	8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8	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8	0
853939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0	0
8539391090	기타	8	0
8539399000	기타	8	0
8539410000	아크램프	8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8539491090	기타	8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8	0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8	0
8539909000	기타	8	0
8540110000	천연색	8	0
8540120000	단색	8	0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8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8	0
8540601000	천연색	8	0
8540609000	기타	8	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8	0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8	0
8540799000	기타	8	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8	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8	0
8540892000	방전관	8	0
8540899000	기타	8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8	0
8540912000	전자총	8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8	0
8540919000	기타	8	0
8540990000	기타	8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109000	기타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19000	기타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299000	기타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0
8541303000	다이랙(diac)	0	0
8541304000	트라이랙(triac)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8541402090	기타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8541409021	태양전지	0	0
8541409022	태양광모듈(태양전지가 모듈 또는 패널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0	0

8541409029	기타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8541409090	기타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8541509000	기타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8541609000	기타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8541909000	기타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1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1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1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1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1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14060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29호·제8430호·제8443.99호·제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14090	기타	0	0
8542321010	디램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8542321090	기타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2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2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2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2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2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2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24090	기타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3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3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3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3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3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3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34090	기타	0	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854239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9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9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9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9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39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394090	기타	0	0
854290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0	0
854290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0	0
854290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것	0	0
854290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90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90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90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 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90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854290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 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8542904090	기타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8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0	0
854330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 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0	0
8543309000	기타	8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8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8	0
8543702020	미용기기	8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8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8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8	0
8543702090	기타	8	0
8543703000	전자번역기 · 전자사전	0	0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	0
8543704090	기타	8	0
8543705000	유선전신용 ·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 · 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8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8	0
854370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0	0
854370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0	0
854370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 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 한다)	0	0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3709090	기타	8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0	0
8543909019	기타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 ·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 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3909090	기타	0	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8	0
8544119000	기타	8	0
8544190000	기타	8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	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1090	기타	8	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2090	기타	8	0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0
8544429090	기타	8	0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1090	기타	8	0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2090	기타	8	0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8	0
8544499090	기타	8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1090	기타	8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2090	기타	8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0
8544603090	기타	8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00	노(爐)용	5	0
8545190000	기타	5	0
8545200000	브러시	8	0
8545901000	탄소봉	8	0
8545902000	탄소난방필름	8	0
8545909000	기타	8	0
8546100000	유리로 만든 것	8	0
8546200000	도자제의 것	8	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8	0
8546909000	기타	8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8	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8	0
8547900000	기타	8	0
8548101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 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6.5	0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제7204.49호의 것	0	0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0	0
8548104000	소호 제7503.00호, 제7902.00호의 것	0	0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0	0
8548106000	소호 제8107.30호, 제8111.00호의 것	3	0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제8506.80호의 것	8	0
8548109000	기타	8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8902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8	0
8548902090	기타	8	0
8548909000	기타	8	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8602900000	기타	0	0
8603101000	객차	5	0
8603102000	화차	5	0
8603901000	객차	5	0
8603902000	화차	5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5	0
8604009000	기타	5	0
8605001000	객차	5	0
8605002000	수하물차	5	0
8605009000	기타	5	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6069100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8606990000	기타	0	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91000	차축	5	0
8607192000	차륜	5	0
8607193000	윤축(輪軸)	5	0
8607199000	기타	5	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0
8607290000	기타	5	5
8607301000	축	5	0
8607302000	연결장치	5	0
8607303000	완충장치	5	0
8607309000	기타	5	0
8607910000	기관차용	5	0
8607990000	기타	5	0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8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8	0
8608009000	부분품	8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0
8609009000	기타	0	0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8	0
8701201000	신차	8	0
8701202000	중고차	8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8701911010	신차	8	0
8701911020	중고차	8	0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0	0
8701919000	기타	8	0
8701921010	신차	8	0
8701921020	중고차	8	0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0	0
8701929000	기타	8	0
8701931010	신차	8	0
8701931020	중고차	8	0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0	0
8701939000	기타	8	0
8701941010	신차	8	0
8701941020	중고차	8	0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0	0
8701949000	기타	8	0
8701951010	신차	8	0
8701951020	중고차	8	0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0	0
8701959000	기타	8	0
8702101010	신차	10	0
8702101020	중고차	10	0
8702102010	신차	10	0
8702102020	중고차	10	0
8702103010	신차	10	0
8702103020	중고차	10	0
8702201000	신차	10	0
8702202000	중고차	10	0
8702301000	신차	10	0
8702302000	중고차	10	0

8702401000	신차	10	0
8702402000	중고차	10	0
8702901010	신차	10	0
8702901020	중고차	10	0
8702902010	신차	10	0
8702902020	중고차	10	0
8702903010	신차	10	0
8702903020	중고차	1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	8	0
8703102000	골프용차	8	0
8703109000	기타	8	0
8703217000	신차	8	0
8703218000	중고차	8	0
8703227000	신차	8	0
8703228000	중고차	8	0
8703231010	신차	8	0
8703231020	중고차	8	0
8703239010	신차	8	0
8703239020	중고차	8	0
8703241010	신차	8	0
8703241020	중고차	8	0
8703249010	신차	8	0
8703249020	중고차	8	0
8703317000	신차	8	0
8703318000	중고차	8	0
8703321010	신차	8	0
8703321020	중고차	8	0
8703329010	신차	8	0
8703329020	중고차	8	0
8703337000	신차	8	0
8703338000	중고차	8	0
8703401000	신차	8	0
8703402000	중고차	8	0
8703501000	신차	8	0
8703502000	중고차	8	0
8703601000	신차	8	0
8703602000	중고차	8	0
8703701000	신차	8	0
8703702000	중고차	8	0
8703801000	신차	8	0
8703802000	중고차	8	0
8703900000	기타	8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704211010	신차	10	0
8704211020	중고차	10	0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19020	탱크차	10	0
8704219090	기타	10	0
8704221011	신차	10	0
8704221012	중고차	10	0
8704221091	신차	10	0
8704221092	중고차	10	0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29020	탱크차	10	0
8704229090	기타	10	0
8704231010	신차	10	0
8704231020	중고차	10	0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239020	탱크차	10	0
8704239090	기타	10	0
8704311010	신차	10	0
8704311020	중고차	10	0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319020	탱크차	10	0
8704319090	기타	10	0
8704321010	신차	10	0
8704321020	중고차	10	0
870432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329020	탱크차	10	0
8704329090	기타	10	0
8704901010	신차	10	0
8704901020	중고차	10	0
8704909010	냉동차·냉장차	10	0
8704909020	탱크차	10	0
8704909090	기타	10	0
8705101000	신축붐식	8	0
8705102000	앵글식	8	0
8705109000	기타	8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8	0
8705300000	소방차	8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8	0
8705901090	기타	8	0
8705909010	구난차	8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8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8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8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8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8	0
8705909070	제설차	8	0
8705909090	기타	8	0
8706001000	제8701호의 것	8	0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8	0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8	0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8	0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8	0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8	0
8707901000	제8701호의 것	8	0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8	0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8	0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8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8	0
8708210000	안전벨트	8	0
8708290000	기타	8	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8	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8	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8	0
8708309000	기타	8	0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	5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	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8	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8	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8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8	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8	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 박스와 그 부분품	8	0
8708951000	에어백	8	0
8708959000	기타	8	0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8	0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8	0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8	0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8	0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8	0
8708999000	기타	8	0
8709110000	전기식의 것	8	0
8709190000	기타	8	0
8709900000	부분품	8	0

8710001000	전차	0	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102000	모페드	8	0
8711109000	기타	8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209000	기타	8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309000	기타	8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409000	기타	8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509000	기타	8	0
87116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609000	기타	8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8	0
8711909000	기타	8	0
8712001000	경기용	8	0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0
8712009090	기타	8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00	기타	0	0
8714101000	안장	8	0
8714109000	기타	8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0	0
8714911000	프레임	8	0
8714912000	포크	8	0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21000	휠 림	8	0
8714922000	스포크	8	0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0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8	0
8714941000	브레이크	8	0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50000	안장	8	0
8714961000	페달	8	0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0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0
8714990000	기타	8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5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8	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8	0
8716390000	기타	8	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	0
8716801000	손수레	8	0
8716802000	우마차	8	0
8716803000	썰매	8	0
8716809000	기타	8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8	0
8716909000	기타	8	0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8	0
8801009090	기타	0	0
8802111000	군용	0	0
8802119000	기타	0	0
8802121000	군용	0	0
8802129000	기타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209000	기타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309000	기타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0
8802409000	기타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8802601090	기타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0
8803100000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0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0
8803909000	기타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achute)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achute)의 것	0	0
8805101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101090	기타	5	0
8805102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102090	기타	5	0
8805109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109090	기타	5	0
8805211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211090	기타	0	0
8805212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212090	기타	0	0
8805291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291090	기타	0	0
8805292010	군용 · 경찰용	0	0
8805292090	기타	0	0
8901100000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8901200000	탱커(tanker)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8902001090	기타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 · 저장선	0	0
8902002090	기타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8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8	0
8903999000	기타	8	0
8904001000	예인선	5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s craft)	5	0
8904009000	기타	5	0
8905100000	준설선	5	0
8905201000	시추대	5	0
8905202000	작업대	5	0
8905209000	기타	5	0
8905901000	조명선	5	0
8905902000	소방선	5	0

8905903000	기중기선	5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5	0
8905907000	시추선	5	0
8905908000	부선거(舢舨渠)	5	0
8905909000	기타	5	0
8906100000	군함	0	0
8906900000	기타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5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907902000	탱크	5	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5	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5	0
8907905000	부표	5	0
8907906000	수로부표	5	0
8907909000	기타	5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8908009000	기타	0	0
9001101000	광섬유	8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8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8	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8	0
9001401000	시력 교정용	8	0
9001409000	기타	8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8	0
9001509000	기타	8	0
9001901000	프리즘	0	0
9001902000	반사경	0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0	0
9001909000	기타	0	0
9002111000	사진기용	8	0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8	0
9002119020	영사기용	8	0
9002119090	기타	8	0
9002191000	현미경용	0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0	0
9002199000	기타	0	0
9002201000	사진기용	0	0
9002209000	기타	0	0
9002901000	사진기용	0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9002909090	기타	0	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3199000	기타	8	0
9003900000	부분품	8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109000	기타	8	0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8	0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8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8	0
9004909090	기타	8	0
9005100000	쌍안경	8	0
9005801000	단안경	8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8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8	0
9005802090	기타	8	0
9005809000	기타	8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8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8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8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8	0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8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8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8	0
9006409000	기타	8	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19000	기타	8	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29000	기타	8	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8	0
9006539090	기타	8	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8	0
9006599000	기타	8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0
9006699000	기타	8	0
9006910000	카메라용	8	0
9006990000	기타	8	0
9007100000	촬영기	8	0
900720100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8	0
9007209000	기타	8	0
9007910000	촬영기용	8	0
9007920000	영사기용	8	0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 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8	0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8	0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하 다)	8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	8	0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8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0109090	기타	8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9010509000	기타	0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0	0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0	0
9010901090	기타	0	0
9010902000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 용은 제외한다)	0	0
9010909000	기타	8	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 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109000	기타	0	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 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9011201090	기타	8	0
9011209000	기타	8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0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0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0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0	0
9011809000	기타	0	0
9011901000	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	0	0
9011909000	기타	0	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 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0
9012101090	기타	0	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9012901000	제9012.10.1010호의 것	0	0
9012909000	기타	0	0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0
9013109000	기타	8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 한다]	0	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140	모니터용	8	0

9013801190	기타	8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8	0
9013801990	기타	8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8	0
9013803000	도어아이	8	0
9013809000	기타	5	0
9013901000	제9013.80.1120호, 제9013.80.1920호의 것	0	0
901390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8	0
9013909000	기타	0	0
9014101010	항공기용	0	0
9014101090	기타	0	0
9014102010	항공기용	0	0
9014102090	기타	0	0
9014109000	기타	0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0
9014901000	항공기용	0	0
9014909000	기타	0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0	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	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8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0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0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0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0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	0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0	0
9015809000	기타	0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6001000	직시식	8	0
9016002000	전자식	8	0
9016008000	기타	8	0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7101000	플로터	0	0
9017109000	기타	8	0
9017201010	플로터	0	0
9017201090	기타	8	0
9017202010	플로터	0	0
9017202090	기타	8	0
9017203000	계산용구	8	0
9017209000	기타	8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8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8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8	0
9017309000	기타	8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8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809090	기타	8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9017909090	기타	8	0
9018111000	심전계	0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0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0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8	0
9018191000	뇌파계	0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0	5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0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0	0
9018198000	기타	0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0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0
9018321000	주사침	8	0
9018322000	봉합침	8	0
9018329000	기타	8	0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8	0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8	0
9018398000	기타	8	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8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8	5
9018492000	치과용 유닛	8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8	0
9018498000	기타	8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9018501090	기타	0	0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8901000	임신진단기	8	0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0
9018902090	기타	8	0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8	0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8	0
9018906000	전기신경자극기	0	0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8	5
9018908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8	0
9018908090	기타	8	0
9018909080	기타	0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9019208000	기타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8	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8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9021210000	의치	0	0
9021290000	기타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9021390000	기타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인플·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9021908000	기타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0	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0	0
9022141090	기타	0	0

9022142000	수의과용	0	0
9022191000	물리·화학시험용	0	0
9022192000	공업용	0	0
9022199000	기타	0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0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0	0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0	0
9022211090	기타	0	0
9022212000	수의과용	0	0
9022291000	물리·화학시험용	0	0
9022292000	공업용	0	0
9022299000	기타	0	0
9022300000	엑스선관	0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8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8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8	0
9022901090	기타	8	0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0	0
9022909090	기타	8	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0	0
9023009000	기타	0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0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0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0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0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0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0	0
9024109000	기타	0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0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0	0
9024801090	기타	0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0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0	0
9024809090	기타	0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 지에 상관없다)	0	0
9024909000	기타	0	0
9025111000	의료용·수의과용 온도계	0	0
9025119000	기타	8	5
9025191000	온도계	0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0	0
9025192090	기타	0	0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0	0
902580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8	0
9025803090	기타	8	0
9025809000	기타	8	0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6101000	유량계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9026109000	기타	0	0
9026201110	액체형	0	0
9026201120	금속형	0	0
9026201190	기타	0	0
9026201900	기타	0	0
9026209000	기타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9026809000	기타	0	0
9026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9027504000	조도계	0	0
9027509000	기타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	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9027802050	노출계	0	0
9027802090	기타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0	0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0	0
9027909099	기타	0	0
9028101010	디지털식	8	0
9028101090	기타	8	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201010	디지털식	8	0
9028201090	기타	8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8	0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2.25	0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2.25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2.25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2.25	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8	0
9029102000	생산량계	8	0
9029103000	택시미터	8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8	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8	0
9029109000	기타	8	0
9029201010	시계식	8	0
9029201090	기타	8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8	0
9029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8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0	0
9030201090	기타	0	0
9030202000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0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0
9030331000	전압계	0	0
9030332000	전류계	0	0
9030333000	회로계	0	0
9030334000	저항계	8	0
9030335000	검류계	0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0	0
9030339000	기타	8	0
9030391000	전압계	0	0
9030392000	전류계	0	0
9030393000	회로계	0	0
9030394000	저항계	0	0
9030395000	검류계	0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0	0
9030399000	기타	0	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0
9030409000	기타	0	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30890000	기타	0	0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0	0
9030909000	기타	0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0	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8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0	0
9031419000	기타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0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0	0
9031493000	포시미터	0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0	0
9031494090	기타	0	0
9031499000	기타	0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0	0
9031802000	로드셀	0	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0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0	0
9031809030	면적계	0	0
9031809040	구면계	0	0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0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0	0
9031809070	흙·균열 등 측정기	0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0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0
9031809099	기타	0	0
9031901010	소호 제9031.41호의 것	0	0
9031901090	그 밖의 것	0	0
9031909000	기타	0	0
9032101010	냉장고용	8	0
9032101020	항공기용	5	0
9032101090	기타	8	0
9032102000	고정식	8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0	0
9032811010	항공기용	0	0
9032811090	기타	0	0
9032812010	항공기용	0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9032812099	기타	0	0
9032819010	항공기용	0	0
9032819090	기타	0	0
9032891010	항공기용	5	0

9032891090	기타	8	0
9032892010	항공기용	5	0
9032892090	기타	8	0
9032893010	항공기용	5	0
9032893090	기타	8	0
9032894010	항공기용	5	0
9032894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3	0
9032894099	기타	8	0
9032899010	항공기용	5	0
9032899090	기타	5	0
9032901000	항공기용	5	0
9032909000	기타	5	0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한다)	5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8	0
9101199000	기타	8	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8	0
9101290000	기타	8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1990000	기타	8	0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1901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02119090	기타	8	0
910212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8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29090	기타	8	0
9102191000	батери·축전지 구동식	8	0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8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199090	기타	8	0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19000	기타	8	0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 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02299000	기타	8	0
9102911000	스톱워치	8	0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919010	бат데리 · 축전지 구동식	8	0
9102919090	기타	8	0
9102991000	스톱워치	8	0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8	0
9102999000	기타	8	0
9103100000	전기구동식	8	0
9103900000	기타	8	0
9104001000	차량용	8	0
9104002000	항공기용	8	0
9104004000	선박용	8	0
9104009000	기타	8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190000	기타	8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290000	기타	8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8	0
9105990000	기타	8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 (time-recorder)	8	0
9106902000	타이머	8	0
9106909000	기타	8	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8	0
9107009000	기타	8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0
9108190000	기타	5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5	0
9108900000	기타	5	0
9109100000	전기구동식	8	0
9109900000	기타	8	0
9110111000	бат데리 ·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19000	기타	8	0
9110121000	бат데리 · 축전지 구동식	8	0
9110129000	기타	8	0
911019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8	0
9110901000	бат데리 · 축전지 구동식	8	0
9110909000	기타	8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 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8	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8	0
9111909000	기타	8	0
9112200000	케이스	8	0
9112900000	부분품	8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113902000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8	0
9113909000	기타	8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8	0
9114300000	문자판	8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8	0
9114900000	기타	8	0
920110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8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8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8	0
9201909000	기타	8	0
9202101000	바이올린	8	0
9202102000	첼로	8	0
9202109000	기타	8	0
9202901000	기타(guitar)	8	0
9202902000	하프	8	0
9202903000	만도린	8	0
9202904000	밴조(banjo)	8	0
9202909000	기타	8	0
9205101000	트럼펫	8	0
9205102000	트럼본	8	0
9205109000	기타	8	0
9205901010	플루트	8	0
9205901020	클라리넷	8	0
9205901030	색소폰	8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8	0
9205901090	기타	8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8	0
9205902090	기타	8	0
9205903010	아코디언	8	0
9205903020	멜로디카	8	0
9205903090	기타	8	0
9205904000	하모니카	8	0
9205909000	기타	8	0
9206001000	북	8	0
9206002000	목금	8	0

9206003000	심벌	8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8	0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8	0
9206006000	탬버린	8	0
9206009000	기타	8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8	0
9207103000	피아노	8	0
9207109000	기타	8	0
9207901000	기타(guitar)	8	0
9207902000	아코디언	8	0
9207909000	기타	8	0
9208100000	뮤지컬 박스	8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8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8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8	0
9208904000	뮤지컬 소(musical saw)	8	0
9208909000	기타	8	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8	0
9209309000	기타	8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8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8	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 · 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8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8	0
9209999000	기타	8	0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0
9301109000	기타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9301902090	기타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0
9301904090	기타	0	0
9301909000	기타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9302001029	기타	0	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1090	기타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9302009029	기타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9302009090	기타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8	0
9303201011	펌프작동	8	0
9303201012	반자동	8	0
9303201019	기타	8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8	0
9303201090	기타	8	0
9303209011	펌프작동	8	0
9303209012	반자동	8	0
9303209019	기타	8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	0
9303209090	기타	8	0
9303301010	단발	8	0
9303301020	반자동	8	0
9303301090	기타	8	0
9303309010	단발	8	0
9303309020	반자동	8	0
9303309090	기타	8	0
9303900000	기타	8	0
9304001000	공기총	8	0
9304009000	기타	8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101030	총열	0	0
930510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101070	개머리판 · 손잡이 · 플레이트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9305101090	기타	0	0
9305109010	격발장치	8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8	0
9305109030	총열	8	0
9305109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8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8	0
9305109070	개머리판 · 손잡이 · 플레이트	8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8	0
9305109090	기타	8	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8	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8	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8	0
9305209090	기타	8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9305911030	총열	0	0
930591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0	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0	0
9305911090	기타	0	0
9305919000	기타	0	0
9305990000	기타	8	0
9306210000	탄약	0	0
9306290000	기타	0	0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 무통 도살기 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9306309000	기타	0	0
9306900000	기타	0	0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8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309000	기타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409000	기타	0	0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1599000	기타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19000	기타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699000	기타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19000	기타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9401799000	기타	0	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0
9401809000	기타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8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401909000	기타	8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9402101090	기타	0	0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0	0
9402109090	기타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9402908000	기타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9403201000	침대	0	0
9403209000	기타	0	0
9403301000	책상	0	0
9403309000	기타	0	0
9403401000	식탁	8	0
9403409000	기타	8	0
9403501000	침대	0	0
9403509000	기타	0	0
9403601010	문갑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9403601030	장롱	0	0
9403601090	기타	0	0
9403609010	문갑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9403609030	장롱	0	0
9403609090	기타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9403709000	기타	0	0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9403890000	기타	0	0
9403900000	부분품	8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8	5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 지에 상관없다)	8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8	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8	0
9404900000	기타	8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109000	기타	8	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8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209000	기타	8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3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309000	기타	8	0
9405401000	방폭형	8	0
9405402000	투광형	8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8	0
9405409000	기타	8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8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8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8	0
9405604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8	0
9405609000	기타	8	0
940591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19000	기타	8	0
940592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29000	기타	8	0
9405991000	상들리에용	8	0
9405999000	기타	8	0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8	E
940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406902000	철강으로 만든 것	8	0
940690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0
9406909000	기타	8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0	0
9503001800	기타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2190	기타	8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8	0
9503002990	기타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 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3419	기타	8	0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8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8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0
9503003499	기타	8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8	0
9503003600	퍼즐	0	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0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8	0
9503003919	기타	8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9504209000	기타	0	0
950430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0	0
9504309000	기타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504509000	기타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9504901040	레인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9504901090	기타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9504909090	기타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8	0
9505900000	기타	8	0
9506110000	스키	8	E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E
9506190000	기타	8	E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8	E
9506290000	기타	8	E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E
9506320000	골프공	8	E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8	E
9506399000	기타	8	E
9506401000	탁구대	8	E
9506402000	탁구라켓	8	E
9506403000	탁구공	8	E
9506409000	기타	8	E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8	E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8	E
9506599000	기타	8	E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8	E
9506621000	축구공	8	E
9506622000	농구공	8	E
9506623000	배구공	8	E
9506624000	핸드볼공	8	E
9506625000	미식축구용	8	E
9506629000	기타	8	E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8	E
9506692000	야구공	8	E
9506699000	기타	8	E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E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E
9506990000	기타	8	E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8	E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8	E
9507109000	기타	8	E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8	E
9507300000	낚시 릴	8	E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8	E
9507909000	기타	8	E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8	0
9508900000	기타	8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y)와 그 제품	8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0
9601901090	기타	8	0
9601902000	뿔로 된 것	8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9601909090	기타	8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8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8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 · 호박 · 해포석 · 응결한 호박 ·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8	0
9602009090	기타	8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 지에 상관없다)	8	0
9603210000	치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0
9603290000	기타	8	0
9603300000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8	0
9603400000	페인트용 · 디스템퍼(distemper)용 · 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8	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3900000	기타	8	0
96040000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8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8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8	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8	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8	0
9606299000	기타	8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8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199000	기타	8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8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0
9607209000	기타	8	0
9608100000	볼펜	8	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8	0
9608301000	만년필	8	0
9608309000	기타	8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8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8	0
9608402090	기타	8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8	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8911000	펜촉	8	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8	0
9608991000	부분품	8	0
9608999000	기타	8	0
9609101000	연필	8	0
9609102000	색연필	8	0
9609103000	크레용	8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09901000	크레용 · 오일파스텔	8	0
9609902000	파스텔	8	0
9609903010	필기용	8	0
9609903090	기타	8	0
9609909000	기타	8	0
9610001000	석판	8	0
9610002000	흑판	8	0
9610009000	기타	8	0
9611001000	스탬프	8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8	0
9611009000	기타	8	0
9612101000	타자기용	8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8	0
9612109000	기타	8	0
9612200000	잉크 패드	8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2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0
9613800000	그 밖의ライター	8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8	0
9613909000	기타	8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8	0
9614009000	기타	8	0
9615111000	빗	8	0
9615119000	기타	8	0

9615191000	빗	8	0
9615199000	기타	8	0
9615901000	머리핀	8	0
9615909000	기타	8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8	0
9616200000	화장용 분침과 패드	8	0
9617001000	보온병	8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8	0
9617008000	기타	8	0
9617009000	부분품	8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8	0
9618002000	자동 인형	8	0
9618009000	기타	8	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0
9619001090	기타	0	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8	0
9619003010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	13	0
9619003020	제6113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제6208.99호의 것	13	0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0	0
9619009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6.5	0
9619009090	기타	6.5	0
962000000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10
9701101000	회화	0	0
9701102000	데생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9701900000	기타	0	0
9702001000	판화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9703001000	조각	0	0
9703002000	조상(彫像)	0	0
9704001000	우표	0	0
9704009000	기타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9706009000	기타	0	0

걸프협력회의 관세양허표

걸프협력 회의 HS 2022	품목명	기준세율 (2022 MFN 적용세율, %)	양허유형
01012110	- - - 아랍종	0	0
01012190	- - - 기타	0	0
01012910	- - - 스포츠용 말	0	0
01012920	- - - 조랑말	0	0
01012990	- - - 기타	0	0
01013000	- 당나귀	0	0
01019000	- 기타	0	0
01022100	- - 번식용	0	0
01022900	- - 기타	0	0
01023100	- - 번식용	0	0
01023900	- - 기타	0	0
01029000	- 기타	0	0
01031000	- 번식용	PROH	PROH
010391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PROH	PROH
01039200	-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PROH	PROH
01041010	- - - 번식용	0	0
01041090	- - - 기타	0	0
01042010	- - - 번식용	0	0
01042090	- - - 기타	0	0
01051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0	0
01051200	- - 칠면조	0	0
01051300	- - 오리	0	0
01051400	- - 거위	0	0
01051500	- - 기니아새	0	0
01059410	- - - 산란계	0	0
01059420	- - - 육계	0	0
01059430	- - - 암탉	0	0
01059490	- - - 기타	0	0
01059910	- - - 사육용 오리와 거위	0	0
01059920	- - - 칠면조	0	0
01059990	- - - 기타	0	0
01061100	- - 영장류	0	0
01061200	-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	0
01061310	- - - 번식용	0	0
01061320	- - - 대회용과 경주용	0	0
01061390	- - - 기타	0	0
01061400	- - 토끼	0	0
01061930	- - - 가젤과 사슴	0	0
01061940	- - - 개	0	0
01061950	- - - 여우·밍크 및 그 밖의 모피 동물	0	0
01061960	- - - 동물원용·전시회용 동물 및 과학 실험용과 연구실용으로 수입된 동물	0	0
01061990	- - - 기타	0	0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1063100	- - 맹금류	0	0

010632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0
01063300	- -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애(Dromaius novaehollandiae)]	0	0
01063910	- - - 사육용 및 야생의 비둘기 · 자고새 · 꿩 · 메추라기 · 도요새 · 사막꿩 · 야생 오리	0	0
01063920	- - - 관상용 조류	0	0
01063990	- - - 기타	0	0
01064100	- - 벌	0	0
01064900	- - 기타	0	0
01069000	- 기타	0	0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13000	- 뼈 없는 것	0	0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20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5	20
02023010	- - - 다진 것	5	E
02023090	- - - 기타	5	E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SpGo	SpGo
020312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pGo	SpGo
02031900	- - 기타	SpGo	SpGo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SpGo	SpGo
020322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pGo	SpGo
02032900	- - 기타	SpGo	SpGo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204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2042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2042300	- - 뼈 없는 것	0	0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2044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5	0
02044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5	E
02044310	- - - 다진 것	5	0
02044390	- - - 기타	5	0
0204501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2045012	- - - - 냉동한 것	5	E
0204502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2045022	- - - - 냉동한 것	5	20
0204503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2045032	- - - - 냉동한 것	5	TR
02050010	- - - 말고기	5	0
02050090	- - - 기타	SpGo	SpGo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2062100	- - 혀	5	0
02062200	- - 간	5	0
02062900	- - 기타	5	0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SpGo	SpGo
02064100	- - 간	SpGo	SpGo
02064900	- - 기타	SpGo	SpGo
02068010	- - - 면양이나 염소의 것	0	0
02068020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02068090	- - - 기타	5	0
02069011	- - - - 혀	5	0
02069012	- - - - 간	5	0
02069019	- - - - 기타	5	0
02069091	-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02069099	- - - - 기타	5	0
02071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1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13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14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24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25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26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2700	- - 절단육과 설육(脬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4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02074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4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4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4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5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5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5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5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5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02076000	- 기니아새의 것	5	TR
0208101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2081020	- - - 냉동한 것	5	0
02083000	- 영장류의 것	5	0
02084000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5	0
0208500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5	0
0208601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2086020	- - - 냉동한 것	0	0
0208902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0
02089022	- - - - 냉동한 것	5	0
02089031	-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5	0
02089032	- - - - 냉동한 것	5	0
02089091	- - - - 개구리 다리	5	0
02089099	- - - - 기타	5	0
02091000	- 돼지의 것	SpGo	SpGo
02099000	- 기타	5	0
021011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SpGo	SpGo
02101200	- - 복부살(삼겹살)과 이를 절단한 것	SpGo	SpGo
02101900	- - 기타	SpGo	SpGo
02102000	- 쇠고기	5	20
02109100	- - 영장류의 것	5	20

02109200	- - 고래 · 돌고래 · 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 · 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5	20
02109300	-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5	20
02109900	- - 기타	5	0
03011100	- - 민물의 것	0	0
03011900	- - 기타	0	0
03019100	-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0	0
03019200	- - 뱀장어[앙굴라(<i>Anguilla</i>)속]	0	0
03019300	-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 · 시리누스(<i>Cirrhinus</i>)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0	0
030194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i>Thunnus thynnus</i>)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i>Thunnus orientalis</i>)]	0	0
030195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i>Thunnus maccoyii</i>)]	0	0
03019900	- - 기타	0	0
03021100	-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0	0
030213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cha</i>) · 옹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옹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옹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옹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0	0
030214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0	0
03021900	- - 기타	0	0
03022100	- -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i>Reinhardtius hippoglossoides</i>)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i>Hippoglossus hippoglossus</i>)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i>Hippoglossus stenolepis</i>)]	0	0
03022200	-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i>Pleuronectes platessa</i>)]	0	0
03022300	- - 서대[솔레아(<i>Solea</i>)속]	0	0
030224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i>Psetta maxima</i>)]	0	0
03022900	- - 기타	0	0

03023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	0
03023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0
03023300	-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0	0
03023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0
03023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0
03023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3023910	- - - 백다랑어[터너스 텅글(Thunnus tungle)]	0	0
03023920	- - - 점다랑어[터너스 아비누스(Thunnus Avinus)]	0	0
03023990	- - - 기타	0	0
03024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30242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0	0
03024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0
03024410	- - - 동갈삼치[킹피쉬(Kingfish) · 소이티드 수아부스그 매크얼(soitted soabusg mackerel)]	0	0
03024420	- - - 줄무늬 고등어[트라커러스 인디쿠스(Trachurus indicus)]	0	0
03024490	- - - 기타	0	0
03024510	- - - 사출갈전갱이	0	0
03024520	- - - 잭 폼프렛(Jack pomfret)	0	0
03024590	- - - 기타	0	0
03024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0
03024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3024910	- - - 병어	0	0
03024990	- - - 기타	0	0
0302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3025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3025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3025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0	0
03025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30256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3025900	- - 기타	0	0
03027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0	0
03027200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0	0

03027300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0	0
03027400	-- 뱀장어[앙굴라(Anguilla)속]	0	0
03027900	-- 기타	0	0
03028100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0
03028200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0	0
03028300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0	0
03028400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0	0
03028500	-- 돔[스파리대(Sparidae)과] [(핀드-블랙 시브림(finned-black seabream) · 블래슈 시브림(blache seabream) · 바드 실버리 시브림(barred-silvery seabream) · 밴디드 시브림(banded seabream) · 레드 스트립트 시브림(red-striped seabream) 등]	0	0
03028910	--- 점박이 그루퍼(푸른점 그루퍼 · 대문바리 · 새들 그루퍼 등)	0	0
03028920	--- 앰프러(Emperor)	0	0
03028930	--- 붉은 돔[알레스마우디(Alesmaudi)]	0	0
03028940	--- 별도랑벤자리(silver grunt)	0	0
03028950	--- 송어[미드(Meed)와 비야(Biyah)]	0	0
03028960	--- 독가시치	0	0
03028970	--- 바라쿠다(barracuda)	0	0
03028980	--- 민어[시가니대(Siganidae)과]	0	0
03028990	--- 기타	0	0
03029100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0	0
03029200	-- 상어 지느러미	0	0
03029900	-- 기타	0	0
03031100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5	TR
03031200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5	10
03031300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10
03031400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15
03031900	-- 기타	5	E
03032300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E
03032400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E

03032500	-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피오(Cyprinus carpio)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5	E
03032600	- - 뱀장어[앙굴라(Anguilla)속]	5	0
03032900	- - 기타	5	E
03033100	- -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5	E
03033200	-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5	E
03033300	- - 서대[솔레아(Solea)속]	5	TR
03033400	-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5	0
03033900	- - 기타	5	TR
03034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5	10
03034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10
03034300	-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트)[카추워누스 펄라미스(Katsuwonus pelamis)]	5	TR
03034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5	10
03034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5	5
03034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5	5
03034910	- - - 백다랑어[터너스 텅글(Thunnus tungle)]	5	E
03034920	- - - 점다랑어[터너스 아비누스(Thunnus Avinus)]	5	E
03034990	- - - 기타	5	TR
03035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TR
03035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5	E
03035410	- - - 고등어[킹피쉬(Kingfish) · 소이티드 수아부스그 매크렐(soitted soabusg macherel)]	5	E
03035420	- - - 줄무늬 고등어	5	E
03035490	- - - 기타	5	E
03035510	- - - 사출갈전갱이(빅아이 · 블랙팁 · 가라지)	5	E
03035520	- - - 잭 폼프렛(Jack pomfret)	5	E
03035590	- - - 기타	5	TR
03035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5	E
03035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E
03035910	- - - 병어	5	E
03035990	- - - 기타	5	E
03036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E
030364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5	0
030365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5	0
030366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5	0

030367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5
030368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5	0
03036900	- - 기타	5	TR
0303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10
03038200	- - 가오리와 흉어[라지대(Rajidae)과]	5	0
0303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E
0303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5	E
03038910	- - - 점박이 그루퍼(푸른점 그루퍼 · 대문바리 · 새들 그루퍼 등)	5	E
03038920	- - - 엠프러(Emperor)	5	E
03038930	- - - 붉은 돔[알레스마우디(Alesmaudi)]	5	TR
03038940	- - - 실버리 그룬트(Silvery grunt)	5	E
03038950	- - - 송어[미드(Meed)와 비야(Biyah)]	5	E
03038960	- - - 독가시치	5	E
03038970	- - - 바라쿠다(Barracuda)	5	E
03038980	- - - 민어[시가니대(Siganidae)과]	5	E
03038991	- - 돔[스파리대(Sparidae)과] [(핀드-블랙 시브림(finned-black seabream) · 블래슈 시브림(blache seabream) · 바드 실버리 시브림(barred-silvery seabream) · 밴디드 시브림(banded seabream) · 레드 스트립트 시브림(red-stripped seabream) 등]	5	E
03038999	- - - 기타	5	E
03039100	-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5	0
03039200	- - 상어 지느러미	5	5
03039900	- - 기타	5	TR
0304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E
03043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E
03043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5	E
03043900	- - 기타	5	E
03044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10
03044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20
03044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5	0

030444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E
030445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E
030446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E
030447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0
03044800	- - 가오리와 흉어[라지대(Rajidae)과]	5	0
03044900	- - 기타	5	20
03045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E
03045200	- - 연어과	5	5
030453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E
03045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E
03045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5	E
03045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0
03045700	- - 가오리와 흉어[라지대(Rajidae)과]	5	0
03045910	- - - 점박이 그루퍼	5	E
03045920	- - - 엠프러(Emperor)	5	E
03045990	- - - 기타	5	E
03046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5	E
03046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5	E
03046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5	E
03046900	- - 기타	5	10
03047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TR
03047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5	0
03047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5	20
03047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 · 유르피키스(Urophycis)속]	5	10
03047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5	E
03047900	- - 기타	5	20

03048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i>Oncorhynchus nerka</i>)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i>Oncorhynchus gorbusha</i>) · 웅코링쿠스 케타(<i>Oncorhynchus keta</i>) · 웅코링쿠스 차비차(<i>Oncorhynchus tshawytscha</i>) · 웅코링쿠스 키수츠(<i>Oncorhynchus kisutch</i>) · 웅코링쿠스 마소(<i>Oncorhynchus masou</i>)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i>Oncorhynchus rhodurus</i>)],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i>Salmo salar</i>)],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i>Hucho hucho</i>)]	5	10
03048200	- -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웅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웅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웅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웅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5	0
03048300	- - 넙치류[플루로벡티대(<i>Pleuronectidae</i>)과 · 바디대(<i>Bothidae</i>)과 · 사이노글로시대(<i>Cynoglossidae</i>)과 · 솔레이대(<i>Soleidae</i>)과 · 스코프탈미대(<i>Scophthalmidae</i>)과 · 시타리대(<i>Citharidae</i>)과]	5	10
03048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5	E
03048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속]	5	E
030486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5	0
03048700	- - 다랑어[터너스(<i>Thunnus</i>)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i>Euthynnus (Katsuwonus) pelamis</i>)]	5	20
03048800	-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흉어[라지대(<i>Rajidae</i>)과]	5	0
03048910	- - - 그루퍼(<i>Grouper</i>)	5	E
03048920	- - - 엠프러(<i>Emperor</i>)	5	E
03048990	- - - 기타	5	E
030491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5	E
030492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i>Dissostichus</i>)속]	5	E
03049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속],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속 · 실루러스(<i>Silurus</i>)속 · 클라리아스(<i>Clarias</i>)속 · 익타루러스(<i>Ictalurus</i>)속],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속 · 카라시우스(<i>Carassius</i>)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속 · 시리누스(<i>Cirrhinus</i>)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속],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속]	5	E
030494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	5	10
03049500	-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i>Theragra chalcogramma</i>))는 제외한다]	5	E
03049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5	0
03049700	- - 가오리와 흉어[라지대(<i>Rajidae</i>)과]	5	0

03049900	- - 기타	5	E
03052000	- 어류의 간 · 어란(魚卵)(건조한 것 · 훈제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0305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 카피오(Cyprinus carpio)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TR
030532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E
03053910	- - - 상어	5	20
03053990	- - - 기타	5	20
03054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5	0
030542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0
030543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5	0
03054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i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E
03054900	- - 기타	5	E
0305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TR

030552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 · 실루러스(Silurus)속 · 클라리아스(Claras)속 · 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 · 카라시우스(Carassius)속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 · 시리누스(Cirrhinus)속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속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E
03055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5	20
030554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루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5	E
03055930	-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5	E
03055990	- - - 기타	5	20
03056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5	0
030562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5	0
030563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5	20

03056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귤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5	E
03056900	- - 기타	5	20
03057100	- - 상어 지느러미	5	E
03057200	-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5	0
03057900	- - 기타	5	20
03061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0	0
03061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0
03061400	- - 게	0	0
03061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0
030616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	0
03061700	- - 그 밖의 새우류	0	0
03061900	- - 기타	0	0
03063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0	0
03063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0
03063300	- - 게	0	0
03063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0
030635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0	0
03063600	- - 그 밖의 새우류	0	0
03063900	- - 기타	0	0
03069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0	0
03069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0	0
03069300	- - 게	0	0
03069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0
03069500	- - 새우류	0	0
03069900	- - 기타	0	0
03071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20
03071200	- - 냉동한 것	5	10
03071900	- - 기타	5	20
03072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72200	- - 냉동한 것	5	5
03072900	- - 기타	5	0
03073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73200	- - 냉동한 것	5	TR
03073900	- - 기타	5	20
030742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20

03074300	- - 냉동한 것	5	E
03074900	- - 기타	5	E
03075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E
03075200	- - 냉동한 것	5	E
03075900	- - 기타	5	TR
0307600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0
03077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77200	- - 냉동한 것	5	0
03077900	- - 기타	5	0
03078100	-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0
03078200	-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0
03078300	-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0
03078400	-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0
03078700	-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5	TR
03078800	-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5	0
03079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79200	- - 냉동한 것	5	E
03079900	- - 기타	5	TR
03081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81200	- - 냉동한 것	5	0
03081900	- - 기타	5	0
03082100	-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5	0
03082200	- - 냉동한 것	5	0
03082900	- - 기타	5	0
0308300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5	E
03089000	- 기타	5	0
03091000	- 어류의 것	5	0
03099010	- - - 갑각류의 것	0	0
03099090	- - - 기타	5	0
04011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04011090	- - - 기타	5	E
04012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04012090	- - - 기타	5	E
04014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04014090	- - - 기타	5	E
04015030	- - - 멸균우유(1리터를 초과하는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04015090	- - - 기타	5	E
04021011	- - - - 산업용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1012	- - - - 산업용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1019	- - - - 기타	5	E
04021091	- - -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1092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1099	----- 기타	5	E
04022110	----- 산업용	5	E
04022190	----- 기타	5	E
04022911	----- 밀크의 그 밖의 것(산업용으로서 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이고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2912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2919	----- 기타	5	E
04022991	----- 그 밖의 밀크(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2992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2999	----- 기타	5	E
04029110	----- 밀크(Milk)	5	E
04029120	----- 크림(Cream)	5	E
04029911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이상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9912	----- 밀크의 그 밖의 것(밀크 함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29920	----- 크림(Cream)	5	E
04032000	- 요구르트	5	E
04039010	- 라브나(Labnah)(탈수한 요거트)	5	E
04039020	- 라반(Laban)(응고 밀크)	5	E
04039090	- 기타	5	E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04049000	- 기타	5	E
04051000	- 버터	5	E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5	E
04059000	- 기타	5	E
0406100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5	E
0406200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5	E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5	E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5	E
04069010	- 신선한 발효 크림치즈	5	E
04069020	- 반경성(半硬性)치즈와 경성(硬性)치즈(예: 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5	E
04069030	- 반가공된 노란 치즈(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중량이 15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E
04069090	- 기타	5	E
040711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04071900	- - 기타	0	0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5	E
04072900	- - 기타	5	E
04079000	- 기타	5	E
04081100	- - 건조한 것	5	E
04081900	- - 기타	5	E
04089100	- - 건조한 것	5	E
04089900	- - 기타	5	E
04090000	천연꿀	5	E
04101000	- 곤충	5	0
04109010	- - - 거북이 알	5	0
04109020	- - - 살랑간(salangane) 동지	5	0
04109090	- - - 기타	5	0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5	0
05021000	- 돼지털 · 멧돼지털 · 오소리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SpGo	SpGo
05029000	- 기타	5	0
05040010	- - - 장	5	0
05040020	- - - 위	5	0
05040090	- - - 기타	5	0
05051000	- 숯과 충전재용 깃털	5	0
05059000	- 기타	5	TR
05061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5069000	- 기타	5	0
05071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PROH	PROH
05079010	- - - 귀갑(龜甲) · 고래수염과 그 털 ·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	5	0
05079020	- - - 뿔 · 사슴뿔 · 발굽 · 발톱 · 부리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	5	0
05080010	- - - 산호	5	0
05080020	- - - 흑산호	5	0
05080030	- - - 연체동물 · 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	5	TR
05080090	- - - 기타	5	0
05100010	- - - 용연향(ambergris) · 해리향(castoreum) · 시빗(civet)과 사향	5	TR
05100090	- - -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5	0
05111000	- 소의 정액	5	0
05119110	- -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란(魚卵)	5	10
05119120	- - -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5	0
05119190	- - - 기타	5	0
05119910	- - - 코치닐(Cochineal) 및 이와 유사한 곤충	5	0
05119920	- - - 잠종(蠶種)	5	0
05119930	- - - 개미 알	5	0
05119940	- - - 동물의 피 · 그 밖의 동물의 사체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육 · 설육(屑肉) · 사지(四肢)	5	0
05119950	- - - 건(腱)과 근(筋) · 이와 유사한 원피의 웨이스트(waste)	5	0
05119990	- - - 기타	5	0
0601100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0	0

06012000	- 인경(鱗莖) · 괴경(塊莖) · 괴근(塊根) · 구경(球莖) · 관근(冠根) ·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 치커리 뿌리	0	0
06021010	- - - 포도(포도 접붙임용 가지)	0	0
06021020	- - - 유향나무 껌꽃이용 가지	0	0
06021090	- - - 기타	0	0
06022010	- - - 팜나무 종묘(種苗)	0	0
06022020	- - - 코코넛 종묘(種苗)	0	0
06022090	- - - 기타	0	0
06023010	- - - 관상용 관목	5	0
06023090	- - - 기타	5	5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5	10
06029000	- 기타	5	0
06031100	- - 장미	5	5
06031200	- - 카네이션	5	0
06031300	- - 난	5	0
06031400	- - 국화	5	0
06031500	- - 백합[릴리움(Lilium)속]	5	0
06031900	- - 기타	5	0
06039000	- 기타	5	0
06042000	- 신선한 것	5	0
06049000	- 기타	5	0
07011000	- 종자	0	0
07019000	- 기타	0	0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7031011	- - - - 식품용 양파(녹색이나 건조한 외피)	0	0
07031012	- - - - 양파(파종용)	0	0
07031020	- - - 샬롯(shallot)	0	0
07032000	- 마늘	0	0
0703900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0	0
0704100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0	0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	0
07049000	- 기타	0	0
07051100	- - 결구(結球) 상추	0	0
07051900	- - 기타	0	0
070521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0
07052900	- - 기타	0	0
07061000	- 당근과 순무	0	0
07069000	- 기타	0	0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7082000	- 콩[비그나(Vigna)속 · 파세러스(Phaseolus)속]	0	0
07089010	- - - 콩	0	0
07089090	- - - 기타	0	0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0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	0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0
0709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0
07095200	-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0	0
07095300	-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0	0
07095400	-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	0

07095500	- - 송이버섯(<i>Tricholoma matsutake</i> , <i>Tricholoma magnivelare</i> , <i>Tricholoma anatolicum</i> , <i>Tricholoma dulciolens</i> , <i>Tricholoma caligatum</i>)	0	0
07095600	- - 송로(松露)[튜버(<i>Tuber</i>)속]	0	0
07095910	- - - 송로(松露)	0	0
07095990	- - - 기타	0	0
07096000	- 고추류[캡시컴(<i>Capsicum</i>)속]의 열매나 피멘타(<i>Pimenta</i>)속의 열매	0	0
07097000	- 시금치류	0	0
07099100	- - 글로브 아티초크(<i>globe artichoke</i>)	0	0
07099200	- - 올리브	0	0
07099300	- - 호박류[쿠쿠르비타(<i>Cucurbita</i>)속]	0	0
07099910	- - - 호박	0	0
07099920	- - - 오크라(<i>okra</i>)	0	0
07099930	- - - 파슬리	0	0
07099940	- - - 고수	0	0
07099990	- - - 기타	0	0
07101000	- 감자	5	TR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i>Pisum sativum</i>)]	5	20
07102200	- - 콩[비그나(<i>Vigna</i>)속 · 파세러스(<i>Phaseolus</i>)속]	5	TR
07102900	- - 기타	5	E
07103000	- 시금치류	5	TR
07104000	- 스위트콘	5	E
07108000	- 그 밖의 채소	5	10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5	E
07112000	- 올리브	5	0
07114000	- 오이류	5	0
07115100	- - 아가리쿠스(<i>Agaricus</i>)속의 버섯	5	E
07115900	- - 기타	5	0
07119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	TR
07122000	- 양파	5	20
07123100	- - 아가리쿠스(<i>Agaricus</i>)속의 버섯	5	0
071232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i>Auricularia</i>)속]	5	0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i>Tremella</i>)속]	5	0
07123400	- - 표고버섯(<i>Lentinus edodes</i>)	5	0
07123900	- - 기타	5	5
0712900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	20
07131000	- 완두[피섬 새티범(<i>Pisum sativum</i>)]	5	TR
07132000	- 이집트 콩[가반조스(<i>garbanzos</i>)]	5	20
07133110	- - - 파종용	0	0
07133120	- - - 식품용	5	5
07133210	- - - 파종용	0	0
07133220	- - - 식품용	5	5
07133310	- - - 파종용	0	0
07133320	- - - 식품용	5	5
07133410	- - - 파종용	5	20
07133420	- - - 식품용	5	20
07133510	- - - 파종용	5	20
07133520	- - - 식품용	5	20
07133900	- - 기타	5	20
07134000	- 렌즈콩	5	15

0713500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 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5	TR
0713600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5	20
07139010	- - - 녹두	5	20
07139090	- - - 기타	5	20
0714100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5	0
07142000	- 고구마	5	5
07143000	- 양[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	5	0
0714400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	5	0
0714500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	5	0
07149010	- - - 살렘(Salep)	5	0
07149020	- -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5	0
07149090	- - - 기타	5	5
08011100	- - 말린 것	5	20
080112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11900	- - 기타	5	20
0801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1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1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1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1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1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15
08025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5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6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20
08026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5	20
08027010	- - - 콜라 아쿠미나타[스테쿨리아 아쿠미나타(Sterculia acuminata)]	5	20
08027090	- - - 기타	5	20
08028000	- 빈랑자(areca nut)	5	20
08029100	-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15
08029200	- - 잣(껍데기를 벗긴 것)	5	15
08029910	- - - 녹색의 종자(바나크)	5	15
08029991	- -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	15
08029992	- - - - 껍데기를 벗긴 것	5	15
08031000	- 플랜틴(plantain)	0	0
08039000	- 기타	0	0
08041010	- - - 신선한 것	0	0
08041021	- - - - 압착한 것	0	0
08041029	- - - - 기타	0	0
08042010	- - - 신선한 것	0	0
08042020	- - - 건조한 것	0	0
08043000	- 파인애플	0	0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0	0
08045010	- - - 구아바(guava)	0	0
08045020	- - - 망고(mango)	0	0

08045030	- - - 망고스틴(mangosteen)	0	0
08051000	- 오렌지	0	0
08052100	-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0	0
08052200	- - 클레멘타인(clementine)	0	0
08052900	- - 기타	0	0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	0
08055010	- - - 신선한 것	0	0
08055020	- - - 건조한 것	0	0
08059000	- 기타	0	0
08061000	- 신선한 것	0	0
08062000	- 건조한 것	0	0
08071100	- - 수박	0	0
08071910	- - - 멜론(사향참외)	0	0
08071990	- - - 기타	0	0
08072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0	0
08081000	- 사과	0	0
08083000	- 배	0	0
08084000	- 마르멜로(quince)	0	0
08091000	- 살구	0	0
080921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0	0
08092900	- - 기타	0	0
0809300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	0
08094000	- 자두와 슬로(sloe)	0	0
08101000	- 초본류 딸기	0	0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0	0
08103000	-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0	0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	0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0	0
08106000	- 두리안(durian)	0	0
08107000	- 감	0	0
08109010	- - - 석류	0	0
08109020	- - - 서양모과	0	0
08109030	- - - 선인장무화과	0	0
08109090	- - - 기타	0	0
08111000	- 초본류 딸기	5	20
0811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5	20
08119000	- 기타	5	10
08121000	- 체리	5	0
08129000	- 기타	5	0
08131000	- 살구	5	20
08132000	- 프룬(prune)	5	20
08133000	- 사과	5	20
08134010	- - - 체리	5	20
08134020	- - - 타마린드(Tamarind)	5	20
08134030	- - - 배	5	20
08134090	- - - 기타	5	20
0813500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20

08140000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9011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9011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90121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90122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9019000	- 기타	0	0
09021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9022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9023010	--- 3그램 이하의 티백	0	0
09023090	--- 기타	0	0
09024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	0
09030000	마테(maté)	5	20
09041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41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42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42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15
0905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5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61100	-- 계피[신나모ם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5	20
09061900	-- 기타	5	20
0906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7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7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81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81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82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PROH	PROH
09082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PROH	PROH
09083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9083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9092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92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93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93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096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096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1011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1012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102000	- 사프란(saffron)	5	20
091030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5	20
091030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5	20
09109100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09109910	--- 호로파	5	20
09109920	--- 타임(thyme)과 월계수잎	5	20
09109930	--- 카레	5	20
09109990	--- 기타	5	20
10011100	-- 종자	0	0
10011900	-- 기타	0	0
10019100	-- 종자	0	0

10019910	- - - 일반 밀	0	0
10019920	- - - 얇은 밀	0	0
10019930	- - - 메슬린(meslin)	0	0
10021000	- 종자	5	0
10029000	- 기타	5	0
10031000	- 종자	0	0
10039000	- 기타	0	0
10041000	- 종자	0	0
10049010	- - - 회색(또는 흑색) 귀리	0	0
10049020	- - - 백색(또는 황색) 귀리	0	0
10051000	- 종자	0	0
10059010	- - - 황금색 옥수수	0	0
10059020	- - - 백색 옥수수	0	0
10059030	- - - 적갈색 옥수수	0	0
10059090	- - - 기타	0	0
10061000	- 벼	0	0
10062000	- 현미	0	0
1006300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0	0
10064000	- 쉼미(broken rice)	0	0
10071000	- 종자	5	0
10079000	- 기타	5	0
10081000	- 메밀	0	0
10082100	- - 종자	0	0
10082900	- - 기타	0	0
1008300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0	0
10084000	- 폰리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속]	0	0
1008500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0	0
10086000	- 라이밀(triticale)	0	0
10089000	- 그 밖의 곡물	0	0
11010010	- - - 밀가루	0	0
11010020	- - - 밀과 호밀을 혼합한 가루	0	0
11022000	- 옥수수가루	0	0
11029010	- - - 보릿가루	0	0
11029020	- - - 귀리가루	0	0
11029030	- - - 수수가루	0	0
11029040	- - - 메밀가루	0	0
11029050	- - - 밀리트(millet)가루	0	0
11029060	- - - 쌀가루	0	0
11029090	- - - 기타	0	0
11031110	- - - 부순 알곡	0	0
11031120	- - - 거친 가루	0	0
11031310	- - - 부순 알곡	0	0
11031320	- - - 거친 가루	0	0
11031910	- - - 보리로 만든 것	0	0
11031920	- - - 수수로 만든 것	0	0
11031930	- - - 호밀로 만든 것	0	0
11031940	- - - 메밀로 만든 것	0	0
1103195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0	0
11031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0	0
11032000	- 펠릿(pellet)	0	0
11041200	- - 귀리로 만든 것	5	20
11041910	- - - 밀로 만든 것	5	15
11041920	- - - 호밀로 만든 것	5	15

11041930	- - - 메일로 만든 것	5	15
1104194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5	15
11041950	- - - 수수로 만든 것	5	15
11041960	- - - 옥수수로 만든 것	5	15
11041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	15
11042200	- - 귀리로 만든 것	5	20
11042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20
11042910	- - - 밀로 만든 것	5	15
11042920	- - - 호밀로 만든 것	5	15
11042930	- - - 메일로 만든 것	5	15
11042940	- - - 밀리트(millet)로 만든 것	5	15
11042950	- - - 수수로 만든 것	5	15
11042990	- -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5	15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1051010	- - - 고운 가루	5	20
11051020	- - - 거친 가루	5	20
11051030	- - - 가루	5	20
11052000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5	20
11061011	- - - - 완두의 것	5	20
11061012	- - - - 이집트 콩의 것	5	20
11061013	- - - - 스트링 콩의 것	5	20
11061014	- - - - 흰 강낭콩의 것	5	20
11061015	- - - - 렌즈콩의 것	5	20
11061016	- - - - 강낭콩의 것	5	20
11061019	- - - - 기타	5	20
11061021	- - - - 완두의 것	5	20
11061022	- - - - 이집트 콩의 것	5	20
11061023	- - - - 스트링 콩의 것	5	20
11061024	- - - - 흰 강낭콩의 것	5	20
11061025	- - - - 렌즈콩의 것	5	20
11061026	- - - - 강낭콩의 것	5	20
11061029	- - - - 기타	5	20
11062010	- - - 사고(sago)의 고운 가루	5	15
11062020	- - - 사고(sago)의 거친 가루	5	15
11062031	- - - - 매니옥(manioc)	5	15
11062032	- - - - 칠파리	5	15
11062033	- - - - 살렘(salep)의 것	5	15
11062034	- - - - 돼지감자의 것	5	15
11062035	- - - - 고구마의 것	5	15
11062039	- - -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	5	15
11063010	- - - 밤의 것	5	20
11063020	- - - 아몬드의 것	5	20
11063030	- - - 대추야자의 것	5	20
11063040	- - - 바나나의 것	5	20
11063050	- - - 코코넛의 것	5	20
11063060	- - - 타마린드(tamarind)의 것	5	20
11063070	- - - 과일 껍질의 것	5	20
11063080	- - - 레몬의 것	5	20
11063090	- - - 기타	5	20
11071000	- 볶지 않은 것	5	0
11072000	- 볶은 것	5	5
11081100	- - 밀로 만든 것	5	5
110812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E

11081300	- - 감자로 만든 것	5	20
110814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5	20
11081910	- - - 쌀 전분	5	20
11081920	- - - 칠파리 전분	5	0
11081930	- - - 사고(sago) 전분	5	0
11081990	- - - 그 밖의 전분	5	20
11082000	- 이눌린(inulin)	5	20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5	0
12011000	- 종자	0	0
12019010	- - - 온전한 알갱이 모양의 것	0	0
12019020	- - - 부순 알갱이 모양의 것	0	0
12023000	- 종자	5	0
12024100	- -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5	0
12024200	- -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10
12030000	코프라(copra)	5	0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0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5	0
12059000	- 기타	5	0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5	0
1207100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5	0
12072100	- - 종자	5	0
12072900	- - 기타	5	0
12073000	- 피마자	5	0
12074000	- 참깨	5	0
12075000	- 겨자씨	5	5
1207600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5	0
12077000	- 멜론 종자	5	0
12079100	- - 양귀비씨	PROH	PROH
12079910	- - - 양귀비	PROH	PROH
12079920	- - - 삼씨	PROH	PROH
12079930	- - - 유황 종자	5	10
12079990	- - - 기타	5	0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5	15
12089000	- 기타	5	0
12091000	- 사탕무 종자	0	0
120921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120922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0	0
12092300	- - 페스큐(fescue) 종자	0	0
120924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120925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 (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12092910	- - - 루핀(lupine)	0	0
12092990	- - - 기타	0	0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12099110	- - - 토마토 종자	0	0
12099120	- - - 리크(leek) 종자	0	0
12099130	- - - 무 종자	0	0
12099140	- - - 당근 종자	0	0
12099150	- - - 오이 종자	0	0
12099160	- - - 호박(marrow) 종자	0	0
12099170	- - - 호박(pumpkin) 종자	0	0

12099180	- - - 가지 종자	0	0
12099191	- - - - 상추 종자	0	0
12099192	- - - - 크레스(cress) 종자	0	0
12099193	- - - - 고추 종자[캐시컴(Capsicum)속 또는 피멘타(Pimenta)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12099199	- - - - 기타	0	0
12099900	- - 기타	0	0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5	10
1210200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 모양 ·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5	10
12112000	- 인삼	5	15
12113000	- 코카잎	PROH	PROH
12114000	- 양귀비줄기	PROH	PROH
12115000	- 마황(麻黃)	5	15
12116000	- 아프리카 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 껍질	5	10
12119010	- - - 블랙 커민(black cumin)	5	15
12119020	- - - 검은 양귀비	PROH	PROH
12119030	- - - 침향나무의 칩과 조각 및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나무	5	15
12119040	- - - 민트	5	15
12119050	- - - 사막꽃	5	20
12119060	- - - 대마(Cannabis sativa)	PROH	PROH
12119070	- - - 치아 청결용 아라크 뿌리[수악(suwak)]	5	15
12119081	- - - - 조제된 씹는 인도 뽕[베텔(betel)](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것)	PROH	PROH
12119089	- - - - 그 밖의 인디언 베텔 나뭇잎(betel leaves)	5	15
12119091	- - - - 카트[카타 이둘리스(Catha edulis)]	PROH	PROH
12119099	- - - - 기타	5	15
12122100	- - 식용	5	15
12122900	- - 기타	5	15
12129100	- - 사탕무	5	15
12129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5	15
12129300	- - 사탕수수	5	20
12129400	- - 치커리(chicory) 뿌리	5	20
12129910	- - - 멜론 종자	5	15
12129940	- - - 호박류 종자	5	15
12129950	- - - 살구 · 복숭아 및 자두의 핵	5	15
12129990	- - - 기타	5	15
12130010	- - - 건초	0	0
12130090	- - - 기타	0	0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0
12149010	- - - 루핀(lupine)	0	0
12149020	- - - 베치(vetch)	0	0
12149090	- - - 기타	0	0
13012000	- 아라비아 검	5	20
13019010	- - - 트라가칸트(tragacanth)	5	20
13019020	- - - 매스틱(mastic)	5	20
13019030	- - - 안식향(benzoin)	5	20
13019040	- - - 아위(asafetida)	5	20
13019050	- - - 몰약(myrrh)	5	20
13019060	- - - 올리바눔(olibanum)	5	E
13019070	- - - 유향(乳香)(frankincense)	5	E
13019080	- - - 소합향(storax)	5	E

13019091	- - - - 검 수지	5	20
13019092	- - - - 올레오레진(oleoresin)	5	20
13019093	- - - - 발삼(balsam)	5	20
13019099	- - - - 기타	5	20
13021100	- - 아편	PROH	PROH
13021200	- - 감초로 만든 것	5	0
13021300	- - 홉(hop)으로 만든 것	5	0
13021400	-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5	0
13021910	- - - 하시시(hashish)	PROH	PROH
13021920	- - - 인삼 추출물(extract)	5	0
13021930	- - - 타히나(참깨 진액)	5	20
13021940	- - - 알로에	5	0
13021950	- - - 몰약(myrrh)	5	0
13021960	- - - 만닛트(mannite)	5	0
13021970	- - - 그 밖의 의약품 추출물(extract)	5	0
13021990	- - - 기타	5	0
1302200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5	0
13023100	- - 한천	5	10
13023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
13023900	- - 기타	5	10
14011000	- 대나무	5	0
14012000	- 등나무	5	0
14019010	- - - 버드나무 가지(osier)	5	0
14019020	- - - 갈대	5	0
14019090	- - - 기타	5	0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5	0
14049010	- - - 단추 · 구슬 · 목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조각용 종자 · 씨 · 껍질과 너트	5	0
14049020	- - - 헨나	5	0
14049090	- - - 기타	5	0
15011000	- 라드(lard)	SpGo	SpGo
15012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SpGo	SpGo
15019000	- 기타	5	0
15021000	- 텔로우(tallow)	5	0
15029000	- 기타	5	0
15030011	- - - - 돼지의 것	SpGo	SpGo
15030012	-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15030019	- - - - 기타	5	0
15030021	- - - - 돼지의 것	SpGo	SpGo
15030022	-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15030029	- - - - 기타	5	0
15030091	- - - - 돼지의 것	SpGo	SpGo
15030092	-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15030099	- - - - 기타	5	0
1504100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5	20
1504200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5	20
1504300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5	20
15050000	-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5	20
15060000	-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5	20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20
15079000	- 기타	5	E
15081000	- 조유(粗油)	5	20
15089000	- 기타	5	20
1509200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5	20
15093000	- 버진 올리브유	5	20
15094000	-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5	TR
15099000	- 기타	5	TR
15101000	-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5	TR
15109000	- 기타	5	10
15111000	- 조유(粗油)	5	20
15119000	- 기타	5	E
15121100	- - 조유(粗油)	5	20
15121900	- - 기타	5	E
151221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5	20
15122900	- - 기타	5	20
15131100	- - 조유(粗油)	5	20
15131900	- - 기타	5	20
15132100	- - 조유(粗油)	5	20
15132900	- - 기타	5	20
15141100	- - 조유(粗油)	5	TR
15141900	- - 기타	5	E
15149100	- - 조유(粗油)	5	20
15149900	- - 기타	5	20
15151100	- - 조유(粗油)	5	20
15151900	- - 기타	5	20
15152100	- - 조유(粗油)	5	E
15152900	- - 기타	5	E
1515300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5	20
15155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5	20
1515600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20
15159000	- 기타	5	15
1516100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E
1516200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E
1516300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5	E
15171010	- - - 동물성의 것	5	15
15171020	- - - 식물성의 것	5	E
15171090	- - - 기타	5	15
15179010	- - - 액상 마가린	5	E
15179090	- - - 기타	5	20
15180011	- - - - 돼지의 것	SpGo	SpGo
15180012	- - - - 당나귀의 것 · 노새의 것 · 버새의 것	SpGo	SpGo
15180019	- - - - 기타	5	10
15180020	- - - 식물성의 것	5	15
15180090	- - - 기타	5	10
15200010	- - -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	5	5
15200020	- - -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5	0
15211000	- 식물성 왁스	5	0
15219010	- - - 고래 왁스(가공하지 않은 것 · 압착한 것이나 정제한 것 · 착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15219020	- - - 밀랍(蜜蠟)(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15219040	- - - 그 밖의 곤충 왁스(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15220010	- - - 데그라스(질산 처리한 어유로 한정한다)	5	0

15220020	--- 지방성 물질 또는 동물성 · 식물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5	0
16010011	---- 돼지의 것	SpGo	SpGo
16010012	---- 동물 피의 것	SpGo	SpGo
16010020	---- 소의 것	5	20
16010030	---- 가금(家禽)류의 것	5	20
16010090	---- 기타	5	5
16021010	---- 영유아 · 어린이용 식품	5	TR
16021090	---- 기타	5	20
16022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5	20
16023100	- - 칠면조로 만든 것	5	20
160232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5	E
16023900	- - 기타	5	15
16024100	-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SpGo	SpGo
16024200	- - 어깨살과 그 절단육	SpGo	SpGo
16024900	-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SpGo	SpGo
16025010	---- 파스트라미(양념 · 건조 · 조제된 육)	5	20
16025090	---- 기타(캔 포장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6029010	---- 육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즉석식품으로 한정한다)	5	20
16029021	---- - 혀	5	15
16029029	---- - 기타[간(livers)은 제외한다]	5	15
16029031	---- - 돼지의 피 조제품	SpGo	SpGo
16029039	---- - 기타	SpGo	SpGo
16029090	---- 기타	5	20
16030010	---- 육 추출물(extract)과 육즙(meat juice)	5	5
16030020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5	5
16041100	- - 연어	5	5
16041200	- - 청어	5	0
16041300	- - 정어리 · 사르디넬라(Sardinella) · 브리스링(brisling) · 스프랫(sprat)	5	E
16041400	- - 다랑어 · 가다랑어 ·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	5	E
16041500	- - 고등어	5	5
16041600	- - 멸치	5	5
16041700	- - 뱀장어	5	20
16041800	- - 상어 지느러미	5	20
16041900	- - 기타	5	10
1604200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5	20
16043100	- - 캐비어	5	20
16043200	- - 캐비어 대용물	5	20
16051000	- 게	5	20
16052100	-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5	20
16052900	- - 기타	5	20
16053000	- 바닷가재	5	20
16054000	- 그 밖의 갑각류	5	20
16055100	- - 굴	5	20
16055200	-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5	20
16055300	- - 홍합	5	20
16055400	- - 갑오징어와 오징어	5	20
16055500	- - 문어	5	15
16055600	-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5	15

16055700	- - 전복	5	15
160558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5	20
16055900	- - 기타	5	15
16056100	- - 해삼	5	20
16056200	- - 성게	5	20
16056300	- - 해파리	5	0
16056900	- - 기타	5	15
17011210	- - - 공업 정제용	0	0
17011290	- - - 기타	0	0
17011310	- - - 공업 정제용	0	0
17011390	- - - 기타	0	0
17011410	- - - 공업 정제용	0	0
17011490	- - - 기타	0	0
1701910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0
17019911	- - - - 고순도 결정체	0	0
17019912	- - - - 큐브(cube) 또는 몰드(mould) 형태의 것	0	0
17019913	- - - - 가루	0	0
17019920	- - - 락 캔디(설탕 캔디)(착색되지도 향이 첨가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17019930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	0	0
17019990	- - - 기타	0	0
170211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5	20
17021900	- - 기타	5	20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5	20
17023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5	20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5	20
1702600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5	TR
17029010	- - - 맥아당(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TR
17029020	- - - 자당(화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17029030	- - - 전화당(轉化糖)(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TR
17029040	- - - 과당(화학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17029050	- - - 그 밖의 액체 당(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착색되지도 향이 첨가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17029060	- - - 캐러멜당	5	20
17029070	- - - 인조꿀	5	TR
17029090	- - - 기타	5	TR
1703100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5	0
17039000	- 기타	5	0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20
17049010	- - - 캔디류[드롭스(drops)와 봉봉(bonbon)]	5	15
17049020	- - - 토피(캐러멜), 터키쉬 딜라이트(Turkish delight), 누가(nougat)	5	15
17049030	- - - 아몬드 캔디·피스타치오 캔디·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10

17049040	--- 과실 젤리 · 과실 페이스트 · 감초 당 (과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5	15
17049050	--- 진해정(鎭咳錠, cough drops)	5	10
17049060	--- 할라와 타히니아(Halawa tahiniah)	5	10
17049070	--- 과일향을 함유한 캔디류 분말	5	15
17049080	--- 알코올을 함유한 백색 초콜릿	SpGo	SpGo
17049090	--- 기타	5	15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5	0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5	20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5	20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5	20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5	20
1806101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펄퐁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8061019	----- 기타	5	20
18061091	----- 그 밖의 코코아 가루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8061099	----- 기타	5	10
18062010	----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15
18062020	---- 코코아를 함유한 과자	5	15
1806203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펄퐁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18062039	----- 기타	5	15
18062090	---- 기타	5	15
18063110	---- 알코올을 함유한 것	SpGo	SpGo
18063190	---- 기타	5	15
18063210	---- 알코올을 함유한 것	SpGo	SpGo
18063290	---- 기타	5	TR
18069010	---- 코코아를 함유한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15
18069020	---- 코코아를 함유한 과자	5	TR
1806903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펄퐁이나 우유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18069039	----- 기타	5	15
18069091	----- 음료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그 밖의 제품	5	15
18069099	----- 기타	5	15
19011010	---- 밀크 또는 맥아 밀크(malted milk)를 기본 재료로 한 영유아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물로 조제된 것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19011020	---- 밀크 또는 맥아 밀크(malted milk)를 기본 재료로 한 영유아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물로 조제된 것으로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19011090	---- 기타	0	0
19012010	---- 과일 가루와 혼합한 곡물 가루(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	5	TR

19012020	－ － －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 · 지방 · 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가루반죽(dough)	5	20
19012090	－ － － 기타	5	20
19019011	－ － － － 라카우(racahout)(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19019012	－ － － － 라카우(racahout)(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19019	－ － － － 기타	5	5
19019021	－ － － － 맥아 밀크(malted milk)(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19022	－ － － － 맥아 밀크(malted milk)(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19029	－ － － － 기타	5	5
19019030	－ － －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15
19019091	－ － － － 기타(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19092	－ － － － 기타(음료 산업용으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19099	－ － － － 기타	5	15
19021110	－ － － 마카로니 · 버미셀리(vermicelli)와 이와 유사한 스파게티와 카넬로니(cannelloni)(조개 · 별 · 문자 모양 및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5	10
19021120	－ － － 파스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19021130	－ － － 감자 가루 칩(마카로니 모양의 것으로서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9021190	－ － － 기타	5	5
19021910	－ － － 마카로니 · 버미셀리(vermicelli)와 이와 유사한 스파게티와 카넬로니(cannelloni)(조개 · 별 · 문자 모양 및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5	E
19021920	－ － － 파스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21930	－ － － 감자 가루 칩(마카로니 모양의 것으로서 조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19021990	－ － － 기타	5	5
19022010	－ － － 육으로 속을 채운 것	5	5
19022020	－ －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5	5
19022090	－ － － 기타	5	5
19023000	－ 그 밖의 파스타	5	E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5	20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 낱알 모양 · 진주 모양 · 무거리 모양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904101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10
19041091	－ － － － 콘 플레이크(corn flake)와 이와 유사한 것	5	10
19041099	－ － － － 기타	5	10
19042011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0
19042019	－ － － － 기타	5	0
19042021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0
19042029	－ － － － 기타	5	0
19043010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0
19043090	－ － － 기타	5	0
19049010	－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5	10
19049090	－ － － 기타	5	10
19051000	－ 귀리빵	5	20
1905200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20

19053100	- - 스위트 비스킷	5	TR
19053200	- - 와플과 웨이퍼	5	20
19054010	- - - 러스크(rusk)	5	20
19054090	- - - 기타	5	15
19059010	- - - 모든 종류의 보통의 빵	5	E
19059020	- - - 글루텐(gluten) 빵(당뇨병 환자용의 것)	5	15
19059030	- - - 페이스트리(pastry)(피자를 포함한다)	5	E
19059040	- - - 이스턴 사탕과자[크나페(kunafah)·바클라바(Baklava) 및 이와 유사한 것]	5	TR
19059050	- - - 케이크[가토(gateau)]와 이와 유사한 것	5	E
19059060	-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5	15
19059070	- -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5	15
19059080	- - - 바삭하며 짭잘한 맛의 식품(예: 팝콘·칩과 이와 유사한 것)(바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19059091	- - - - 효모를 사용하지 않은 빵	5	15
19059092	- - - - 프레젤(pretzel)	5	15
19059093	- - - - 보통의 비스킷(가염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19059099	- - - - 기타	5	E
20011000	- 오이류	5	20
20019011	- - - - 버섯과 송로(松露)	5	10
20019012	- - - - 올리브와 케이퍼	5	10
20019013	- - - - 녹색 고추	5	10
20019014	- - - - 피클(여러 종류를 혼합한 것)	5	TR
20019015	- - - - 토마토	5	10
20019019	- - - - 기타	5	10
20019020	- - - 과일·견과류	5	15
20021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5	20
20029010	- - - 토마토 페이스트(paste)	5	E
20029090	- - - 기타	5	20
200310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5	5
20039000	- 기타	5	0
20041000	- 감자	5	20
20049010	- - - 당근	5	10
20049020	- - - 완두	5	10
20049030	- - - 흰 강낭콩	5	10
20049040	- - - 강낭콩	5	10
20049050	- -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	10
20049060	- - - 시금치	5	10
20049070	- - - 오크라(okra)	5	10
20049080	- - - 채소 혼합물	5	10
20049090	- - - 기타	5	10
20051010	- - - 영유아·어린이용	5	0
20051020	- - - 식이요법용	5	0
20051090	- - - 기타	5	0
20052000	- 감자	5	E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5	20
20055100	- - 꼬투리를 벗긴 콩	5	0
20055900	- - 기타	5	10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5	0
20057000	- 올리브	5	20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5	20
20059100	- - 죽순	5	0
20059911	- - - - 폴 메담메스(foul medamas)(조리된 콩)	5	15

20059912	- - - - 타히나(tahinah)(참기름)와 함께 조리된 이집트 콩	5	10
20059913	- - - - 소스를 첨가한 야채와 두류	5	E
20059919	- - - - 기타	5	10
20059991	- - - - 오크라(okra)	5	20
20059992	- - - - 말 먹이용 콩	5	10
20059993	- - - - 시금치	5	10
20059994	- - - - 아티초크(artichoke)	5	10
20059995	- - - - 채소 혼합물	5	10
20059996	- - - -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5	10
20059997	- - - - 포도 잎	5	10
20059999	- - - - 그 밖의 채소와 식물	5	20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 에 절인 것]	5	15
20071010	- - - 영유아 · 어린이용 식품과 유사한 것	5	0
20071020	- - - 식이요법용	5	0
20071090	- - - 기타	5	0
20079110	- - - 마멀레이드(marmalade)	5	0
20079190	- - - 기타	5	0
20079911	- - - - 복숭아	5	0
20079912	- - - - 살구	5	10
20079913	- - - - 사과	5	0
20079914	- - - - 수박	5	TR
20079915	- - - - 체리	5	0
20079916	- - - - 딸기	5	5
20079917	- - - - 라즈베리	5	5
20079919	- - - - 기타	5	5
20079920	- - - 살구 시트(sheet)	5	0
20079930	- - - 터키쉬 딜라이트(Turkish delight)	5	0
20079990	- - - 기타	5	20
20081110	- - - 볶은 땅콩(가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20081120	- - - 피넛 버터	5	20
20081911	- - - - 아몬드	5	10
20081912	- - - - 피스타치오(pistachio)	5	10
20081913	- - - - 헤즐너트(hazelnut)	5	10
20081919	- - - - 기타	5	10
20081920	- - - 혼합된 것	5	20
20081990	- - - 기타	5	10
20082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2090	- - - 기타	5	20
20083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3090	- - - 기타	5	20
20084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4090	- - - 기타	5	20
20085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5090	- - - 기타	5	0
20086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6090	- - - 기타	5	20
20087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7090	- - - 기타	5	20
20088010	- - - 알코올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8090	- - - 기타	5	0
20089100	- - 팜 하트(palm heart)	5	20
20089310	- - - 주정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9390	--- 기타	5	0
20089710	--- 주정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9790	--- 기타	5	0
20089910	--- 주정을 첨가한 것	SpGo	SpGo
20089990	--- 기타	5	20
20091110	--- 냉동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1120	--- 냉동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1210	--- 냉동하지 않은 오렌지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1220	--- 냉동하지 않은 오렌지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1910	--- 그 밖의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1920	--- 그 밖의 오렌지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211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212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2130	---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2140	---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2910	--- 그 밖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2920	--- 그 밖의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2930	--- 그 밖의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2940	--- 그 밖의 포멜로(pomelo)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111	---- 레몬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112	---- 레몬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191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192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910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3920	--- 그 밖의 감귤류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4110	---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4120	---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4910	--- 그 밖의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4920	--- 그 밖의 파인애플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5010	--- 토마토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0095020	--- 토마토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0096110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6120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6910	--- 그 밖의 포도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6920	--- 그 밖의 포도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7110	---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7120	---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7910	--- 그 밖의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7920	--- 그 밖의 사과 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110	--- 크랜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120	--- 크랜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130	--- 링곤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140	--- 링곤베리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911	--- 대추야자 당밀(Date molasses)(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0098912	----- 대추야자 당밀(Date molasses)(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0098922	----- 망고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8923	----- 망고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8924	----- 망고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25	----- 망고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8932	----- 구아바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33	----- 구아바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8934	----- 구아바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0098935	----- 구아바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42	----- 당근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43	----- 당근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44	----- 당근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45	----- 당근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0098991	----- 그 밖의 과일·채소로 된 그 밖의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8992	----- 그 밖의 과일·채소로 된 그 밖의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9020	---- 혼합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9030	---- 혼합 주스(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0099040	---- 혼합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0099050	---- 혼합 주스(농축한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21011100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5	20
21011211	----- 인스턴트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1011219	----- 기타	5	20
21011220	---- 커피 페이스트(paste)	5	15
21011290	---- 기타	5	TR
21012010	---- 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15
21012090	---- 기타	5	15
21013010	----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5	15
21013020	---- 치커리 추출물(extract)이나 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5	15
21021000	- 활성 효모	5	0
21022010	---- 식용 불활성 효모	5	0
210220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동물 사료용으로 한정한다)	5	10
21022090	---- 기타	5	5

21023010	- - - 베이킹 파우더	5	0
21023020	- - - 알자스(alsace) 효모	5	0
21023090	- - - 기타	5	0
21031000	- 간장	5	20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5	E
21033010	- - - 겨자가루	5	0
21033020	- - - 조제한 겨자	5	0
21039010	- - - 마요네스	5	E
21039020	- - - 칠리 소스	5	20
21039030	- - - 셀러리 염	5	TR
21039090	- - - 기타	5	TR
21041000	- 수프 · 브로드(broth)와 수프 · 브로드(broth)용 조제품	5	E
2104200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5	TR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 없다)	5	E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5	15
21069010	- - - 식탁용 크림 제조용 파우더	5	5
21069020	- - - 식탁용 젤리 제조용 파우더	5	10
21069030	- - - 아이스크림 제조용 가루	5	20
21069050	- - -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나 그 밖의 지방이나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예: 고급 베이커리 제품용)	5	20
21069060	- - -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지방 · 밀크 · 견과류를 첨가한 것으로서 직접 과자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초콜릿 · 팬시 비스킷(fancy biscuit) · 파이(pie) · 케이크(cake)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5
21069070	- - - 단과자 · 껌 태블릿(tablet)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뇨병 환자용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를 함유하는 것	0	0
21069080	- - - 감미용 사카린[액체나 태블릿(tablet) 모양의 것]	5	5
21069091	- - - - 천연이나 인조의 향료[예: 바닐린(vanillin)]를 기본 재료로 한 식용의 태블릿(tablet)	5	5
21069092	- - - - 레몬에이드나 그 밖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21069093	- - - -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식물 추출물(extract) · 과일 농축물 · 꿀이나 과당을 기본 재료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TR
21069094	- - - - 꿀벌 로얄젤리가 풍부한 천연꿀	5	5
21069095	- - - -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	5	5
21069096	- - - - 근육 성장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21069098	레몬에이드나 그 밖의 음료 제조용 조제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21069099	- - - - 기타	5	E
22011010	- - - 천연 광천수	5	20
22011020	- - - 인조 광천수	5	20
22011030	- - - 탄산수	5	15
22019010	- - - 천연수	5	20
22019090	- - - 기타	5	20
22021012	- - - - 향을 첨가한 광천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2021013	- - - - 선수용 광천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

22021014	----- 차와 커피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
22021018	----- 그 밖의 광천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5	15
22021021	----- 레몬에이드[예: 세븐 업(Seven Up)]	5	15
22021022	----- 오렌지음료[예: 미란다(Miranda)]	5	15
22021023	----- 콜라[예: 펩시콜라(Pepsi Cola)]	5	E
22021024	----- 에너지 음료	5	E
22021025	----- 탄산수(소다)	5	E
22021029	----- 기타	5	15
22021092	----- 그 밖의 물(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2021099	----- 기타	5	15
22029100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5	20
22029913	--- 밀크나 밀크 대용물 함유량이 100분의 75 미만인 그 밖의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5	15
22029919	----- 기타	5	15
22029923	----- 그 밖의 코코아를 기본 재료로 한 음료(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2029929	----- 기타	5	15
22029930	--- 그 밖의 향을 첨가한 음료(탄산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2029993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2029999	----- 기타	5	15
22030000	맥주	SpGo	SpGo
22041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SpGo	SpGo
220421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SpGo	SpGo
22042200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SpGo	SpGo
22042900	-- 기타	SpGo	SpGo
22043000	- 그 밖의 포도즙	SpGo	SpGo
2205100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SpGo	SpGo
22059000	- 기타	SpGo	SpGo
220600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SpGo	SpGo
22071010	--- 내과용	5	10
22071090	--- 기타	5	15
22072011	----- 내과용	0	0
22072019	----- 기타(변성하지 않은 에틸)	5	15
22072090	--- 기타	SpGo	SpGo
2208200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SpGo	SpGo
22083000	- 위스키류	SpGo	SpGo
2208400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SpGo	SpGo
22085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SpGo	SpGo
22086000	- 보드카	SpGo	SpGo
2208700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SpGo	SpGo
22089011	----- 내과용	5	5
22089019	----- 기타	5	5
22089090	--- 기타	SpGo	SpGo
22090010	--- 식초	5	10

22090020	- - - 식초 대용물	5	10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5	0
2301200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5	0
23021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5	20
23023000	- 밀에서 나온 것	5	20
2302400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5	20
23025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5	20
2303100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5	0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5	5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5	0
2304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0
23061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5	20
2306200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5	0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5	20
23064100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5	15
23064900	- - 기타	5	20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5	20
2306600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5	20
23069000	- 기타	5	20
23070010	- - - 와인리스(wine lees)	SpGo	SpGo
23070020	- - - 생주석(argol)	5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2309100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5
23099010	- - - 어류와 관상용 조류 사료	5	10
23099020	- - - 가금류(家禽類) 사료	5	10
23099031	- - - - 식품을 함유한 염석	5	10
23099039	- - - - 기타	5	10
23099040	- - - 새끼 동물 사료용 밀크 대용물	5	10
23099050	- - - 사료 산업용 농축 조제품	5	10
23099090	- - - 기타	5	10
24011000	- 잎담배 [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12000	- 잎담배 [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13010	- - - 잎담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100	E
24013090	- - - 기타	100	E
2402100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22000	- 궤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29010	- - - 담배 대용물로 만든 시가(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29020	- - - 담배 대용물로 만든 궤련(담배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31100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100	E
24031910	--- 쥘련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E
24031920	--- 파이프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E
24031930	---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00	E
24031940	--- 도하(dokha) 흡연 파이프용으로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담배	100	E
24031990	--- 기타	100	E
24039100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100	E
24039910	--- 코 담배 제조용으로 압축하거나 용액에 담근 담배	100	E
24039921	----- 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씹을 수 있는 것과 코로 들이 마실 수 있는 조제품[삼마(Sahmmah)와 스와이카(Suwaikah)]	PROH	PROH
24039922	----- 조제된 씹는 인도 뽕[베텔(betel)](담배를 함유한 것)	PROH	PROH
24039929	----- 기타	100	E
24039930	--- 코 담배	100	E
24039940	--- 지락(Jirak)	100	E
24039950	--- 담배의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100	E
24039990	--- 기타	100	E
24041110	--- 전기 가열식 담배 제품	100	E
24041190	--- 기타	100	E
24041211	----- 향이 첨가된 것	100	E
24041212	-----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	100	E
24041221	----- 향이 첨가된 것	100	E
24041222	-----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	100	E
24041231	----- 향이 첨가된 것	100	E
24041232	----- 향이 첨가되지 않은 것	100	E
24041900	-- 기타	100	E
2404911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니코틴을 함유한 추잉껌	5	E
2404912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태플릿(tablet) 모양의 것	5	E
24049130	----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일회용 경구(經口)용 니코틴 파우치(LYFT)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00	E
24049191	----- 기타(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24049199	----- 기타	100	E
2404921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패치	5	E
24049291	----- 기타(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24049299	----- 기타	100	E
2404991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	5	E
2404992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비제(Nose drops)	5	E
24049930	---- 흡연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사	5	E
24049990	--- 기타	100	E
25010010	-- 소금(식탁염)	5	15
25010020	--- 변성염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5	0
25010030	--- 순염화나트륨	5	5
25010040	--- 수용액	5	20

25010090	- - - 기타	5	15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5	15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5	0
25049000	- 기타	5	20
25051000	- 규사	5	20
25059000	- 기타	5	5
25061010	- - -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것(톱질하지 않은 응집체의 형태로 한정한다)	5	5
25061090	- - - 기타	5	0
25062000	- 규암	5	0
25070010	- - - 고령토	5	10
25070090	- - - 기타	5	10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5	10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5	10
25084000	- 그 밖의 점토	5	10
25085000	- 홍주석(紅柱石)· 남정석(藍晶石)· 규선석(硅線石)	5	0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5	0
2508700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5	10
25090010	- - - 잘게 부순 건설용 초크	5	0
25090090	- - - 기타	5	0
2510100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5	0
25102000	- 잘게 부순 것	5	0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5	20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5	0
25120000	규조토[예: 키젤구어(kieselguhr)· 트리폴리트(tripolite)·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5131000	- 부석	5	0
25132010	- - - 금강사(金剛砂)	5	0
25132020	- - - 천연 커런덤(corundum)	5	0
25132030	- - - 천연 카넬리안(carnelian)	5	0
25132040	- - - 트리폴리(tripoli) 흙	5	5
25132090	- - - 기타	5	0
25140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톱질한 블록 모양으로 한정한다)	5	0
25140090	- - - 기타	5	0
2515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20
251512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20
25152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20
25152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20
2516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0
2516120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10
25162000	- 사암	5	10
25169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5	0

25169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E
25171000	- 자갈 · 왕자갈 · 쇄석(碎石)[콘크리트용 · 도로포장용 ·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25172000	-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5	15
251741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5	10
25174900	- - 기타	5	0
25181010	- - - 가공하지 않은 것(거칠게 다듬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25181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20
25182010	- - - - 가공하지 않은 것(거칠게 다듬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25182020	-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5	20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5	0
25199010	- - - 산화마그네슘	5	10
25199090	- - - 기타	5	10
25201010	- - - 석고	5	E
25201020	- - - 무수(無水)석고	5	TR
25202010	- - - 치과용 플라스터(plaster)	5	20
25202090	- - - 기타	5	20
252100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5	E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5	20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5	20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5	20
2523100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E
252321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25232910	- - - 보통 시멘트	5	E
25232920	- - - 내황산염 시멘트	5	20
25232990	- - - 기타	5	0
25233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5	10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5	20
25241000	- 청(靑)석면	PROH	PROH
25249010	- - - 녹섬석(양기석)	PROH	PROH
25249020	- - - 직섬석(anthophyllite)	PROH	PROH
25249030	- - - 갈(褐)석면	PROH	PROH
25249040	- - - 투각섬(tremolite)석	PROH	PROH
25249090	- - - 기타	PROH	PROH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시트(sheet)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5	0
25252000	- 운모 가루	5	0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5	10
25261010	- - - 동석(凍石)	5	0
25261020	- - - 활석(滑石)	5	0

25262010	- - - 동석(凍石)	5	0
25262020	- - - 활석(滑石)	5	0
25280000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5291000	- 장석(長石)	5	0
252921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5	0
252922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5	0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5	0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2530200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5	0
25309011	- - - - 황화비소(쥐악)	5	10
25309019	- - - - 기타	5	20
25309020	- - - 해포석(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 판(plaste), 막대(rod), 봉(stick)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주조 후 가공하지 않은 응결한 해포석과 호박, 흑옥	5	10
25309030	- - - 세라믹 파편	5	10
25309040	- - - 어스컬러(earth colour)	5	10
25309050	- - - 운석	5	10
25309090	- - - 기타	5	10
26011100	- - 응결시키지 않은 것	5	0
26011200	- - 응결시킨 것	5	0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5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5	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5	5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5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5	0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5	15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5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5	2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5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5	2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5	0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5	0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	5	0
26131000	- 배소(焙燒)한 것	5	0
26139000	- 기타	5	20
261400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5	20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5	5
26159000	- 기타	5	0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	5	0
26169000	- 기타	5	0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5	0
26179000	- 기타	5	0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5	20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5	15
262011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5	20
26201900	- - 기타	5	20
262021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	5	20
26202900	- - 기타	5	20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5	20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5	20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5	20
262091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5	0
26209900	- - 기타	5	20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5	20
26219000	- 기타	5	20
27011100	- - 무연탄	5	E
27011200	- - 유연탄	5	E
27011900	- - 그 밖의 석탄	5	E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5	E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5	E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5	E
27030010	- - - 농지(農地)용이나 토양의 품질 개선용	5	E
27030090	- - - 기타	5	E
27040010	- -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27040020	- -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5	E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5	E
27060000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5	E
27071000	- 벤조올(벤젠)	5	E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5	E
27073000	- 크실롤(크실렌)	5	20
27074000	- 나프탈렌	5	20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270791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5	E
27079900	- - 기타	5	E
27081000	- 피치(pitch)	5	E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5	E
270900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5	E
27101211	- - - - 경질	5	E
27101212	- - - - 완전한(whole) 것	5	20
27101213	- - - - 개질(改質)	5	20
27101214	- - - - 천연 가솔린	5	E
27101219	- - - - 기타	5	E

27101221	-----엔진용(항공기용은 제외한다)	5	E
27101222	-----제트기 엔진용(JP4)	5	E
27101223	-----그 밖의 항공기 엔진용	5	E
27101229	-----그 밖의 용도	5	20
27101231	-----엔진용	5	E
27101232	-----발전기용(선박용을 포함한다)	5	E
27101233	-----가열용	5	E
27101239	-----그 밖의 용도	5	E
27101241	-----선박용	5	E
27101242	-----부분 정제유(상압 증류)	5	E
27101249	-----기타	5	E
27101911	-----기유(基油)	5	E
27101912	-----불꽃점화식 엔진용(가솔린)	5	E
27101913	-----압축점화식 엔진용(디젤)	5	E
27101914	-----수동변속기용	5	E
27101915	-----자동변속기용	5	E
27101919	-----기타	5	E
27101991	-----절삭용	5	E
27101992	-----세척용	5	20
27101993	-----주형이형용	5	E
27101994	-----유압브레이크용	5	E
27101995	-----유압 및 터보 시스템용	5	E
27101996	-----변압기 및 차단기용	5	E
27101997	-----파라핀 오일이나 바셀린 오일과 같은 화이트 오일	5	E
27101998	-----기타 윤활유	5	E
27101999	-----기타	5	E
271020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5	E
271091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5	E
27109900	- - 기타	5	E
27111100	- - 천연가스	5	E
27111200	- - 프로판	5	E
27111300	- - 부탄	5	E
27111400	-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5	E
27111900	- - 기타	5	E
27112100	- - 천연가스	5	E
27112900	- - 기타	5	E
27121000	- 석유젤리	5	E
27122010	- - - 양초 제조용	5	E
27122020	- - - 성냥 함침용	5	E
27122090	- - - 기타	5	E
27129000	- 기타	5	E
27131100	-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5	E
27131200	- - 하소(煨燒)한 것	5	E
27132000	- 석유역청(瀝靑)	5	E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5	E
2714100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5	E
27149010	- - -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5	E
27149090	- - - 기타	5	E

27150000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5	E
27160000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5	E
28011000	- 염소	5	20
28012000	- 요드	5	TR
28013010	- - - 플루오르	5	TR
28013020	- - - 브롬	5	TR
28020010	- - - 승화황(昇華黃) 이나 침강황(沈降黃)	5	TR
28020020	- - - 콜로이드황	5	TR
280300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 물품을 포함한다]	5	E
28041000	- 수소	5	TR
28042100	- - 아르곤	5	TR
28042910	- - - 헬륨	5	TR
28042920	- - - 네온	5	TR
28042990	- - - 기타	5	TR
28043000	- 질소	5	20
28044000	- 산소	5	TR
28045000	- 붕소와 텔루르	5	TR
280461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5	TR
28046900	- - 기타	5	TR
28047000	- 인	5	TR
28048000	- 비소	5	15
28049000	- 셀렌	5	20
28051100	- - 나트륨	5	15
28051200	- - 칼슘	5	E
28051910	- - - 리튬	5	20
28051920	- - - 칼륨	5	E
28051990	- - - 기타	5	20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28054000	- 수은	5	15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5	E
28062000	- 클로로황산	5	10
28070010	- - - 황산	5	E
28070020	- - - 발연황산(황산)	5	E
28080010	- - - 질산	5	20
28080020	- - - 황질산	5	TR
28091000	- 오산화인	5	E
28092010	- - - 인산	5	E
28092020	- - - 폴리인산	5	E
28100010	- - - 붕소의 산화물	5	10
28100020	- - - 붕산	5	20
281111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5	10
28111200	-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5	10
28111920	- - - 황화수소	5	10
28111930	- - - 요드화수소산	5	10
28111990	- - - 기타	5	20
28112100	- - 이산화탄소	5	20
28112200	- - 이산화규소	5	E
28112910	- - - 삼산화비소 또는 오산화비소	5	E
28112990	- - - 기타	5	E

28121100	-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5	10
28121200	-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5	10
28121300	-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5	10
28121400	-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5	10
28121500	-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5	20
28121600	- - 설퍼 디클로라이드	5	20
28121700	- - 티오닐 클로라이드	5	10
28121910	- - - 삼염화비소	5	10
28121990	- - - 기타	5	0
28129000	- 기타	5	20
28131000	- 이황화탄소	5	10
28139000	- 기타	5	10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5	E
28142000	- 암모니아수	5	E
28151100	- - 고체	5	20
281512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5	E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5	20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5	TR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5	20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5	20
28170010	- - - 산화아연	5	TR
28170020	- - - 과산화아연	5	TR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0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5	20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5	E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5	10
28199000	- 기타	5	TR
28201000	- 이산화망간	5	20
28209000	- 기타	5	20
28211010	- - - 산화철(황색, 적색, 흑색)	5	15
28211090	- - - 기타	5	10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5	TR
28220000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5	20
28230000	산화티타늄	5	E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5	TR
28249010	- - - 이산화납	5	10
28249090	- - - 기타	5	20
2825100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5	10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5	20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5	10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5	20
28255010	- - - 산화구리	5	20
28255020	- - - 수산화구리	5	10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5	20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5	20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5	10
28259010	- - - 산화주석	5	10
28259020	- - - 산화나트륨	5	20
28259030	- - - 산화칼슘	5	TR
28259040	- - - 수산화칼슘을 함유하는 팽창성 파쇄제(膨脹性 破碎 劑)와 이와 유사한 암석 파편	5	10
28259060	- - - 수산화칼슘	5	TR

28259090	- - - 기타	5	20
282612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5	15
28261900	- - 기타	5	20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5	TR
28269000	- 기타	5	20
28271000	- 염화암모늄	5	E
28272000	- 염화칼슘	5	E
28273100	- - 마그네슘 염화물	5	E
28273200	- - 알루미늄 염화물	5	E
28273500	- - 니켈 염화물	5	E
28273920	- - - 코발트 염화물	5	E
28273930	- - - 아연 염화물	5	E
28273990	- - - 기타	5	20
28274100	-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5	E
28274900	- - 기타	5	E
282751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5	E
28275900	- - 기타	5	E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5	20
28281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5	E
28289010	-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5	E
28289020	- - - 하이포아염소산칼륨	5	10
28289030	- - - 아염소산염	5	E
28289040	- - - 하이포아브롬산염	5	10
28289090	- - - 기타	5	E
28291100	- - 염소산나트륨	5	20
28291910	- - - 염소산칼륨	5	10
28291920	- - - 염소산마그네슘	5	10
28291990	- - - 기타	5	E
28299011	- - - - 과염소산나트륨	5	20
28299012	- - - - 과염소산마그네슘	5	20
28299013	- - - - 과염소산암모늄	5	10
28299019	- - - - 기타	5	10
28299021	- - - - 브롬산칼륨	5	0
28299029	- - - - 기타	5	20
28299030	- - - 요오드산염과 과요오드산염	5	E
28301000	- 황화나트륨	5	E
28309000	- 기타	5	20
28311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솔폭실산나트륨	5	20
28319000	- 기타	5	15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5	E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5	E
28323010	- - - 티오황산 나트륨	5	20
28323020	- - - 티오황산 칼슘	5	10
28323090	- - - 기타	5	E
28331100	- - 황산이나트륨	5	E
28331900	- - 기타	5	20
28332100	- - 황산마그네슘	5	E
28332200	- - 황산알루미늄	5	E
28332400	- - 황산니켈	5	E
28332500	- - 황산구리	5	E
28332700	- - 황산바륨	5	E
28332910	- - - 황산납	5	10
28332920	- - - 황산칼슘과 무수(無水)황산칼슘	5	10

28332930	- - - 황산철	5	20
28332940	- - - 황산철(3가철)	5	10
28332950	- - - 황산코발트	5	10
28332960	- - - 주석황산염	5	10
28332980	- - - 황산아연	5	E
28332990	- - - 기타	5	20
28333000	- 명반	5	E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5	20
28341010	- - - 아질산나트륨	5	E
28341020	- - - 아질산칼륨	5	10
28341030	- - - 아질산납	5	10
28341040	- - - 아질산칼슘	5	E
28341050	- - - 아질산마그네슘	5	10
28341060	- - - 아질산알루미늄	5	10
28341070	- - - 아질산아연	5	10
28341090	- - - 기타	5	20
28342100	- - 질산칼륨	5	E
28342910	- - - 질산나트륨	5	10
28342920	- - - 질산납	5	10
28342930	- - - 질산칼슘	5	10
28342940	- - - 질산마그네슘	5	10
28342950	- - - 질산알루미늄	5	20
28342960	- - - 질산아연	5	10
28342970	- - - 질산코발트	5	10
28342980	- - - 질산암모늄	5	10
28342990	- - - 기타	5	10
28351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5	E
283522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5	10
28352400	- - 인산칼륨	5	10
28352500	-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5	E
28352600	- - 그 밖의 인산칼슘	5	20
28352910	- - - 인산납	5	10
28352920	- - - 인산철	5	20
28352990	- - - 기타	5	20
283531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5	E
28353910	- - - 나트륨산 피로인산염	5	E
28353990	- - - 기타	5	E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5	E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5	E
28364000	- 탄산칼륨	5	E
28365000	- 탄산칼슘	5	20
28366000	- 탄산바륨	5	E
28369100	- - 탄산리튬	5	E
28369200	- - 탄산스트론튬	5	E
28369910	- - - 탄산아연	5	E
28369990	- - - 기타	5	20
28371100	-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5	20
28371900	- - 기타	5	20
28372000	- 시안착염	5	10
28391100	- - 메타규산나트륨	5	E
28391900	- - 기타	5	20
28399000	- 기타	5	E
28401100	- - 무수물(無水物)	5	10

28401900	- - 기타	5	10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5	20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5	10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5	10
28415010	- - - 크롬산나트륨	5	10
28415090	- - - 기타	5	10
28416100	- - 과망간산칼륨	5	10
28416900	- - 기타	5	10
28417010	- - - 나트륨의 것	5	E
28417090	- - - 기타	5	10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5	10
28419010	- - - 알루미늄산나트륨	5	E
28419090	- - - 기타	5	E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5	20
28429000	- 기타	5	20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5	E
28432100	- - 질산은	5	10
28432910	- - - 아지드화 은	5	10
28432920	- - - 아질산 은	5	10
28432930	- - - 뇌산 은	5	10
28432990	- - - 기타	5	20
28433000	- 금 화합물	5	10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5	10
28441010	- - - 의료용	5	0
28441090	- - - 기타	5	10
28442010	- - - 의료용	5	10
28442090	- - - 기타	5	10
28443010	- - - 의료용	5	10
28443090	- - - 기타	5	10
28444110	- - - 의료용	0	0
28444190	- - - 기타	0	0
28444210	- - - 의료용	0	0
28444290	- - - 기타	0	0
28444310	- - - 의료용	0	0
28444390	- - - 기타	0	0
28444410	- - - 의료용	0	0
28444490	- - - 기타	0	0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cartridge)]	5	10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5	10
28452000	- 붕소-10을 농축한 붕소와 그 화합물	5	10
28453000	-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5	10
28454000	- 헬륨-3	5	10
28459000	- 기타	5	10
28461000	- 세륨화합물	5	10
28469000	- 기타	5	10
284700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TR
28491000	- 탄화칼슘	5	E
28492000	- 탄화규소	5	10
28499000	- 기타	5	20
28500010	- - - 수소화물	5	20
28500020	- - - 질화물	5	E
28500031	- - - - 염소산나트륨	5	10

28500032	- - - - 아지드화 납	5	10
28500039	- - - - 기타	5	10
28500040	- - - 규화물	5	10
28500050	- - - 붕화물	5	10
28521010	- - - 수은 티오시아네이트	5	10
28521020	- - - 뇌산수은	5	10
28521030	- - - 산화수은(황색, 적색, 흑색)	5	10
28521040	- - - 염화수은	5	10
28521050	- - - 요드화수은	5	10
28521060	- - - 황산수은	5	10
28521070	- - - 질산수은	5	10
28521080	- - - 크롬산수은	5	10
28521091	- - - 브롬화수은	5	10
28521092	- - - 초산수은	5	10
28521099	- - - 기타	5	10
28529000	- 기타	5	10
2853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5	10
28539010	- - - 증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5	ㄷ
28539020	- - - 액체 공기와 압축 공기	5	10
28539030	- - - 아말감(amalgam)(제2843호의 귀금속의 아말감은 제외한다)	5	10
28539090	- - - 기타	5	10
29011010	- - - 에탄	0	0
29011020	- - - 부탄	0	0
29011030	- - - 펜탄	0	0
29011040	- - - 헥산	0	0
29011050	- - - 헵탄	0	0
29011060	- - - 옥탄	0	0
29011090	- - - 기타	0	0
29012100	- - 에틸렌	0	0
29012200	- - 프로펜(프로필렌)	0	0
290123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290124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0
29012910	- - - 프로파디엔	0	0
29012920	- - - 부타-1,2-디엔	0	0
29012930	- - - 아세틸렌가스	0	0
29012940	- - - 페닐아세틸렌	0	0
29012950	- - - 메틸페닐아세틸렌	0	0
29012960	- - - 부텐	0	0
29012990	- - - 기타	0	0
29021100	- - 시클로헥산	0	0
29021900	- - 기타	0	0
29022000	- 벤젠	0	0
29023000	- 톨루엔	0	0
29024100	- - 오르토-크실렌	0	0
29024200	- - 메타-크실렌	0	0
29024300	- - 파라-크실렌	0	0
290244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0
29025000	- 스티렌	0	0
29026000	- 에틸벤젠	0	0
29027000	- 큐멘	0	0
29029010	- - - 테트라린	0	0
29029020	- - - 나프탈렌	0	0
29029090	- - - 기타	0	0

29031100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5	10
29031200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	20
29031300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	10
29031400	-- 사염화탄소	5	10
29031500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20
29031910	--- 1,1,1-트리클로로에탄(클로로포름 메탄)	5	10
29031990	--- 기타	5	10
29032100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	E
29032200	-- 삼염화에틸렌	5	10
29032300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	10
29032900	-- 기타	5	10
29034100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5	10
29034200	-- 디플루오로메탄(HFC-32)	5	10
29034300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5	E
29034400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5	E
29034500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5	20
29034600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5	20
29034700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5	20
29034800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5	20
29034900	-- 기타	5	E
29035100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5	E
29035910	---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	E
29035990	--- 기타	5	E
29036100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5	E
29036200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5	E
29036900	-- 기타	5	E
29037100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5	E
29037200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5	15
29037300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5	E
29037400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5	10
29037500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5	10
290376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5	E
29037710	---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	5	10
29037720	---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펜에탄	5	10
29037730	---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	5	10
29037740	---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50	---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60	---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70	---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80	---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91	－ － － －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92	－ － － － 클로로헥타플루오로프로판	5	10
29037793	－ － －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5	10
29037794	－ － － －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5	10
29037795	－ － － －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	5	10
29037799	－ － － － 기타	5	E
290378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5	10
29037910	－ － 불소와 염소만으로 할로겐화한 그 밖의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 유도체	5	E
29037920	－ － 불소와 브롬만으로 할로겐화한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 유도체	5	10
29037930	－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5	10
29037940	－ － － 브로모클로로메탄	5	10
29037990	－ － － 기타	5	15
290381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5	15
29038200	－ － 엘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5	10
29038300	－ － 미렉스(ISO)	5	10
29038900	－ － 기타	5	10
290391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5	10
29039200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5	10
290393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5	10
29039400	－ － 헥사브로모비페닐	5	10
29039900	－ － 기타	5	15
2904100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5	20
29042010	－ － － 니트로벤젠과 트리니트로벤젠과 니트로메탄	5	E
29042020	－ － － 디니트로톨루엔과 디니트로톨루엔	5	E
29042090	－ － － 기타	5	15
29043100	－ 과불화옥탄술폰산	5	20
290432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5	10
290433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5	10
290434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5	10
29043500	－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5	10
29043600	－ － 과불화옥탄술폰일플루오라이드	5	15
290491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5	10
29049900	－ － 기타	5	20
290511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5	E
29051200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5	20
290513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E
29051400	－ － 그 밖의 부탄올	5	E
29051600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5	E
290517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5	TR
29051910	－ － － 디에틸헥산올	5	E
29051920	－ － －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5	E
29051990	－ － － 기타	5	E
290522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5	TR
29052900	－ － 기타	5	20
290531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5	E
290532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	E

29053900	-- 기타	5	20
29054100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5	E
29054200	-- 펜타에리트리톨	5	E
29054300	-- 만니톨	5	15
29054400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5	20
29054500	-- 글리세롤	5	E
29054900	-- 기타	5	E
29055100	-- 에스클로비놀(INN)	5	20
29055900	-- 기타	5	20
29061100	-- 멘톨	5	E
29061200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5	10
29061300	-- 스테롤과 이노시톨	5	10
29061900	-- 기타	5	E
29062100	-- 벤질알코올	5	10
29062900	-- 기타	5	E
29071110	--- 페놀	5	20
29071120	--- 페놀산(카르볼릭)	5	10
29071190	--- 기타	5	10
29071200	-- 크레졸과 그 염	5	E
29071300	--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5	15
29071500	-- 나프톨과 이들의 염	5	10
29071900	-- 기타	5	E
29072100	-- 레조르시놀과 그 염	5	10
29072200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5	15
29072300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5	TR
29072900	-- 기타	5	E
29081100	-- 펜타클로로페놀(ISO)	5	10
29081900	-- 기타	5	10
29089100	-- 디노셉(ISO)과 그 염	5	10
29089200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5	10
29089910	--- 피크르산 암모늄	5	10
29089920	--- 피크르산(트리니트로페놀)	5	10
29089990	--- 기타	5	15
29091100	-- 디에틸에테르	5	E
29091910	-- 트리메틸 부틸에테르	5	E
29091990	--- 기타	5	15
2909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5	20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5	20
29094100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5	E
29094300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5	E
29094400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5	TR
29094900	-- 기타	5	E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5	E
29096010	--- 과산화메틸에틸케톤	5	E
29096090	--- 기타	5	E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5	E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	20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	E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5	15
29105000	- 엔드린(ISO)	5	10
29109000	- 기타	5	20
29110000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10
29121100	-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5	E
291212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5	E
29121900	- - 기타	5	20
29122100	- - 벤즈알데히드	5	10
29122900	- - 기타	5	E
291241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5	0
29124200	- - 에틸바닐린(3-메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5	10
29124900	- - 기타	5	15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5	20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5	E
2913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5	10
29141100	- - 아세톤	5	TR
291412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5	10
291413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5	10
29141900	- - 기타	5	20
29142200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5	TR
291423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5	10
29142900	- - 기타	5	10
291431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5	10
29143900	- - 기타	5	10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5	10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5	10
29146100	- - 안트라퀴논	5	E
29146200	-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5	10
29146900	- - 기타	5	10
29147100	- - 클로르데콘(ISO)	5	10
29147900	- - 기타	5	15
29151100	- - 포름산	5	20
29151200	- - 포름산의 염	5	E
291513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5	E
29152110	- - - 식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변성된 것	5	20
29152120	- - - 식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5	20
29152400	- - 무수(無水)초산	5	E
29152900	- - 기타	5	10
29153100	- - 초산에틸	5	E
29153200	- - 초산비닐	5	E
29153300	- - 초산노르말부틸	5	E
29153600	- - 초산디노셉(ISO)	5	10
29153900	- - 기타	5	TR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15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5
29156000	- 부티르산과 발레르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5
29157011	- - - - 구연산 마그네슘	5	10

29157019	- - - - 기타	5	10
29157090	- - - 기타	5	E
29159000	- 기타	5	20
29161100	- - 아크릴산과 그 염	5	E
29161200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5	TR
29161300	- - 메타아크릴산	5	20
29161400	-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5	TR
29161500	- -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10
29161600	- - 비나파크릴(ISO)	5	10
29161900	- - 기타	5	TR
2916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10
29163110	- - - 벤조산	5	10
29163120	- - - 벤조산염과 에스테르	5	15
29163200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5	10
291634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5	10
29163900	- - 기타	5	20
29171100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E
29171200	-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E
29171300	- - 아젤라산 · 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5	20
29171400	- - 무수말레산	5	E
29171900	- - 기타	5	20
2917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20
291732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5	E
291733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5	20
29173400	-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5	20
29173500	- - 무수프탈산	5	20
29173600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5	E
291737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5	E
29173910	- - - 프탈산납	5	E
29173990	- - - 기타	5	20
29181100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5
29181200	- - 타르타르산	5	10
291813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5	10
29181400	- - 시트르산	5	E
29181510	- - - 납 에스테르	5	E
29181520	- - - 마그네슘 에스테르	5	10
29181530	- - - 아연 에스테르	5	E
29181590	- - - 기타	5	E
29181600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0
29181700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5	10
291818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5	10
29181900	- - 기타	5	10
29182100	- - 살리실산과 그 염	5	10
29182200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0
291823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5	10
29182900	- - 기타	5	20
29183000	-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5	10

291891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5	10
29189910	-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	5	10
29189990	- - - 기타	5	10
29191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5	10
29199000	- 기타	5	10
29201100	-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5	10
29201900	- - 기타	5	10
29202100	- - 디메틸 포스파이트	5	10
29202200	- - 디에틸 포스파이트	5	10
29202300	-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5	10
29202400	-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5	10
29202900	- - 기타	5	10
29203000	- 엔도설판(ISO)	5	10
29209050	- - - 트리니트로 글리세린	5	10
29209060	- - - 니트로글리콜	5	10
29209070	- - - 에틸렌 디니트레이트	5	10
29209090	- - - 기타	5	20
29211100	-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5	E
29211200	-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10
29211300	-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10
292114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5	10
29211910	- - - 디(2-클로로에틸)에틸아민	5	10
29211920	- - - 클로르메틴(INN) [디((2-클로로에틸)아민)]	5	10
29211930	- - -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2-클로로에틸)메틸아민]	5	10
2921194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5	10
29211952	- - - - 2-엔,엔-디에틸아미노 에틸클로라이드	5	10
29211954	- - - - 엔,엔 디이소프로필-2-아미노에틸 클로라이드	5	10
29211959	- - - - 기타	5	10
29211991	- - - - 디아미노에틸	5	10
29211999	- - - - 기타	5	E
292121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5	E
292122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5	E
29212900	- - 기타	5	E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20
29214100	- - 아닐린과 그 염	5	E
29214200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5	15
292143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10
292144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5	E
292145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15
29214600	- -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5	10
29214900	- - 기타	5	10
292151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E
29215900	- - 기타	5	20

29221100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5	E
29221200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5	E
29221400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5	E
29221500	- - 트리에탄올아민	5	E
292216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5	10
29221700	-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5	E
292218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5	0
29221911	- - - -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	5	E
29221912	- - - -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	5	E
29221919	- - - - 기타	5	E
29221950	- - - 2-(N,N-디프로필아미노)에탄올	5	0
29221990	- - - 기타	5	20
292221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5	E
29222900	- - 기타	5	20
29223100	-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5	10
29223900	- - 기타	5	E
29224100	-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5	20
29224200	- - 글루탐산과 그 염	5	E
292243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5	E
29224400	- - 탈리딘(INN)과 그 염	5	E
29224900	- - 기타	5	E
29225000	-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5	20
29231000	- 콜린과 그 염	5	15
2923200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5	15
29233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5	10
29234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5	10
29239000	- 기타	5	E
292411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5	15
29241200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5	10
29241900	- - 기타	5	E
29242100	-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5	E
292423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5	10
29242400	- - 에치나메이트(INN)	5	10
29242500	- - 알라클로르(ISO)	5	10
29242900	- - 기타	5	20
29251100	- - 사카린과 그 염	5	10
29251200	- - 구루테치미드(INN)	5	10
29251900	- - 기타	5	10
292521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5	10
29252900	- - 기타	5	E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5	20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마이드)	5	10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5	10
2926400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5	10
29269010	- - - 벤질 시아나이드	5	10
29269090	- - - 기타	5	10
29270000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5	10

292800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5	15
29291000	- 이소시아네이트	5	E
29299010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5	10
29299020	- - -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5	10
29299090	- - - 기타	5	20
29301000	- 2-(엔,엔-디메틸아미노) 에탄티올	5	10
29302000	- 티오키아바메이트와 디티오키아바메이트	5	10
29303000	- 티우람모노설파이드·티우람디설파이드·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5	10
29304000	- 메티오닌	5	15
2930600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5	10
2930700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5	10
2930800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5	10
29309011	- - - -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오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5	10
29309012	- - - -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함유하는 것	5	10
29309019	- - - - 기타	5	20
29309021	- - - - 2-클로로에틸 클로로메틸 설파이드	5	10
29309022	- - - - 디(2-클로로에틸)설파이드	5	10
29309023	- - - - (2-클로로에틸티오)메탄	5	10
29309024	- - - - 1,2-디(클로로에틸티오)에탄	5	10
29309025	- - - - 1,3-디(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5	10
29309026	- - - - 1,4-디(2-클로로에틸티오)메탄-노르말-부탄	5	E
29309027	- - - - 1,5-디(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5	10
29309029	- - - - 기타	5	10
29309031	- - - - 디(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5	10
29309032	- - - - 디(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5	10
29309039	- - - - 기타	5	10
29309041	- - - -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10
29309042	- - - -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릭 티올레이트와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상으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10
29309043	- - - - 메틸포스포노티오레이트 에이-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5	10
29309044	- - - - 오-에틸-에스(2-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메틸포스포노티오레이트	5	10
29309049	- - - - 기타	5	10
29309051	- - - -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 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에티올과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에티올은 제외한다]	5	10
29309059	- - - - 기타	5	10
29309061	- - - - 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2-티올 염산염	5	10
29309062	- - - - 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염산염	5	10
29309069	- - - - 기타	5	15

29309072	- - - - (-)포스포노티오라이트메틸(-엔-아미노벤젠 에틸)-에스1,2-디메틸프로필-1,2	5	10
29309073	- - - - (+)포스포노티오라이트메틸(-엔-아미노벤젠 에틸)-에스1,2-디메틸프로필-1,2	5	10
29309079	- - - - 기타	5	15
29309091	- - - 부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 포스포노티오라이트	5	15
29309092	- - - 이소프로필 에스-나트륨 메틸포스포노티오라이트	5	15
29309093	- - - - 메틸펜틸-1에스-나트륨 메틸포스포노티오라이트	5	15
29309094	- - - - 에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라이트	5	15
29309095	- - - - sec-부틸 에스-나트륨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라이트	5	15
29309099	- - - - 기타	5	15
29311010	- - - 테트라메틸납	5	10
29311020	- - - 테트라에틸납	5	10
29312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5	10
29314100	-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5	10
29314200	-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5	10
29314300	-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5	10
29314400	- - 메틸포스포산	5	10
29314500	-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5	10
29314600	-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포피난-2,4,6-트리옥사이드	5	10
293147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5	10
29314800	-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5	10
29314910	- - - 하나의 인(燐)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으며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것을 함유하는 것	5	10
29314930	- - - 메틸포스포산,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5	10
29314940	- - - 메틸포스포산, (5-메틸-2-메틸- -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메틸, 메틸 에스테르	5	10
29314971	- - -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5	10
29314972	- - - -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5	E
29314973	- - - - 오-에틸 엔,엔-디메틸 포스포라미도시아나이드	5	10
29314974	- - - - 오-에틸 오-[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 포스포나이트	5	10
29314979	- - - - 기타	5	10
29314990	- - - 기타	5	E
29315100	-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5	10
29315200	-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5	10
29315300	-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르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5	E
29315400	- - 트리클로르폰(ISO)	5	10

29315911	-----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5	10
29315912	-----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디플루오라이드	5	10
29315913	----- 사린: 오르토-이소프로필 메틸 포스포노디플루오라이드	5	10
29315914	----- 소만: 오르토-피나코릴 메틸 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5	15
29315915	----- 디플루오라이드메틸포스포닐	5	10
29315916	----- 디플루오라이드 에틸포스포닐	5	10
29315919	----- 기타	5	10
29315921	-----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5	10
29315922	----- 오-비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5	10
29315923	----- 디클로라이드 메틸포스포닐 메틸 포스포네이트 디메틸	5	10
29315924	디클로라이드메틸포스포닐	5	10
29315929	----- 기타	5	10
29319051	----- 2-클로로페닐 디클로로 아르신	5	10
29319052	----- 디(2-클로로페닐) 클로로 아르신	5	10
29319053	----- 트리(-클로로페닐) 아르신	5	10
29319059	----- 기타	5	15
29319090	----- 기타	5	10
29321100	-- 테트라히드로푸란	5	TR
29321200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5	E
29321300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5	10
29321400	-- 수크랄로스	5	E
29321900	-- 기타	5	15
29322000	- 락톤	5	20
29329100	-- 이소사프롤	5	20
29329210	--- 3, 4 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	5	20
29329290	--- 기타	5	20
29329300	-- 피페로날	5	20
29329400	-- 사프롤	5	15
29329500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5	20
29329600	-- 카보퓨란(ISO)	5	20
29329900	-- 기타	5	20
29331100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5	10
29331900	-- 기타	5	10
29332100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5	E
29332900	-- 기타	5	E
29333100	-- 피리딘과 그 염	5	10
29333200	-- 피페리딘과 그 염	5	10
29333300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5	10
29333400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5	10
29333500	-- 3-퀴누클리디놀	5	10
29333600	-- 4-아닐리노-N-펜테틸피페리딘(ANPP)	5	10

29333700	-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5	10
29333910	- - -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5	10
29333990	- - - 기타	5	20
293341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5	10
29334900	- - 기타	5	10
293352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5	10
29335300	- -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5	10
293354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5	10
29335500	-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5	10
29335900	- - 기타	5	E
29336100	- - 멜라민	5	E
29336900	- - 기타	5	15
293371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5	10
293372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5	10
29337900	- - 그 밖의 락탐	5	10
29339100	-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루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론(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5	10
29339200	- - 아진포스-메틸(ISO)	5	10
29339910	- - - 니트로카르바졸 · 트리니트로카르바졸 · 테트라니트로카르바졸	5	10
29339990	- - - 기타	5	20
29341000	-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5	10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29349100	- - 아미노렉스(INN), 브로티졸람(INN), 클로티아제팜(INN), 클록사졸람(INN), 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 할록사졸람(INN), 케타졸람(INN), 메소카브(INN), 옥사졸람(INN), 페몰린(INN), 펜디메트라진(INN), 펜메트라진(INN),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5	E
29349200	-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5	E
29349910	- - - 페놀 레드	5	10
29349990	- - - 기타	5	20
29351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E
2935200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E
2935300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E

2935400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E
2935500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5	E
29359000	- 기타	5	E
29362100	-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200	- - 비타민 B ₁ 과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300	- - 비타민 B ₂ 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4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 ₅)과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500	- - 비타민 B ₆ 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600	- - 비타민 B ₁₂ 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700	-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800	-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0	0
29362900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0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29371100	- - 소마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29371200	- - 인슐린과 그 염	0	0
29371900	- - 기타	0	0
29372100	- - 코르티손, 호르몬, 프레드니손 (데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0
29372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29372300	-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겐	0	0
29372900	- - 기타	0	0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29379000	- 기타	0	0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5	10
29389000	- 기타	5	10
29391100	-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부프레노핀(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모르폰(INN) · 모르핀 · 니코모르핀(INN) · 옥시코돈(INN) · 옥시모르폰(INN) · 풀코딘(INN) · 테바콘(INN) · 테바인, 이들의 염	0	0
29391900	- - 기타	0	0
2939200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0	0
29394100	- - 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2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0
29394300	- - 카틴(INN)과 그 염	0	0
293944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29394500	-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0	0
29394900	- - 기타	0	0
293951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29395900	- - 기타	0	0
293961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0
293962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0
293963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0
29396900	- - 기타	0	0
29397210	- - - 코카인	PROH	PROH
29397220	- - - 엑고닌	SpGo	SpGo
29397290	- - - 기타	0	0

29397900	- - 기타	0	0
29398000	- 기타	0	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10
2941100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415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29419000	- 기타	0	0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5	20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0
30019000	- 기타	0	0
30021200	-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0	0
30021300	-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400	-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0	0
30021500	-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24100	- -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	0
30024200	- - 백신(동물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	0
30024900	- - 기타	0	0
30025100	- - 세포치료법용 제품	0	0
30025900	- - 기타	0	0
30029010	- - - 색시톡신	0	0
30029020	- - - 리신	0	0
30029090	- - - 기타	0	0
30031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3003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3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30033900	- - 기타	0	0
3003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3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3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34900	- - 기타	0	0
3003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0	0
30039000	- 기타	0	0
3004100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3004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4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30043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30043900	- - 기타	0	0
3004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4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4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0	0
30044900	- - 기타	0	0
30045000	- 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기타 의약품	0	0
3004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49010	- - - 메디컬 솔루션(medical solution)	0	0
30049090	- - - 기타	0	0
3005100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0	0
30059010	- - - 메디컬 코튼(medical cotton)	0	0
30059021	- -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0	0
30059022	- -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으로 소매용 또는 내과용 · 외과용 목적으로 조제한 것[병원(hospital) · 의료 센터(health center) · 구급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30059090	- - - 기타	0	0
30061010	- - - 수술 상처 봉합용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0
30061020	- - -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	0	0
30061030	- -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30061040	- - - 멸균된 수술용 플라스터(plaster)	0	0
3006300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0	0
3006400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0	0
30065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3006600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0
300691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	0
30069200	- - 폐(廢)의료용품	0	0
30069310	- - - 플라세보	0	0
30069320	- -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31010000	동물성 ·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5	5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TR
31022100	- - 황산암모늄	5	20
31022900	- - 기타	5	15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1025000	- 질산나트륨	5	20
31026000	- 질산칼슘 ·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5	20
31028000	- 요소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5	15
31031100	- - 오산화인(P_2O_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5	15
31031900	- - 기타	5	0
31039010	- - - 디칼슘포스페이트	5	15
31039020	- - - 분해된 디칼슘포스페이트	5	0

31039030	- - - 천연의 · 열처리한 · 하소(煨燒)한 인산암모늄	5	0
31039040	- - - 상기한 물질의 비료 혼합물(플로오르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5	E
31039090	- - - 기타	5	0
31042000	- 염화칼륨	5	0
31043000	- 황산칼륨	5	5
31049010	- - - 마그네슘과 황산수소칼륨	5	0
31049030	- - - 칼륨염	5	20
31049040	- - - 상기한 물질의 비료 혼합물(산화칼륨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5	20
3105100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0
31052000	- 질소 · 인 ·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	E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5	10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5	TR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5	10
31055900	- - 기타	5	0
31056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5	10
31059000	- 기타	5	15
32011000	-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5	0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5	10
32019000	- 기타	5	10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5	0
32029000	- 기타	5	10
32030011	- - - - 천연 인디고(indigo)	5	0
32030019	- - - - 기타	5	0
32030020	- - - 동물성의 것	5	0
32041100	-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10
32041200	-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20
320413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10
320414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20
32041500	-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5
320416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5
32041700	-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20
32041800	- -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20
32041900	-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	20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5	20
32049010	- - - 합성 인디고(indigo)	5	10
32049090	- - - 기타	5	20
32050000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32061100	-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5	20
32061900	- - 기타	5	5
3206200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5	5
32064100	-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5	5
32064200	-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5	0

32064900	- - 기타	5	5
3206500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5	5
3207100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15
32072000	-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20
3207300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15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5
32081010	- - - 바니시	5	20
32081090	- - - 기타	5	15
32082010	- - - 바니시	5	15
32082090	- - - 기타	5	15
32089010	- - - 바니시	5	15
32089090	- - - 기타	5	E
32091010	- - - 바니시	5	E
32091090	- - - 기타	5	E
32099010	- - - 바니시	5	E
32099090	- - - 기타	5	E
32100010	- - - 바니시	5	15
32100020	- - -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5	15
32100090	- - - 기타	5	15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5	20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5	5
32129010	- - -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5	15
32129090	- - - 기타	5	15
32131010	- - - 색조 수정용	5	5
32131090	- - - 기타	5	5
32139000	- 기타	5	5
32141010	- - - 기름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유리 접합용 퍼티(putty)로 한정한다]	5	E
32141020	- - -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과 접목용 퍼티[통 · 배럴(barrel) 등의 코팅용으로 한정한다]	5	20
32141030	- - - 공업용의 수지매스틱	5	10
32141040	- - - 물유리(water-glass)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점화 플러그 · 엔진블록 · 기름통 · 배기관 · 라디에이터(radiator) 등의 접합에 사용하며, 또한 어떤 접합 부분의 충전용이나 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5
32141050	- - - 옥시염화 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목재 · 도자제품 등의 코킹(caulking)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32141060	- - - 옥시염화 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목제품 틈 충전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32141070	- - - 황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조각으로 된 물품을 충전하거나 고정용으로 한정한다)	5	0
32141080	- - - 플라스틱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접합부 누수 방지 및 바닥면 밀폐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2141091	- - - - 산화아연과 글리세롤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내산성 도료의 제조에 사용하며, 철편을 도자제품에 접합하는데 사용하며, 관의 연결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2141092	- - - -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경화제를 첨가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연한 보호도포층이나 선박용 코킹(caulking)에 사용하는 것]	5	0

32141093	----- 실링왁스[균열의 코킹(caulking), 유리 용기의 누수 방지 및 문서 등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2141094	----- 충전용 매스틱(페인팅 표면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철을 고르게 하고 균열과 구멍을 채우는 것으로 건조 및 광택 후 페인트를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2141099	----- 기타	5	20
32149000	- 기타	5	E
32151100	-- 흑색	5	5
32151900	-- 기타	5	20
32159010	--- 필기·제도용 잉크	5	5
32159020	--- 복사용 잉크	5	5
32159030	--- 볼펜용 잉크	5	5
32159040	--- 복사기용 잉크	5	5
32159050	--- 스탬핑 패드 잉크(stamping pad ink)	5	5
32159060	--- 타자기용 리본 잉크	5	5
32159070	--- 마크용 잉크	5	5
32159080	--- 불가시(不可視) 잉크	5	5
32159090	--- 기타	5	5
33011200	-- 오렌지유	5	15
33011300	-- 레몬유	5	15
33011900	-- 기타	5	15
33012400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5	15
33012500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5	15
33012900	-- 기타	5	15
33013010	--- 덴 알 우드(우드 레지노이드)	5	15
33013090	--- 기타	5	15
33019011	----- 의료용	5	15
33019012	----- 케이드 워터(kady)	5	15
33019013	----- 장미수(rose water)	5	15
33019014	----- 꽃수(flower water)	5	15
33019016	----- 꽃가루수(pollen water)	5	15
33019017	----- 그 밖의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5	15
33019019	----- 기타	5	15
33019090	--- 기타	5	15
3302100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5	E
33029000	- 기타	5	15
33030010	--- 액체용·고체용 향수	5	20
33030020	--- 코롱(Cologne)	5	15
33030090	--- 기타	5	20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5	TR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5	TR
33043010	--- 손·발톱용 광택제·바니시	5	20
33043020	--- 바니시 제거제	5	20
33043090	--- 기타	5	20
33049110	--- 베이비파우더	5	20
33049190	--- 기타	5	20
33049910	--- 토일렛 비니거(toilet vinegar)	5	15
33049920	--- 선스크린(sunscreen)	5	15
33049930	--- 피부 연화제	5	E
33049940	--- 메이크업·메이크업 제거용 제품류	5	20
33049990	--- 기타	5	E
33051000	- 샴푸	5	E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5	15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5	15
33059010	- - - 헤어오일	5	E
33059020	- - - 헤어크림	5	15
33059030	- - - 두발용 염색 조제품	5	15
33059090	- - - 기타	5	15
33061010	- - - 치약	5	20
33061020	- - - 의치 세척제	5	20
33061090	- - - 기타	5	20
33062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5	20
33069010	- - - 구강세척제 · 구강용 향수 제품류	5	20
33069020	- - - 의치 고정제	5	20
33069090	- - - 기타	5	20
33071010	- - - 면도용 크림과 거품	5	15
33071090	- - - 기타	5	15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5	20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5	20
33074110	- - - 액체 상태인 것	5	15
33074120	- - - 가루 형상의 것	5	15
33074130	- - - 유향 스틱(incense stick)	5	15
33074190	- - - 기타	5	20
33074910	- - - 분무 용기의 것	5	20
33074920	- - - 냉장고나 차량 등의 탈취제로 사용되는 활성탄(activated carbon)	5	15
33074990	- - - 기타	5	20
33079010	- - - 탈모제	5	15
33079020	- - -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이나 향낭(perfumed sachet)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5	15
33079040	- - -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5	15
33079050	- - - 동물용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5	15
33079090	- - - 기타	5	15
34011130	- - - 블록(block) 모양의 면도용 비누	5	15
34011140	- - - 약용 비누	5	15
34011150	- - - 소독용 비누	5	20
3401117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펄트(felt)와 부직포 (향을 첨가한 것인지 상관 없다)	5	TR
34011180	- - - 화장 비누 [착색 · 향을 첨가하였는지, 연마성이나 소독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예: 렉스(Lux), 카메이(Camay) 등}]	5	E
34011190	- - - 기타	5	E
34011920	- - - 로진 비누나 톨유 비누	5	15
34011930	- - - 특수 목적의 공업용 비누	5	15
3401194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펄트(felt) · 부직포(향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15
34011990	- - - 기타	5	15
34012010	- - - 가루 형태인 것	5	15
34012020	- - - 페이스트(paste) 형태인 것	5	15
34012030	- - - 수용액(aqueous solution) 형태의 것	5	15
34012090	- - - 기타	5	15

34013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34023100	-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5	15
34023900	- - 기타	5	15
34024100	- - 양이온성	5	20
34024200	- - 비이온성	5	20
34024900	- - 기타	5	15
34025010	- - - 계면활성제[예: 클로락스(Clorox) 등]	5	15
34025021	- - - - 건조 파우더[예: 타이드(Tide) 등]	5	15
34025022	- - - - 액체 상태인 것	5	15
34025029	- - - - 기타	5	15
34029000	- 기타	5	20
34031100	- -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5	E
34031910	- - - 마찰감소용 조제 윤활제	5	E
34031920	- - -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5	E
34031930	- - - 절삭유	5	E
34031940	- - - 볼트 · 너트 방출제	5	15
34031950	- - - 방청제와 부식방지제	5	15
34031990	- - - 기타	5	E
34039100	- - 방직용 재료 · 가죽 · 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5	15
34039900	- - 기타	5	E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5	10
34049010	- - - 스탬핑 왁스(stamping wax)	5	5
34049090	- - - 기타	5	5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5
34052000	- 목제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5	5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5	5
3405400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5	5
34059010	- - - 유리와 거울 광택제	5	10
34059020	- - - 금속 광택제	5	5
34059090	- - - 기타	5	20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5
34070010	- - - 치과용 왁스(dental wax)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	5	5
34070020	- - - -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소석고(燒石膏)나 황산칼슘제의 것)	5	20
34070030	- - - 어린이 오락용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	5	15
34070090	- - - 기타	5	20
35011000	- 카세인(casein)	5	10
35019010	- - - 카세인 글루(casein glue)	5	10
35019090	- - - 기타	5	10
35021100	- - 건조한 것	5	10
35021900	- - 기타	5	0
35022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5	0
35029000	- 기타	5	0
35030010	- - - 젤라틴과 젤라틴 유도체	5	10
35030090	- - - 기타	5	10

35040010	- -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5	10
35040090	- - - 기타	5	10
35051010	- - - 덱스트린	5	5
35051020	- - - 프리젤라티나이징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5	0
35051030	- - - 에테르화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5	0
35051040	- - -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5	0
35051090	- - - 기타	5	5
35052010	- - - 덱스트린의 것	5	10
35052020	- - - 전분 글루(glue)	5	10
35052030	- - -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봉사와 수용성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glue)나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봉사와 전분 에테르로 구성된 글루(glue)	5	10
35052090	- - - 기타	5	10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35069100	-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5	20
35069900	- - 기타	5	15
35071010	- - - 송아지 레네트(rennet)	5	0
35071090	- - - 기타	5	5
35079010	- - - 육류연화용 효소조제품	5	0
35079020	- - - 과일주스 정제용 효소조제품	5	0
35079030	- - - 식물의 풀베기용 효소조제품	5	0
35079040	- - - 체장계 효소	5	0
35079050	- - - 펩신 효소	5	0
35079060	- - - 맥아 효소	5	0
35079090	- - - 기타	5	0
36010000	화약	5	0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5	20
36031000	- 도화선	5	5
36032000	- 도폭선	5	0
3603300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5	0
36034000	- 뇌관(detonating cap)	5	0
36035000	- 점화기	5	0
36036000	- 전기뇌관	5	0
36041010	- - - 아동용	5	TR
36041020	- - - 축제 및 축하행사용	5	0
36049000	- 기타	5	0
3605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5	20
36061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5	20
36069010	- - - 라이터 돌	5	20
36069090	- - - 기타	5	20
37011000	- 엑스선용	5	5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5	0
3701300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5
37019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5	0
37019900	- - 기타	5	15
37021000	- 엑스선용	5	5

37023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5	0
37023200	- -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	0
37023900	- - 기타	5	5
370241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5	0
370242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 (천연색 사진용의 것은 제외한다)	5	0
370243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5	0
37024400	-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37025200	-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370253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5	0
370254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5	0
370255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370256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370296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37029700	-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초과인 것	5	10
37029800	-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3703100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5	20
37039000	- 기타	5	15
370400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370500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5	10
37061010	- - - 문화·과학·농업·건강이나 교육 필름	5	0
37061090	- - - 기타	5	5
37069010	- - - 문화·과학·농업·건강이나 교육 필름	5	0
37069090	- - - 기타	5	0
37071000	- 감광유제	5	20
37079010	- - - 현상제	5	20
37079020	- - - 정착제	5	20
37079030	- - - 증도제와 감도제	5	20
37079040	- - - 조색제	5	20
37079050	- - - 세정제	5	20
37079090	- - - 기타	5	20
38011000	- 인조흑연	5	5
38012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5	0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5	20
38019010	- - - 흑연과 광물유의 혼합물	5	5
38019090	- - - 기타	5	5
38021000	- 활성탄	5	0
38029000	- 기타	5	0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5

380400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5	20
38051000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	5	5
38059000	- 기타	5	0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5	10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5	0
38063000	- 에스테르 검(ester gum)	5	5
38069000	- 기타	5	10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 · 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085200	-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38085900	- - 기타	5	10
38086100	-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10
38086200	-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5	0
38086900	- - 기타	5	10
380891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10
38089191	- - - - 인화 알루미늄의 것	5	10
38089199	- - - - 기타	5	10
380892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0
38089290	- - - 기타	5	20
380893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5
38089390	- - - 기타	5	20
380894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15
38089490	- - - 기타	5	20
38089910	-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10
38089990	- - - 기타	5	20
38091010	- - - 다림질용 전분[예: 메리토(Merito)]	5	10
38091090	- - - 기타	5	10
38099110	- - - 의류, 타월 등에 사용되는 유연제[예: 레노어(lenor) 등]	5	5
38099190	- - - 기타	5	0
380992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5	5
380993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5	0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땀질용 ·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5	10
38109000	- 기타	5	5
381111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E
38111900	- - 기타	5	E
38112100	-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5	E
38112900	- - 기타	5	20
38119000	- 기타	5	E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5	15
38122000	-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5	15
38123100	-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5	15
38123900	- - 기타	5	20
38130010	- - - 브로모클로로디플로로메탄 또는 브로모트리플로로메탄 또는 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5	15
38130020	- - - 메탄 · 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5	15
38130030	- - - 메탄 · 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5	15
38130040	- - -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5	15
38130090	- - - 기타	5	15
38140010	- - - 메탄 · 에탄 또는 프로핀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38140020	- - - 메탄 · 에탄 또는 프로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만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는 것	5	E
38140030	- - - 사염화탄소 · 브로모클로로메탄이나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5	E
38140090	- - - 기타	5	20
381511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5	E
381512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5	E
38151900	- - 기타	5	E
38159000	- 기타	5	E
38160000	내화시멘트 · 내화모르타르 ·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하며, 제 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15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E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 · 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5	15
3821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식물 · 인간 ·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5	20
38221100	- - 말라리아용	0	0
38221200	- -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38221300	- - 혈액형 분류용	0	0
38221900	- - 기타	0	0
38229000	- 기타	0	0
38231100	- - 스테아린산	5	0
38231200	- - 올레인산	5	0
382313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5	0
38231900	- - 기타	5	5
3823700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5	0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5	5
38243000	-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38244000	-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5	E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5	E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
382481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5	0
382482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5	5
382483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5	0
38248400	-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5	0
382485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5	0
382486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5	0
382487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5	15
38248800	-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5	15
38248900	- -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하는 것	5	15
382491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5	20
38249200	- - 메틸포스포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5	20
3824991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5	TR
3824992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 원지 수정제	5	TR
38249930	- - - 암모니아수와 폐산화물(spent oxide)	5	20
38249940	- - - 옥시석(oxylit)	5	E
38249950	- - - 바니시(vernish)나 글루(glue)의 경화를 위한 첨가제	5	E
38249960	- - - 진공관 · 전기밸브용 게터(getter)	5	20
38249970	- - - 수산화나트륨을 순수한 석회에 스며들게 하여 조제한 소다석회(soda-lime)	5	20
38249980	- - -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5	E
38249991	- - -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의 미끄럼방지제	5	TR
38249992	- - - - 휘발유 엔진용의 시동액	5	E
38249993	- - - -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	5	20
38249994	- - - - 에틸 글리콜을 함유한 라디에이터 냉각수	5	20
38249995	- - - - 포스폰산, 메틸-디메틸 에스테르, 옥시란 및 오산화인과의 중합체	5	20
38249996	- - - - 포스폰산(phosphonic acid), 메틸 - (아미노 아미노메틸) 우레아의 혼합물(1:1)	5	20
38249997	- - - - 포스폰시오르산, 메틸, (5 - 에틸-2-메틸 - 1,3,2-디옥산포스포리난-5-에일) 메틸 메틸 에스테르, B-옥사이드와 포스폰시오산, 메틸, 디[(5 - 에틸-2-메틸)의 혼합물 -2 산화된 1,3,2 디옥산포스포리난-5-일)메틸]에스테르의 혼합물	5	15
38249998	- - - - 2,4,6-트리프로필-1,3,5,2,4,6 트리옥사트리포스피란 (용제에 용해된 것)	5	15
38249999	- - - - 기타	5	E
38251000	- 생활폐기물	5	10
38252000	- 하수 찌꺼기	5	15

38253000	- 감염성 폐기물	0	0
382541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5	0
38254900	- - 기타	5	0
38255000	- 금속세정액 · 유압액 · 브레이크액 · 부동액 폐기물	5	TR
382561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5	0
38256900	- - 기타	5	0
38259000	- 기타	5	10
3826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총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1100	-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소(PFCs) ·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0
38271200	-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5	10
382713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5	10
382714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5	10
3827200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메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5	10
38273100	-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5	10
38273200	- -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3900	- - 기타	5	10
38274000	- 메틸 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5	10
38275100	-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5	10
38275900	- - 기타	5	10
38276100	-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5	10
382762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63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64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고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65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6800	- - 기타[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8276900	- - 기타	5	10
38279000	- 기타	5	10
39011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	E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5	E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5	E

3901400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	E
39019000	- 기타	5	E
39021000	- 폴리프로필렌	5	E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5	0
39023000	- 프로필렌 공중합체	5	E
39029000	- 기타	5	E
39031100	- - 발포성의 것	5	E
39031900	- - 기타	5	15
3903200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5	E
3903300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5	20
39039000	- 기타	5	E
3904100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39042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20
39042200	- - 가소화한 것	5	E
3904300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5	0
3904400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5	20
3904500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5	20
39046100	-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5	20
39046900	- - 기타	5	20
39049000	- 기타	5	20
39051200	- - 물에 분산된 것	5	15
39051900	- - 기타	5	15
39052100	- - 물에 분산된 것	5	E
39052900	- - 기타	5	10
3905300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15
39059100	- - 공중합체(共重合體)	5	15
39059900	- - 기타	5	E
3906100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5	E
39069010	- - - 고흡수성수지(SAP)	5	E
39069090	- - - 기타	5	E
39071000	- 폴리아세탈수지	5	TR
39072100	-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5	E
39072900	- - 기타	5	E
39073000	- 에폭시수지	5	E
39074000	- 폴리카보네이트	5	E
39075000	- 알키드수지	5	E
39076100	-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5	E
39076900	- - 기타	5	E
39077000	- 폴리(락트산)	5	5
39079100	- - 불포화의 것	5	E
39079900	- - 기타	5	E
3908100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5	E
39089000	- 기타	5	E
3909100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5	15
39092000	- 멜라민수지	5	0
39093100	-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5	E
39093900	- - 기타	5	15
39094000	- 페놀수지	5	15
39095000	- 폴리우레탄	5	E
39100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5	E

39111000	-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5	20
3911200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5	20
39119000	- 기타	5	20
39121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5	20
39121200	- - 가소화한 것	5	20
3912200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5	15
391231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5	E
39123900	- - 기타	5	15
39129000	- 기타	5	15
39131000	- 알긴산과 그 염 · 에스테르	5	10
39139000	- 기타	5	15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5	5
39151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10
39152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0
39153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10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E
39161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9161020	- - - 봉 · 프로파일	5	10
39162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9162020	- - - 봉 · 프로파일	5	15
39169010	- - -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39169020	- - - 봉 · 프로파일 모양인 것	5	10
3917100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스(sausage casing)]	5	10
39172100	-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
391722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20
391723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20
39172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20
39173100	- - 연질(軟質)의 관 · 파이프 ·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5	E
39173210	- - - 음료용 빨대	5	20
39173290	- - - 기타	5	15
39173300	-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39173900	- - 기타	5	20
39174000	- 연결구류	5	E
3918100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
3918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15
39191000	-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5	E
39199000	- 기타	5	E
39201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
3920200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
3920300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E
39204300	-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5	E
39204910	- - - 식탁보	5	E
39204990	- - - 기타	5	E
39205100	-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5	E
39205900	- - 기타	5	E

39206100	-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5	E
39206200	-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	E
392063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E
39206900	-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E
392071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5
392073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5
39207900	-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5	E
39209100	-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5	E
39209200	-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	E
39209300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5	15
39209400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5	15
39209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E
39211100	-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5	20
39211200	-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5	20
39211300	-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5	E
39211400	-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15
39211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E
39219000	- 기타	5	E
39221000	-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대	5	E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5	E
39229000	- 기타	5	E
39231010	- - - 가금(家禽) 운반용	5	E
39231020	- - - 유제품과 음료 운반용	5	E
39231090	- - - 기타	5	E
39232110	- - - 생분해성	5	20
39232190	- - - 기타	5	20
39232910	- - - 생분해성	5	20
39232990	- - - 기타	5	20
39233000	-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E
39234000	- 스푼(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20
39235000	-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E
39239000	- 기타	5	E
39241010	- - - 얼음과 식품 보관을 위한 용기	5	20
39241020	- - - 포크 · 스푼 · 칼	5	15
39241031	- - - - 셀룰러 플라스틱의 것(다포성)	5	15
39241039	- - - - 기타	5	20
39241040	- - - 젓병	5	15
39241090	- - - 기타	5	20
39249010	- - - 화장실용 칫솔, 종이냅킨, 컵용 홀더	5	20
39249030	- - - 재떨이	5	20
39249040	- - - 옷걸이	5	20
39249090	- - - 기타	5	20
39251000	-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39252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15
39253000	-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5	20
39259000	- 기타	5	20
39261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5	20
39262010	- - - 플라스틱제 의료용 장갑	5	20
39262090	- - - 기타	5	15
39263000	- 가구 · 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5	20

39264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5	20
39269031	- - - - 소변 및 대변 검체용 용기	5	20
39269032	- - - - 의료용 배양용 농포(pustular)판	5	20
39269039	- - - - 기타	5	20
39269040	- - - 나사·볼트·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5	E
39269050	- - -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끼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	5	20
39269061	- - - - 상품용의 것	5	20
39269069	- - - - 기타	5	20
39269070	- - - 컨베이어용 벨트 및 전동(transmission)용 벨트	5	15
39269080	- - - 산업 및 농업용의 기계·장비 기술 제품	5	20
39269091	- - - - 목주(rosary)	5	15
39269092	- - - - 시계용 모조 유리	5	15
39269093	- - - - 부채	5	15
39269099	- - - - 기타	5	E
4001100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40012100	-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5	0
40012200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5	10
40012900	- - 기타	5	10
4001300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5	0
40021100	- - 라텍스	5	5
40021900	- - 기타	5	E
40022000	- 부타디엔 고무(BR)	5	20
40023100	-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5	20
40023900	- - 기타	5	5
40024100	- - 라텍스	5	10
40024900	- - 기타	5	20
40025100	- - 라텍스	5	5
40025900	- - 기타	5	5
40026000	- 이소프렌 고무(IR)	5	15
4002700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5	15
4002800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5	0
40029100	- - 라텍스	5	5
40029900	- - 기타	5	1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5	5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5	15
4005100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5	10
4005200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5	10
40059100	- - 판·시트(sheet)·스트립	5	15
40059900	- - 기타	5	15
40061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5	10
40069010	- - - 관(管)	5	20
40069020	- - - 링(ring)·디스크(disc)·와셔(washer)	5	15
40069030	- - - 실	5	10
40069040	- - -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5	10
40069090	- - - 기타	5	10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40081100	- - 판·시트(sheet)·스트립	5	15

40081900	- - 기타	5	10
40082100	- - 판(sheet)·스트립	5	20
40082900	- - 기타	5	20
40091110	- - - 운송 기기용	5	TR
40091190	- - - 기타	5	15
40091210	- - - 운송 기기용	5	15
40091290	- - - 기타	5	15
40092110	- - - 운송 기기용	5	20
40092190	- - - 기타	5	15
40092210	- - - 운송 기기용	5	15
40092290	- - - 기타	5	15
40093110	- - - 운송 기기용	5	20
40093190	- - - 기타	5	10
40093210	- - - 운송 기기용	5	15
40093290	- - - 기타	5	10
40094110	- - - 운송 기기용	5	20
40094190	- - - 기타	5	15
40094210	- - - 운송 기기용	5	15
40094290	- - - 기타	5	15
401011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5	20
401012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5	20
40101900	- - 기타	5	20
401031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01032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5	20
401033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401034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5	10
401035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5	15
401036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5	15
40103900	- - 기타	5	E
4011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5	E
40112000	- 버스용·화물차용	5	E
40113000	- 항공기용	5	20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5	20
40115000	- 자전거용	5	20
4011700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20
4011800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5	15
40119000	- 기타	5	20
401211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PROH	PROH

40121200	- -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PROH	PROH
40121300	- - 버스용 · 항공기용	PROH	PROH
40121900	- - 기타	PROH	PROH
40122000	- 중고 공기타이어	PROH	PROH
40129000	- 기타	5	15
4013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버스용 · 화물차용	5	20
40132000	- 자전거용	5	15
40139000	- 기타	5	20
40141000	- 콘돔	5	15
40149010	- - - 캐놀러(cannula) · 아이스백 · 주사기 · 온수 주머니 · 점적기(dropper) · 점적기 손잡이 · 손가락 고무 · 산소 주머니	5	15
40149020	- - - 젓꼭지(포유 젓꼭지)	5	15
40149090	- - - 기타	5	5
40151200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5	20
40151910	- - - 소화용	5	5
40151990	- - - 그 밖의 용도의 것	5	20
40159010	- - - 잠수부 · 소방수용	5	5
40159020	- - - 외과의사 · 방사선취급자용 의류와 의류 부속품	5	10
40159030	- - - 벨트	5	10
40159040	- - - 코트 · 오바코트 · 앞치마 · 코르셋(corset) · 턱받이(bib) · 아동용 바지와 이와 유사한 것	5	10
40159090	- - - 기타	5	5
4016100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5	20
40169100	- - 바닥 깔개와 매트	5	15
40169200	- - 지우개	5	5
40169300	-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5	E
401694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 없다)	5	5
40169510	- -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 베개 · 쿠션	5	5
40169590	- - - 기타	5	20
40169910	- - - 타이어 및 이너튜브(inner tube) 수리용 패치(patch)	5	20
40169920	- - - 스탬프용의 문자 · 숫자와 이와 유사한 것	5	5
40169930	- - - 철도용 · 궤도용 · 기관차용 부분품	5	5
40169940	- - -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 부분품	5	20
40169950	- - - 제8710호의 자동차 부분품	5	20
40169990	- - - 기타	5	15
40170010	- - - 가루,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40170020	- - - 의료 주사기용 압축기	5	20
40170030	- - - 욕실용 위생용품과 이와 유사한 것	5	20
40170040	- - - 드럼과 세면기	5	20
40170050	- - - 마개	5	20
40170060	- - - 링(ring) · 개스킷(gasket)(셀룰러 경화고무 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0170090	- - - 기타	5	20
4101200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 ·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1500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4101900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5	0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5	20
41022100	- - 산처리한 것	5	20
41022900	- - 기타	5	20
41032000	- 파충류의 원피	5	0
41033000	- 돼지의 원피	SpGo	SpGo
41039000	- 기타	5	0
4104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41900	- - 기타	5	0
41044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44900	- - 기타	5	0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20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20
41062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TR
41062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0
41063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SpGo	SpGo
41063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SpGo	SpGo
41064000	- 파충류의 원피	5	0
41069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5	0
41069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5	10
4107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1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0
41071900	- - 기타	5	10
41079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41079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5	10
41079900	- - 기타	5	10
4112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 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TR
41131000	- 염소의 가죽	5	0
41132000	- 돼지의 가죽	SpGo	SpGo
41133000	- 파충류의 가죽	5	10
41139000	- 기타	5	10
4114100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5	10
4114200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5	10
41151000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5	10
41152000	-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5	0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5	10
42021110	- - - 트렁크·슈트케이스	5	15
42021120	- - - 서류가방	5	5
42021130	- - - 학생가방	5	5
42021190	- - - 기타	5	10

42021210	- - - 트렁크·슈트케이스	5	15
42021220	- - - 서류가방	5	5
42021230	- - - 학생가방	5	5
42021290	- - - 기타	5	5
42021910	- - - 외부 표면을 목재(wood)로 만든 것	5	5
42021920	- - - 외부 표면을 철(iron)로 만든 것	5	5
42021990	- - - 기타	5	5
42022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20
42022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20
42022900	- - 기타	5	5
42023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20
42023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20
42023900	- - 기타	5	5
42029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15
42029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20
42029900	- - 기타	5	5
42031000	- 의류	5	5
420321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5	TR
42032900	- - 기타	5	5
42033000	- 벨트와 띠	5	TR
42034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5	10
42050010	- - - 특히 자동차 와이퍼용으로 제작된 새미가죽(chamois leather)	5	5
42050020	- - - 속을 채우지 않은 푸프(pouffe) 케이스	5	10
42050030	- - - 가죽제의 구두끈	5	0
42050040	- - - 가죽제의 또는 가죽으로 덮어씌운 책상 패드(pad)	5	5
42050050	- - - 워터스킨(waterskin)·엔벨롭(envelope)과 그 밖의 장식한 물품(제420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42050060	- - - 가죽으로 덮어씌운 끈·버클(buckle)·자물쇠와 틀의 부분품	5	5
42050090	- - - 기타	5	10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5	0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0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0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0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0
43019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5	0
43021100	- - 밍크의 것	5	0
43021900	- - 기타	5	0

43022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23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43031010	- - - 모피로 만든 남성용 목도리(stole)	5	0
43031090	- - - 기타	5	5
43039000	- 기타	5	5
43040010	- - - 조각 모양의 인조모피	5	0
43040020	- - - 인조모피로 만든 남성용 목도리(stole)	5	0
43040090	- - - 기타	5	0
44011100	- - 침엽수류	0	0
44011200	- - 활엽수류	0	0
44012100	- - 침엽수류	5	0
44012200	- - 활엽수류	5	0
44013100	- - 목재 펠릿(pellet)	5	5
44013200	- - 목재 브리켓(briquette)	5	5
44013900	- - 기타	5	0
44014100	- - 톱밥	5	0
44014900	- - 기타	5	0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44022000	-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0	0
44029000	- 기타	0	0
440311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1190	- - - 기타	5	0
440312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1290	- - - 기타	5	0
440321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190	- - - 기타	5	0
440322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290	- - - 기타	5	0
440323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390	- - - 기타	5	0
440324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490	- - - 기타	5	0
440325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590	- - - 기타	5	0
4403261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2690	- - - 기타	5	0
4403412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4190	- - - 기타	5	0
44034200	- - 티크(teak)	5	0
4403492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4990	- - - 기타	5	0
44039120	- - - 전신 · 전화 · 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9190	- - - 기타	5	0
440393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039400	-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0395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0396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0397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5	10

44039800	-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5	0
44039920	- - - 전신·전화·전력 송전용의 전봇대	5	0
44039990	- - - 기타	5	0
44041010	- - - 통의 테나 허들 제조에 사용되는 나무로 만든 후프우드(hoopwood)	5	0
44041020	- - -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되는 쪼갠 말뚝(split pole)	5	0
44041030	- - - 지팡이·공구의 자루 등을 제조하기 위한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휜 가공·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5	0
44041040	- - -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이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은 제외한다)	5	0
44041050	- - - 칩바구니(chip-basket)·체·성냥갑 등을 제조하기 위한 칩우드(chipwood)	5	0
44041090	- - - 기타	5	0
44042010	- - - 배럴 스테이브(barrel stave)와 파티션용의 후프우드(hoopwood)	5	0
44042020	- - - 원예와 농업용의 지주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이나 지붕용의 외가지로서 사용되는 쪼갠 말뚝(split pole)	5	0
44042030	- - - 지팡이·공구의 자루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의 목재의 막대(stick)(거칠게 다듬은 것으로서 선반가공·휜 가공·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5	0
44042040	- - - 뾰족하게 만든 말뚝류(껍질을 벗겼거나 보존제(preservative)로 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이 길이 방향으로 쪼갠 것은 제외한다)	5	0
44042050	- - - 칩바구니(chip-basket)·체·성냥갑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칩우드(chipwood)	5	0
44042090	- - - 기타	5	0
44050010	- - - 목모(wood wool)	5	0
44050020	- - - 목분(wood flour)	5	0
44061100	- - 침엽수류	5	0
44061200	- - 활엽수류	5	0
44069100	- - 침엽수류	5	0
44069200	- - 활엽수류	5	0
440711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1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1190	- - - 기타	5	0
440712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12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1290	- - - 기타	5	0
44071300	-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5	0
44071400	- - 헴퍼(Hem-fir)[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5	0
440719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1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1990	- - - 기타	5	0
44072100	-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5	0
44072200	-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5	0

44072300	- - 티크(teak)	5	0
440725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25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2590	- - - 기타	5	0
440726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26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2690	- - - 기타	5	0
44072700	- - 사펠리(Sapelli)	5	0
44072800	- - 이로코(Iroko)	5	0
44072900	- - 기타	5	0
440791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9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9190	- - - 기타	5	0
440792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92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9290	- - - 기타	5	0
44079300	- -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5	0
44079400	-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5	0
44079500	-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5	0
44079600	-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의 것	5	0
44079700	-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5	0
440799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79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79990	- - - 기타	5	0
44081010	- - - 대패질한 것	5	5
440810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81090	- - - 기타	5	0
440831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831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83190	- - - 기타	5	0
44083910	- - - 대패질한 것	5	0
440839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83990	- - - 기타	5	0
44089010	- - - 대패질한 것	5	5
44089020	- - -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5	0
44089090	- - - 기타	5	0
44091010	- - - 블록가공한 목재	5	10
44091020	- - - 경사이음가공한 목재	5	10
44091030	- - - 가장자리가 둥근 대패질한 패널	5	10
44091040	- - - 브이형이음가공한 목재(블록가공 · 홈가공 · 경사이음가공)	5	10
44091050	- - - 천장용 블록가공 목재 · 홈가공 목재	5	10
44091060	- - - 그림틀 · 벽장식 · 가구 · 문 · 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 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딩(beading)]	5	10
44091070	- - - 성냥촉목 · 부목 · 신발용의 나무못 · 나무로 된 차양 [피놀리움 블라인드(pinoleum blind)]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단면이 둥근 막대 모양의 원형가공 목재(rounded wood)	5	10
44091090	- - - 기타	5	10

44092110	--- 그림틀·벽장식·가구·문·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 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 딩(beading)]	5	5
44092190	--- 기타	5	0
44092200	-- 열대산 목재의 것	5	0
44092910	--- 그림틀·벽장식·가구·문·그 밖의 목공품과 목재 건구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형가공 목재(moulded wood)[프레임 스틱(frame stick), 몰딩(moulding)이나 비 딩(beading)]	5	0
44092990	--- 기타	5	0
441011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5	0
44101200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5	0
44101900	-- 기타	5	5
44109000	- 기타	5	20
44111200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0
44111300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44111400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10
44119200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5	0
44119300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 인 것	5	0
44119400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5	10
441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5	5
4412310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33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 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 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틀라(Betula)속]·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 (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 ·단풍나무[아서(Acer)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 푸루스(Populus)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두나무 [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34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 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하 다]	5	0
44123900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410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42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4900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510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5200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5900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9100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5	0

441292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29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4414100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5
44149000	- 기타	5	5
44151010	- - - 포장용 및 운송용의 케이스 · 상자 · 작은 상자	5	5
44151020	- - - 빈 성냥갑(불을 켜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5	0
44151040	- - - 케이블 드럼	5	0
44151090	- - - 기타	5	5
44152000	- 팔릿(pallet) · 박스팔릿(box pallet) ·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팔릿칼러(pallet collar)	5	0
44160000	목재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브(tub) ·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5	0
44170010	- - - 작용하는 부분을 목재로 만든 공구	5	0
44170020	- - - 공구의 몸체	5	0
44170030	- - - 공구용 손잡이	5	5
44170040	- - - 비나 브러쉬의 몸체	5	5
44170050	- - - 비나 브러시의 손잡이	5	5
44170060	- - - 신발 제조용이나 모양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신발의 골	5	0
44170090	- - - 기타	5	5
44181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10
44181900	- - 기타	5	10
44182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20
44182900	- - 기타	5	20
44183000	-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5	20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5	20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5	5
44187300	-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5	0
44187400	-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441875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187900	- - 기타	5	5
44188100	- - 집성재[글루램(glulam)]	5	5
44188200	-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5	5
44188300	- - 아이빔(I beam)	5	5
44188900	- - 기타	5	5
4418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0
44189200	- - 셀룰러우드패널	5	0
44189910	- - - 계단용 난간	5	0
44189920	- - - 셀룰러우드 프레임 패널(비금속 시트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5
44189990	- - - 기타	5	5
44191100	-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5	5
44191200	- - 젓가락	5	5
44191900	- - 기타	5	5
4419200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5
44199000	- 기타	5	5
442011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5	5

44201900	- - 기타	5	5
44209010	- - - 옷칠한 나무로 만든 작은 케이스와 상자, 칼붙이류 · 과학기구 등을 위한 케이스 · 상자, 포켓 상자, 편지 케이스 · 반질고리(needlework box), 담배통 · 사탕과자상자 등	5	0
44209020	- - - 제94류에 해당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제품[솔 걸이(brush hanger) · 편지통(사무실용) · 재떨이 등]	5	0
44209030	- - - 목주(rosary)	5	0
44209040	- - - 향로(censer)	5	0
44209090	- - - 기타	5	5
44211000	- 옷걸이	5	0
44212000	- 관(棺)	5	0
4421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5
44219910	- - - 스폴 · 콧 · 보빈 · 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 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44219920	- - - 농촌 작업용 제품(토끼장 · 닭둥우리 · 벌통 · 새장 · 개집 · 여물통과 멍에 등)	5	0
44219930	- - - 무대(극장용) 배경	5	0
44219940	- - - 휴대용 사다리	5	0
44219950	- - - 계단식 발판	5	0
44219960	- - - 선전 광고판, 간판, 도로 표지판	5	5
44219970	- - 이쑤시개	5	5
44219980	- - -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과 그 축(스프링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5
44219991	- - - - 세탁용 보드(washing board)와 다림질용 보드(ironing board)	5	5
44219992	- - - - 빨래집게	5	0
44219993	- - - - 포장용 블록	5	0
44219994	- - - - 성냥용 가공 부목(나무 부분)	5	0
44219995	- - - - 신발용의 나무로 된 못이나 핀	5	0
44219996	- - - - 용량 측정구 및 저울	5	5
44219999	- - - - 기타	5	10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45019000	- 기타	5	0
45020010	- - - 코르크(cork) 제조용 입방체(cube)나 블록(block) 모양인 것	5	5
45020020	- - - 냉장 또는 작물 보존용 판(plate) · 입방체(cube) · 시트(sheet)	5	5
45020090	- - - 기타	5	5
45031000	- 마개	5	20
45039010	- - - 어망용 부표	5	15
45039020	- - - 기계와 운송 장비용 부분품	5	15
45039030	- - - 병마개 안을 대는 용도의 디스크(disc)와 링(ring)	5	15
45039040	- - - 냉장 공업용과 작물 보존용의 제품	5	15
45039090	- - - 기타	5	15
45041010	- - - 냉장 공업용과 작물 보존용의 제품	5	20
45041090	- - - 기타	5	20
45049010	- - - 어망용 부표	5	20
45049020	- - - 기계와 운송 장비용 부분품	5	20
45049030	- - - 마개	5	20
45049040	- - - 병마개 안을 대는 용도의 디스크(disc)와 링(ring)	5	20
45049090	- - - 기타	5	20
4601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20

46012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15
46012900	- - 기타	5	20
46019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20
46019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20
46019400	-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5	20
46019900	- - 기타	5	20
46021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5
46021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5
46021910	- - - 수세미(loofah) 제품	5	0
46021990	- - - 기타	5	0
46029011	- - - - 바구니	5	5
46029012	- - - - 핸드백·쇼핑백과 이와 유사한 것	5	5
46029013	- - - - 여행가방과 상자	5	5
46029014	- - - - 새장·벌집과 그 유사물품	5	0
46029015	- - - - 어량(fish trap)	5	0
46029016	- - - - 가정용품·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	10
46029017	- - - - 병 덮개	5	0
46029018	- - - - 수세미(loofah) 제품·목욕용 수세미와 이와 유사한 것	5	5
46029019	- - - - 기타	5	5
46029090	- - - 기타	5	10
47010000	기계목재펄프	5	0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5	10
4703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0
4703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0
4703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0
4703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0
4704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20
4704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0
4704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5	20
4704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5	15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5	10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5	10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5	0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0
47069100	- - 기계펄프	5	0
47069200	- - 화학펄프	5	0
470693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5	15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5	15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5	15
47079010	- - - 목은 신문지	5	15
47079090	- - - 기타	5	15
4801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5	5
48021000	- 수제(手製) 종이와 판지	5	15
4802200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5	15
48024000	- 벽지용 원지(原紙)	5	15
48025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5	10

48025500	-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5	E
480256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48025700	-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5	E
480258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15
48026100	- - 롤 모양인 것	5	10
480262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48026900	- - 기타	5	15
48030010	- - - 화장지 · 안면용 티슈용 원지, 타월 · 냅킨용 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5	E
48030090	- - - 기타	5	20
4804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5
48041900	- - 기타	5	20
4804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10
48042900	- - 기타	5	20
4804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10
48043900	- - 기타	5	20
4804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20
48044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5	0
48044900	- - 기타	5	20
4804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5	0
48045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5	10
48045900	- - 기타	5	5
480511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5	E
48051200	-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5	20
48051910	- - - 재생라이너판의 플루팅 지(fluting paper)(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48051920	- - - 재생라이너판의 플루팅 지(fluting paper)(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051990	- - - 기타	5	E
48052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5	E
480525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20
48053000	- 아황산포장지	5	E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5	20
48055000	- 펄트지와 판지	5	E
48059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5	20
48059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5	20
48059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5	20
48061000	- 황산지	5	15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5	10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5	15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5	5

48070000	겹붙인 종지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5	20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지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5	5
48084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5	5
48089000	- 기타	5	5
48092000	- 셀프복사지	5	15
48099000	- 기타	5	5
48101300	- - 롤 모양인 것	5	20
48101400	-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5	20
48101900	- - 기타	5	E
48102200	-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5	20
48102900	- - 기타	5	20
481031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103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103900	- - 기타	5	20
48109200	- - 여러 겹의 것	5	E
48109900	- - 기타	5	20
4811100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지와 판지	5	TR
48114110	- - - 롤 또는 테이프 모양(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48114190	- - - 기타	5	20
48114900	- - 기타	5	5
48115100	-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48115900	- - 기타	5	E
4811600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지와 판지	5	20
48119000	- 그 밖의 종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5	E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5	5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5	10
4813200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5	0
48139000	- 기타	5	5
4814200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149000	- 기타	5	20
48162000	- 셀프복사지	5	15
48169000	- 기타	5	15
48171000	- 봉투	5	15
4817200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5	15

48173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 · 파우치 · 지갑 ·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5
48181000	- 화장지	5	E
48182000	- 손수건 · 클렌징티슈 · 안면용 화장지 · 타월	5	20
48183010	- - - 책상보	5	10
48183090	- - - 기타	5	20
4818500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5	20
48189000	- 기타	5	20
48191010	- - - 향수용 · 신변장식용품용 · 선물용	5	E
48191090	- - - 기타	5	E
48192010	- - - 향수용 · 신변장식용품용 · 선물용	5	20
48192090	- - - 기타	5	E
4819300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5	20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5	E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5	20
48196000	- 서류상자 · 서류받침 · 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 · 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201000	-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15
48202000	- 연습장	5	20
48203010	- - - 금속피팅(fitting)의 것	5	5
48203090	- - - 그 밖의 종류의 것	5	5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5	0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5	5
48209000	- 기타	5	5
48211000	- 인쇄한 것	5	E
48219000	- 기타	5	15
4822100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5	5
48229000	- 기타	5	5
4823200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5	15
4823400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 · 시트(sheet) · 다이얼	5	20
48236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20
48236900	- - 기타	5	TR
48237010	- - - 알(egg) 포장에 사용되는 주형 플레이트(plate)	5	0
48237090	- - - 기타	5	20
48239010	- - - 과일 · 과자 · 이와 유사한 것의 포장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48239020	- - - 레이스(lace)지, 자수지와 그것의 스트립(strip), 셸프 에징(shelf edging)용의 종이	5	10
48239030	- - - 종이로 만든 개스킷(gasket)과 링(ring)	5	20
48239040	- - - 스탬프(stamp)와 사진용 앵글과 경첩 · 그림 테두리용 스트립(strip) · 슈트케이스용 보강 앵글	5	10
48239050	- - - 테일러링 패턴(tailoring patterns)	5	0
48239060	- - - 자카드용 구멍을 뚫은 카드와 이와 유사한 것	5	5
48239070	- - - 방직용 캔(can), 사(絲, yarn) 등을 감기 위한 평판 모양의 카드	5	0
48239080	- - - 소시지용 방수 종이의 인조 거트(gut)	5	0
48239091	- - - - 손 부채	5	10
48239092	- - - - 포장용의 페이퍼울(paper wool)	5	20
48239093	- - - - 편조물 또는 그 밖의 용도의 종이 스트립[도포 또는 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20
48239094	- - - - 컴퓨터용 용지	0	0

48239099	- - - - 기타	5	TR
49011010	- - - 질문, 답변 또는 그 밖의 일반적인 교육 정보가 포함된 일련번호가 기입된 카드	0	0
49011090	- - - 기타	0	0
49019100	- -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0
49019911	- - - - 코란(Quran) 경전	0	0
49019919	- - - - 기타	0	0
49019920	- - - 시각 장애인 또는 속기 사용자를 위해 점자 기법으로 인쇄된 서적(book)·소책자(booklet)·팸플릿(pamphlet)	0	0
49019930	- - - 학교 및 대학 서적	0	0
49019940	- - - 박물관과 공공도서관용 색인 및 연간 디렉토리(directory)	0	0
49019950	- - - 어린이용 삽화 책(그림이 주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0
49019960	- - - 판지를 피복한 신문·잡지·정기간행물과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결합하여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49019990	- - - 기타	0	0
49021010	- - - 신문	0	0
49021020	- - - 잡지	0	0
49021090	- - - 기타	0	0
49029010	- - - 신문	0	0
49029020	- - - 잡지	0	0
49029030	- - - 정기 간행물	0	0
49029090	- - - 기타	0	0
49030010	- - - 아동용 습화책	0	0
49030020	- - - 아동용 그림책	0	0
49030090	- - - 기타	0	0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10
49052000	- 책자로 된 것	0	0
49059010	- - - 지구본	0	0
49059090	- - - 기타	0	0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 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5	20
49070011	- - - - 우표	0	0
49070012	- - - - 수입인지	0	0
49070019	- - - - 그 밖의 스탬프	0	0
49070020	- - - 사용하지 않은 우표류가 찍힌 종이 카드와 봉투	0	0
49070031	- - - -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	0	0
49070032	- - - - 아직 법화로 유통되지 않는 은행권	0	0
49070040	- - - 여행자 수표	0	0
49070050	- - - 공인 수표	0	0
49070060	- - - 번호 및 서명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0	0
49070070	- - - 인쇄물로 사용되는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0	0
49070080	- - - 수표장	0	0
49070090	- - - 기타	0	0
49081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5	0

49089000	- 기타	5	5
49090010	- - - 엽서	5	0
49090020	- - - 연하장 및 이와 유사한 카드	5	5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5	5
49111010	- - - 광고 선전물	5	15
49111090	- - -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5	15
49119110	- - - 관광명소와 조경 사진(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49119190	- - - 기타	5	15
49119910	- - - 달력용 인쇄된 마운트(mount)(그림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5	20
49119920	- - - 해부학·식물학·동물학을 위한 교육용 보드	5	20
49119930	- - - 파티(party)·페스티벌(festival)·운송수단 티켓(ticket)과 이와 유사한 티켓	5	20
49119990	- - - 기타	5	20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500200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	0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 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	0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	0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	0
50060000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	0
50071000	- 견 노일(noil) 직물	5	5
5007200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5	5
50079000	- 그 밖의 직물	5	10
51011100	- - 깎은 양모	5	0
51011900	- - 기타	5	0
51012100	- - 깎은 양모	5	0
51012900	- - 기타	5	0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5	0
51021100	-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	0
51021900	- - 기타	5	0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5	0
51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5	0
5103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5	0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5	0
5104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	0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5	0
510521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5	0
51052900	- - 기타	5	0
51053100	- - 캐시미어 염소의 것	5	0
51053900	- - 기타	5	0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106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0
5106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0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5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0
51081000	- 카드(card)한 것	5	0

51082000	- 코움(comb)한 것	5	5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0
51099000	- 기타	5	10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i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	0
511111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11190	- - - 기타	5	5
511119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11990	- - - 기타	5	0
51112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12090	- - - 기타	5	0
51113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13090	- - - 기타	5	0
51119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19090	- - - 기타	5	5
511211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15
51121190	- - - 기타	5	5
511219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5
51121990	- - - 기타	5	0
51122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22090	- - - 기타	5	0
51123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23090	- - - 기타	5	0
51129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29090	- - - 기타	5	0
51130011	-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 제작용	5	0
51130019	- - - - 기타	5	0
51130020	- - - 직물(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5	15
520291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	10
52029900	- - 기타	5	5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52041100	-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20
52041900	- - 기타	5	20
52042000	- 소매용	5	20
52051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5	0
52051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51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51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51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5	5
52052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5	0
52052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52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52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52600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5	0
52052700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5	0
52052800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5	0
5205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 터식 번수 14수 이하)	5	0
5205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5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5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 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5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 식 번수 80수 초과)	5	0
5205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 터식 번수 14수 이하)	5	10
52054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10
52054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5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 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546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 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5	10
52054700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5	10
520548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 식 번수 120수 초과)	5	10
52061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0
52061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 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61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 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61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61500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0
52062100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0
52062200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 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62300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 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62400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62500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0
52063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 터식 번수 14수 이하)	5	0
52063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0
52063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63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63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0
520641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5	0
52064200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5	5
52064300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5	0
52064400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5	0
52064500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5	0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10
52079000	- 기타	5	10
520811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20812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TR
520813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1900	-- 그 밖의 직물의 것	5	10
520821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20822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520823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5
52082900	-- 그 밖의 직물의 것	5	5
520831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20832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20833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10
52083900	-- 그 밖의 직물	5	5
520841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20842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5
520843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84900	-- 그 밖의 직물	5	0
520851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52085200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2085900	-- 그 밖의 직물	5	5
52091100	-- 평직물(平織物)	5	TR
52091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1900	-- 그 밖의 직물	5	5
52092100	-- 평직물(平織物)	5	5

52092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2900	-- 그 밖의 직물	5	10
52093100	-- 평직물(平織物)	5	5
52093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3900	-- 그 밖의 직물	5	5
52094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094200	-- 데님(denim)	5	5
52094300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10
52094900	-- 그 밖의 직물	5	5
52095100	-- 평직물(平織物)	5	10
52095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095900	-- 그 밖의 직물	5	10
52101100	-- 평직물(平織物)	5	10
52101900	-- 그 밖의 직물	5	5
52102100	-- 평직물(平織物)	5	10
52102900	-- 그 밖의 직물	5	5
52103100	-- 평직물(平織物)	5	15
52103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15
52103900	-- 그 밖의 직물	5	5
52104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104900	-- 그 밖의 직물	5	5
52105100	-- 평직물(平織物)	5	15
52105900	-- 그 밖의 직물	5	0
52111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111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5
52111900	-- 그 밖의 직물	5	0
52112000	-- 표백한 것	5	0
52113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113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5
52113900	-- 그 밖의 직물	5	0
52114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114200	-- 데님(denim)	5	0
52114300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4900	-- 그 밖의 직물	5	5
52115100	-- 평직물(平織物)	5	0
52115200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5	0
52115900	-- 그 밖의 직물	5	0
52121100	-- 표백하지 않은 것	5	TR
52121200	-- 표백한 것	5	0
52121300	-- 염색한 것	5	15
521214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0
52121500	-- 날염한 것	5	5
52122100	-- 표백하지 않은 것	5	0
52122200	-- 표백한 것	5	0
52122300	-- 염색한 것	5	5

52122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0
52122500	- - 날염한 것	5	5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5	0
530121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5	0
53012900	- - 기타	5	0
5301300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5	0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5	0
53029000	- 기타	5	0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3039000	- 기타	5	0
53050000	코코넛 · 아바카(마닐라마) ·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	0
53061000	- 단사	5	0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5
53071000	- 단사	5	0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3081000	- 코이어(coir)사	5	10
53082000	- 대마사	5	0
53089000	- 기타	5	10
5309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5
53091900	- - 기타	5	5
5309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53092900	- - 기타	5	5
53101000	- 표백하지 않은 것	5	15
53109000	- 기타	5	20
531100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	20
54011010	- - - 소매용의 것	5	10
54011090	- - - 기타	5	10
54012010	- - - 소매용의 것	5	10
54012090	- - - 기타	5	10
54021100	- - 아라미드의 것	5	5
54021900	- - 기타	5	5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54023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40232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233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20
540234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5
54023900	- - 기타	5	5
54024400	- - 탄성사	5	5
540245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40246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40247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540248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4024900	-- 기타	5	20
540251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0
540252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20
540253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4025900	-- 기타	5	0
540261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0
540262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20
540263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4026900	-- 기타	5	5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40331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40332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540333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0
54033900	-- 기타	5	10
540341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	10
540342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0
54034900	-- 기타	5	0
54041100	-- 탄성사	5	15
54041200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54041900	-- 기타	5	15
54049000	- 기타	5	15
54050010	--- 모노필라멘트	5	15
54050090	--- 기타	5	15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10
5407100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5	20
54072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5	20
5407300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5	15
54074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20
54074200	-- 염색한 것	5	20
54074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20
54074400	-- 날염한 것	5	20
54075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20
54075200	-- 염색한 것	5	E
54075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20
54075400	-- 날염한 것	5	20
54076100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E
54076900	-- 기타	5	20
54077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20
54077200	-- 염색한 것	5	20
54077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20
54077400	-- 날염한 것	5	20
54078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15
54078200	-- 염색한 것	5	20
54078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20
54078400	-- 날염한 것	5	15
54079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15
54079200	-- 염색한 것	5	20
54079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20

54079400	- - 날염한 것	5	20
5408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5	15
5408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10
54082200	- - 염색한 것	5	5
5408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5
54082400	- - 날염한 것	5	20
5408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5
54083200	- - 염색한 것	5	5
5408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5
54083400	- - 날염한 것	5	10
55011100	- - 아라미드의 것	5	10
55011900	- - 기타	5	10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10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0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5019000	- 기타	5	5
55021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5	15
55029000	- 기타	5	20
55031100	- - 아라미드(aramid)의 것	5	0
55031900	- - 기타	5	5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TR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20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TR
55039000	- 기타	5	TR
5504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5	0
55049000	- 기타	5	0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5	0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5	0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	0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5	20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5	0
5506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5	0
55069000	- 기타	5	5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55081010	- - - 소매용	5	0
55081090	- - - 기타	5	5
55082010	- - - 소매용	5	0
55082090	- - - 기타	5	5
55091100	- - 단사	5	0
5509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092100	- - 단사	5	10
55092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10
55093100	- - 단사	5	0
55093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5
55094100	- - 단사	5	0
55094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095100	-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0
550952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0
550953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5900	- - 기타	5	5
550961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0
550962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55096900	- - 기타	5	0
55099100	-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0
55099200	-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5	10
55099900	- - 기타	5	0
55101100	- - 단사	5	0
5510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55109000	- 그 밖의 실	5	5
55111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	0
55112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	0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5	0
55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TR
55121900	- - 기타	5	20
55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20
55122900	- - 기타	5	20
5512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20
55129900	- - 기타	5	20
5513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20
5513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20
55131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20
55131900	- - 그 밖의 직물	5	15
5513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20
5513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20
55132900	- - 그 밖의 직물	5	20
55133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15
55133900	- - 그 밖의 직물	5	20
5513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20
55134900	- - 그 밖의 직물	5	15
5514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5
5514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5
55141900	- - 그 밖의 직물	5	10
5514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10
55142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0
5514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5
55142900	- - 그 밖의 직물	5	10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5
5514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5	5

551442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5	5
55144300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	15
55144900	-- 그 밖의 직물	5	0
55151100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5	20
55151200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20
55151300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15
55151900	-- 기타	5	20
55152100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15
55152200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5	15
55152900	-- 기타	5	15
55159100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5	20
55159900	-- 기타	5	20
55161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5
55161200	-- 염색한 것	5	15
55161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5
55161400	-- 날염한 것	5	5
55162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55162200	-- 염색한 것	5	5
55162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5
55162400	-- 날염한 것	5	10
55163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55163200	-- 염색한 것	5	0
55163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0
55163400	-- 날염한 것	5	10
55164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55164200	-- 염색한 것	5	0
55164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10
55164400	-- 날염한 것	5	0
55169100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5
55169200	-- 염색한 것	5	0
551693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	10
55169400	-- 날염한 것	5	10
56012110	-- 면봉	5	15
56012190	-- 기타	5	15
56012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56012900	-- 기타	5	15
5601300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5	15
56021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5	10
56022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10
560229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20
56029000	-- 기타	5	10
560311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	TR
560312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	20
560313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	5
560314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TR
560391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5	TR
560392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5	15
560393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5	TR
56039400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5	TR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56049000	- 기타	5	15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56060010	- - - 짐프사(Gimped yarn)·스트립(strip) 및 이와 유사한 것	5	5
56060020	- - - 셔닐사(chenille yarn)	5	5
56060030	- - -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	0
56072110	- - - - 엮지 않은 것	5	10
56072120	- - - - 엮은 것	5	20
56072910	- - - - 엮지 않은 것	5	5
56072920	- - - - 엮은 것	5	5
56074110	- - - - 엮지 않은 것	5	10
56074120	- - - - 엮은 것	5	5
56074910	- - - - 엮지 않은 것	5	10
56074920	- - - - 엮은 것	5	5
56075010	- - - - 엮지 않은 것	5	10
56075020	- - - - 엮은 것	5	5
56079010	- - - - 엮지 않은 것	5	10
56079021	- - -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5	5
56079029	- - - - 기타	5	5
56081100	- - 제품으로 된 어망	5	5
56081900	- - 기타	5	10
56089000	- 기타	5	5
56090010	- - - 구두끈	5	20
56090020	- - - 빨랫줄	5	20
56090030	- - - 슬링(sling)	5	20
56090090	- - - 기타	5	20
5701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20
57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5702100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 및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5	TR
5702200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5	0
57023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20
57023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TR
57023190	- - - 기타	5	20
570232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E
57023220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15
57023290	- - - 기타	5	15
57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57024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TR
57024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TR
57024190	- - - 기타	5	20
570242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TR
57024221	- - - - 침대용·테이블용 커버	5	20
57024229	- - - - 기타	5	20
57024230	- - - 기도용 깔개	5	20
57024290	- - - 기타	5	20
57024911	- - - - 기도용 깔개	5	20

57024919	- - - - 기타	5	20
57024990	- - - 기타	5	TR
5702500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	15
57029110	- - - 기계로 만든 양탄자류	5	20
57029120	- - - 러그와 이와 유사한 것	5	10
57029190	- - - 기타	5	10
57029210	- - - 모켓(moquette) 양탄자류 및 러그	5	20
57029220	- - - 기도용 깔개	5	15
57029290	- - - 기타	5	20
57029911	- - - - 기도용 깔개	5	15
57029919	- - - - 기타	5	0
57029990	- - - 기타	5	0
57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E
57032100	- - 인조잔디(turf)	5	E
57032900	- - 기타	5	E
57033100	- - 인조잔디(turf)	5	E
57033910	- - - 양탄자류, 러그 및 모켓(moquette)	5	E
57033920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E
57033930	- - - 기도용 깔개	5	E
57033990	- - - 기타	5	E
57039011	- - - - 기도용 깔개	5	E
57039019	- - - - 기타	5	E
57039090	- - - 기타	5	E
57041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57042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57049000	- 기타	5	E
57050011	- - - - 셔닐사(chenille yarn)로 만든 양탄자류와 러그	5	20
57050012	- - - - 기도용 깔개	5	15
57050019	- - - - 기타	5	5
57050020	- - - 부직포 양탄자류[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방직용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나 플라스틱 등에 의해 위치가 고정된 것]	5	20
57050030	- - - 모켓(moquette) 또는 모피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양탄자류	5	0
57050090	- - - 기타	5	20
58011010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제작용	5	10
58011090	- - - 기타	5	10
580121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5	10
580122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5	5
580123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5	0
58012600	- - 셔닐(chenille)직물	5	20
58012700	- - 경(經)파일(pile)직물	5	5
58013100	-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5	10
58013200	-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5	10
58013300	-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5	10
58013600	- - 셔닐(chenille)직물	5	5
58013700	- - 경(經)파일(pile)직물	5	5
58019011	- - - - 아바야(abaya)[남성용 클룩(cloak)]제작용	5	0
58019019	- - - - 기타	5	5
58019090	- - - 기타	5	5

5802100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	20
5802200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	20
58023000	- 터프트(tuft)한 직물	5	15
5803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5	0
58041000	- 툴(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5	20
58042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58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5	0
58050000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0
5806100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5	TR
5806200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5806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TR
5806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0
5806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덱)	5	0
58071000	- 직조한 것	5	5
58079000	- 기타	5	5
5808100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5	0
58089000	- 기타	5	5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zed yarn)의 직물(의류 · 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	20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5
5810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5
5810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5810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581100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	15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5	5
59019010	- - - 투사포(tracing cloth)	5	15
59019020	- - - 회화용 캔버스	5	10
59019030	- - - 모자 제조에 사용하는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	10
5902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5	15
5902200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20
59029000	- 기타	5	10
59031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	TR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59039000	- 기타	5	20
59041000	- 리놀륨	5	5

59049000	- 기타	5	0
59050010	- - - 셔닐(chenille)로 만든 것	5	10
59050020	- - - 면으로 만든 것	5	10
5905006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0
59050090	-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15
590610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5	TR
59069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	0
59069900	- - 기타	5	10
59070011	- - - - 물품 등의 덮개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타르·역청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E
59070012	- - - - 왁스성 물질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15
59070013	- - - - 천연수지와 장뇌(樟腦)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하거나 포화시킨 얇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5	10
59070014	- - - - 기름이나 건성유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예: 건성유와 그을음의 혼합물을 두꺼운 층으로 도포한 포장용 천, 대마·황마·아마·면으로 만든 질기고 거친 직물 및 방수성 인조직물]	5	10
59070015	- - - - 불연성을 주기 위하여 규산염을 도포(塗布)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예: 내화스크린용)	5	10
59070019	- - - - 기타	5	20
59070020	- - -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	10
590800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트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	5
59090010	- - - 소방용	5	5
59090090	- - - 기타	5	0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5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5	20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5	10
59113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5	5
59113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5	5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 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5	10
59119000	- 기타	5	10
60011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5	10
60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0
60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001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001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0
6001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001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0024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	0
60029000	- 기타	5	0
60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0
60032000	- 면으로 만든 것	5	10
6003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10
60034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10
60039000	- 기타	5	5
60041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	20
60049000	- 기타	5	5
6005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15
60052200	- - 염색한 것	5	15
60052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15
60052400	- - 날염한 것	5	10
600535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5	10
60053600	-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60053700	-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0053800	-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60053900	-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005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15
60054200	- - 염색한 것	5	15
60054300	-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5	15
60054400	- - 날염한 것	5	15
60059000	- 기타	5	10
6006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0
600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60062200	- - 염색한 것	5	5
60062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0
60062400	- - 날염한 것	5	0
600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5
60063200	- - 염색한 것	5	20
60063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10
60063400	- - 날염한 것	5	0
600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	0
60064200	- - 염색한 것	5	0
60064300	-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5	0
60064400	- - 날염한 것	5	5
60069000	- 기타	5	5
61012000	- 면으로 만든 것	5	20
6101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20
61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102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1022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2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2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31000	- 슈트	5	15
61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TR
61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1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0
61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3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1034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34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34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41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1041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42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42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1042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43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0
61043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43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43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104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0
61044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44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444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5
61044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45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1045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45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45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046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10
610462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46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046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51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5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61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6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0711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71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71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1072100	-- 면으로 만든 것	5	0
61072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72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1079100	-- 면으로 만든 것	5	10
61079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10811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081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082100	-- 면으로 만든 것	5	10
61082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0
61082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10831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83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0
61083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0891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892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0
61089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091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101100	-- 양모로 만든 것	5	5

61101200	- -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5	5
61101900	- - 기타	5	0
61102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110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11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112000	- 면으로 만든 것	5	20
6111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20
611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112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0
6112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1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TR
61122000	- 스키슈트	5	0
61123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1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124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112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1130000	의류(제5903호 · 제5906호 ·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TR
61142000	- 면으로 만든 것	5	15
6114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114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115100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5	15
61152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115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115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15300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611594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10
61159500	- - 면으로 만든 것	5	20
611596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15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116100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5	5
6116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1169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116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116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1171000	-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5
61178000	- 그 밖의 부속품	5	5
61179000	- 부분품	5	5
62012010	- - - 클룩(cloak)	5	0
62012090	- - - 기타	5	0
62013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1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2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2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23000	- 면으로 만든 것	5	0
62024010	- - - 여성용 클룩(cloak)	5	5
62024090	- - - 기타	5	5
62029011	- - - - 여성용 클룩(cloak)	5	5

62029019	- - - - 기타	5	5
62029090	- - - 기타	5	5
6203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15
62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3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2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10
62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2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1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4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204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62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5
62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15
62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52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5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2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6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5
6206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	10
62063000	- 면으로 만든 것	5	5
6206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2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5	20
62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62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20
62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2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2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5
62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2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20
62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2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5
62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2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62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5
62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15
62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2092000	- 면으로 만든 것	5	20
6209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15
62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2101010	- - -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일회용 의류와 슈트(수술실용으로 살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62101090	- - - 기타	5	15
6210200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6210300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210400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5	10
6210500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5	5
621111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5	5
621112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5	5
62112000	- 스키슈트	5	10
621132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0
62113220	- - - 트레이닝슈트	5	5
62113290	- - - 기타	5	5
621133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5
62113320	- - - 트레이닝슈트	5	5
62113390	- - - 기타	5	5
62113910	- - - 토브(Thobe)[디슈다샤(Dishdasha)]	5	0
62113920	- - - 트레이닝슈트	5	5
62113990	- - - 기타	5	5
62114200	- - 면으로 만든 것	5	5
62114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211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121000	- 브래지어	5	5
62122000	- 거들과 팬티거들	5	5
62123000	- 코르슬렛(corselette)	5	0
62129000	- 기타	5	5
62132000	- 면으로 만든 것	5	10
6213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214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5
62142010	- - - 숄(shawl)	5	5
62142020	- - - 머플러	5	0
62142090	- - - 기타	5	5
62143010	- - - 숄(shawl)	5	5
62143020	- - - 머플러	5	0
62143030	- - - 스카프	5	5
62143040	- - - 베일(veil)	5	0
62143090	- - - 기타	5	5
62144010	- - - 숄(shawl)	5	10
62144020	- - - 머플러	5	10

62144030	- - - 스카프	5	10
62144040	- - - 베일(veil)	5	10
62144090	- - - 기타	5	10
62149011	- - - - 솔(shawl)	5	10
62149012	- - - - 머플러	5	10
62149013	- - - - 스카프	5	10
62149014	- - - - 베일(veil)	5	10
62149019	- - - - 기타	5	10
62149090	-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215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5	5
6215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21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2160000	장갑류	5	5
62171010	- - - 양말류	5	15
62171020	- - - 바깥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유아용 신발은 제외한다)	5	15
62171031	- - - - 진주·귀석이나 반귀석으로 장식하거나 귀금속으로 만든 버클(buckle)이나 그 밖의 부속물을 부착한 것	5	15
62171039	- - - - 기타	5	15
62171040	- - - 장식용 끈이나 배지(badge) 또는 휘장[적신월사·민방위 배지(badge)와 같이 팔에 착용하는 것]	5	15
62171050	- - - 레이블(label)·배지(badge)·엠블렘(emblem)·이니셜(initial)(제5807호나 제58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15
62171060	- - - 군복의 전면부를 장식하기 위한 엮은 스트립(strip)[브레이드(braid)]과 이와 유사한 것(어깨나 겨드랑이에 착용하도록 디자인한 것을 포함한다)	5	15
62171070	- - - 주머니·소매·칼라(collar)·여성복용 칼라(collarete)·웜플(wimple)·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예: 커프스·요크·라펠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15
62171090	- - - 기타	5	15
62179010	- - - 겨드랑이 쉴드(shield)	5	20
62179020	- - - 재단용 어깨 패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20
62179090	- - - 기타	5	20
63011000	- 전기모포	5	20
6301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TR
6301300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20
6301400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5	TR
6301900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5	20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E
6302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0
6302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
63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3023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0
6302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E
63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5	5
63025100	- - 면으로 만든 것	5	15
63025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0
6302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3029110	- - - 성지순례용 [이람(Ihram)] 타월	5	5
63029120	- - - 일반 타월과 목욕용 타월	5	10
63029130	- - - 릴(reel)에 걸도록 엔드-조인한(end-joined) 타월	5	0
63029140	- - - 용기 닦기용 · 건조용 주방타월	5	10
63029190	- - - 기타	5	5
63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6302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3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0
6303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5
63039110	- - - 커튼과 드레이프	5	10
63039120	- - - 운송수단용 블라인드	5	5
63039190	- - - 기타	5	5
63039210	- - - 커튼과 드레이프	5	10
63039220	- - - 운송수단용 블라인드	5	10
63039290	- - - 기타	5	5
6303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5
63041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5	10
63041900	- - 기타	5	10
63042000	- 베드 네트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0
63049110	- - - 모기장	5	0
630491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0
63049190	- - - 기타	5	5
63049210	- - - 모기장	5	10
630492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10
63049230	- - - 커튼 밴드	5	10
63049240	- - - 베갯잇	5	10
63049290	- - - 기타	5	10
63049310	- - - 모기장	5	10
630493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10
63049330	- - - 커튼 밴드	5	10
63049340	- - - 베갯잇	5	10
63049390	- - - 기타	5	10
63049910	- - - 모기장	5	10
63049920	- - - 차량 시트용 커버	5	10
63049930	- - - 커튼 밴드	5	10
63049940	- - - 베갯잇	5	10
63049990	- - - 기타	5	10
63051010	- - - 황마로 만든 것	5	10
63051090	- - - 기타	5	10
63052000	- 면으로 만든 것	5	10
63053200	-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63053300	- - 기타[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20
63053900	- - 기타	5	10
63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10
63061210	- - - 방수포(tarpaulin)	5	15
63061220	- - - 천막과 차양	5	20
63061910	- - - 방수포(tarpaulin)	5	10
63061920	- - - 천막과 차양	5	20
6306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20

6306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20
63063000	- 돛	5	10
6306400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5	0
63069000	- 기타	5	0
63071000	- 마루닥이포 · 접시닥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5	5
63072000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5	5
63079010	- - -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5	15
63079020	- - - 깃발 · 현수막 · 페넌트(pennant) ·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15
63079030	- - - 세탁물 또는 신발용 포대 · 여성용 스타킹이나 손수건용 통 및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직물로 만든 가정용 통	5	15
63079040	- - - 의류 보호용 포대	5	15
63079050	- - - 자동차 · 기계, 슈트케이스 · 테니스 라켓용 등의 벗길 수 있는 커버	5	15
63079060	- - - 커피여과용 포와 제빙용 주머니	5	10
63079070	- - - 대회용 장식목걸이	5	10
63079080	- - - 공기식 쿠션(제6306호의 캠핑용품은 제외한다)	5	5
63079091	- - - - 찻주전자용 커버	5	10
63079092	- - - - 핀 쿠션(pin cushion)	5	0
63079094	- - - - 구두 끈과 조임장치	5	15
63079095	- - - - 운반식 요람	5	15
63079096	- - - - 여행용 차양과 우산용 장대 및 케이스	5	10
63079097	- - - - 외과용 마스크와 먼지 · 악취 보호용 얼굴 마스크	5	20
63079099	- - - - 기타	5	15
6308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과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5	5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5	E
63101000	- 선별한 것	5	20
63109000	- 기타	5	20
64011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5	5
640192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5	10
64019900	- - 기타	5	5
640212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5	0
64021900	- - 기타	5	10
64022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4029100	- - 발목을 덮는 것	5	10
64029900	- - 기타	5	10
640312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5	15
64031900	- - 기타	5	10
6403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4034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40351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20
640351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10
64035130	- - - 아동용	5	0
640359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10
640359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10
64035930	- - - 아동용	5	5

640391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10
640391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5
64039130	－ － － 아동용	5	5
64039910	－ － － 남성용과 소년용	5	10
64039920	－ － － 여성용과 소녀용	5	10
64039930	－ － － 아동용	5	5
64041100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 와 이와 유사한 것	5	10
64041900	－ 기타	5	10
6404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20
64051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	20
64052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5	15
64059000	－ 기타	5	15
6406100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5	0
6406200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한다)	5	5
64069000	－ 기타	5	5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 래투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5	0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6504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 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65050010	－ － － 자수한 모자[시마그(shimagh)]	5	15
65050020	－ － － 시마그(shimagh) 형태로 날염된 모자[구트라 (ghutra)](자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5
65050030	－ － － 일반 구트라(ghutra)[포일(foil)]	5	15
65050040	－ － － 스컬캡(skullcap)[타키야(taqia)]	5	15
65050050	－ － － 헤드밴드[우쿨(uqul)]	5	10
65050060	－ － － 군모와 베레모	5	15
65050070	－ － － 수술실용 일회용 모자(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살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65050080	－ － － 구트라(ghutra)(모자류)(자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65050090	－ － － 기타	5	15
65061010	－ － － 스포츠 활동용	5	15
65061020	－ － － 소방관용 헬멧	5	0
65061030	－ － － 군용 헬멧	5	15
65061040	－ － － 오토바이 기수용 헬멧	5	10
65061050	－ － － 건설인부용 헬멧	5	15
65061090	－ － － 기타	5	15
65069110	－ － － 수영모자	5	5
65069190	－ － － 기타	5	0
650699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5
650700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5	5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5	20

660191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5	10
66019900	- - 기타	5	20
66020010	- - - 지팡이	5	5
66020020	- - - 채찍	5	0
66020090	- - - 기타	5	0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5	5
66039000	- 기타	5	10
67010010	- - - 깃털로 만든 장식용 손부채	5	0
67010090	- - - 기타	5	5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20
67029010	- - - 금속의 박으로 만든 것	5	0
67029020	- - -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	0
67029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5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5	0
67041100	- - 전체가발	5	10
67041900	- - 기타	5	5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5	15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5
68010010	- - - 사암으로 만든 것	5	20
68010020	- - - 화강암으로 만든 것	5	TR
68010030	- - - 반암으로 만든 것	5	15
68010040	-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5	E
68010090	- - - 그 밖의 천연석재로 만든 것	5	E
6802100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변의 길이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5	15
680221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5	E
68022300	- - 화강암	5	20
68022900	- - 그 밖의 돌	5	20
68029110	- - - 계단·코니스(cornice)·난간·문이나 창문용 틀·상인방(lintel)·문지방·경계선용 돌이나 이정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5	E
68029121	- - - - 욕조	5	TR
68029122	- - - - 세면대	5	TR
68029123	- - - - 우물반	5	20
68029129	- - - - 기타	5	TR
68029130	- - - 꽃병·인조 과일과 인조 잎	5	20
68029140	- - - 기둥·받침대·토대·기둥머리	5	15
68029150	- - - 컵·상자·재떨이	5	20
68029160	- - - 문진과 필기보조도구	5	20
68029170	- - - 가구의 윗부분을 형성하는 석판(예: 식탁용·설거지통용 및 테이블용 등)	5	E
68029190	- - - 기타	5	20
680292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5	15
68029300	- - 화강암	5	15
68029900	- - 그 밖의 돌	5	15
68030010	- - - 건축용·도로포장용 타일과 블록	5	20
68030090	- - - 기타	5	15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5	5

68042100	- -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680422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5	20
680423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5	15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5	TR
68051000	- 방직용 섬유 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TR
68052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E
68053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5	TR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5	20
68062000	- 박리한 질석(蛭石)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5	15
68069000	- 기타	5	E
68071000	- 롤 모양인 것	5	20
68079010	- - - 타일 · 블록 및 타일용 석재	5	20
68079020	- - - 천장용 · 건축용 보드	5	20
68079030	- - - 관 · 관 연결구류	5	20
68079040	- - - 주조하거나 성형하여 만든 식탁용품	5	20
68079090	- - - 기타	5	20
680800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5	TR
680911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5	TR
68091900	- - 기타	5	20
68099010	- - - 보드 · 시트(sheet)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68099020	- - - 장식용 주조제품(패턴 · 기둥 · 그릇 · 꽃병 및 이와 유사한 제품)	5	TR
68099030	- - - 공업용 주형	5	20
68099090	- - - 기타	5	20
68101100	- - 건축용 블록(block)과 벽돌	5	20
68101910	- - - 지붕용 벽돌	5	20
68101921	- - - - 포장용 블록(block)과 슬래브(slab)	5	20
68101922	- - - - 마루용이나 지붕용 타일(연마한 암석의 총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68101923	- - - - 알갱이 모양 대리석 타일	5	E
68101929	- - - - 기타	5	20
68101990	- - - 기타	5	20
68109100	- - 건축용 · 토목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	5	15
68109910	- - - 고정식 욕실용품	5	20
68109990	- - - 기타	5	20
68114000	- 석면을 함유한 것	PROH	PROH
681181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5	20
68118200	- -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5	15
68118910	- - - 탱크	5	15
68118920	- - - 세면대와 고정식의 욕실용 부착물	5	15
68118930	- - - 꽃병	5	15
68118990	- - - 기타	5	15
68128000	- 청석면의 것	PROH	PROH
68129100	- -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5	20

68129900	- - 기타	5	20
68132000	- 석면을 함유한 것	PROH	PROH
68138100	-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5	20
68138900	- - 기타	5	20
68141000	- 판(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 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68149010	- - - 관·도관과 이와 유사한 성형제품	5	10
68149090	- - - 기타	5	10
68151100	- - 탄소섬유	5	20
68151200	- - 탄소섬유 직물	5	20
68151310	- - - 탄소섬유로 만든 여과관과 디스크(disc)	5	20
68151320	- - - 탄소섬유로 만든 액시얼(axial) 잉곳(ingot)	5	20
68151330	- - - 탄소섬유로 만든 가공한 벽돌과 타일	5	20
68151340	- - - 탄소섬유로 만든 섬세한 도안이 있는 물품(예: 화폐, 메달 등) 제조용 주형	5	20
68151390	- - - 기타	5	20
68151910	- - - 여과관과 디스크(disc)	5	20
68151920	- - - 액시얼(axial) 잉곳(ingot)	5	20
68151930	- - - 가공한 벽돌과 타일	5	20
68151940	- - - 섬세한 도안이 있는 물품(예: 화폐, 메달 등) 제조용 주형	5	20
68151990	- - - 기타	5	20
68152010	- - - 플레이트(plate)	5	5
68152020	- - - 실린더 모양의 것	5	5
68152030	- - - 화분	5	10
68152090	- - - 기타	5	5
68159110	- - - 타르로 응결시킨 백운석으로 만든 불에 굽지 않은 벽돌	5	5
68159120	- - - 벽돌과 그 밖의 형태의 마그네사이트나 크로뮴-마그네사이트(불에 굽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68159190	- - - 기타	5	15
68159910	- - - 실리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불에 굽지 않은 통[예: 유리의 용융(鎔融)용으로 사용하는 것]	5	5
68159920	- - - 귀금속 검사용 시금석(touchstone)	5	5
68159930	- - - 포장용 블록(block)과 슬래브(slab)	5	15
68159940	- - - 석영이나 부싯돌을 잘게 분쇄하여 응결시켜 만든 여과관	5	5
68159950	- - - 그 밖의 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용융(鎔融) 현무암으로 만든 것]	5	5
68159990	- - - 기타	5	15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69021000	-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20
69022000	- 알루미늄(Al_2O_3), 실리카(SiO_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20
69029000	- 기타	5	20
69031000	- 유리(遊離)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20

69032000	-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5	TR
69039000	- 기타	5	TR
69041000	- 건축용 벽돌	5	20
69049000	- 기타	5	20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5	20
69059010	- - - 굴뚝갓	5	20
69059020	- - - 건축용 장식품	5	20
69059090	- - - 기타	5	20
69060000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흡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5	TR
690721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5	E
690722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5	E
69072300	-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5	E
6907300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E
69074000	- 피니싱 세라믹	5	E
69091100	- - 자기제의 것	5	20
690912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5	20
69091900	- - 기타	5	20
69099010	- - - 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향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5	5
69099090	- - - 기타	5	5
69101000	- 자기제의 것	5	E
69109000	- 기타	5	TR
6911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5	E
69119000	- 기타	5	20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5	20
69131010	- - - 향로(censer)	5	0
69131020	- - - 서가 · 문진(paper weight)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	5	0
69131030	- - - 꽃병	5	0
69131040	- - - 재떨이	5	5
69131050	- - - 보석함 · 캔디 상자 및 이와 유사한 것	5	0
69131090	- - - 기타	5	5
69139010	- - - 꽃병	5	5
69139090	- - - 기타	5	5
69141010	- - - 문과 창문용 부속품(예: 손잡이 · 지판 등)	5	20
69141020	- - - 간판 · 문자 · 숫자 및 그 밖의 표지판	5	20
69141090	- - - 기타	5	20
69149010	- - - 도자재료(일반 도자재료와 세라믹 페이스트)로 만든 스토브와 그 밖의 가열장치	5	20
69149020	- - - 일반 도자재료로 만든 비장식성의 화분(예: 원예용)	5	20
69149030	- - - 실험실용 · 상업용(약국, 제과점 등) 향아리와 단지	5	20
69149090	- - - 기타	5	20
700100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나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5	E
70021000	- 구(球)	5	0
70022000	- 막대(rod)	5	0
70023100	- - 석영유리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5	15
700232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5	0

70023900	- - 기타	5	5
70031200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	5	0
70031900	- - 기타	5	10
7003200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5	20
70033000	- 프로파일(profile)	5	5
70042000	- 유리[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	5	10
70049000	- 그 밖의 유리	5	TR
7005100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TR
70052100	-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5	15
70052900	- - 기타	5	E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5	15
70060000	제7003호 · 제7004호 ·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5	15
70071100	-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	10
70071900	- - 기타	5	TR
70072100	- -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5	TR
70072900	- - 기타	5	TR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5	E
70091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5	E
700991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5	5
70099200	- - 틀이 붙은 것	5	TR
70101000	- 앰플	5	TR
70102000	-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5	20
70109000	- 기타	5	E
70111000	- 전등용	5	15
70112000	- 음극선관용	5	20
70119000	- 기타	5	15
70131010	- - - 식탁용이나 주방용	5	20
70131030	- - - 사무실용	5	20
70131041	- - - - 화장실용 향수병	5	20
70131049	- - - - 기타	5	20
70131090	- - - 기타	5	20
701322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20
70132800	- - 기타	5	20
701333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20
70133700	- - 기타	5	20
70134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5	20
701342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5	20
70134900	- - 기타	5	E
70139110	- - - 사무실용	5	20
70139131	- - - - 화장실용 향수병	5	20

70139139	- - - - 기타	5	20
70139190	- - - 기타	5	20
70139910	- - - 수족관	5	20
70139920	- - - 향로(censer)	5	20
70139990	- - - 기타	5	20
70140010	- - - 운송장비용	5	5
70140090	- - - 기타	5	5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5	20
70159010	- - - 시계용 유리	5	10
70159020	- - - 선글라스와 그 밖의 보호 안경용 유리	5	20
70159090	- - - 기타	5	10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5	5
70169000	- 기타	5	15
70171010	-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70171090	- - - 기타	0	0
70172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1백만분의 5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5	10
70179000	- 기타	5	10
70181010	- - - 묵주(rosary)	5	20
70181090	- - - 기타	5	20
70182000	-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5	TR
70189000	- 기타	5	15
70191100	-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0191200	- - 로빙(roving)	5	E
70191300	- - 그 밖의 실[슬리버(silver)로 한정한다]	5	E
70191400	-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5	E
70191500	-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5	E
70191900	- - 기타	5	E
701961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5	E
70196200	- -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5	E
701963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은 것]	5	E
70196400	-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	5	E
70196500	- - 성기계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5	E
70196600	- - 성기계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0196900	- - 기타	5	E
70197100	- - 베일(얇은 시트)	5	E
70197200	-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5	E
70197300	- - 그 밖의 성긴 직물	5	E
70198000	-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	5	E
70199010	- - - 운송장비용	5	E
70199020	- - - 물탱크	5	E
70199030	- - - 가구용과 실내장식용	5	E
70199040	- - - 절연 목적용(열·소리·전기용)	5	E
70199050	- - - 전기 계기용 유리섬유 케이스(전기적 장치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0199060	- - - 관(管)	5	E
70199070	- - - 가정용 레인지(range) 가스 통(유리섬유로 만든 것)	5	TR

70199090	- - - 기타	5	E
70200010	- - - 운송장비용	5	20
70200020	- - - 탱크와 세면대	5	20
70200030	- - - 상점용 문자 · 숫자 · 명판과 그 밖의 장식	5	20
70200040	-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70200090	- - - 기타	5	20
71011000	- 천연진주	5	20
7101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5	E
71012200	- - 가공한 것	5	E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	0
71022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1022900	- - 기타	5	0
71023100	-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0	0
71023900	- - 기타	5	0
7103100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5	20
71039100	- -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5	0
71039900	- - 기타	5	0
71041000	- 압전기용 석영	5	0
71042100	- - 다이아몬드	5	0
71042900	- - 기타	5	0
71049100	- - 다이아몬드	5	5
71049900	- - 기타	5	5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5	0
71059000	- 기타	5	0
71061000	- 가루	0	0
71069110	- - - 잉곳(ingot)	0	0
71069190	- - - 기타	0	0
71069200	- - 반가공한 것	0	0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71081100	- - 가루	0	0
71081210	- - - 잉곳(ingot)	0	0
71081290	- - - 기타	0	0
710813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0
71082000	- 화폐용	0	0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71101110	- - - 잉곳(ingot)	0	0
71101190	- - - 기타	0	0
71101900	- - 기타	0	0
7110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2900	- - 기타	0	0
71103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3900	- - 기타	0	0
71104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71104900	- - 기타	0	0
7111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0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5	15
711291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5	15

711292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5	15
71129900	- - 기타	5	15
7113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5	20
71131910	- - - 금으로 만든 것	5	20
71131920	- - - 백금과 백금족으로 만든 것	5	20
7113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20
7114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5	20
71141910	- - - 금으로 만든 것	5	5
71141920	- - - 백금과 백금족으로 만든 것	5	15
7114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15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71159000	- 기타	5	0
71161010	- - - 신변장식용 제품	5	E
71161090	- - - 기타	5	E
71162010	- - - 신변장식용 제품	5	20
71162020	- - - 공업용 제품	5	20
71162090	- - - 기타	5	20
71171110	- - - 커프링크(cuff-link)	5	20
71171190	- - - 기타	5	20
71171900	- - 기타	5	20
7117901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20
71179020	- - - 유리로 만든 것	5	20
71179030	- - - 목재로 만든 것	5	20
71179090	- - - 기타	5	15
7118100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71189000	- 기타	0	0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01500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5	E
72021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5	E
72021900	- - 기타	5	E
720221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5	E
72022900	- - 기타	5	E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5	E
72024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5	E
72024900	- - 기타	5	20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5	E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5	20
72027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5	20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5	E
720291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5	E
720292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5	E
720293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5	E
72029900	- - 기타	5	20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5	E

72039000	- 기타	5	E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E
72042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5	TR
72042900	- - 기타	5	E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E
72044100	- -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변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5	E
72044900	- - 기타	5	E
72045000	- 재활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5	E
72051000	- 알갱이	5	E
72052100	- - 합금강의 것	5	E
72052900	- - 기타	5	E
72061000	- 잉곳(ingot)	5	E
72069000	- 기타	5	E
72071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071200	-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5	E
72071900	- - 기타	5	E
7207200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5	E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E
720825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0826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27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36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0837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0838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39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4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	E
72085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085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085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5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89000	- 기타	5	E
72091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0916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917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0918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92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092600	-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927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0928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099000	- 기타	5	E
721011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1012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0200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5	E
72103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04100	- - 물결 모양의 것	5	E
72104900	- - 기타	5	E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06100	-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06900	- - 기타	5	E
7210700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	E
72109000	- 기타	5	E
72111300	-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E
72111400	-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111900	- - 기타	5	E
721123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5	E
72112900	- - 기타	5	E
72119000	- 기타	5	E
7212100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2200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23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2400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5	E
7212500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26000	- 클래드(clad)한 것	5	E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5	E
72132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139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39900	- - 기타	5	E
72141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41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41090	- - - 기타	5	E
72142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42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42090	- - - 기타	5	E
72143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43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43090	- - - 기타	5	E
7214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	E
72149900	- - 기타	5	E
72151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51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51090	- - - 기타	5	E
7215503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5504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55090	- - - 기타	5	E

7215903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59040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59090	--- 기타	5	E
72161000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162100	-- 엘(L)형강	5	E
72162200	-- 티(T)형강	5	E
72163110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6312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63210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6322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63310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6332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64010	---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 220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64020	--- 높이가 22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6500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1661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5	E
72166900	-- 기타	5	E
72169100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5	E
72169900	-- 기타	5	E
7217100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7217200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73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179000	- 기타	5	E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5	E
72189100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5	E
72189900	-- 기타	5	E
721911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91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913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1400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2100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2192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923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2400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31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193200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3300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3400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193500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199000	- 기타	5	E
722011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5	E
72201200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0200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E
72209000	- 기타	5	E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221100	-- 횡단면이 원형인 것	5	E

72221900	- - 기타	5	E
7222200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223000	- 그 밖의 봉	5	E
72224000	- 형강(形鋼)	5	E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5	E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5	E
72249000	- 기타	5	E
7225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5	E
72251900	- - 기타	5	E
7225300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25400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25500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E
72259100	-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259200	-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2259900	- - 기타	5	E
7226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5	E
72261900	- - 기타	5	E
72262000	- 고속도강의 것	5	E
72269100	-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E
72269200	-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5	E
72269900	- - 기타	5	E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5	E
72272000	- 실리콘망간강의 것	5	E
72279000	- 기타	5	E
72281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1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1090	- - - 기타	5	E
72282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2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2090	- - - 기타	5	E
72283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3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3090	- - - 기타	5	E
72284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4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4090	- - - 기타	5	E
72285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5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5090	- - - 기타	5	E

7228601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5	E
72286020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것	5	E
72286090	－ － － 기타	5	E
72287000	－ 형강(形鋼)	5	E
72288000	－ 중공(中空)드릴봉	5	E
72292000	－ 실리콘망간강의 것	5	E
72299000	－ 기타	5	E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5	E
73012000	－ 형강(形鋼)	5	E
73021000	－ 레일(rail)	5	E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5	E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5	E
73029000	－ 기타	5	E
73030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E
730411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5	E
73041900	－ － 기타	5	E
730422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5	E
73042300	－ － 그 밖의 드릴파이프	5	E
73042400	－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42900	－ － 기타	5	E
73043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E
73043900	－ － 기타	5	E
73044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E
73044900	－ － 기타	5	E
73045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5	E
73045900	－ － 기타	5	E
73049000	－ 기타	5	E
73051100	－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5	E
73051200	－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51900	－ － 기타	5	E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5	E
73053100	－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5	E
73053900	－ － 기타	5	E
73059000	－ 기타	5	E
73061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61900	－ － 기타	5	E
73062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62900	－ － 기타	5	E
73063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64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6500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066100	－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5	E
73066900	－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5	E
73069000	－ 기타	5	E
73071100	－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5	E
73071900	－ － 기타	5	E

73072100	- - 플랜지(flange)	5	E
73072200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5	E
730723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5	E
73072900	- - 기타	5	E
73079100	- - 플랜지(flange)	5	E
73079200	-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5	E
73079300	-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5	E
73079900	- - 기타	5	E
73081000	- 다리와 교량	5	E
73082000	- 탑과 격자주(格子柱)	5	E
7308300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E
73084000	-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궤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5	E
73089010	- - - 벽걸이용 소화전(소방장비나 소방호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용으로 한정한다)	5	E
73089020	- - - 상점 · 공장 · 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5	E
73089030	- - - 천장용 형강(形鋼)과 격재(擊材)(장식 타일 고정용으로 한정한다)	5	E
73089040	- - - 비계(飛階) · 지주 · 작업대와 연결구류	5	E
73089050	- - - 고정된 계단	5	E
73089060	- - - 창고와 돔(dome)	5	E
73089090	- - - 기타	5	E
73090010	- - - 가정용 물탱크	5	E
73090090	- - - 기타	5	E
7310100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5	E
73102110	- - - 탄산 음료와 과일주스용의 것	5	E
73102120	- - - 식품 저장용의 것	5	E
73102130	- - - 화학제품과 윤활유 저장용의 것	5	E
73102190	- - - 기타	5	20
73102900	- - 기타	5	E
73110010	- - - 산소 저장용의 것	5	TR
73110020	- - - 프레온(freon) 저장용의 것	5	20
73110030	- - - 가정용 스토브(stove) 가스용의 것	5	E
73110090	- - - 그 밖의 가스 저장용의 것	5	E
73121010	- - - 전선(電線) · 케이블(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5	E
73121090	- - - 기타	5	20
73129010	- - - 권양(捲揚)용 로프	5	20
73129090	- - - 기타	5	20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 · 대 ·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5	E
731412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1414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141900	- - 기타	5	E
73142000	- 그릴 · 망 · 울타리[점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1431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3143900	- - 기타	5	E

73144100	-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	E
731442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5	E
73144900	- - 기타	5	E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5	E
73151100	- - 롤러체인(roller chain)	5	20
73151200	- - 그 밖의 체인	5	20
73151900	- - 부분품	5	20
73152000	- 스킨체인(skid chain)	5	20
73158100	- - 스터드링크(stud-link)	5	20
731582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73158900	- - 기타	5	20
73159000	- 그 밖의 부분품	5	20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닛과 그 부분품	5	20
73170010	- - - 철강으로 만든 못과 목공용 못	5	E
73170020	- - - 압정	5	20
73170030	- - - 제도용 핀	5	20
73170040	- - - 스테이플	5	20
73170090	- - - 기타	5	20
731811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5	TR
73181200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5	TR
731813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5	TR
73181400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5	E
73181500	-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E
73181600	- - 너트(nut)	5	E
73181900	- - 기타	5	E
73182100	-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5	20
73182200	- - 그 밖의 와셔(washer)	5	20
73182300	- - 리벳(rivet)	5	20
731824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5	20
73182900	- - 기타	5	E
7319400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5	20
73199000	- 기타	5	20
7320100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5	20
73202000	- 나선용 스프링	5	20
73209000	- 기타	5	20
73211110	- - - 조리기	5	20
73211120	- - - 바비큐	5	E
73211130	- - - 화로	5	E
73211190	- - - 기타	5	20
73211210	- - - 조리기	5	E
73211220	- - - 바비큐	5	20
73211230	- - - 화로	5	E
73211290	- - - 기타	5	20
73211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5	20
73218110	- - - 가열기(히터)	5	20
73218190	- - - 기타	5	20
73218210	- - - 가열기(히터)	5	20
73218290	- - - 기타	5	E
73218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5	E
73219010	- - - 조리기용	5	20
73219020	- - - 바비큐용	5	20
73219030	- - - 가열기용	5	20

73219090	- - - 기타	5	20
73221100	- - 주철로 만든 것	5	20
73221900	- - 기타	5	20
73229000	- 기타	5	20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20
732391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5	20
732392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5	20
732393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5	E
73239400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5	20
73239900	- - 기타	5	20
7324100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E
73242100	- -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73242900	- - 기타	5	20
7324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E
73251010	- - - 하수용 인스펙션 트랩(inspection trap)·그레이팅(grating)·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이와 유사한 주조품	5	E
73251020	- - - 소화전의 지주와 커버	5	E
73251030	- - - 원통형 우편함	5	E
73251040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E
73251090	- - - 기타	5	E
73259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E
73259910	- - - 하수용 맨홀·드레인 커버(drain cover)와 이와 유사한 주조물	5	E
73259920	- - - 소화전 플레이트·밸브와 화재 경보 칼럼(column)	5	E
73259930	- - - 원통형 우편함	5	E
73259940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E
73259990	- - - 기타	5	E
73261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20
73261900	- - 기타	5	E
73262010	- - - 쥐덫	5	20
73262020	- - - 어망	5	E
73262030	- - - 동물 사육용 외양간	5	20
73262040	- - - 휴지통	5	20
73262090	- - - 기타	5	20
73269010	- - - 신발 프로텍터(protector), 걸속용 포인트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73269020	- - - 나무오르기용 철제품	5	20
73269030	- - - 기계식이 아닌 통풍기	5	E
7326904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E
73269050	- - - 통용 체결 후프(hoop)	5	20
73269060	- - - 전기 배선용 연결구류[예: 스테이(stay)·클립·브래킷]와 절연체 체인용 서스펜션 또는 연결 장치	5	E
73269070	- - - 울다리 기둥	5	E
73269080	- - - 텐트용 지주·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5	20
73269091	- - - 정원 경계용 후프와 수목용 시렁(trainer)	5	E
73269092	- - - 물 호스용 클립	5	E

73269093	- - - - 도로용 스티드	5	E
73269094	- - - - 휴대용 사다리와 계단	5	20
73269095	- - - - 공구 상자	5	E
73269096	- - - - 보석과 골동품 상자, 화장품용이나 분용 상자과 케이스	5	E
73269097	- - - - 조명용 전신주	5	E
73269098	- - - 토끼와 가금류용 케이지, 하이브(hive), 동물용 사료 공급기 및 음용기와 플라우(plough)	5	20
73269099	- - - - 기타	5	E
740100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5	20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5	TR
740311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5	E
74031200	- - 와이어바(wire-bar)	5	20
74031300	- - 빌릿(billet)	5	E
74031900	- - 기타	5	E
74032100	-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5	E
74032200	-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5	E
74032900	-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5	E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5	20
74061000	-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5	20
74062000	- 총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20
7407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E
7407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TR
74072900	- - 기타	5	20
7408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4081900	- - 기타	5	E
7408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20
740822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E
74082900	- - 기타	5	20
74091100	- - 코일 모양	5	20
74091900	- - 기타	5	20
74092100	- - 코일 모양	5	E
74092900	- - 기타	5	20
74093100	- - 코일 모양	5	TR
74093900	- - 기타	5	20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20
74099000	-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20
74101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20
74101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20
74102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E
74102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E
7411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E
74112100	-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5	E
74112200	-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5	20
74112900	- - 기타	5	E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5	E
7412200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5	E
74130000	구리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5	E

7415100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20
741521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5	20
74152900	- - 기타	5	20
74153300	- - 그 밖의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5	20
74153900	- - 기타	5	20
7418100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TR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	TR
74192010	- - - 방열판	5	20
74192020	- - - 구리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74192090	- - - 기타	5	20
74198010	- - - 방열판	5	20
74198020	- - - 구리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TR
74198030	- - - 가스압축 또는 액화용 컨테이너	5	E
74198040	- - - 전기도금용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의 음극	5	20
74198050	- - - 구리선 제품(트랩, 휴지통 등)	5	20
74198060	- - - 비기계식 통풍기	5	20
7419807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20
74198080	- - - 물 호스용 클립	5	20
74198090	- - - 기타	5	20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5	10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5	10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5	20
75022000	- 니켈 합금	5	15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E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5
7505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10
7505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E
75052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20
75052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20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20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TR
7507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5	20
7507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5	20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5	20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5	20
75089010	- - - 구조물용 창문 틀	5	20
75089020	- - -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과 상관없이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75089030	- - - 못·압정·너트·볼트·스크류	5	20
75089040	- - - 스프링	5	TR
75089050	- - -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5	20

75089060	- - - 위생용품	5	20
75089090	- - - 기타	5	15
7601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5	E
76012000	- 알루미늄 합금	5	E
7602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7603100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5	E
76032000	- 충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E
7604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E
76042100	-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5	E
76042900	- - 기타	5	E
7605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6051900	- - 기타	5	E
76052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E
76052900	- - 기타	5	E
76061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E
76061210	- - - 두께가 0.2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하거나 결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판과 시트(sheet)	5	E
76061220	- - -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 0.4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한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E
76061230	- - - 두께가 0.4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하거나 결이 있는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E
76061240	- - -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인 알루미늄 합금 바둑판 무늬의 판과 시트(sheet)	5	E
76061290	- - - 기타	5	E
76069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E
76069210	- - -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이하인 평평한 알루미늄 합금 코일과 스트립	5	E
76069220	- - - 두께가 0.2mm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판과 시트 (sheet)	5	E
76069290	- - - 기타	5	E
760711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E
76071190	- - - 기타	5	E
760719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E
76071990	- - - 기타	5	E
760720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롤 모양인 것	5	E
76072090	- - - 기타	5	E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5	E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5	E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5	E
76101010	- - - 차고용 전동문	5	E
76101090	- - - 기타	5	E
76109010	- - - 다리와 교량	5	E
76109020	- - - 탑과 격자주(格子柱)	5	E
76109030	- - - 창고와 돔(dome)	5	E
76109040	- - - 계단	5	E
76109050	- - - 병원 병동 · 식당 · 사무실 ·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것 의 칸막이 벽	5	E
76109060	- - - 천장용 장식 타일	5	E
76109070	- - - 천장 장식 타일 고정용 형강(形鋼)과 스테이(stay)	5	E
76109090	- - - 기타	5	E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 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5	E
76129010	- - - 탄산 음료와 과일주스용 캔	5	E
76129020	- - - 식품 저장용 캔	5	E
76129030	- - - 화학제품·유탄유용 캔	5	E
76129090	- - - 기타	5	E
76130010	- - - 용적이 100리터 이하인 가스 실린더	5	TR
76130090	- - - 기타	5	TR
76141010	- - - 비절연 전선과 케이블	5	E
76141090	- - - 기타	5	E
76149000	- 기타	5	E
76151010	- -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5	E
76151020	- - - 알루미늄 시트로 만든 접시·쟁반	5	E
76151090	- - - 기타	5	E
7615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5	E
76161000	- 못·압정·스테인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E
761691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5	E
76169910	- - - 체인과 그 부품	5	E
76169921	- - - - 익스팬디드(expanded) 알루미늄 와이어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5	E
76169922	- - - - 휴지통	5	E
76169929	- - - - 기타	5	E
76169930	- - - 기계식이 아닌 통풍기	5	E
76169940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5	E
7616995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송전선 부속품(예: 와이어 채널·서포터·클립과 마운트)	5	E
76169960	- - - 울타리 기둥	5	E
76169970	- - - 휴대용 사다리	5	E
76169990	- - - 기타	5	E
78011000	- 정제한 납	5	E
780191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5	15
78019900	- - 기타	5	15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78041100	- -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TR
78041900	- - 기타	5	TR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5	15
780600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5	5
790111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5	E
790112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5	20
79012000	- 아연 합금	5	2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5	TR
79039000	- 기타	5	20

79040010	－ － － 선(線)	5	20
79040020	－ － － 봉	5	20
79040090	－ － － 프로파일(profile)	5	20
79050010	－ － － 사진제판, 리소그래피용 또는 그 밖의 인쇄용 판 등	5	20
79050090	－ － － 기타	5	20
79070010	－ － － 포장·운송용 캔·박스과 이와 유사한 용기	5	TR
79070020	－ － － 저장조·배트(vat)·드럼과 이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79070030	－ － － 의약품 등의 포장용 튜브형 용기	5	20
79070040	－ － － 아연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시트	5	20
79070050	－ － － 못·압정·너트·볼트·스크루(screw)	5	20
79070060	－ － － 가정용품	5	E
79070070	－ － － 위생용품	5	20
79070080	－ － － 수목·식물용 레이블(문자·숫자나 패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79070091	－ － － － 포장용 등의 중공(中空) 시트(sheet)	5	20
79070092	－ － － － 전기도금용 양극	5	20
79070093	－ － － － 파이프라인·선박 탱크 등의 부식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음극보호양극[희생양극(sacrificial anode)]	5	20
79070099	－ － － － 기타	5	20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5	0
80012000	－ 주석 합금	5	5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0030010	－ － － 중공(中空) 막대	5	5
80030090	－ － － 기타	5	5
80070010	－ － － 배트(vat)·저장조·드럼 및 그 밖의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0070020	－ － － 치약·컬러제품 또는 그 밖의 물품 포장용 연질의 튜브	5	20
80070030	－ － － 가정용품·주방용품·식탁용품(물병·쟁반·접시 등)	5	20
80070090	－ － － 기타	5	20
81011000	－ 가루	5	0
810194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5	5
81019600	－ － 선(線)	5	5
8101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019900	－ － 기타	5	0
81021000	－ 가루	5	15
81029400	－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5	20
81029500	－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5	20
81029600	－ － 선(線)	5	15
8102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20
81029900	－ － 기타	5	20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5	0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039100	－ － 도가니	5	0
81039900	－ － 기타	5	0
810411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5	10
81041900	－ － 기타	5	10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043010	- - - 마그네슘 분말	5	0
81043090	- - - 기타	5	0
81049010	- - - 형강(形鋼) · 프로파일 · 시트 · 플레이트 · 박 · 스트립 · 중공(中空) 봉 · 플레이크	5	20
81049020	- - - 와이어 · 봉과 막대	5	0
81049030	- - - 파이프 · 관과 그 연결구류 및 중공 바	5	5
81049090	- - - 마그네슘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5	TR
8105200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 괴(塊) · 가루	5	0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059000	- 기타	5	5
8106100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를 초과하는 것	5	5
81069000	- 기타	5	15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5	E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089000	- 기타	5	E
81092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0
81092900	- - 기타	5	0
81093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0
81093900	- - 기타	5	0
81099100	-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5	10
81099900	- - 기타	5	10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5	0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109000	- 기타	5	0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 한다]	5	10
81121200	- - 괴(塊), 가루	5	0
811213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0
81121900	- - 기타	5	0
81122100	- - 괴(塊), 가루	5	0
81122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10
81122900	- - 기타	5	0
811231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0
81123900	- - 기타	5	0
811241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0
81124900	- - 기타	5	0
81125100	- - 괴(塊), 가루	5	0
81125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10
81125900	- - 기타	5	10
811261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5	10
81126900	- - 기타	5	10
811292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5	0
81129900	- - 기타	5	5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을 포함한다]	5	10
82011000	- 가래와 삽	5	5
82013000	- 곡괭이 · 픽스(picks) · 괭이 · 쇠스랑	5	10
82014000	- 도끼 · 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5	10

8201500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5	10
82016000	- 울다리 전단기(剪斷機) · 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5	10
82019000	- 그 밖의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수공구	5	10
82021000	- 수동식 톱	5	10
82022000	- 띠톱의 날	5	10
82023100	-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5	20
82023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20
82024000	- 체인톱의 날	5	5
820291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5	15
82029900	- - 기타	5	20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10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 집게 · 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5	E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5	15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 · 볼트크로퍼(bolt cropper) · 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5	10
820411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5	15
820412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5	10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 지에 상관없다)	5	10
82051000	- 드릴링 · 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5	10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5	15
82053000	- 목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5	15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5	5
82055100	- - 가정용 공구	5	15
82055910	- - - 카트리지식 리베팅 건(gun)	5	5
82055920	- - - 수동 윤활장치	5	15
82055990	- - - 기타	5	15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5	10
82057000	- 바이스(vice) ·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5	15
82059010	- - - 수공구(가정용은 제외한다)	5	20
82059020	- - - 가정용 수공구	5	5
8206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5	10
82071300	-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5	20
82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E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5	20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5	20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5	20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5	20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5	10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5	20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5	10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5	20
82081000	- 금속 가공용	5	10
82082000	- 목재 가공용	5	10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5	5
82084000	-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5	10
82089000	- 기타	5	5
82090000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10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5	5
82119120	- - -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된 것	5	0
82119130	- - - 조개껍질·호박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손잡이가 부착된 것(귀금속을 도포하거나 장식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82119190	- - - 기타	5	5
82119200	-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5	5
82119310	- - - 전지용 칼	5	10
82119390	- - - 기타	5	10
82119400	- - 칼날	5	5
821195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5	5
82121010	- - - 금속으로 만든 안전 면도기·면도날과 그 부분품	5	15
8212102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전 면도기(면도날과 함께 제시되는 것)	5	15
82121090	- - - 기타	5	15
8212200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5	15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5	15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5	15
82141010	- - - 연필깎이와 그 날	5	5
82141090	- - - 기타	5	5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5	20
82149010	- - - 정육점 또는 주방용 토막용 칼(chopper)·칼붙이 및 다지기용(mincing) 칼	5	15
82149090	- - - 기타	5	5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5	10
82159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5
82159900	- - 기타	5	10
83011000	- 자물쇠	5	20
83012000	- 자동차용 자물쇠	5	15
83013000	- 가구용 자물쇠	5	TR
83014010	- - - 다이얼식(combination) 자물쇠	5	15
83014020	- - - 전기작동식 자물쇠	5	15
83014030	- - - 핸드백용 자물쇠	5	0
83014040	- - - 자전거·오토바이용 자물쇠	5	5
83014090	- - - 기타	5	5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5	5
83016000	- 부분품	5	20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5	5
83021000	- 경첩	5	20
83022000	- 카스터(caster)	5	20
8302300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E
83024100	-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5	20
83024200	-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3024910	- - - 문 손잡이	5	5
83024990	- - - 기타	5	15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5	20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5	20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5	E
83040010	---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5	20
83040021	---- 철로 만든 것	5	20
83040029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20
83040030	--- 타자기용 종이 마운트	5	20
83040040	--- 데스크 랙(desk rack)과 선반	5	20
83040090	--- 기타	5	20
8305100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5	10
8305200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5	15
83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10
8306100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5	10
83062100	- - 커금속으로 도금된 것	5	10
83062900	- - 기타	5	10
8306300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5	15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5	20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15
83081000	-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5	10
83082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5	10
83089010	--- 비(卑)금속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핸드백·서류가방·여행용품과 그 밖의 가죽·직물제품용으로 한정한다)	5	5
83089020	--- 구슬과 스팅글[타터(tarter)]	5	0
83089090	--- 기타	5	5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5	15
83099010	--- 코르크를 내장한 금속제 전(栓: stopper)	5	20
83099020	--- 병 밀봉용 레버나 스프링이 장착된 나선형 마개·마개(bung)용 커버	5	20
83099030	--- 나선형 마개(bung)용 커버	5	20
83099040	--- 주입구·계량식·점적구용 전(栓: stopper)(음료, 기름, 약 등의 병용으로 한정한다)	5	20
83099050	--- 모든 종류의 실(seal)	5	20
83099060	--- 봉인 가방·향주머니나 이와 유사한 용기용의 죄는 기구로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두 조각 사이에 삽입된 하나나 두 개의 강선(steel wire)으로 구성	5	20
83099070	--- 캔의 상판과 하판	5	20
83099090	--- 기타	5	E
83100010	--- 명판(지역, 도로명 등)과 건물의 명판과 번호판 등	5	15
83100020	--- 공공서비스기관에 사용하는 사인판(sign-plate)(경찰·소방서 등)·금지판(금연·수렵 등)·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등	5	15
83100030	--- 사인판(주택·상점·공장용 등)	5	15
83100040	--- 광고용 사인판	5	15
83100050	--- 주소판(가옥·문·우편함·차량용)·식물용 레이블(label)·열쇠용 숫자 꼬리표·탈의실용 꼬리표	5	15
83100060	--- 유사한 판과 심벌[기계·계량기·자동차(예: 번호판)용 등]	5	15
83100070	--- 별도의 문자, 숫자 및 패턴(이 호에 해당하는 판 제조용으로 설계된 것)	5	15
83100090	--- 기타	5	15

83111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	E
83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	E
83113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3119000	- 기타	5	15
84011000	- 원자로	5	5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5	20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5	0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5	0
840211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5	15
84021200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5	E
84021900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5	E
8402200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5	10
84029000	- 부분품	5	E
84031000	- 보일러	5	0
84039000	- 부분품	5	5
8404100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5	5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5	15
84049000	- 부분품	5	10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84059000	- 부분품	5	15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5	15
84068100	-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5	20
84068200	-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5	20
84069000	- 부분품	5	15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5	20
84072100	-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5	20
84072900	- - 기타	5	20
840731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5	20
84073200	-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5	20
84073300	-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5	15
84073410	- -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	15
84073420	- -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	20
84073430	- -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	15
84079000	- 그 밖의 엔진	5	20
84081000	- 선박추진용 엔진	5	E
84082000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5	15
84089000	- 그 밖의 엔진	5	E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5	15
84099110	- - - 피스톤과 피스톤링	5	20
84099120	- - - 실린더·실린더 블록·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케이싱	5	E
84099130	- - - 연료흡입 밸브와 튜브	5	E
84099140	- - - 배기 밸브와 파이프(매니폴드)	5	E
84099150	- - - 연료용 기화기(carburettor)와 노즐(연료 노즐)	5	E
84099190	- - - 기타	5	E
84099900	- - 기타	5	E
841011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20

841012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15
84101300	-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15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5	15
841111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5	E
841112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5	E
841121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15
841122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15
841181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
841182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E
841191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5	E
84119900	- - 기타	5	20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5	15
84122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20
84122900	- - 기타	5	20
84123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5	20
84123900	- - 기타	5	20
84128000	- 기타	5	20
84129000	- 부분품	5	15
841311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5	E
84131910	- - - 소화펌프	5	E
84131990	- - - 기타	5	E
8413200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5	E
8413300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 기관용으로 한정한다)	5	E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5	20
8413500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5	E
8413600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5	E
84137000	- 그 밖의 원심펌프	5	E
84138110	- - - 농업용의 것	5	E
84138120	- - - 가정용의 것	5	E
84138190	- - - 기타	5	E
84138200	- - 액체엘리베이터	5	15
84139100	- - 펌프의 것	5	E
841392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5	20
84141000	- 진공펌프	5	E
8414200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5	E
8414300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5	E
84144000	- 예인용 바퀴 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5	E
84145110	-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이 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45120	-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이 25와트 초과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45910	- -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 (출력이 125와트를 초과하는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45920	- - - 87류 차량용 팬	5	E
84145930	- - - 84류 기계류용 팬	5	E
84145990	- - - 기타	5	E

8414600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TR
8414700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5	TR
84148000	- 기타	5	E
84149000	- 부분품	5	E
84151010	- - 용적이 70,000비티유(BTU) 이하인 공기조절기	5	E
84151020	- - 용적이 70,000비티유(BTU)를 초과하는 공기조절기	5	E
8415200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5	E
841581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E
84158190	- - - 기타	5	E
841582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E
84158290	- - - 기타	5	E
84158320	- - - 중앙공기조절기	5	E
84158390	- - - 기타	5	E
84159000	- 부분품	5	E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5	20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5	20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5	20
84169000	- 부분품	5	20
8417100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5	20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5	20
84178010	- - - 목탄로	5	20
84178020	- - - 시멘트 처리용 로터리(rotary) 노(爐)와 석고 처리용 혼합노(爐)	5	20
84178030	- - - 도자기 제조용과 법랑용(enamelling) 노(爐)	5	20
84178040	- - - 유리 제조용 노(爐)	5	20
84178090	- - - 기타	5	20
84179000	- 부분품	5	20
84181000	- 일체형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서랍이나 그 결합물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82100	- - 압축식	5	E
84182900	- - 기타	5	E
8418300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8400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8500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186100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5	E
84186910	- - - 휴대용 냉수기	5	E
84186920	- - - 아이스크림 제조기	5	E
84186930	- - - 음료 냉각기	5	E
84186940	- - - 용량이 900리터를 초과하는 냉장실이나 냉동실	5	E
84186950	- - - 아이스크림 제조기	5	E
84186990	- - - 기타	5	E
841891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5	TR
84189910	- - - 압축식 냉장기구	5	E
84189990	- - - 기타	5	E
84191100	-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5	5
84191200	- - 태양열 물 가열기	5	20

84191900	- - 기타	5	15
84192000	-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5	20
84193300	- - 동결건조 장치 · 유닛과 분무건조기	5	20
84193400	-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5	20
84193500	- - 기타(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으로 한정한다)	5	20
84193900	- - 기타	5	20
84194000	- 증류기나 정류기	5	E
84195000	- 열교환기	5	E
84196000	- 기체 액화용 기기	5	TR
84198100	-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5	20
84198900	- - 기타	0	0
84199000	- 부분품	0	0
8420100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5	20
84209100	- - 실린더	5	10
84209900	- - 기타	5	5
84211100	- - 크림분리기	5	TR
84211200	- - 의류탈수기	5	TR
84211900	- - 기타	0	0
84212110	- - - 가정용의 것	5	E
84212190	- - - 기타	5	E
84212200	-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5	TR
84212300	-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5	E
84212910	- - - 혈액 정화용 필터	0	0
84212990	- - - 기타	5	E
84213100	-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5	E
84213200	-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5	E
84213900	- - 기타	5	E
84219100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	0
84219900	- - 기타	5	E
84221100	- - 가정형	5	TR
84221900	- - 기타	5	20
8422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5	20
84223010	- - - 병 · 광통 · 상자 · 자루 ·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함용 · 실링(sealing)용 · 레이블 부착용 기계	5	20
84223020	- - -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5	20
84223030	- - -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5	20
8422400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5	20
84229000	- 부분품	5	15
8423100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5	20
8423200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5	20
8423300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5	20
84238100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20
84238200	-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20
84238900	- - 기타	5	20
8423900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5	5
8424100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84242010	--- 건축자재용 스프레이건(전동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 없다)	5	15
84242090	--- 기타	5	15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5	E
84244110	--- 해충박멸 살포기	5	20
84244190	--- 기타	5	5
84244910	--- 해충박멸 살포기	5	5
84244990	--- 기타	5	5
84248210	--- 모든 종류의 완전한 관개시스템	5	E
84248230	--- 잔디 관개용 살수기	5	15
84248290	--- 기타	5	15
84248900	-- 기타	0	0
84249010	--- 잣은 압력으로 액체를 분사하는 플라스틱제 헤드(제 9616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4249020	--- 제8424.82.10호의 관개시스템의 부분품	0	0
84249090	--- 기타	0	0
84251100	-- 전동식	5	20
84251900	-- 기타	5	20
84253100	-- 전동식	5	20
84253900	-- 기타	5	20
84254100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5	20
84254200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5	20
84254900	-- 기타	5	20
84261100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5	E
84261200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5	TR
84261900	-- 기타	5	TR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5	E
84263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5	E
84264100	-- 타이어가 달린 것	5	E
84264900	-- 기타	5	TR
84269100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5	TR
84269900	-- 기타	5	TR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5	20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5	20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5	20
8428100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5	E
8428200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5	TR
84283100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5	TR
84283200	-- 그 밖의 버켓형	5	TR
84283300	-- 그 밖의 벨트형	5	E
84283900	-- 기타	5	E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5	TR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5	20
84287000	- 산업용 로봇	5	20
84289000	- 그 밖의 기계	5	TR
84291100	-- 무한궤도식	5	TR
84291900	-- 기타	5	TR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5	TR
84293000	- 스크레이퍼(scraper)	5	TR
8429400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5	TR
84295100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5	E

84295200	-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5	TR
84295900	- - 기타	5	TR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5	20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5	20
84303100	- - 자주식(自走式)	5	TR
84303900	- - 기타	5	20
84304100	- - 자주식(自走式)	5	TR
84304900	- - 기타	5	TR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5	20
84306100	-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5	20
84306900	- - 기타	5	20
8431100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5	E
8431200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5	E
84313100	-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5	E
84313900	- - 기타	5	E
84314100	- - 버킷(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5	20
843142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5	E
84314310	- - - 우물용 천공 드릴	5	E
84314390	- - - 기타	5	E
84314900	- - 기타	5	E
84321000	- 플라우(쟁기)	5	20
843221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5	20
84322900	- - 기타	5	20
84323100	-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5	20
84323900	- - 기타	5	20
84324100	- - 퇴비 살포기	5	20
84324200	- - 비료 살포기	5	20
8432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329000	- 부분품	5	5
84331100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331900	- - 기타	5	20
8433200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5	20
84333000	- 그 밖의 건조제조용 기계	5	20
84334000	- 짚이나 건조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5	20
84335100	- - 수확·탈곡 겸용기	5	20
84335200	- - 그 밖의 탈곡기	5	20
843353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5	20
84335900	- - 기타	5	20
8433600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5	15
84339000	- 부분품	5	5
84341000	- 착유기	5	20
84342000	- 낙농기계	5	20
84349000	- 부분품	5	15
84351000	- 기계	5	20
84359000	- 부분품	5	5
8436100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5	20
84362100	-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5	20

84362900	- - 기타	5	20
84368010	- - - 실험실용 박테리아 배양기	5	20
84368090	- - - 기타	5	15
84369100	-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5	10
84369900	- - 기타	5	20
8437100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5	20
8437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379000	- 부분품	5	15
8438100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5	15
8438200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5	15
84383000	- 설탕 제조용 기계	5	20
84384000	- 양조용 기계	5	20
8438500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5	20
84386000	- 과일·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5	20
8438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389000	- 부분품	5	15
84391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5	20
84392000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5	20
84393000	-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5	20
843991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5	5
84399900	- - 기타	5	E
84401000	- 기계	5	20
84409000	- 부분품	5	5
84411000	- 절단기	5	20
8441200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5	20
8441300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20
84414000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5	20
8441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419000	- 부분품	5	15
84423000	- 기계류·장치·장비	5	20
84424000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5	10
8442500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5	5
844311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5	20
844312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4313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5	20
844314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5	20
844315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5	20
84431600	- - 곡면인쇄용 기계	5	20
84431700	-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5	20
84431900	- - 기타	5	20

84433100	-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0	0
84433210	- - - 팩시밀리(facsimiles machines)	0	0
84433220	- - - 텔렉스(telex machines)	0	0
84433230	- - - 텔레프린터	0	0
84433290	- - - 기타	0	0
84433910	- - - 광학 시스템을 갖춘 복사기	0	0
84433920	- - - 원래의 영상을 복사본으로 즉시 전송하는 복사기	0	0
84433990	- - - 기타	0	0
84439100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20
84439920	- - - 자동 문서공급기	0	0
84439930	- - - 종이공급기	0	0
84439940	- - - 분류기	0	0
84439950	- - - 프린터용 액체성 또는 분말 잉크 카트리지(catridge)	0	0
84439990	- - - 기타	0	0
844400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5	20
84451100	- - 카드기(carding machine)	5	20
84451200	- - 코밍기(combing machine)	5	20
84451300	- - 연조기나 조방기	5	20
84451900	- - 기타	5	20
84452000	- 방적기계	5	20
8445300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5	20
8445400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5	20
84459000	- 기타	5	20
8446100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5	20
844621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5	20
84462900	- - 기타	5	20
844630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5	20
844711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5	20
84471200	-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20
84472000	-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5	20
84479000	- 기타	5	20
84481100	- -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5	20
84481900	- - 기타	5	20
8448200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10
84483100	- - 침포	5	10
84483200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5	0
84483300	- - 스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5	10
84483900	- - 기타	5	10
84484200	-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5	0
84484900	- - 기타	5	5
844851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5	5
84485900	- - 기타	5	10
844900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5	20

84501100	- - 완전자동 세탁기	5	E
84501200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501900	- - 기타	5	20
84502000	-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5	E
84509000	- 부분품	5	20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5	5
84512100	-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5	E
84512900	- - 기타	5	20
8451300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5	20
84514000	- 세탁기 · 표백기 · 염색기	5	20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5	20
8451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519000	- 부분품	5	20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5	20
84522100	- - 자동식	5	20
84522900	- - 기타	5	20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5	10
8452900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와 그 부분품, 그리고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5	10
84531000	- 원피 ·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5	20
8453200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5	20
8453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539000	- 부분품	5	0
84541000	- 전로	5	20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5	20
84543000	- 주조기	5	20
84549000	- 부분품	5	10
84551000	- 관 압연기	5	20
84552100	- - 열간(熱間)이나 열 · 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5	20
84552200	- - 냉간(冷間) 압연기	5	20
84553000	- 압연기용 롤	5	5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5	5
84561100	- - 레이저 방식의 것	0	0
84561200	- - 그 밖의 광선 ·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0
84562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5	20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5	20
8456400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0	0
84565000	- 워터제트 절단기	0	0
84569000	- 기타	0	0
84571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	20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 스테이션)	5	20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20
84581100	- - 수치제어식	5	TR
84581900	- - 기타	5	20
84589100	- - 수치제어식	5	20
84589900	- - 기타	5	20

8459100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5	20
84592100	- - 수치제어식	5	20
84592900	- - 기타	5	20
84593100	- - 수치제어식	5	20
84593900	- - 기타	5	20
84594100	- - 수치제어식	5	5
84594900	- - 기타	5	5
84595100	- - 수치제어식	5	20
84595900	- - 기타	5	20
84596100	- - 수치제어식	5	20
84596900	- - 기타	5	20
8459700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5	20
84601200	- - 수치제어식	5	15
84601900	- - 기타	5	20
84602200	-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10
84602300	-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10
84602400	-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5	10
84602900	- - 기타	5	20
84603100	- - 수치제어식	5	20
84603900	- - 기타	5	20
8460400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5	20
84609000	- 기타	5	20
84612000	-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5	20
8461300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5	20
8461400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5	20
84615000	- 톱기계나 절단기	5	20
84619000	- 기타	5	20
84621100	- - 밀폐식 형 단조기	5	20
84621900	- - 기타	5	20
84622200	- - 프로파일 성형기	5	20
84622300	-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5	20
84622400	-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5	20
84622500	-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5	20
84622600	-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5	20
84622900	- - 기타	5	20
84623200	- - 슬리팅(slitting) 설비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 (cut-to-length line)	5	20
84623300	- - 수치제어식 전단기	5	20
84623900	- - 기타	5	20
84624200	- - 수치제어식	5	20
84624900	- - 기타	5	20
84625100	- - 수치제어식	5	20
84625900	- - 기타	5	20
84626100	- - 액압식 프레스	5	20
84626200	- - 기계식 프레스	5	20
84626300	- - 서보프레스	5	20
84626900	- - 기타	5	20
84629000	- 기타	5	20
8463100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632000	- 나사 전조기	5	20
84633000	- 선 가공기	5	20
84639000	- 기타	5	20
84641000	- 톱기계	0	0
84642000	- 연마기나 광택기	0	0
84649000	- 기타	0	0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652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5	20
84659100	- - 톱 기계	5	20
84659200	- -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5	20
84659300	- -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 광택기	5	20
84659400	- - 굽힘기나 조립기	5	20
84659500	-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5	20
84659600	-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5	20
84659900	- - 기타	5	20
8466100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5	20
84662000	- 가공용 홀더	5	20
84663000	- 분할대(dividing head)와 그 밖의 공작기계 공구용 특수부착물	5	20
84669100	- - 제8464호의 기계용	0	0
84669200	- - 제8465호의 기계용	5	5
84669300	-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0	0
84669400	-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5	20
84671100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20
84671910	- - - 드릴 · 선반 및 드레더(threader)	5	20
84671920	- - - 렌치(wrench) · 스크루 드라이버 · 너트 셋팅장치(nut setting device)	5	20
84671930	- - - 표면 폴리싱(polishing) · 세정 및 레벨링(levelling)용 기계	5	20
84671940	- - - 원형톱, 체인톱과 이와 유사한 것	5	20
84671950	- - - 스케일 제거용 해머 · 치핑(chipping) 해머 · 펀칭(punching) 해머 · 리벳팅(riveting) 해머 · 콘크리트 파쇄용 해머	5	20
84671960	- - - 조(jaw)형 리벳팅(riveting)기	5	20
84671970	- - - 전단기	5	20
84671980	- - - 도로 건설이나 유지용의 콤팩팅(compacting) 및 탬핑(tamping)용 기계	5	20
84671990	- - - 기타	5	20
84672100	- - 각종 드릴	5	15
84672200	- - 톱	5	5
84672900	- - 기타	5	20
84678100	- - 체인톱	5	20
84678900	- - 기타	5	20
84679100	- - 체인톱의 것	5	5
846792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5	5
84679900	- - 기타	5	10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5	20
8468200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5	20
84688000	- 그 밖의 기기	5	20
84689000	- 부분품	5	20

84701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0
847021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0
84702900	- - 기타	0	0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0	0
84705000	- 금전 등록기	0	0
84709010	- - - 우편요금계기	0	0
84709020	- - - 표권 발행기	0	0
84709090	- - - 기타	0	0
8471300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4100	-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4714900	-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1500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와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471600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84717000	- 기억장치	0	0
8471800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84719000	- 기타	0	0
84721000	- 등사기	5	5
84723000	-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합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5	5
84729010	- - - 표권발행기[계산 기구를 갖춘 것이나 코인작동식의 기계(제8470호)를 제외한다]	0	0
84729020	- - - 주화분류기 또는 주화계수기, 계수포장기	0	0
84729030	- - - 연필절삭기	0	0
84729040	- - - 지(紙) 천공기	0	0
84729050	- - - 스테이플러(stapler)와 제침기	0	0
84729060	- - - 서류절단기	0	0
84729070	- - - 계산장치가 없는 금전등록기	5	5
84729080	- -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0	0
84729090	- - - 기타	0	0
84732100	- -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84732900	- - 기타	0	0
8473300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3400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5	20
8473500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74100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5	20
84742000	- 파쇄기나 분쇄기	5	20
84743100	-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5	20
84743200	-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5	20
84743900	- - 기타	5	20
8474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749000	- 부분품	5	E

8475100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5	20
847521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5	20
84752900	- - 기타	5	20
84759000	- 부분품	5	0
84762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20
84762900	- - 기타	5	15
84768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5	20
84768900	- - 기타	5	20
84769000	- 부분품	5	5
84771000	- 사출 성형기	0	0
84772000	- 압출기	5	20
84773000	- 취입 성형기	5	20
8477400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5	20
847751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5	20
84775900	- - 기타	5	20
84778000	- 그 밖의 기계	5	20
84779000	- 부분품	0	0
84781000	- 기계류	5	20
84789000	- 부분품	5	20
84791010	- - - 도로건설용으로 사용되는 표면 레벨링(levelling) 기계	5	TR
84791020	- - - 도로에 자갈이나 아스팔트를 까는 기계	5	TR
84791030	- - - 교통 도로 마킹(marking) 기계(분사식 기계는 제외한다)	5	5
84791090	- - - 기타	5	TR
8479200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5	TR
8479300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5	TR
8479400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5	TR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84796000	- 증발식 에어컨	5	20
84797100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5	0
84797900	- - 기타	5	5
84798100	-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5	TR
84798200	-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5	E
84798300	- - 냉간 등압성형기	5	E
84798910	- - - 비누 제조기	0	0
84798920	- - - 광주리 및 매트(mat) 세공용 기계와 장비	0	0
84798930	- - - 브러시 제조용 기계와 장비	0	0
84798940	- - -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의 기기는 제외한다)	0	0
84798950	- - - 기계용의 펌프형 자동 그리스 주입기	0	0
84798960	- - - 성냥의 화학 입히는 기계(match dipping machine)	0	0
84798970	- - - 용접봉(welding electrode)의 피복기	0	0
84798980	- - -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지식 공구 및 제8467호 또는 제8508호의 수지식 공구를 제외한다)	0	0
84798991	- - - - 파이프라인과 하수도의 유지용 기계	0	0

84798992	- - - - 모포(blanket)와 매트리스에 퀼트(quilt)를 채우고 송풍 또는 추진 장치를 사용하여 덮개를 씌우는 기계	0	0
84798993	- - - - 직물류, 종이 등의 보강재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0	0
84798994	- - - - 잠수용 종(diver's bell)과 기계식 장치가 부착된 금속 잠수복(diving suit)	0	0
84798999	- - - - 기타	0	0
84799000	- 부분품	0	0
84801000	- 금속 구조용 주형틀	5	20
84802000	- 주형 베이스	5	20
84803010	- - - 목재 또는 철로 만든 것	5	20
84803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20
84804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5	20
84804900	- - 기타	5	20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5	20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5	20
84807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0	0
84807900	- - 기타	5	5
84811000	- 감압밸브	5	E
8481200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5	E
84813000	- 체크밸브	5	E
84814000	- 안전밸브	5	E
84818010	- - - 타이어용 이너튜브 밸브(inner tube valve)	5	E
84818020	- - - 방열기의 배출용 밸브[디스차지 밸브(discharge valve)]	5	10
84818030	- - - 가스 실린더(cylinder)용 밸브	5	E
84818040	- - - 부표 작동식 밸브	5	20
84818050	- - - 소화전과 노즐(nozzle)	5	20
84818060	- - - 분무 및 관개 호스(irrigation hose)용 노즐과 밸브	5	15
84818070	- - - 목욕탕과 욕조의 배수용 밸브	5	E
84818080	- - - 살충제 · 소독제 등이 충전된 압력용 또는 스프레이캔용 뚜껑	5	20
84818090	- - - 기타	5	E
84819000	- 부분품	5	E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5	20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5	20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5	20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5	20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5	20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20
84829100	- - 볼 · 니들 · 롤러	5	10
84829900	- - 기타	5	10
8483100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5	E
8483200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483300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5	TR

8483400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5	E
84835000	-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5	E
8483600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5	TR
8483900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5	20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5	E
84849000	- 기타	5	E
84851000	- 금속용	5	E
84852000	- 플라스틱 · 고무용	5	E
84853000	- 플라스터 · 시멘트 · 세라믹 · 유리용	5	E
84858000	- 기타	5	E
84859000	- 부분품	5	E
84861010	- - - 반도체디바이스 마스크 및 보울(boule) 형상을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집속 이온 빔 밀링기	0	0
84861020	- - - 단결정 반도체 블록을 칩으로 절단하거나 얇은 디스크를 웨이퍼(wafer)로 절단하는 기계	0	0
84861030	- - - 반도체 칩 가공용의 연마기 · 광택기	0	0
84861040	- - - 반도체 칩 밀링(milling)용이나 낫칭(notching)용의 큐브(cube) 절단기계	0	0
84861090	- - - 기타	0	0
84862010	- - - 반도체 모형의 건식 드릴링(drilling)용 공구	0	0
84862020	- - - 도포에 의하여 반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온 플랜트(plant) 기기	0	0
84862030	- - - 웨이퍼 위에 직접 드로잉하는 기계	0	0
84862040	- - - 줄을 드로잉하는 기계(형상의 반복에 의한 것)	0	0
84862050	- - - 감광성 반도체 재료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그 밖의 기계	0	0
84862060	- - - 주형 고정용 기기 · 접착테이프 기기와 반도체 칩 조립용 와이어 고정 기기	0	0
84862070	- - - 반도체 칩의 드릴링, 추출 또는 세척용 스프레이 기기	0	0
84862090	- - - 기타	0	0
84863010	- - - 습식 드릴링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거 또는 세척용 기기	0	0
84863090	- - - 기타	0	0
84864010	- - - 패턴형성기[차광 코팅층의 마스크(mask)나 보울(boule)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84864020	- - - 반도체 칩, 웨이퍼 커버 및 캔과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물품의 이송 · 취급이나 저장을 위한 자주식(自走式) 기계	0	0
84864030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가 부착된 전자빔을 사용하는 현미경	0	0
84864091	-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장비가 부착된 현미경	0	0

84864092	－ － － － 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및 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가 부착된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	0	0
84864099	－ － － － 기타	0	0
84869010	－ － － 고정 블록 기기·접착테이프 기기와 반도체 칩 조립용 와이어 고정 기기용의 부분품	0	0
84869020	－ － － 반도체 코팅 활성화용 이온 플랜트 기기의 부분품	0	0
84869030	－ － － 소호 제8486.20.30호부터 제8486.20.50호까지의 기기용 부분품과 부속품	0	0
84869040	－ － － 반도체 칩, 커버 및 웨이퍼 캔과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이송·취급·저장을 위한 자주식(自走式) 기계의 부분품	0	0
84869090	－ － － 기타	0	0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5	20
84879000	－ 기타	5	E
8501100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01200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85013100	－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	E
85013200	－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
85013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
85013400	－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E
8501400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5	20
85015100	－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5	20
85015200	－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20
85015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20
850161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20
850162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163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20
85016400	－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20
85017100	－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5	20
85017200	－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5	20
8501800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5	20
850211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212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213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E
850220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5	TR
85023100	－ － 풍력의 것	5	TR
85023900	－ － 기타	5	TR
85024000	－ 회전변환기	5	TR
850300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85041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5	E
85042100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42200	－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42300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E
85043100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43200	－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43300	－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E

85043400	-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E
85044011	- - - - 휴대용 전화기(portable phone)와 태블릿(tablet)용 충전기	0	0
85044012	- - - - 랩탑컴퓨터(laptop computer)용 충전기	0	0
85044013	- - - - 건전지용 충전기	0	0
85044014	- - - -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 computer)용 전원장치	0	0
85044019	- - - - 기타	0	0
85044090	- - - 기타	0	0
85045010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통신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밖의 전기 유도자	0	0
85045090	- - - 기타	0	0
85049000	- 부분품	5	E
85051100	- - 금속으로 만든 것	5	20
85051900	- - 기타	5	20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5	20
85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20
85061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20
85061090	- - - 기타	5	20
85063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20
85063090	- - - 기타	5	20
85064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TR
85064090	- - - 기타	5	20
85065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20
85065090	- - - 기타	5	20
85066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20
85066090	- - - 기타	5	20
85068010	- - - 전압이 1.5볼트 이상인 휴대용 장치용 건전지	5	20
85068090	- - - 기타	5	20
85069000	- 부분품	5	20
8507100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5	E
8507200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5	E
85073000	- 니켈-카드뮴	5	TR
85075000	- 니켈-수소합금	5	20
85076000	- 리튬이온	5	TR
85078000	- 그 밖의 축전지	5	20
85079000	- 부분품	5	20
85081100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5	20
85081910	-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가정용의 것	5	20
85081920	- - - 출력이 1,500와트 초과 3,0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5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가정용의 것	5	20
85081990	- - - 기타	0	0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5	20
85087000	- 부분품	5	15
85094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일주스 · 채소주스 추출기	5	20
85098010	- - - 감자 탈피기(peeler)와 치퍼(chipper)	5	TR
85098020	- - 고기 · 치즈 · 빵 · 채소 · 과일 절단용의 다양한 기계	5	TR
85098030	- - - 주방과 테이블 칼붙이의 연마 및 폴리싱(polishing)용 기계	5	15
85098040	- - - 전기칫솔	5	E
85098090	- - - 기타	5	E

85099000	- 부분품	5	15
85101000	- 면도기	5	15
85102000	- 이발기	5	15
85103000	- 모발제거기	5	15
85109000	- 부분품	5	15
85111000	- 점화플러그	5	20
8511200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5	20
85113000	- 배전기와 점화코일	5	5
8511400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5	20
85115000	- 그 밖의 발전기	5	E
85118000	- 그 밖의 기기	5	20
85119000	- 부분품	5	15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5	20
8512200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5	E
85123000	- 음향신호용 기구	5	15
85124000	-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5	15
85129000	- 부분품	5	E
85131000	- 전등	5	20
85139000	- 부분품	5	15
85141100	- - 열간 등압성형기	0	0
85141900	- - 기타	0	0
8514200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dielectric)식 노(爐)와 오븐	0	0
85143100	- - 전자 빔 노(爐)	0	0
85143200	- - 플라즈마 · 진공 아크식 노(爐)	0	0
85143900	- - 기타	0	0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의 가열기기	5	20
85149000	- 부분품	0	0
851511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5	20
85151900	- - 기타	5	20
85152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5	20
85152900	- - 기타	5	20
85153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5	20
85153900	- - 기타	5	20
85158000	- 그 밖의 기기	5	20
85159000	- 부분품	5	15
85161010	- - -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용적이 2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E
85161020	- - -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용적이 2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E
851621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5	15
85162910	- - - 가정용 전열용 기기	5	15
85162990	- - - 기타	5	15
85163100	- - 헤어드라이어	5	TR
85163200	- - 그 밖의 이용기기	5	TR
85163300	- - 손 건조기	5	5
85164000	- 전기다리미	5	TR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5	TR
85166000	- 그 밖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링링 · 그릴러 · 로스터	5	TR
85167100	- -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5	TR
85167200	- - 토스터	5	TR
85167910	- - - 커피 볶는 기기나 팝콘조리기	5	15

85167920	－ － － 전기식의 향로	5	15
85167990	－ － － 기타	5	E
85168000	－ 전열용 저항체	5	5
85169000	－ 부분품	5	20
85171100	－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71300	－ － 스마트폰	0	0
85171410	－ － － 휴대형(mobile)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	0	0
85171420	－ － － 위성 네트워크용 전화기[투라야(Thuraya)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85171490	－ － － 기타	0	0
85171800	－ － 기타	0	0
85176100	－ － 기지국	0	0
85176210	－ － － 교환대와 전화기 교환기	0	0
85176220	－ － － 그 밖의 전류선 도체시스템이나 디지털통신시스템용 기기	0	0
85176230	－ － －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용 특수 송신 기기	0	0
85176240	－ － － 선박·항공기 등으로부터의 구호 신호 수신용 특수 기기	0	0
85176250	－ － － 짧은 케이블(안테나)이나 소형 금속 안테나를 갖춘 무선 마이크로폰(microphone)(라디오나 텔레비전 기기는 제외한다)	0	0
85176260	－ － － 신호의 원격 송신이나 수신용 기기	0	0
85176270	－ － － 차량·선박·항공기·열차용 등의 무선수신기기를 포함한 무선 전화기	0	0
85176280	－ － － 통신기능을 갖춘 노출박스(surface box) 조절용의 것: 데이터 교환 기능이 있는 인터넷 접속 모뎀을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장치	0	0
85176290	－ － － 기타	0	0
85176910	－ － － 경보기와 음성 신호용 기기	0	0
85176990	－ － － 기타	0	0
85177100	－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0	0
85177900	－ － 기타	0	0
85181010	－ － － 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1090	－ － － 기타	0	0
85182100	－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182200	－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182910	－ － － 통신용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가 없는 것으로,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182990	－ － － 기타	0	0
85183010	－ － － 유선전화용 헤드폰	0	0
85183090	－ － － 기타	0	0
85184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규정된 전화선 기술 제품의 신호 재생용 전기 증폭기	0	0
85184090	－ － － 기타	5	5
85185000	－ 음향증폭세트	5	20
85189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전화선 기술 제품의 신호용 기기 개선에 사용되는 전기 증폭기의 부분품	0	0

85189090	- - - 기타	5	5
8519200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5	5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5	TR
85198100	- -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5	5
85198900	- - 기타	5	15
85211000	- 마그네틱 테이프형	5	20
85219000	- 기타	5	TR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5	10
85229000	- 기타	5	10
85232100	-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5	15
85232910	- - - 기록이 안 된 자기식 매체(음성이나 영상 레코더용으로 한정한다)	0	0
85232990	- - - 기타	0	0
85234100	- - 기록이 안 된 것	0	0
85234900	- - 기타	0	0
85235100	-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0	0
85235200	- - 스마트카드	0	0
85235900	- - 기타	0	0
85238000	- 기타	0	0
85241100	- - 액정의 것	5	0
85241200	-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5	0
85241900	- - 기타	5	0
85249100	- - 액정의 것	5	0
85249200	-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5	0
85249900	- - 기타	5	0
85255000	- 송신기기	0	0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0
85258110	- - - 고속 비디오 카메라	0	0
85258120	- - - 정지화상용 고속 디지털 카메라	0	0
85258130	- - - 보안 감시 전용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0	0
85258190	- - - 그 밖의 고속 카메라	0	0
85258210	- - - 방사선 경화 · 내(耐)방사선 비디오 카메라	0	0
85258220	- - - 정지화상용 방사선 경화 · 내(耐)방사선 디지털 카메라	0	0
85258230	- - - 보안 감시 전용 방사선 경화 · 내(耐)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0	0
85258290	- - - 그 밖의 방사선 경화 · 내(耐)방사선 카메라	0	0
85258310	- - - 야간투시용 비디오 카메라	0	0
85258320	- - - 정지화상용 야간투시 디지털 카메라	0	0
85258330	- - - 보안 감시 전용 야간투시 텔레비전 카메라	0	0
85258390	- - - 그 밖의 야간투시 카메라	0	0
85258910	- - - 비디오 카메라	0	0
85258920	- - - 정지화상용 디지털 카메라	0	0
85258930	- - - 보안 감시 전용 텔레비전 카메라	0	0
85258990	- - - 기타	0	0
85261000	- 레이더기기	5	15
85269110	- - -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5	15
85269190	- - - 기타	5	E
852692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5	5
852712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5	5
85271300	-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271900	- - 기타	5	5
85272100	-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15
85272900	- - 기타	5	5
85279100	- - 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5	10
85279200	-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5	15
85279900	- - 기타	5	5
85284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0
85284900	- - 기타	5	TR
85285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0
85285900	- - 기타	5	20
85286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0	0
85286900	- - 기타	5	20
85287110	- - - 통신 기능을 갖춘 조정 표면(adjustment surface)이 있는 박스, 인터넷 접속용 모뎀을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장치(정보교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287120	- - - 위성(수신기기)을 통한 텔레비전 전송 수신용 기기	5	E
85287190	- - - 기타	5	E
85287220	- - - 스마트 텔레비전 기기	5	0
85287230	- - - 그 밖의 텔레비전 기기	5	E
85287290	- - - 기타	5	E
85287300	- - 기타(단색)	5	10
8529100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0	0
85299010	- - - 송신기기(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 정지영상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통신·경보 또는 호출용 휴대용 송신기기는 제외한다)용의 부분품	0	0
85299090	- - - 기타	0	0
85301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5	20
85308000	- 그 밖의 기기	5	20
85309000	- 부분품	5	5
8531100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5	TR
85312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판	0	0
85318010	- - - 도어용 전기식의 벨	5	TR
8531802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모니터, 플라즈마, 전자-발광, 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0
85318030	- - - 경보기와 음성 신호용 기기	0	0
85318090	- - - 기타	5	E
85319010	- - - 소호 제8531.80.20호, 제8531.8030호의 기기용 부분품	0	0
85319090	- - - 기타	0	0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85322100	- - 탄탈륨의 것	0	0
853222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853223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853224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853225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85322900	- - 기타	0	0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0	0
85329000	- 부분품	0	0
8533100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85332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0
85332900	- - 기타	0	0
85333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0	0
85333900	- - 기타	0	0
8533400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0	0
85339000	- 부분품	0	0
85340000	인쇄회로	0	0
85351000	- 퓨즈	5	20
85352100	-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5	E
85352900	- - 기타	5	E
8535300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5	E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5	20
85359000	- 기타	5	E
85361000	- 퓨즈	5	TR
85362000	- 자동차단기	5	E
8536300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5	20
85364100	-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5	20
85364900	- - 기타	5	TR
85365010	- - - 광학적으로 접속된 입출력 회로로 구성된 전기전자식 스위치(절연 가감저항 전기 스위치)	0	0
85365020	- - - 전자스위치[온도보호 전자스위치를 포함하고 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칩온칩(chip-on-chip) 기술}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365030	- - - 전기기계식의 래피드 무브먼트(rapid movement) 스위치(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85365090	- - - 기타	0	0
85366100	- - 램프홀더	5	E
85366910	- - - 동축전선과 인쇄회로용 플러그와 소켓	0	0
85366920	- - - 그 밖의 플러그와 소켓	0	0
85367000	-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5	20
85369010	- - - 전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85369020	- - - 칩 프로브(probe)	0	0
85369091	- - - - 어댑터[범용 직렬 버스(USB)용 슬롯(slot)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85369099	- - - - 기타	0	0
8537100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5	E
8537200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5	E
85381000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5	E
85389000	- 기타	5	E
8539100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5	20
85392110	- - - 운송수단용 할로겐 램프(예: 차량·항공기·기차 등)	5	20
85392190	- - - 기타	5	20
85392200	-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392900	- - 기타	5	20

85393100	-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5	20
853932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5	20
85393900	- - 기타	5	20
85394100	- - 아크램프	5	20
85394900	- - 기타	5	20
85395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5	15
853952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5	15
85399000	- 부분품	5	15
85401100	- - 천연색	5	20
85401200	- - 기타(단색)	5	5
85402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5	5
8540400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5	0
85407100	- - 자전관(magnetron)	5	5
85407900	- - 기타	5	0
854081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5	5
85408900	- - 기타	5	0
85409100	- - 음극선관의 것	5	0
85409900	- - 기타	5	5
85411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85412100	-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0	0
85412900	- - 기타	0	0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0
85414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0	0
854142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0	0
85414300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85414900	- - 기타	0	0
85415100	-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0	0
85415900	- - 기타	0	0
85416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0
85419000	- 부분품	0	0
854231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0
85423200	- - 메모리	0	0
85423300	- - 증폭기	0	0
85423900	- - 기타	0	0
85429000	- 부분품	0	0
85431000	- 입자가속기	5	20
85432000	- 신호발생기	5	20
85433000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0
85434010	- - - 전자담배	SpGo	SpGo
85434020	- - - 전자워터파이프 "시샤(shisha)"	SpGo	SpGo
85434030	- - - 담배용 전기가열장치	SpGo	SpGo
85434090	- - - 기타	SpGo	SpGo

85437010	－ － － 번역 또는 사전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0	0
8543702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모니터, 플라즈마, 전자-발광, 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0
85437090	－ － － 기타	0	0
85439010	－ － －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85439091	－ － － － 전자담배용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SpGo	SpGo
85439092	－ － － － 전자워터파이프 "시샤(shisha)"용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SpGo	SpGo
85439093	－ － － － 담배용 전기가열장치의 것(제8507호의 축전지는 제외한다)	SpGo	SpGo
85439098	－ － － － 그 밖의 흡연용 전자 장치의 것	SpGo	SpGo
85439099	－ － － － 기타	0	0
85441100	－ － 구리로 만든 것	5	E
85441900	－ － 기타	5	E
854420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를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	5	E
8544202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E
85442030	－ － － 10쌍 미만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E
85442090	－ － － 기타	5	E
8544300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 항공기용 ·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5	E
85444211	－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케이블용 전기 접속자	0	0
85444219	－ － － － 기타	0	0
85444221	－ － － － 단면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전선용 전기 접속자	0	0
85444229	－ － － － 기타	0	0
8544423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0	0
85444240	－ － － 10쌍 미만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0	0
85444291	－ － － － 그 밖의 전기 접속자	0	0
85444299	－ － － － 기타	0	0
854449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전압이 30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전기 케이블	5	E
8544492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29	－ － － － 기타	5	E
8544493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39	－ － － － 기타	5	TR
8544494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49	－ － － － 기타	5	E
85444991	－ － － －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0	0
85444999	－ － － － 기타	5	E
85446010	－ － － 단면이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전기 케이블	5	E
85446020	－ － － 단면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전기 케이블	5	E
85446030	－ － － 10쌍 이상의 전선을 갖춘 전신 및 전화 케이블	5	E
85446090	－ － － 기타	5	E
85447000	－ 광섬유 케이블	0	0
85451100	－ － 노(爐)용	5	TR
85451900	－ － 기타	5	20
85452000	－ 브러시	5	20
85459000	－ 기타	5	20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5	0
85462000	－ 도자제의 것	5	15
85469000	－ 기타	5	E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5	5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5	15
85479000	- 기타	5	20
85480000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TR
85491100	-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기	5	20
85491200	- - 기타(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491300	- -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491400	- -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5491900	- - 기타	5	20
85492100	- - 일차전지·축전기·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20
85492900	- - 기타	5	20
85493100	- - 일차전지·축전기·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20
85493910	- - - 집적회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85493990	- - - 기타	5	20
85499100	- - 일차전지·축전기·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5	20
85499900	- - 기타	5	20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5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5	5
86021000	- 디젤 전기기관차	5	0
86029000	- 기타	5	0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5	0
86039000	- 기타	5	0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5	0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5	0
86063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5	10
860691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5	0
86069200	-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5	15
86069900	- - 기타	5	5
860711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0
860712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5	5
86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5	5
860721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5
86072900	- - 기타	5	5
86073000	-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5	10

86079100	- - 기관차용	5	5
86079900	- - 기타	5	5
860800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5	5
8609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1100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5	20
87012100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5	E
87012200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E
87012300	-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E
87012400	-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5	E
87012900	- - 기타	5	E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5	15
87019100	-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5	20
87019200	-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5	20
87019300	-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5	E
87019400	-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5	15
87019500	-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5	E
87021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5	E
870220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TR
870230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5	TR
8702400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5	E
87029000	- 기타	5	E
8703100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5	20
870321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제조한 것	5	E
870321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제조한 것	5	E
870321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1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E
870321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E
870321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E
87032171	- - - - 툽툽(Tuk Tuk)·락샤(Raksha) 및 이와 유사한 것	5	E
87032179	- - - - 기타	5	E
870321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TR
87032190	- - - 기타	5	TR
870322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2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E
870322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20

870322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E
870322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E
870322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TR
87032270	－ － － 간단한 구조의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TR
870322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15
87032290	－ － － 기타	5	20
870323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3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E
870323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3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15
870323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TR
870323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E
87032370	－ － － 간단한 구조의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E
8703238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TR
87032390	－ － － 기타	5	20
8703241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41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20
87032431	－ － － － 통관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모델	5	E
87032432	－ － － － 통관 연도 이전 첫 번째 연도 또는 그 이전의 모델	5	15
87032450	－ － － 긴급차량(예: 구급차・경찰차, 죄수 호송차・영구차)	5	15
87032460	－ － － 여행 및 피크닉을 위한 모터홈 차량과 이와 유사한 것	5	E
87032470	－ － － 장애가 있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TR
87032490	－ － － 기타	5	TR
87033100	－ －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5	E
87033200	－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5	E
87033300	－ －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5	E
8703400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	E
8703500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	E
8703600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3700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3800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5	E
87039000	－ 기타	5	E
8704100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2110	－ － － 싱글(single)이나 더블(double) 캐빈(cabin)의 소형 트럭(픽업 자동차)(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120	－ － － 경량 운송용 트럭[디아나(Diyana) · 하프 로리(half lorry)와 이와 유사한 것][팁박스(tipbox)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1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140	－ － － 덤프차[패킹(packing) · 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42150	－ － － 운전자 객실을 갖춘 채시(chassis)	5	E
87042160	－ － － 냉장차	5	15
87042191	－ － － － 화물운반용 경량(輕量) 삼륜자동차	5	E
87042199	－ － － － 기타	5	E
87042210	－ － － 화물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2220	－ － － 팁박스(tipbox)를 장착한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422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240	－ － － 덤프차[패킹(packing) · 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87042250	－ － － 셔틀카	5	0
87042260	－ － － 리프팅 도르래(pulley) · 자동적재장비가 장착된 차량	5	E
87042270	－ － －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장착된 차량과 가스 및 화학물질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E
87042291	－ － － － 냉장차	5	E
87042299	－ － － － 기타	5	10
87042310	－ － － 화물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2320	－ － － 팁 박스(tipbox)를 장착한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33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2340	－ － － 덤프차[패킹(packing) · 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준비된 상태의 것)	5	15
87042350	－ － － 리프팅 도르래(pulley) · 자동적재장비가 장착된 차량	5	10
87042360	－ － －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장착된 차량	5	20
87042370	－ － － 가스 및 화학물질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5	5
87042391	－ － － － 냉장차	5	5
87042399	－ － － － 기타	5	5
87043110	－ － － 싱글캡(single-cab) 픽업 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3120	－ － － 더블캡 (two-cab)픽업 자동차(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3130	－ － － 소형 트럭[디아나(Dyana) · 하프 로리(half-lorries)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스탠다드 박스(standard box)를 갖춘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3140	－ － － 소형 트럭[디아나(Dyana) · 하프 로리(half-lorries)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팁박스(tipbox)를 갖춘 것(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3150	－ － － 탱커(tanker)(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43160	－ － － 덤프차[패킹(packing) · 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 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43170	－ － － 운전석이 내장된 채시	5	E

87043180	- - - 냉장차	5	20
87043190	- - - 기타	5	E
87043210	- - - 화물자동차 · 티퍼(tippers)와 탱크(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87043220	- - - 덤프차[패킹(packing) · 프레싱(pressing) 또는 완충장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87043290	- - - 기타	5	E
87044100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	E
87044200	-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5	E
87044300	-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5	E
87045100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	E
87045200	-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5	E
87046000	-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49000	- 기타	5	E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5	20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5	20
87053000	- 소방차	5	E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5	E
87059010	- - - 각종 기계공구가 장착된 예인 및 수리 차량과 이동공작차	5	20
87059020	- - - 전기가선 · 가로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사다리나 승강대를 갖춘 차량	5	E
87059030	- - - 도로 · 광장 · 비행장 등의 청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	5	20
87059040	- - - 모든 목적을 위한 분사 차량	5	E
87059050	- - - 적재차량(즉, 상하방향으로 움직이는 리프팅 포크(lifting fork) 또는 하대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에 의해 구동하는 것)	5	20
87059060	- - - 발전기가 장착된 차량	5	E
87059070	- - - 방사선 촬영용 차량	5	15
87059080	- - - 외과용과 내과용으로 설계된 차량	5	E
87059091	- - - - 프로젝터가 부착된 조명차량	5	15
87059092	- - - - 라디오 방송 · 전신 · 무선 송수신과 레이더 차량용으로 설계된 자동차	5	E
87059093	- - - - 장비(반죽기, 오븐 등)가 완비된 제빵차와 주방차	5	20
87059094	- - - - 탱크 및 양수기가 장착된 차량	5	20
87059099	- - - - 기타	5	E
870600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5	20
87071000	- 제8703호의 차량용	5	20
87079010	- - - 제8701호의 트랙터용	5	20
87079020	- - - 제8702호의 차량용	5	20
87079031	- - - - 픽업 자동차용	5	20
87079032	- - - - 소형 트럭용[디아나(Dyana) · 하프 로리(half lorry) 등]	5	20
87079033	- - - - 덤프차용	5	20
87079034	- - - - 화물자동차용	5	10
87079035	- - - - 팁박스(tipbox)	5	20
87079036	- - - - 식품 운반 자동차용 냉장 박스	5	20
87079039	- - - - 기타	5	20
87079090	- - - 기타	5	20
8708100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5	E
87082100	- - 안전 벨트	5	E

87082210	- - -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82220	- - -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 · 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E
87082910	- - - 짐칸[그리드(grid)나 바스켓(basket)]	5	E
87082990	- - - 기타	5	E
8708300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5	E
87084000	-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5	E
87085010	- -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5	E
87085090	- - - 비구동 차축과 부분품	5	E
8708700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5	E
8708800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 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5	E
87089110	- - - 방열기	5	E
87089120	- - - 부분품	5	E
87089210	- - - 소음기와 배기관	5	E
87089220	- - - 부분품	5	E
87089300	- - 클러치와 그 부분품	5	E
87089410	- - - 운전대 ·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	5	E
87089420	- - - 부분품	5	E
87089500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5	E
87089900	- - 기타	5	E
87091100	- - 전기식의 것	5	E
87091900	- - 기타	5	E
87099000	- 부분품	5	E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5	20
87111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0
8711200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0
8711300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5
8711400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0
8711500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5	5
8711600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5	0
87119000	- 기타	5	0
87120010	- - - 자전거(어린이용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E
87120020	- - -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전거	5	0
87120090	- - - 기타	5	5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87139000	- 기타	0	0
8714100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5	20
8714200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0	0
87149100	-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5	20
87149200	-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5	20
87149300	-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5	20
87149400	-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5	20

87149500	- - 안장	5	20
87149600	-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5	20
87149900	- - 기타	5	20
87150010	- - - 유모차	5	5
87150090	- - - 기타	5	0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5	20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20
87163100	-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5	E
87163910	- - - 토목공사용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팁박스(tipbox)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87163920	- - - 식품과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 냉장식 또는 가열식 박스를 갖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20
87163930	-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가구운송용으로 설계된 것에 한정한다)	5	10
87163940	- - - 가축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20
87163950	- - - 자동차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5	20
87163960	- - - -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수송용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5	20
87163970	- - - 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번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	5	20
87163990	- - - 기타	5	20
87164010	- - - 여객 수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것	5	20
87164020	- - - 상품 전시용으로 설계된 것	5	20
87164030	- - - 서점용으로 설계된 것	5	20
87164090	- - - 기타	5	20
87168011	- - - - 청소용과 건축용 수레	5	20
87168012	- - - - 폐유 배출용 드럼(drum)이 장착된 수레	5	TR
87168013	- - - - 버클이 장착된 청소용(압착기와 와이퍼가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20
87168014	- - - - 카펫 운반용 수레와 바퀴가 장착된 선반	5	20
87168015	- - - - 상점 쇼핑용 금속선으로 만든 수레	5	20
87168016	- - - - 병원용 의료기기와 장치의 운반을 위한 수레	5	20
87168017	- - - - 음식의 운반과 판매를 위해 설계된 수레(제9403호의 것은 제외한다)	5	20
87168018	- - - - 단열박스가 장착된 아이스크림 행상용 소형 수레	5	20
87168019	- - - - 기타	5	20
87168090	- - - 기타	5	20
87169010	- - - 제8716.80.11호·제8716.80.12호·제8716.80.13호의 수레의 부분품	5	20
87169090	- - - 기타	5	20
88010000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5	0
880211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880212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8802200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0
8802300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0

8802400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0	0
88026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 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 · 우주선 발사체	0	0
88040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8805100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5	0
88052100	- - 모의공중전장치(air combat simulator)와 그 부분품	5	0
88052900	- - 기타	0	0
88061000	-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5	0
880621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2190	- - - 기타	5	0
880622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2290	- - - 기타	5	0
880623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2390	- - - 기타	5	0
880624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2490	- - - 기타	5	0
880629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2990	- - - 기타	5	0
880691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9190	- - - 기타	5	0
880692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9290	- - - 기타	5	0
880693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9390	- - - 기타	5	0
880694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9490	- - - 기타	5	0
88069910	- - - 카메라를 부착한 것	5	0
88069990	- - - 기타	5	0
88071000	-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5	TR
88072000	-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5	0
88073000	- 비행기 · 헬리콥터 · 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5	0
88079000	- 기타	5	0
89011000	- 순항선 · 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89012000	- 탱커(tanker)	0	0
8901300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8901900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0	0
89020000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0	0
89031100	-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89031200	-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89031900	- - 기타	5	5
890321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5
89032200	- -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5	5
89032300	- -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890331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5
89033200	- - 길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24미터 이하인 것	5	5
89033300	- - 길이가 24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89039300	- - 길이가 7.5미터 이하인 것	5	5

89039910	--- 모터보트(선외기를 제외한 유리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89039920	--- 유리섬유 보트(고정되지 않은 외부엔진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89039930	--- 워터 바이크(제트 스키)	5	0
89039990	--- 기타	5	0
890400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0	0
89051000	- 준설선	0	0
89052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89059010	--- 소방선	0	0
89059020	--- 조명선	0	0
89059090	--- 기타	0	0
89061000	- 군함	0	0
89069010	--- 구명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함과 군함	0	0
89069090	--- 기타	0	0
89071000	- 공기주입식 부교	0	0
89079000	- 기타	0	0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	0
90011000	- 광섬유 ·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5	E
90012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5	5
90013000	- 콘택트렌즈	5	E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5	20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5	20
90019000	- 기타	5	5
90021100	-- 카메라용 · 영상기용 · 사진 확대기용 · 사진 축소기용	5	15
90021900	-- 기타	5	5
90022000	- 필터	5	20
90029000	- 기타	5	5
900311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TR
900319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20
90039000	- 부분품	5	10
90041000	- 선글라스	5	15
90049010	--- 시력교정용 안경	5	20
90049020	--- 전문가용 보호용 고글	5	15
90049090	--- 기타	5	15
90051000	- 쌍안경	5	5
90058000	- 그 밖의 기기	5	15
9005900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5	5
90063000	-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5	20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5	20
90065300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5	15
90065900	-- 기타	5	15
90066100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5
90066900	-- 기타	5	5
90069100	-- 카메라용	5	5
90069900	-- 기타	5	15
90071000	- 촬영기	5	5
90072000	- 영상기	5	20
90079100	-- 촬영기용	5	5
90079200	-- 영상기용	5	15
90085000	- 투영기 · 확대기와 축소기	5	15

900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5
90101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5	5
9010500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5	10
90106000	- 영사용 스크린	5	20
9010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0111000	- 입체현미경	0	0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5	15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131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5	10
90132010	- - -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펜, 메달 등의 형태)	5	TR
90132090	- - - 기타	5	15
90138010	- - - 확대 렌즈(포켓, 데스크 등)	5	5
90138020	- - - 문, 오븐용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도어 아이	5	5
9013803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 플라즈마 · 전자·발광 · 진공·형광과 그 밖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포함한다)	0	0
90138090	- - - 기타	5	5
90139010	- - - WTO 정보기술협정(ITA) 상품의 평면 모니터(엘시디 모니터 · 플라즈마 · 전자 발광 · 진공 형광과 그 밖의 모니터 기술을 포함한다)의 부분품	0	0
90139090	- - - 기타	5	10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5	5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5	5
9014800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5	15
901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0151000	- 거리측정기	5	15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5	20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5	20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5	15
90158000	- 그 밖의 기기	5	20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5
90160000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5	10
90171010	- - - 제도용구(제8471호의 입출력 장치인지 또는 제9017호의 제도기인지에 상관없다)	0	0
90171090	- - - 기타	5	15
90172010	- - - 제도용구(제8471호의 입출력 장치인지 또는 제9017호의 제도기인지에 상관없다)	0	0
90172090	- - - 기타	0	0
90173000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5	15
90178010	- - - 학교용 자와 이와 유사한 것	5	10
90178020	- - - 접이식 줄자 등	5	10
90178090	- - - 기타	5	10
90179010	- - - 도면과 형상제작장치의 부분품	0	0

90179090	- - - 기타	0	0
90181100	- - 심전계	5	15
901812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5	20
901813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5	5
901814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5	5
90181910	- - - 혈압과 동맥경화 측정 장치	5	20
90181920	- - - 그 밖의 측정 장치(호흡·뇌·골반용 등)	5	20
90181990	- - - 기타	5	20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5	20
90183110	- - - 플라스틱[소석고(燒石膏)] 도포용 주사기	5	10
90183120	- - - 눈·귀·후두용 주사기	5	5
90183130	- - - 자궁 및 부인과용 주사기	5	5
90183140	- - - 일회용 피하 주사기	5	15
90183190	- - - 기타	5	15
901832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5	20
90183910	- - - 트로카(trocar)	5	20
90183920	- - - 수술용 칼과 메스·개구부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거울과 반사경(눈·후두·귀 등의 검사용)·수술용 클립·가위·절단기·겸자(鉗子: forceps)·집게·끌·정·망치·해머·톱·제석자(scraper) 및 압설자(壓舌子: spatulae)	5	20
90183930	- - - 정맥 카테터	5	E
90183990	- - - 기타	5	5
901841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상관없다)	5	TR
90184910	- - - 분수가 있는 타구(唾具: spittoon)	5	15
90184920	- - - 치과용 충전기구	5	15
90184930	- - - 치과용 기구가 포함된 치과의사용 의자(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15
90184990	- - - 기타	5	15
90185010	- - - 진단 기기(검안경·안검혈류측정기 등)	5	20
90185020	- - - 시력검사 기구 및 장비(시력 선명도·망막 등 검사용)	5	10
90185090	- - - 기타	5	20
90189010	- - - 귀치료용 기기(고막 마사지, 이경 등)	5	E
90189020	- - - 마취용 기기	5	20
90189030	- - - 비강과 인후용 기기	5	20
90189040	- - - 인공신장(투석)기기	5	15
90189050	- - - 침술용 침[금·은·강(鋼)으로 만든 것]	5	TR
90189060	- - - 내시경	5	E
90189070	- - - 수의과용 기기	5	10
90189080	- - - 거즈·면·가위·집게 등으로 구성된 수술 세트	5	E
90189090	- - - 기타	5	E
9019100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5	15
9019200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5	20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5	20
90211010	- - - 제90류 주 제6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된 정형외과용 신발과 밑창 그리고 그 밖의 발의 교정용구 및 발 받침대[발용 스프링(spring)제 지지구(支持具: support)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5

90211020	- - - 구개성형술용 기구(턱 뼈용)	5	20
90211030	- - - 손발가락교정 장치	5	10
90211040	- - - 머리 및 척추 정형외과용 기기	5	15
90211050	- - - 척추측만증과 만곡 교정을 위한 탈장 벨트 및 기구 · 수술용 의료용 벨트(제6212호의 것은 제외한다)	5	10
90211060	- - - 목발(제6602호의 지팡이를 제외한다)	5	15
90211070	- - - 동물용 정형외과 기구	5	10
90211090	- - - 기타	5	20
90212100	- - 의치	5	20
90212900	- - 기타	5	20
90213100	- - 인공관절	5	10
90213910	- - - 의안(義眼) 용품 (의안, 내안렌즈 등)	5	10
90213920	- - - 인공의 팔 · 팔뚝 · 손 · 다리 · 발 · 코 및 심장 판막	5	10
90213990	- - - 기타	5	10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15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5	10
90219010	- - - 인공성대(성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	5	5
90219020	- - - 시각장애인용 전자식 보조기	5	5
90219090	- - - 기타	5	15
902212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5	TR
902213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5	20
90221400	- - 기타(내과용 · 외과용 ·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5	TR
90221910	- - - 수화물 검사용	5	5
90221990	- - - 기타	5	5
90222100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5	10
902229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5	10
90223000	- 엑스선관	5	5
9022900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5	20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 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0241000	- 금속재료 시험기기	5	20
90248000	- 그 밖의 기기	5	20
9024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20
90251100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5	15
90251900	- - 기타	5	20
90258010	- - - 액체 비중계	5	5
90258020	- - - 습도계	5	5
90258090	- - - 기타	5	5
902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026100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 검사용	0	0
90262000	- 압력의 측정용 · 검사용	0	0
90268000	- 그 밖의 기기	0	0
9026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27100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0
9027200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90273000	- 분광계 · 분광광도계 · 분광사진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275000	-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90278100	- - 질량분석기	0	0
90278910	- - - 혈액검사 · 분비물 및 소변 등의 분석용으로 실험실에서 진단 목적으로 설계된 것	0	0
90278990	- - - 기타	0	0

90279010	－ － － 제9027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가스 · 매연분석기 기는 제외한다)	0	0
90279090	－ － － 기타	0	0
90281000	－ 기체용 계기	5	5
90282010	－ － － 액체용 계기	5	TR
90282090	－ － － 기타	5	5
90283000	－ 전기용 계기	5	TR
9028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20
90291010	－ － － 적산(積算)용 계기	5	5
90291020	－ － － 주행거리계	5	5
90291090	－ － － 기타	5	5
9029200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5	10
9029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5	15
90302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 (oscillograph)	5	5
903031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5	20
903032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5	15
90303300	－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5
903039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 (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 계(psophometer)]	0	0
90308200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 이나 검사용	0	0
903084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5
90308900	－ － 기타	5	5
90309010	－ －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09090	－ － － 기타	0	0
90311000	－ 균형시험기	5	TR
90312000	－ 테스트벤치(Test bench)	5	TR
903141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 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0
90314910	－ － － 반도체 웨이퍼의 입자 표면 오염 측정용 광학식 기기	0	0
90314990	－ － － 기타	0	0
90318010	－ － － 자동차 엔진 점검용 및 조정용 기기	5	E
90318020	－ － －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와 레티클의 취급 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 한다)	0	0
90318090	－ － － 기타	5	E
90319010	－ － － 부분품과 부속품[반도체 웨이퍼 광학기기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마스크,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으로 한정 한다]	0	0
90319020	－ － －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반도체 웨이퍼 및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 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19030	－ － － 반도체 웨이퍼의 입자 표면 오염 측정용 광학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19040	－ － －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및 포토마스크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19050	－ － － 현미경(반도체 웨이퍼 및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용 부분품과 부속품	0	0
90319090	－ － － 기타	0	0
9032100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5	E
9032200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5	5
90328100	－ 액압식이나 공기식	5	E
90328900	－ 기타	5	E
903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5	E
9033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101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20
91011900	－ 기타	5	20
91012100	－ 자동권(自動捲)식	5	20
91012900	－ 기타	5	TR
91019100	－ 전기구동식	5	20
91019900	－ 기타	5	20
9102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TR
910212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10
91021900	－ 기타	5	5
91022100	－ 자동권(自動捲)식	5	5
91022900	－ 기타	5	10
91029100	－ 전기구동식	5	0
91029900	－ 기타	5	0
91031000	－ 전기구동식	5	0
91039000	－ 기타	5	0
910400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5	5
91051100	－ 전기구동식	5	20
91051900	－ 기타	5	15
91052100	－ 전기구동식	5	20
91052900	－ 기타	5	15
91059100	－ 전기구동식	5	20
91059900	－ 기타	5	20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5	20
91069000	－ 기타	5	2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 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5	5
91081100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5	0
91081200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5	5
91081900	－ 기타	5	0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5	5
91089000	－ 기타	5	0
91091000	－ 전기구동식	5	5
91099000	－ 기타	5	10
91101100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5	0
91101200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0

911019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5	0
91109000	- 기타	5	0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5	10
91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0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5	0
91119000	- 부분품	5	5
91122000	- 케이스	5	15
91129000	- 부분품	5	15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5	5
9113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5	5
91139010	- - - 인조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	5	10
91139020	- - - 천연가죽 또는 콤팩지션 레더나 재생가죽으로 만든것	5	10
91139030	- - - 직물로 만든 것	5	10
91139040	- - - 진주 · 귀금속 또는 반귀석 · 천연가죽 · 콤팩지션 레더 또는 재생가죽으로 구성되거나 결합된 것	5	10
91139090	- - - 기타	5	10
91143000	- 문자판	5	0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5	5
91149000	- 기타	5	5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5	20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5	15
92019000	- 기타	5	15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5	0
92029010	- - - 플루트	5	0
92029090	- - - 기타	5	5
92051000	- 금관악기	5	10
92059000	- 기타	5	5
92060010	- - - 북	5	5
92060020	- - - 심벌	5	0
92060030	- - - 트라이앵글(triangle)	5	0
92060040	- - - 실로폰	5	0
92060090	- - - 기타	5	0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5	20
92079000	- 기타	5	20
92081000	- 뮤지컬박스	5	5
92089010	- -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5	10
92089020	- - - 뮤지컬소(musical saw)	5	10
92089030	- - - 데코이 콜(decoy call)	5	10
92089040	- - - 지휘와 기동훈련용으로 입으로 부는 호각	5	10
92089090	- - - 기타	5	10
92093000	- 악기용 현	5	10
92099100	-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2099200	-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2099400	-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10
92099900	- - 기타	5	5
93011000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 박격포)	5	0
93012000	- 로켓 발사기, 화염방사기, 수류탄 발사기, 어뢰관 및 유사한 발사기	5	5
93019000	- 기타	5	5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	0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5	15
93032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5	0
93033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5	0
93039000	- 기타	5	10
93040010	- - - 수중총	5	0
93040090	- - - 기타	5	15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5	10
93052000	-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93059100	- - 제9301호의 군용 무기의 것	5	TR
93059900	- - 기타	5	5
93062110	- - - 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	5	10
93062190	- - - 기타	5	20
93062910	- - - 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 탄약의 부분품과 부속품	5	5
93062990	- - - 기타	5	5
93063010	- - - 탄약, 그 부분품과 부속품(수렵용이나 스포츠 사격용으로 한정한다)	5	5
93063090	- - - 기타	5	E
93069000	- 기타	5	20
93070010	- - - 군용	5	15
93070090	- - - 기타	5	15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5	10
94012000	- 차량용 의자	5	15
94013100	- - 목재로 만든 것	5	E
94013900	- - 기타	5	E
94014100	- - 목재로 만든 것	5	20
94014900	- - 기타	5	20
94015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5
94015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0
94015900	- - 기타	5	0
94016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5	TR
94016900	- - 기타	5	20
94017110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15
94017120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15
94017190	- - - 기타	5	15
94017910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15
94017920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0
94017990	- - - 기타	5	20
94018011	- - - - 다른 의자 뒤쪽에 걸 수 있게 설계된 어린이 의자	5	20
94018012	- - - - 작은 바퀴가 달린 유아용 보행기(보행 교습용)	5	5
94018019	- - - - 기타	5	20
94018020	- - - 석면과 도자기의 혼합물이나 돌로 만든 의자	5	5
94018090	- - - 기타	5	15
94019100	- - 목재로 만든 것	5	TR
94019900	- - 기타	5	TR
94021010	- - - 치과용 의자와 그 부분품	5	20
94021020	- - - 이발용 의자와 그 부분품	5	5
94021090	- - - 기타	5	5
94029010	- - - 내과용·외과용 가구와 부분품	5	TR
94029090	- - - 기타	5	TR
94031010	- - - 책상	5	E

94031020	- - - 바퀴달린 테이블	5	TR
94031030	- - - 파일 보관용 전기 캐비닛	5	TR
94031090	- - - 기타	5	E
94032010	- - - 장롱	5	E
94032020	- - - 바닥에 장착되는 의류거치대	5	TR
94032030	- - - 실험실용 또는 현미경 시험용 테이블(가스나 물 노즐 등이 장착된것)	5	5
94032040	- - - 바닥에 장착되는 휴대용 커튼	5	5
9403205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주방용 가구	5	TR
94032090	- - - 기타	5	E
94033010	- - - 책상	5	E
94033020	- - - 바퀴달린 테이블	5	TR
94033030	- - - 파일 보관용 전기 캐비닛	5	TR
94033090	- - - 기타	5	TR
94034010	- - - 식탁용품용 찬장	5	TR
94034020	- - - 식탁과 의자 세트(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94034090	- - - 기타	5	TR
94035010	- - - 침실 세트(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5	TR
94035020	- - - 장롱	5	TR
94035090	- - - 기타	5	TR
94036010	- - - 실험실용 또는 현미경 시험용 테이블(가스나 물 노즐 등이 장착된 것)	5	20
94036020	- - - 바닥에 장착되는 의류거치대	5	TR
94036030	- - - 벽장(구급상자용)	5	5
94036040	- - - 세면대의 거치대로 사용되는 캐비닛	5	TR
94036090	- - - 기타	5	TR
94037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5	TR
94038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5	0
94038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5	5
94038900	- - 기타	5	TR
94039100	- - 목재로 만든 것	5	TR
94039900	- - 기타	5	TR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5	TR
94042110	- - -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5	TR
94042190	- - - 기타	5	TR
94042910	- - -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	5	TR
94042990	- - - 기타	5	TR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5	10
94044000	- 이불 · 침대보 · 솜털이불 · 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5	10
94049010	- - - 퀼렛스(Quilets)	5	TR
94049020	- - - 베개	5	TR
94049030	- - - 쿠션 · 푸프(pouff) 좌석	5	E
94049040	- - - 누비이불, 침대 시트, 베갯잇으로 구성된 세트(단일 포장한 것)	5	TR
94049090	- - - 기타	5	TR
94051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20
94051900	- - 기타	5	20
94052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20
94052900	- - 기타	5	20
94053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20
94053900	- - 기타	5	20
94054100	- -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4054200	- -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4054910	- - - 외부 조명용 램프(가로등·현관과 대문 램프·공원 램프 등)	5	E
94054920	- - - 특수 램프(기계·사진 스튜디오와 쇼룸 창문용 램프)	5	20
94054990	- - - 기타	5	20
94055000	- 비전기식 조명기구	5	TR
94056100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5	TR
94056900	- - 기타	5	TR
94059100	- - 유리로 만든 것	5	15
940592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TR
94059900	- - 기타	5	20
94061010	- - - 재배용 온실	5	20
94061020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20
94061030	- - - 창고	5	20
94061040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20
94061090	- - - 기타	5	20
94062000	-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	20
94069011	- - - - 재배용 온실	5	20
9406901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20
94069013	- - - - 창고	5	20
9406901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20
94069019	- - - - 기타	5	20
94069021	- - - - 재배용 온실	5	20
9406902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20
94069023	- - - - 창고	5	20
9406902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20
94069029	- - - - 기타	5	20
94069031	- - - - 재배용 온실	5	20
9406903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20
94069033	- - - - 창고	5	20
9406903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20
94069039	- - - - 기타	5	20
94069041	- - - - 재배용 온실	5	20
94069042	- - - - 동물 생산을 위한 헛간과 우리	5	20
94069043	- - - - 창고	5	20
94069044	- - - - 주거용이나 학교용 건물	5	20
94069049	- - - - 기타	5	20
9406909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20
95030010	- - - 자전거	5	5
95030020	- - - 인형	5	15
95030030	- - - 풍선	5	5
95030040	- - -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 모형	5	E
95030090	- - - 기타	5	TR
95042010	- - - 각종 당구용구	5	10
95042090	- - - 부속품	5	5
9504300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5	15
95044000	- 오락용 카드	5	0
9504500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5	10
95049000	- 기타	5	15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5	0
95059000	- 기타	5	5
95061100	- - 스키	5	0
950612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5	0
95061900	- - 기타	5	10
95062100	- - 세일보드(sailboard)	5	10
95062900	- - 기타	5	10
950631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5	10
95063200	- - 골프공	5	10
95063900	- - 기타	5	10
95064000	- 탁구용구	5	5
95065100	-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0
95065900	- - 기타	5	0
95066100	- - 론테니스(lawn-tennis) 공	5	5
95066200	- - 공기주입식의 것	5	10
95066900	- - 기타	5	5
9506700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5	10
950691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5	10
95069910	- - - 스포츠용 활·화살·겔검	5	20
95069990	- - - 기타	5	20
95071000	- 낚싯대	5	5
95072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10
95073000	- 낚시 릴	5	5
95079000	- 기타	5	20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5	20
95082100	- - 롤러코스터	5	TR
95082200	- -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5	20
95082300	- - 범퍼카(Dodge'em car)	5	20
95082400	-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5	20
95082500	- - 물놀이용 탈것	5	20
95082600	- - 워터파크 놀이기구	5	20
95082900	- - 기타	5	20
95083000	- 유원지용 오락물	5	20
95084000	- 순회극장용품	5	20
9601100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5	0
96019000	- 기타	5	0
96020010	- - - 인조벌집	5	0
96020020	- - - 왁스진주	5	5
96020030	- - - 밀랍과 굳지 않은 젤라틴을 기초로 한 제제로 제조된 물품(내과용, 외과용 또는 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5	5
96020040	- - - 파라핀으로 만든 제품(플루오르화수소산용 용기와 같은 것)	5	0
96020050	- - - 스테아린으로 만든 제품	5	0
96020090	- - - 기타	5	5
9603100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5	10
960321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5	TR
96032910	- - - 면도 브러쉬	5	5
96032920	- - - 헤어 브러쉬	5	15
96032990	- - - 기타	5	15

96033000	-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5	20
96034000	-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er)용 · 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	TR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 ·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6039010	- - -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욕실 청소용 및 가정용 브러쉬	5	10
96039020	- - - 옷과 신발의 청소용 브러쉬	5	10
96039030	- - - 도로 · 바닥 청소용 브러쉬	5	10
96039040	- - - 금속 와이어의 핸드 브러쉬	5	10
96039090	- - - 기타	5	10
96040000	수동식 চে와 어레미	5	10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5	20
9606100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5	5
96062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5	5
960622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5	10
96062900	- - 기타	5	10
9606300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5	10
960711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10
96071900	- - 기타	5	10
96072000	- 부분품	5	10
96081000	- 볼펜	5	15
96082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5	15
96083010	- - - 사라지거나 지워지는 잉크 펜	5	5
96083090	- - - 그 밖의 액체 잉크 펜	5	5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5	5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5	10
9608600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96089100	-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5	5
96089900	- - 기타	5	10
9609100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6099010	- - - 석필(slate pencil)	5	5
96099020	- - - 도화용 목탄	5	0
96099030	- - - 크레용	5	5
96099040	- - - 필기용 · 도화용 초크	5	5
96099050	- - - 재단사용 초크	5	5
96099090	- - - 기타	5	5
96100010	- -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	TR
96100090	- - - 기타	5	10

961100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5	20
96121000	- 리본	5	15
96122000	- 잉크 패드	5	15
96131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613200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6138000	- 그 밖의ライター	5	5
96139000	- 부분품	5	5
96140010	- -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5	10
96140020	- - - 워터파이프[시샤(shisha)]와 그 부분품	5	10
96140090	- - - 기타	5	10
96151100	-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20
96151900	- - 기타	5	10
96159000	- 기타	5	15
9616100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5	5
961620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5	20
96170010	- - - 차나 커피용의 진공플라스크	5	15
96170090	- - - 기타	5	5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5	5
96190010	- - - 유아용 냅킨	5	15
96190020	- - - 여성용 패드	5	15
96190030	- - - 환자와 장애인을 위한 냅킨	5	20
96190040	- - - 환자의 분비물 흡수를 위한 얇은 종이 패드	5	15
96190050	- - - 소호 제4818.40.10호부터 제4818.40.90호까지와 제4810.50.00호의 하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배달용 세트	5	20
96190090	- - - 기타	5	15
96200010	- - 삼각대	5	0
96200090	- - - 기타	5	0
97012100	- - 회화 · 데생 · 파스텔	5	5
97012200	- - 모자이크	5	0
97012900	- - 기타	5	5
97019100	- - 회화 · 데생 · 파스텔	5	10
97019200	- - 모자이크	5	10
97019900	- - 기타	5	10
9702100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10
97029000	- 기타	5	10
9703100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10
97039000	- 기타	5	10
97040000	우표 ·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5	10
9705100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 · 민족학 · 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5	10
97052100	-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5	10
97052200	-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5	10

97052910	- - - 고생물학	5	10
97052990	- - - 기타	5	10
97053100	-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5	10
97053900	- - 기타	5	10
9706100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5	10
97069010	- - - 골동품 가구와 그 부분품	5	0
97069020	- - - 골동품 카펫	5	0
97069030	- - - 고미술품과 서예품	5	0
97069090	- - - 기타	5	0
98010000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거주를 위해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반입한 사유물 및 중고 가전제품	0	0
98020010	- - - 대사관과 영사관용	0	0
98020020	- - - 국제기구용	0	0

제3장 무역구제

제3.1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들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

제3.2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WTO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WTO 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가. 당사국들은 반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을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양국의 현재 관

행을 확인하고, 그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¹. 그리고

- 나. 반덤핑 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 개시 절차 전에,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한다. 조사 개시 직후, 그 당사국은 그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상계 조치의 신청이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사 개시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생산품이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의 기회가 제공된다.

¹ 이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규범 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과 무관하다.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4.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당사국들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제고를 통하여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
- 나.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제4.2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및 통합

당사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되는,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4.4조

표준

1.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표준화 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2.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그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그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한다.

제4.5조

기술규정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4.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당사국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당사국들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부여한 인정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다자 협정 또는 약정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
- 다. 다른 쪽 당사국 내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 라.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일방적 인정
- 마. 다른 쪽 당사국 내 인정기관 간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적(자발적) 약정, 그리고
- 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2. 당사국들은 제1항의 접근 방식과 그 밖의 적절한 접근 방식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하여 자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따라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국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4.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 전에, 그리고 개별 적합성 평가절차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인정과 같은 수단을 통한 관련 국제표준의 준수 입증을 포함하여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5. 한쪽 당사국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의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가 인증기관이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제도의 회원이 되도록 장려하고, 중복된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그 국가 인증기관이 전기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 인증의 기초로 서로의 국제전기기기 인증(IECEE-CB) 시험 증명서를 수용하도록 장려한다.

7. 한쪽 당사국이 생산품이 기술규정에 적합하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적합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규제 절차에서 기술규정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다른 선택들 중 적합성 보증으로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생산품의 출시를 위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8.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 경제 공동체가 운영하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개별 회원국이 운영하는 적합성 평가절차 간 중복된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국들 간 기술규정을 통일하도록 노력한다.

9.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추천한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달리 인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제4.7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이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WTO의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보한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에 부합하며 당사국들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5.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이미 이용 가능한 경우, 자국이 통보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전문 또는 요약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을 영어로 기술한 요약본을 당사국들 간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요청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각 당사국은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시의적절하게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요청에 따라,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당사국들은 모든 채택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표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9.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수출 당사국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 방식을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합리적인 시간 간격은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0.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채택과 그 발효 사이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의견제시기간의 만료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8조

공동 협력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당사국들이 이 장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에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대하여 이 조에 따라 협력한다.

3. 당사국들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한 대로,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가. 투명성
- 나. 모범규제관행의 증진
- 다.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 국제 표준과의 정합
- 라.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
-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그리고
- 바.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는 각국의 공공 및/또는 민간 기관 간 협력 장려

제4.9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직접 대면, 원격 회의, 화상 회의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을 촉진하고 점검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
 - 다.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신속

하게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것

라.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의 영역에 소재한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규제 당국, 인정기관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모든 제안을 검토하는 것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 교섭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을 검토하는 것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게,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신속하게 촉진하는 것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고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당사국들이 여기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차. 이 장에 따른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3. 당사국들은 제2항사호에 따른 기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또는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때에

회합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연락처에 의하여 조정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걸프협력회의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산업 및 선진기술부(MoIA)

바레인왕국: 산업통상부 시험 및 계측국(BSMD)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오만왕국: 상공투자촉진부 표준 및 계측 총국(DGSM)

카타르국: 카타르 표준 및 계측 기구(QGOSM)

쿠웨이트국: 표준 및 산업 서비스 담당 기관(KOWMD)

GCC 표준화기구(GSO)

6. 연락처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

7. 당사국들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경 또는 관련 공무원의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

8. 연락처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당사국들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4.10조

정보교환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된 형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당사국들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WTO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당사국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연락처를 통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 및 이에 대한 협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에 따른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특히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쪽 당사국이 지정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공장도가치(ExWorks Value)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들에서의 제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해야 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

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지 여부와 추후 다른 생산 과정에서 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는 재료 또는 생산품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상품”, “재료” 및 “생산품”이라는 용어는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고 “상품”, “재료” 및 “제품”이라는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기관이란 이 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주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기관을 말한다.

재료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또는 하위 조립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특혜관세대우란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반영한 원산지 상품에 부여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RVC)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제3국이란 비당사국을 말한다.

제6.2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6.3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이 경우 그 상품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6.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6.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6.2조제1항가호의 목적상, 다음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된 후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생산물. 다만, 그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의 천연 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생산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 차.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카.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처분,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타.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6.4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은 다음의 공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 가. 직접법/집적법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 노무비} + \text{직접 경비} + \text{이윤}]}{\text{공장도가치}} \times 100$$

이 경우,

- 1)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 2) 직접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 3) 직접 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RVC = \frac{[\text{공장도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공장도가치}}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제6.5조

특정 상품의 취급

당사국들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 밖에서 작업되거나 가공된 상품의 취급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고, 그 논의의 개시로부터 3년 내에 그러한 논의를 마친다.

제6.6조

누적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6.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당사국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 다. 단순한¹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공정
- 아. 단순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 자.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로의 단순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생산품 또는 생산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¹ 이 조의 목적상, “단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²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너. 동물의 도살³

더.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물 또는 다른 물질로의 단순 희석, 또는

러. 가호부터 더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6.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비원산지 재료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가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제6.9조

² 이 조의 목적상, “단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³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연과 같은 후속 가공을 말한다.

직접 운송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사국들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생산품에만 적용된다. 다만, 생산품은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화물의 분리 또는 그 생산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는 한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생산품은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머무른다.

제6.10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공장도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가치가 그 상품의 총 중량 또는 공장도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6.11조

포장과 포장재료의 취급

1.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을 위한 통칙 5에 따라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그 상품이 제6.4조에 규정된 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2. 상품의 운송 및 수송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6.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여겨지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 가.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함께 제시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와 안내서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상품의 재료로 여겨진다.

제6.13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 및 용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6.14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인지 여부는 각각의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에 의하여, 또는 수출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의 사용을 통하여 결정되며,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6.15조
원산지 증명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제6.17조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제6.18조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원산지 증명은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한다.

나. 인쇄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다.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생산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생산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은 첫 번째 분할 수입 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

3. 원산지 증명은 발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제6.16조

원산지 정보의 전자적 교환 및 검증

1. 제6.15조 제2항나호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운영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할 수 있다.
2. 위의 인증 방법 외에도, 당사국들은 양자 약정 또는 자국의 적용 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원산지 증명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산지 정보”는 부속서 6-다에 기술된, 각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로 정의된다.

제6.17조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으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의하여 발급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는
 - 가. 부속서 6-나에 언급된 서식으로 작성된다.
 - 나. 고유한 증명 번호를 포함한다.
 - 다.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허용된다. 그리고
 - 라. 수출 당사국 발급 기관의 관인을 포함한다. 그 관인이 전자적으로 적용된 경우, 그 원산지 증명서는 QR 코드 또는 보안 웹 주소와 같은 인증 검증 방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4.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이전에 발급된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진정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진정등본은 “(날짜)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 등본”이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진정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6. 이 조 제2항가호를 이행하는 당사국은 발급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발급 기관의 명칭 및 관련 연락 세부사항을 알리고, 발급 기관의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식별 정보의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위에 제공된 정보의 모든 변동 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신속히 통보된다.

제6.18조

원산지 신고서

1. 제6.15조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 신고서는

가. 부속서 6-다(원산지 신고서의 최소 정보 요건)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나. 증명인의 이름과 서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다.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를 포함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는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도록 준비한다.

제6.19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수출 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관련 상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부속서 6-다에 견본이 제시되어 있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3.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4.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6.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7.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 목록을 공유하거나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들이 접근 가능하고 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국의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그 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증수출자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제6.20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에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다음을 규정한다. 수입자는,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자신의 세관 신고서에 진술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다. 수입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라.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정정하고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이자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수입은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수입자는 제6.9조에 언급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제공한다.

6.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입자나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여전히 수용될 수 있다.

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거나 제6.15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원산지 증명서와 서면 신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관세 당국이 정정된 원산지 증명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날부터 5근무일 이상 30근무일 이하의 기간이 수입자에게 부여될 것이다.

제6.21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 다음을 제시하여, 상품이 수입된 날 후 최소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한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 증명 및 적절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

제6.22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을 서면으로 요청, 또는

라. 검증방문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2. 수입 당사국은

가. 제1항나호의 목적상,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그리고

나.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3.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과 수출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

4.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서면 정보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12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

나.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

5. 제1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결과의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 통보한다.

6.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23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못했을 경우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결

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6.22조에 따른 서면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제6.24조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

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상품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상품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는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문제는 나머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제6.25조

제3자 송장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6.26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가. 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

4. 당사국들 간 전달된 모든 정보는 제7.13조(비밀유지)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며, 원산지 증명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6.27조 직접 운송의 증명 서류

제6.9조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당사국들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 또는

- 나. 제6.9조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6.28조

분쟁해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과 이 검증의 수행을 담당하는 관세 당국 간에 제6.22조의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들이 이 장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관세위원회에 제출된다.

제6.2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제6.30조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1.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제6.9조에 따라 그 당사국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에 있는 경우

2. 다만, 그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이 조 가호 또는 나

호에 따른 대상 상품의 지위를 수입 당사국이 만족할 정도로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 6.20조에 따라 유효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31조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

1. 당사국들은 운송 도중 자국의 영역에 위치한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을 이용하는, 원산지 증명하에 거래되는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한쪽 당사국 내에 위치한 특별경제구역 또는 자유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은, 그 처리 또는 가공이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고 원산지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될 때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부속서 6-나



걸프협력회의 원산지 증명서*

국가 상징

1. 수출자(이름 및 전체 주소)			2. 번호: 날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		
3. 수출자(이름 및 전체 주소)			4. 수하인(이름, 전체 주소 및 국가)		
5. 최종 목적지 국가			6. 운송 수단 선명/편명(선택사항)		
7. 상품의 원산지 국가			8. 비고		
9. 포장의 표 시 및 번호	10. HS 코드	11. 상품의 품명	12. 수량 및 단위	13. 총중량	14. 송장 번 호 및 날짜
15.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 서명: 날짜: 관인:			16. 수출자 신고 서명: 날짜:		

- 제1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2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국이 부여한 번호와 날짜를 기재한다.
- 제3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4란: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 제5란: 최종 목적지 국가를 기재한다.
- 제6란: 운송 수단(선명/편명 - 선택사항)을 기재한다.
- 제7란: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 제8란: 소급 발급, 진정 등본 또는 제3자 송장과 같은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제9란: 품목 번호, 상품(포장)의 식별 표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 제10란: 6자리 이상의 HS 코드를 기재한다.
- 제11란: 상품에 대한 합리적으로 충분한 상업적 설명 및 원산지 기준을 기재한다.
- 제12란: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한다.
- 제13란: 총중량을 킬로그램, 톤, 갤런 단위로 기재한다.
- 제14란: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상품과 관련된 송장 번호 및 송장 날짜를 기재한다.
- 제15란: 발급 당국에 의한 증명을 기재한다(서명은 선택사항).
- 제16란: 수출자 신고를 기재한다.

한국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2사본/제3사본)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참조번호: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 양식 발행국 _____(국가) (뒷면 주해 참조)		
2.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발일: 선박/항공/기차/차량 편명: 하역항:			5. 비고:		
6. 품목 번호	7. 상품의 품명 (포장 번호 및 유형, 그리고 수량을 포함합 니다)	8. HS 코드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중량 또 는 그 밖의 단 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걸프협 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 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_____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3.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기술된 상품이 한 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 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_____ (장소와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뒷면 주해

1. 한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혜대우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협정에 따라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의 품명에 해당한다.

나.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2. 참조번호: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3.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4.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5. 제3란: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6. 제4란: 운송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7. 제5란: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서 비고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조건	비고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한다.	“비당사국 송장”
원산지 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다.	“소급 발급”
진정 등본이 발급된다.	“○○년 ○○월 ○○일자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진정 등본”

8. 제6란: 알련번호를 기재한다.

9. 제7란: 각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품명은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포장의 번호와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10. 제8란: 제7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HS코드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HS 코드는 수입 당사국의 코드를 말한다.

11. 제9란: 수출자는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제9란에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9란에 기입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기타	“CTC” “RVC” 예) “CTC+RVC” , “CTC 또는 RVC”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기재한다.

12. 제10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가 사용될 수 있다.

13. 제11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재된다.

14.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15. 제13란: 이 란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이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서명하고 관인을 찍는다. 원산지 증명서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서명은 선택 사항이다.

주: 이 지침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원본(제2사본/제3사본)

참조번호

6. 품목 번호	7. 상품의 품명 (포장 번호 및 유형, 그리고 수량을 포함합 니다)	8. HS 코드 (6단위)	9. 원산지 기준	10. 총중량 또 는 그 밖의 단 위	11. 송장 번호 및 날짜
12.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이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_____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걸프협 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 함을 신고합니다. _____ (수입국) _____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3. 증명 여기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이고, 기술된 상품이 한 국-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 건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_____ (장소와 날짜, 발급 기관의 서명 및 관인)		

부속서 6-다
원산지 신고서의 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의 품명 및 HS 코드(6단위 이상)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 코드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 코드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 부여 기준
- 아. 인증수출자의 증명
- 자. 원산지 국가
- 차. 공장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두주

1. 이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규정된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2. 이 부속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가. 제1열 - HS 코드(류, 호 또는 소호)
 - 나. 제2열 - HS 코드에 따른 품목명, 그리고
 - 다. 제3열 - 품목별 원산지 규정(원산지 부여 기준)
3.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규정이 충족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4.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정의된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을 거칠 경우에만 그 규정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6. 이 부속서의 제1열의 목적상, 세번 앞의 “ex” 용어는 그 세번에 명시된 규정이 그 류에 명시된 일반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 이 부속서의 제3열의 목적상,

완전생산기준(WO)이란 상품이 이 협정의 제6.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말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란 제6.4조(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말한다.

HS 2017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완전생산기준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완전생산기준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완전생산기준
ex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0406	치즈와 커드(curd)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완전생산기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완전생산기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완전생산기준
ex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다음을 제외함.	완전생산기준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 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1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류	곡물	완전생산기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6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완전생산기준

ex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1.20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발삼(balsam)]	완전생산기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상품	완전생산기준
ex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99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1703	당밀(糖蜜) [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4류의 재료는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다음을 제외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1	죽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5.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2008.99	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소호 제1212.21호 또는 제1212.29호의 것은 제외한다)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2류	음료·주류·식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완전생산기준
2202.99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 제품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ex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青) 물질, 광물성 왁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8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29류	유기화합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1	비환식탄화수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	환식탄화수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것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	아민관능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	유기-황 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0류	의료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1류	비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2류	유연용 ·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 · 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 바니쉬(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4류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 · 조제 윤활제 · 인조 왁스 · 조제 왁스 ·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완전생산기준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4001	천연고무 · 발라타(balata) · 구타페르카(gutta-percha) · 구아울(guayule) ·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완전생산기준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3류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6류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50류	견.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2류	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401호, 5402호 또는 55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다음을 제외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501호, 5503호, 5506호 또는 5509호부터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401호, 5402호, 5404호 또는 5509호부터 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냅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6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7류	조제 깃털 · 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 카락으로 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8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9류	도자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ex 제71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 주화. 다음을 제외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110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7퍼센트 이상일 것
제72류	철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8류	납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 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 의 제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 ·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4류	원자로 · 보일러 · 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 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주: 상품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대신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이 된다.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6류	잡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걸프협력회의의 경우,

바레인왕국: 내무부 관세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자카트(Zakat), 세금 및 관세청

오만술탄국: 관세총국, 오만왕립경찰

카타르: 관세청, 그리고

쿠웨이트: 관세총국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에 관련되고, 그 행정 및 집행이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를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 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특송 업무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운송 수단이란 자연인,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7.2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장은 당사국들 간 교역되는 상품 및 각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당사국들의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나. 당사국들 간 무역의 원활화, 그리고
- 다.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서 관세행정기관 간 협력 증진

제7.3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 가,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규칙
-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
- 바. 수입, 수출이나 통과 제한 또는 금지
-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 자. 자국이 당사자인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모든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 차. 관세 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갱신한다.
-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자국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에 관한 설명¹
 - 나.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를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3.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관세법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 공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제7.5조 통관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상

¹ 각 당사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검토한다.

제7.6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서를 제공한다.

가.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나. 상품의 원산지

2. 제1항에 정의된 사전심사결정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결정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관세평가, 그리고

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3.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과 정보는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상세설명을 포함하는 절차

나. 자국의 관세 당국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언제라도, 상품의 견본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이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당사국은 신청인이 그 당사국에서 법적 대리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신청인이 그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한 경우, 신청 후 90일 내에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6.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에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7.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던 경우

라. 중요한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마.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8.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행정적 재심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9.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10.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1.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제7.7조 상품의 반출

1. 양자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도록 요구하지 않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 라. 적용 가능한 관세, 조세 및 수수료²에 대하여 자국 관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보증과 함께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제7.8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세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 가.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
- 나.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4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²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수수료의 최종 지급액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증을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다.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도록 규정한다.
- 라.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1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 서류도 요구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한다.

제7.9조 자동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 가. 신속한 반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과 무역 공동체 간 전자적 정보교환을 규정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 나. 그러한 전자적 정보 교환을 위하여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 다. 국제 무역정보의 양자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관세 당국 간 호환 가능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7.10조 위험관리

1. 각 당사국은 세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세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탁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 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7.11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없이 다음을 통보한다.

가. 결과

나. 결과에 대한 이유, 그리고

다. 인의 권리 및 의무

3. 당사국들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7.12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거나 독립된 한 단계의 행정적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나 생산자는 재심사를 실시하는 당사국에 그 정보를 제7.13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13조 비밀유지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비밀유지의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제7.14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7.15조 관세 협력

1. 당사국들의 관세 당국은 다음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서로 지원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 마.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상품의 품목분류, 평가 및 원산지 결정

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통계의 교환(통계의 형식 및 종류는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한다)

사. 당사국들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당사국들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관세행정의 발전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연락처를 지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사안이 연락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 사안은 제7.16조에 규정된 관세 위원회에 회부된다.

제7.16조 관세위원회

1. 당사국들은 그들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당사국들의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나.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해석을 위한 규정의 검토, 논의 및 제안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라. HS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 이 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당사국들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기반시설 운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접세는 자본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상속, 유산취득 및 증여에 대한 세금,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에 명시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 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때,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주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GCC 회원국 또는 한국의 국민인 자연인을 말한다.¹

¹ 당사국의 자연인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하여,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아랍에미리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목적상, 앞서 언급된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학생 거주 허가증, 외국인 은퇴자 거주 허가증, 원격 근무 거주 허가증, 가사 근로자 거주 허가증 및 외국인 부양가족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자연인은 제외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서비스의 분야란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를 말하며, 또는

나. 그 밖에는,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를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 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체나 자연인의 주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려고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²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 소비)
-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또는
-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그리고

운수권이란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을 통과하는 정기적·비정기적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운항 지점, 운항 노선,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 용량, 부과 운임 및 그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권 등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항공사 지정 기준을 포함한다.

제8.2조

적용범위

²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게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나. 정부조달

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항공 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4) 공항 운영 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 교부

3. 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 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

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³

5. 이 장의 목적상, 부속서 8-가, 부속서 8-나, 부속서 8-다, 부속서 8-라-1 및 부속서 8-라-2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8.3조

시장접근

1.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에 적시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⁴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³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⁴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⁵ 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유형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⁶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8.5조

추가적 약속

⁶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최혜국 대우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3조 및 제8.4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해서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8.8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이 조에서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 양허표의 약속이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수정 당사국은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의 최소 3개월 이전에 이 조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혜택이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조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라 한다)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⁷, 수정 당사국은 그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 및 합의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과 수정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유익한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협상의 결과를 공동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받는다.

3. 제2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영향을 받는 당사국과 수정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5. 수정 당사국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결과에 합치되게 보상 조정을 할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⁷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협의 및 협상의 개시에 대한 서면 요청을 수정 당사국에 전달한다.

6. 수정 당사국이 자국의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 제15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참여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그 결과에 합치되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당사국의 헌법 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 규제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6.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INF/SDR/2, 2021년 11월 26일)의 규율은 그 규율을 통합하기 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의 참여자인 모든 당사국들의 개선된 GATS 양허표가 발효된 다음 날 모든 그러한 당사국의 제7조에 언급된 양허표에 추가적 약속으로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⁸

7. 제6항에 따라 규율의 통합이 진행 중인 때에는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그리고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그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5항가호, 제5항나호 또는 제5항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나. 그러한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8. 당사국이 제7항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표준이 고려된다.⁹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의 참여자인 이 협정의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1) 분야 또는 조치가 제 8.7 조에 따른 그러한 당사국의 약속을 이유로 제 8.3 조 또는 제 8.4 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의 규율은 그러한 분야 또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 제 2 절의 “발효 전 의견제시 기회 및 정보 제공”이라는 제목의 제 14 항부터 제 19 항까지는 그러한 당사국이 GATS 에 따라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만 적용된다.

⁹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당사국들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9.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8.10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그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자국의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이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 절차의 인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5. 제4항에 따라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 간에 도달한 약정은 이 조에 합치한다.

제8.11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제8.12조

영업 관행

1. 당사국들은 제8.11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이로써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 당사국에 의한 비밀 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3조

지불 및 송금

1. 제8.14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IMF 협정”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외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은 제8.14조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14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 개발 또는 경제 과도기의 과정에서 당사국의 국제수지에 대한 특정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자국의 경제 개발 또는 경제 과도기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준비금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가.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차별하지 않는다.

나. IMF 협정과 합치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더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변동은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제8.1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늦어도 발효 시까지 공표한다.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국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

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의처를 이용하거나, 문의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제8.16조

비밀 정보의 공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8.17조

혜택의 부인

1.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다음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1) 혜택부인 당사국이 한국일 경우, 그 비당사국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
- 2) 혜택부인 당사국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일 경우, 그 비당사국과의 외교관계, 또는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그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서비스의 공급
- 나. 그 한쪽 당사국이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1)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 2)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

제8.18조

서비스무역위원회

- 1. 당사국들은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는 서비스무역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 나.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식별 및 권고, 그리고
 - 다.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그 밖의 서비스무역 문제에 대한 검토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 및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3) 금융리스
-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5) 보증 및 약정
-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가)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 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지만,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부속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제8.1조의 **서비스무역** 정의에 기재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3.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

나.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퇴직연금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 그리고

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계좌로, 또는 정부의 보증하에, 또는 정부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그 밖의 활동

4. 제8.1조에 규정된 **서비스** 정의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항나호 또는 제3항다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공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는 그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5. 제8.1조에 정의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전성 조치 예외

6.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않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제 7 항부터 제 10 항까지에 맞게 취해진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¹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¹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의 보장

8.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9.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 당사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투명성

11.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자율규제기구

1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 유가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구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8.4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지급 및 청산 제도

13.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신금융서비스^{2 3}

14.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법 또는 기존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일정 정보의 취급

1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의 이전

16.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저해함이 없이, 정보의 이전, 금융정보의 처리 또는 장비의 이전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²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국들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³ 이 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제 1 항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라는 용어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과 다수의 금융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거나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들은 제 1 항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라는 용어가, 제 1 항에 따라, 샤리아 준수 금융서비스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게는 샤리아 준수 금융서비스가 이 항에 따른 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이 양해된다.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 이전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로 또는 밖으로의 정보 이전이나 금융 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거나, 모든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합치되는 수입 규정에 따라 장비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7. 제16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개인 데이터,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과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할 권리가 이 장의 규정을 우회하도록 사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18. 제16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16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인정

19.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 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협의

20.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21. 제20항에 따른 협의에는 관련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부속서 8-나 통신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 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 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표준상호접속제안이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으로서, 상호접속을 위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메시지, 음향, 영상, 또는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향상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가. 한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하며,

나. 각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경우, 각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3.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

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경쟁보장장치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6.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번호이동성

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일반조건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 및 효율에 따라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다.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

9.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10.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 접속제안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망 요소 세분화

1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 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할 것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2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 모바일 로밍

14.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간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효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5.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소매 효율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보편적 서비스

16.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17.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허가 절차

18.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19.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의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¹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22. 각 당사국은 주파수 · 번호 ·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3.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4.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3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통신 분쟁의 해결

25.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이 부속서의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고,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불복심사 및 사법적 심사

- 나. 자신의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사법적 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부속서 8-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입국 및 일시 체류란 영구적 거주를 의도하지 않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입국과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원칙

2. 이 부속서는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당사국들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

3.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 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의무

4. 각 당사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

5. 당사국들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제8.7조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6. 이 부속서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자연인은

가. 허용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당사국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른 서비스의 공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8.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투명성

9. 제1.6조(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가능한 경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범주의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요건에 관한 설명 정보를 준비, 공표 및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범주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0. 제1.6조(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11.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협력

1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 또는 당사국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한다.

분쟁해결

13.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4.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국도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

15. 다른 쪽 당사자가 재심사 절차를 포함한 구제 절차가 개시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14항나호에 언급된 구체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8-라-1

한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유엔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약속 안함*”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걸프협력회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롭게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 지점의 토지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또는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으로 제한될 수 있음.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아래와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 함. A. 기업 내 전근자(ICT)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인 자연인: (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제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ii)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4) 기업 내 전근자(ICT), 상용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 함.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토지취득은 토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 함.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른 거주자로 제한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인. A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이 위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i)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ii)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걸프협력회의 영역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iii) 지정된 계열사는 동일한 모회사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 또는 파트너십,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실체 각각의 총 투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함.			
	B. 상용 방문자(BV)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고 그 자연인은 직접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음. C. 서비스 판매자(SS) 한국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가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연인이 그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B와 C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일의 기간으로 제한됨. D.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 법인의 피고용인 다음의 조건과 분야별 구체적 파트에 언급된 모든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는, 한국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¹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함. 입국하려는 자연인은 입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어야 할 것임. 그 자연인은 한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		

¹ “D” 유형에 따라 이루어진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이 장에 따라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 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라, 그리고 워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 및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 및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그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도록 요구됨. 약속은 특정 하위 분야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적 제한(적용 양식 및 수준은 추후 결정함)의 적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계약은 한국의 전문직 직함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활동 또는 하위 분야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 -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 회계사 연수, 감사 기법 전수, 그리고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D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에 관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u>사업 서비스</u> A. <u>전문직 서비스</u> a. 법률 서비스 (CPC 861*)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현지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그 변호사의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이어야 함. (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나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에 관한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주식 다음 정보는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i)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ii)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 iii)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iv)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관련 법에 따라 조직되고 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아닌 국가의 법무회사(로펌)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유형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v)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내에서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 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 전수 및 정보 교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 세무조정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제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4) 한국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통과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B.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연구개발 서비스</u>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 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부동산 서비스</u> 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 등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u> <u>임대/리스 서비스</u>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a. 광고 서비스 (CPC 871)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c. 경영 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⁴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⁴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기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직업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밑 조사 서비스 (CPC 86752)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 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⁵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래픽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u>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B. <u>쿠리어 서비스</u> 특급배달 서비스⁶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⁷를 가지는 서신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⁸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신의 책임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쿠리어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⁶ “특급배달 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b)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 부에 속할 수 있는 차량 정수를 결정하고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하는 것

⁸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쿼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국 자본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통신 서비스</u>			
a. 음성전화 서비스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1) 제한 없음.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부여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텔렉스 서비스	외국정부나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전신 서비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⁹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음.			
f. 팩시밀리 서비스				
g. 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¹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무선호출 서비스				
PCS(개인통신 서비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 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 서비스				

⁹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퍼센트(그 최대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라면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¹⁰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함.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음)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함.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 포함)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 서비스 ¹¹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¹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됨. ¹³

¹¹ “부가 서비스”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함.

¹²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¹³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그리고 전용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시청각 서비스</u>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u>건설 서비스</u> (CPC 511-518)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u>유통 서비스</u> ¹⁴ A. <u>위탁 중개인 서비스</u>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⁴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 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WTO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도매 서비스</u>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62229 중 인삼, 홍삼 및 곡분 도매업, 그리고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한 기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소매 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63108, 쌀, 인삼 및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 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프랜차이징</u> (CPC 8929*) ¹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¹⁵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u>교육 서비스</u>¹⁶ C. <u>고등교육 서비스</u>¹⁷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중등 교육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3)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¹⁸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이 불필요).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수도권 지역¹⁹에서 제한될 수 있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¹⁶ 모든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의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¹⁷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됨.

¹⁸ “학교법인”이란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함.

¹⁹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 공인평가 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해당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제한됨. － 그 밖의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러한 인정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학생 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1(고등교육 서비스)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 「고등교육법」에 따라 (a)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또는 (b)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2.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경영자, 연합체 또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시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u>성인교육 서비스</u>²⁰ (CPC 924*) 사립 성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성인교육 서비스. 다음은 제외함. (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허용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에 거주해야 함.	

²⁰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첨부 2(성인교육 서비스)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교육기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에 대한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됨. (a)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운송 및 안전 관리 (b)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경영, 식음료, 포장, 인쇄, 사진 및 피아노 조율 (c)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데이터 처리, 통신 기기,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d) 간호 조무: 간호 조무 (e)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상품 및 관광 (f)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g) 국제: 성인 대상 외국어, 통역 및 번역 (h) 인문사회: 대학 편입, 공공 경영, 사업 경영, 회계, 통계 및 공무원 시험 (i)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 기예와 공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실용음악, 바둑 및 옹변 2.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교육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임.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언론기관, 그리고 지식 및 인력의 개발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을 지칭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u>환경 서비스</u>			
A. <u>폐수 서비스</u>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 ²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폐기물 처리 서비스</u>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²²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¹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²²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²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컨설팅 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³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금융서비스에 대한 주해</u>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부속서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상의 하위 분야와 다름. 2. 하위 분야의 기재사항은 현존하는 국내 금융서비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u>금융서비스</u> 두주: 모든 금융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을 조건으로 함.²⁴ (2)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 분야에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소유하거나 지배해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함.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최고경영자가 한국 영역 내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음. (4) 금융서비스 부속서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5)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6) 한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어느 한 쪽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러한 허용은 한국에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한국 영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구매권유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임. 한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정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한국이 한 약속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함. (7) 한국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한국의 영역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상의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그러한 비밀 영업 정보를 보호할 것임.			

²⁴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될 수 없음. 상업적 주재의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9)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10)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11)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12)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13)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모집인을 포함한 보험 전문인력의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한국 재보험회사 및 재재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v) 보험 부수 서비스: 하위 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 ²⁵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⁵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u>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u>: 다음에 기재된 하위 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²⁶ (ii) 대출²⁷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제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²⁸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퍼센트 중 큰 금액임.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²⁶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²⁷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²⁸ “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 서비스 ²⁹ (vii) 결제 및 청산 ³⁰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요구됨.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금융 리스, 신용 공여 및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⁹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업무.

³⁰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업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다음에 기재된 상품에만 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금피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 ³¹ (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각 설립체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¹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4) 자연인의 주재

[illegible]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u>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			
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2, 6431*)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u> 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관광객 안내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u>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u> A. <u>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u>운송 서비스</u> A. <u>해상운송 서비스</u>³² 국제 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은 제외함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³²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a) 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 상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 배정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 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 접안 서비스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 부수 서비스</u>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통관 서비스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 ³³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³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³⁴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³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 ³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 ³⁷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 상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⁴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³⁵ CPC 748 중 자기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³⁶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 중개 서비스 또는 선박의 용대선, 대여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³⁷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항공 운송 서비스</u> ³⁸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⁸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u>철도 운송 서비스</u>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의 일부, CPC 7113의 일부) ³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³⁹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민간 소유 철도 시설에만 적용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u>도로 운송 서비스</u>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u>파이프라인 운송</u> (CPC 7131*) 석유제품 운송에만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u>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u> b. 항만구역 외의 창고업(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u>그 밖의 운송 서비스</u>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 ⁴⁰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⁴⁰ “철도 화물 주선”이란 철로 운송의 끝지점에서 수행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을 위한 계약의 체결, 화물 하역 및 배달과 같은 부수 서비스를 말함.

해상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 국제해운, 3.b)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

- 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검량·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양하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 포함)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

부속서 8-라-2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서설

1. 이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영역에만 적용된다. 여기에 포함된 약속과 제한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과 한국에만 적용된다.
2. 다음 약어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바: 바레인왕국
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오: 오만왕국
카: 카타르국
쿠: 쿠웨이트국
3.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CPC 코드에 대한 언급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유엔 통계사무소, 뉴욕, 1991)에서 사용되는 CPC 코드를 지칭하고 약속의 적용범위를 정의하도록 의도되었다.
4. 어느 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의하여 기재된 약속, 또는 그 약속이 양허된 방식은 다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의한 약속의 적용범위, 의미 또는 효과를 해석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없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별표(*)는 명시된 서비스가 MTN.GNS/W/120 문서의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의 다른 곳에 명시된 보다 집합적인 CPC 항목의 구성요소임을 나타낸다. 이중별표(**)는 명시된 서비스가 CPC 색인이 적용되는 전체 활동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약속 안함*”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의 모든 분야 및 하위 분야¹	3) 아: 상업적 주제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100 퍼센트의 외국인 소유가 허용됨), 또는 (ii) 아랍에미리트 법에 따라 허용된 법적 형태를 취하고, 아래의 구체적 분야에 규정된 최대 외국인 지분을 가진 회사 설립 일부 구체적 분야 및 하위 분야의 경우, 상업적 주제는 기술 이전,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기술 지원 그리고 현지인력 교육 및 훈련 형태의 혜택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자유 구역: 아래의 구체적인 하위 분야에 규정된 자유 구역에서 100 퍼센트 외국인 소유가 허용됨.	3) 아: (i) 토지 및 부동산 취득은 외국인이나 외국 국민이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에는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은 외국 회사는 허용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그리고 연방 및 에미리트 수준에서 부동산 소유를 규율하는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 (ii) 정부 보조금을 받는 서비스는 아랍에미리트 국민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iii) 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의 업무 또는 영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세를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반면, 현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아랍에미리트 회사는 GATS 제 14 조라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3) 바: 상업적 주제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² , 또는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분야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3) 바: 비(非)바레인 국민은 법에 의하거나 승계에 의하는 경우 외에 바레인 내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그러나 바레인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외국 설립체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을 규율하는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특정 용도로만 부동산과 토지를	

¹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및 카타르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서 어떤 약속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양허표는 이러한 서비스에 따른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다.

² 대표사무소는 지점 사업소 또는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를 통하여 상업적 주제를 가질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소유할 수 있음.	
	3) 사: (i) 사업 서비스(아래에 열거된 대로)³ 외에 이 양허표에 열거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주재는 회사법에 따른 합자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함. (ii) 사업 서비스(아래에 열거된 대로)³에 대한 상업적 주재는 전문회사법에 따른 회사 형성 및 그러한 회사의 등록을 조건으로 함.	3) 사: (i)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2000 년 4 월 외국인 투자법」 과 「외국인 투자법 행정규칙」 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투자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됨. (ii) 비(非)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승계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법」 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승인된 외국 설립체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을 규율하는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 (iii) 비(非)사우디아라비아 사업 실체와 외국 자연인은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실체와 사우디아라비아 자연인은 자카트(Zakat)의 적용을 받음.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의 미래의 변경은 기존 법보다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임. (iv) 외국 서비스 실체와 외국 자연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용가능한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일부 보조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인에게만 이용가능할 것임.	사: 모든 공급형태: 자카트(Zakat)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과세 조치는 GATS 제 2 조, 제 17 조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될 것임.
	3) 오: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수 있음.	3) 오: 외국 국민과 외국 기업은 오만의 지정된 관광 지역에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	

³ 문서 MTN.GNS/W/120 에 기재된 전문직 서비스(1A).³ 문서 MTN.GNS/W/120 에 기재된 전문직 서비스(1A).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대표 사무소(모든 분야에서) (ii) 오만 법에 따라 허용된 법적 형태를 취하고, 아래의 구체적 분야에 규정된 최대 외국인 지분을 가진 회사 설립(모든 분야에서), 또는 (iii) 아래의 구체적 분야에 규정된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및 지점	그러나 외국 국민과 외국 기업은 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50 년마다 갱신가능한 리스를 체결할 수 있음. •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석유판매로부터 얻은 소득을 제외하고는, 최대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오만에 설립된 회사는 완전 오만인 소유 회사와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할 것임.	
	3) 카: 은행 분야, 보험 회사, 상업적 대리 및 부동산 구매를 제외하고, 카타르 파트너가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카타르 법에 따라 현지 법인으로 설립된 합작투자에 49퍼센트까지의 투자가 허용됨. 상업적 주재는 기술 이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술 또는 마케팅 지원 및 현지인력 교육 또는 훈련 형태의 특정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3) 카: 외국인에 의한 카타르 주식 소유, 구매, 판매 또는 거래는 상장 회사에서 25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한 토지나 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음.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은 경제 활동을 위하여, 특히 산업용으로 장기 리스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카타르 내에서의 업무 또는 영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직접세를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반면, 현지 서비스 공급자 또는 카타르 현지 회사는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음 (「1993년 법률 제11호」). 외국 국민 또는 회사는 투자하기 전 5~10년 동안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3) 쿠: • 은행, 금융기관 및 분야별 구체적 약속 분야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제외하고,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해야 할 것임. (i) 동일한 서비스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3) 쿠: •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한 토지 또는 부동산 취득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리스 기반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분야에서 활동중인 쿠웨이트 대리인(공식 대리 계약은 상공부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ii) 쿠웨이트 회사의 자본과의 파트너십으로서, 쿠웨이트 자본의 지분이 최소 51 퍼센트 이상이고 외국 자본의 총 지분이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파트너십. - 상업적 주재는, 노동력의 30 퍼센트를 쿠웨이트 국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포함하여, 첨단 기술 이전,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술 또는 마케팅 지원 및 현지인력 교육 또는 훈련과 같이 쿠웨이트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가해야 함. - 서비스의 모든 분야 및 하위 분야에서의 상업적 주재는 쿠웨이트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함.	- 외국인은 「2000 년 법률 제 20 호」에 따라 쿠웨이트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소유하도록 허용됨. 외국인은 쿠웨이트 거주자여야 함. - 국가 서비스 공급자 및 그들의 서비스는 산업용 토지, 용이한 금융 대출, 또는 무료 혹은 절감된 비용으로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서 쿠웨이트 전시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시회 조직, 마케팅 센터 설립(쿠웨이트 국내 또는 국외) 또는 국가 텔레비전 및 국가 광고 기관에서의 광고 프로그램 가격 할인 부여 및 그 밖의 유사한 유인을 포함하는 시장조사 및 마케팅 프로그램과 같은 일종의 유인 및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음.	
	4) 다음 범주의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 i- 상용 방문자 ii- 기업 내 전근자 iii- 계약서비스 공급자 iv- 독립 전문가, 그리고 v- 설치사 및 정비사 외국 자연인이 자영업자로 주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시장접근 열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카: 주택 및 사회 프로그램과 무료 보건 서비스의 일부 측면은 쿠웨이트 및 카타르 시민으로 한정됨.	
	i- 상용 방문자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 또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사업상 회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을 포함한 사업상 접촉 또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한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체류하는 자연인: 아: 이 범주의 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는 12 개월의 기간 내 90 일을 초과하지 않음. 바: 이 범주의 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을 초과하지 않음. 사: 입국 및 체류는 복수 입국을 포함하여 18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임. 오: 오만에 기반을 두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직접 판매를 위해서가 아닌) 사업상 협상을 위하여 또는 오만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하여 오만을 방문하는 자연인. 이 범주의 인에 대한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의 기간임. 카: 상용 방문자에 대한 입국 및 체류는 최초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임. 카타르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상 회의, 사업상 협상, 상업적 주재 설립을 위한 준비 및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타르에 체류하고,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인 상용 방문자. 쿠: 입국 및 체류는 1 개월의 기간으로, 최대 12 개월의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기업 내 전근자 아: 아랍에미리트 입국 신청일 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 밖의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 법인의 아랍에미리트 내 지점 또는 계열사로 전근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입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할 것임: (i)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수는 각 서비스 공급자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총수의 5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ii) 입국은 3 년의 기간으로, 추가적인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iii) 아랍에미리트 내 체류는 아랍에미리트 노동법 및 이민법을 조건으로 할 것임. 바: 바레인 입국 신청일 전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바레인 밖의 법인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그 법인의 바레인 내 지점 또는 계열사로 전근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입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할 것임: (i) 피고용인이 10 명 이상인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및 등록된 지점은 전체 인력의 최소 15 퍼센트 및 최대 50 퍼센트의 바레인 직원을 고용해야 함. 정확한 비율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분야, 그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바레인 직원의 이용가능성, 회사 설립일(사업 연수) 및 그 사업이 피고용인 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증에 달려 있음.		아: - 기업 내 전근자 배우자의 일할 권리는 아랍에미리트 노동법에 따라 허용됨. - 투명성: 노동, 거주 및 취업 허가 법에 관한 모든 규율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피고용인이 10 명 미만인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및 등록된 지점은 최소 1 명의 바레인 직원을 고용해야 함. 그러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2 년의 기간으로, 유사한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사: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신청일 전 최소 3 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있으며 법인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계열사로 전근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그러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는 다음을 조건으로 함: (i) 그들의 수는 각 서비스 공급자 전체 인력의 2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그러나 최소 3 명은 허용될 것임.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자는 다음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각 서비스 공급자의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의 수는 전체 인력의 15 퍼센트까지로 제한되고 각 서비스 공급자의 그 밖의 외국인 피고용인(즉,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 제외)의 수는 전체 인력의 10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며,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함. 그러나 최소 2 명의 기업 내 전근자는 15 퍼센트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허용될 것임. (ii) 입국 및 체류는 2 년의 기간으로, 유사한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iii) 회사의 특정 직위는 모든 범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을 위하여 유보될 수 있음. 이러한 직위는 채용 및 인사, 접수원, 출납원, 민간 경비원 및 정부관계 거래에 따른 업무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 법인의 외국인 피고용인은 서비스 공급자의 인력 총수의 2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그러한 자연인의 입국은 2 년의 기간으로, 추가 2 년으로 최대 4 년까지 갱신이 가능함. 카: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려는 자연인: - 관리자 및 임원: 입국 및 카타르 체류는 최초 3 년의 기간으로, 최초 3 년의 기간 이후에도 매년 갱신이 가능함. - 전문가란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함.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임. - 다른 쪽 당사국의 사업체에 고용된 자연인인 숙련된 기술자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 및 체류할 수 있음. 쿠: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숙련된 기술자에 대하여, 1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당사국의 법인에 고용되었으며 아래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입국하려는 자연인. 그러한 관리자, 임원, 전문가 및 숙련된 기술자의 입국 및 체류는 3 년의 기간으로, 갱신을 신청할 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있음.		
	정의: <u>관리자</u>: 주로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나 하부 조직을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또는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승진 또는 휴직 승인과 같은 것을 말함)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음. <u>임원</u>: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고,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u>전문가</u>: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을 보유하고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iii- 계약서비스 공급자 바: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피고용인, 즉 바레인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의 주재를 요구하는 서비스 계약을 바레인에서 취득한 법인의 피고용인. 그러한 인의 입국 및 체류는 18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임. 사: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피고용인, 즉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않으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의 주재를 요구하는 서비스 계약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법인의 피고용인. 그러한 인의 입국 및 체류는 18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함. 그러한 인의 입국은 다음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됨. - 법률 서비스(CPC 861 의 일부) - 건축 서비스(CPC 8671) -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4) -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CPC 8675)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 번역 서비스(CPC 87905) - 환경 서비스(모든 하위 분야) (CPC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4010 + 94020 + 9403 + 9404 + 9405 + 9406 + 9409) - 광업 부수 서비스(CPC 883 + 5115) -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0) -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0) -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CPC 633 + 8861-8866) -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1 + 8622) -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CPC 9312) -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00)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1-845 + 849)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1-518) - 움라(Umra) 및 하지(Hajj)를 제외한 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 - 케이터링 서비스를 포함한 레스토랑 서비스(주점, 나이트클럽 등 제외) (CPC 6421 + 6422 + 6423)		
	카, 쿠: 약속 안함. 오: 오만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오만 밖의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오만에서 실질적인 영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그 오만 밖의 기업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대신하여 전문직으로서 오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이 범주의 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의 기간임. 아: “아랍에미리트의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은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노동 및 이민 법과 규정 및 경제적수요심사 요건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간으로 추가 갱신 가능한 90 일 비자를 발급할 권한이 있음. 이 비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운영되는 민간 또는 공공 회사 또는 기업과 관련된 일시 임무로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하는 신청인이 그 회사 또는 기업의 권한 있는 직원 중 한 명 또는 공식 기관에 의하여 후원 받고 다음 직종의 구성원임을 조건으로 그 신청인에게 발급됨: (i) 사업가 (ii) 회사의 이사, 대표, 판매 관리자 및 감사인 (iii)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무역 활동과 관련된 임무를 위임받은 회사 및 상업적 기업의 대표 (iv)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및 자격을 갖춘 기술자 (v) 위 전문직의 아내 및 자녀”		
	iv- 독립 전문가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법인과의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서 동일한 분야에서 3 년의 경력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있으며 필요한 학력과 전문 자격을 보유하는 자연인. 그들의 입국 및 체류는 180 일의 기간으로, 갱신 가능할 수 있음. 그러한 인의 입국은 다음에 대해서만 허용됨.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C 841-845 + 849)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512, 513, 516 + 517) -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1 + 8622) - 세무 서비스(CPC 87905) - 건축 서비스(CPC 8671) - 조종사 및 승무원 - 법률 서비스(CPC 861 의 일부) -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CPC 9312) -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00) -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0) -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그 밖의 교육 서비스[태국 요리 및 태국어(CPC 9290 의 일부)에 한정]에 대하여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의 기간으로, 유사한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할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v- 설치사 및 정비사 바,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사: 설치 또는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 서비스의 공급은 양측 모두 법인인 기계 또는 장비의 제작자와 그 기계 또는 장비의 소유자 사이의 계약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바: 일시 입국 및 체류는 18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허용됨. 사: 일시 입국 및 체류는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허용되며 갱신이 가능할 것임.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CPC 861) 아, 사, 카: 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CPC 861의 일부) 바: 외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CPC 861의 일부) 오: 본국법, 제 3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에 한정(CPC 861의 일부)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5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바: (i) 바레인에 거주하는 비(非)바레인 및 비(非)걸프협력회의 변호사는 바레인에서 법률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바레인 영역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ii)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의 법률자문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그 관할권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바레인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때 바레인 외의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바레인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비(非)아랍에미리트 변호사는 아랍에미리트 법원에서 변론하거나 공적 기관에서 대리하거나 공중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사: 비(非)사우디아라비아 변호사는 사건을 변론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두할 수 없음.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변호사는 카타르에 거주하고 카타르에서 법률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비(非)카타르 변호사는 사건을 변론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두할 수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최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변호사는 카타르에 거주하고 카타르에서 법률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비(非) 카타르 변호사는 사건을 변론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두할 수 없음. 쿠: 약속 안함. 4)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1 & 8622)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부터 10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바: 국제 전문성에 특화된 외국 감사 기업의 상업적 주재는 다음 조건에 따라 지점 사업소를 통할 것임. (i) 감사 기업은 본국 관할권에서 유효한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자격을 보유해야 함. (ii) 감사 기업은 15 년 이상 감사를 행하였어야 함. (iii) 지점 관리 책임자 또는 서명권자는 실무 감사인으로 등록되고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함. 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상업적 주재는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십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c. 세무 서비스(CPC 8630) 아, 카: 다음 하위 분야에 한정: - 기업 세무 계획 및 자문(CPC 86301) - 기업 세무 준비 및 검토 서비스(CPC 86302)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카: 제한 없음. 아, 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한됨. 바: 세무 서비스는 바레인에 등록된 감사 기업에 의하여 제공됨. (i) 감사 기업이 회사인 경우, 전문적이고 특화된 파트너십의 형태임. (ii) 면허를 받은 외국 감사 기업의 경우, 각 감사 기업은 바레인 파트너(급여를 받는 파트너인지 실제 파트너인지 관계없이)의 책임 하에 바레인에 운영 사무소를 둠. 오: 외국인 지분은 최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카: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d. 건축 서비스(CPC 8671)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3) 바, 쿠: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4)	아, 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도시계획 서비스(CPC 86741)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 참여가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CPC 9312)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카,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쿠: 약속 안함. 바, 카: 제한 없음. 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에서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바,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쿠: 약속 안함.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카,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아,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타르 거주가 요구됨. 바,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의료 서비스(CPC 93201) 카: CPC 932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바, 카: 제한 없음. 아, 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쿠: 약속 안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1)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카타르 거주가 요구됨. 쿠: 약속 안함.	
j.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CPC 93191) 바에 한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e. 기타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기계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CPC 849)	1)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 CPC 841-845 에 따른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 CPC 849 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7 년 내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바, 사, 쿠: 제한 없음. 카: CPC 841, 842, 843, 844 에 대하여 제한 없음. CPC 845, 849 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u>연구개발 서비스</u> a.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CPC 851) b.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CPC 852)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부동산 서비스</u> 카에 한정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CPC 821) b.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CPC 8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음. 리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사 및 개인에게 51 퍼센트 이상의 카타르 파트너십이 요구됨. 외국인은 칼리즈섬(Khaleej Island), 웨스트베이 라군/호수(West Bay Lagoon/Lake) 및 알 코르(Al-Khor) 리조트에서만 파트너십 없이 99 년까지 토지 리스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99 년까지 토지 리스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및 리스 서비스</u> 아, 바: 차량 관련 임대 및 리스 서비스 제외 a. 선박 관련(CPC 83103)	1) 아, 사, 카: 제한 없음.	1) 아, 사, 카: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 제외 b. 항공기 임대(CPC 83104) 사, 카에 한정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CPC 83101 + 83102 + 83105) 바: CPC 83105 에 한정, 카 제외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 83109) 카: CPC 83106 + 83109 에 한정 e.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사에 한정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아, 사,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3)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 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사, 쿠: 제한 없음. 4) 아, 바, 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카, 쿠: 약속 안함.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아, 사,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3) 아, 바, 사, 카, 쿠: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4) 아, 바, 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카, 쿠: 약속 안함.	
a. 선박 관련(CPC 83103) 오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CPC 871)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 광고 공간 또는 시간의 판매 또는 리스 서비스에 한정(CPC 8711)	2) 제한 없음. 3) 아,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CPC 864) 바, 사, 오, 카: 시장조사 서비스(CPC 86401)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10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650) 카: CPC 865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CPC 866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 바: 농업 부수 서비스(CPC	1)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1)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8110)에 한정	2)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아,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카: 약속 안함.	2)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4)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카: 약속 안함.	
g. 어업 부수 서비스(CPC 882)	1)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2)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3)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쿠: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1)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2)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3)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CPC 883+5115) 바, 사, 오에 한정 바: CPC 883 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885, 다만, 88442 제외)	1) 아, 바, 카: 약속 안함. 사, 오, 쿠: 제한 없음. 2) 아, 사, 오, 쿠: 제한 없음. 바, 카: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10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바, 카: 약속 안함. 사, 쿠: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아, 사,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1) 아, 바, 카: 약속 안함. 사, 오, 쿠: 제한 없음. 2) 아, 사, 오, 쿠: 제한 없음. 바, 카: 약속 안함. 3) 아, 사, 오, 쿠: 제한 없음. 바, 카: 약속 안함. 4) 아, 사,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j.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CPC 887) 사, 오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CPC 8675)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5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CPC 633+ 8861-8866)	1)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2)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카: 약속 안함. 바, 사, 쿠: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5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1)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2)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CPC 874) 사 제외	1) 아, 바, 카: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2) 아, 바, 카: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1) 아, 바, 카: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2) 바, 카: 약속 안함. 아, 오, 쿠: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아,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부터 10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쿠: 제한 없음. 4) 아,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3)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4) 아,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CPC 8750) 카: CPC 875	1)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2)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3) 오: 약속 안함. 바, 사, 카, 쿠: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5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3)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q. 포장 서비스(CPC 8760) 카: CPC 876	1) 바,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2) 바,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이 협정 발효부터 5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바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약속 안함.	1) 바,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2) 바,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바, 오,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4) 바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약속 안함.	
r. 인쇄 및 출판 서비스(CPC 88442)	1)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제한 없음. 2)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제한 없음. 3)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1)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제한 없음. 2)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제한 없음. 3)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 쿠: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사, 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t. 기타(CPC 879) 오: - 전문디자인 서비스(CPC 87907) 바: - 번역 서비스(CPC 87905) - 전문디자인 서비스(CPC 87907) 사: 기타(예를 들어, 홍보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카, 쿠: 약속 안함.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서비스) - 번역 서비스(CPC 87905) - 전문디자인 서비스(CPC 87907) 쿠: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87905)에 한정	바, 사: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퍼센트까지 허용됨. - CPC 87905 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 허용됨. 협정 발효부터 5 년 내 100 퍼센트 외국인 지분이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아,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카, 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4) 아,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카, 쿠: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A. 우편 서비스(CPC 7511) 바, 오, 카, 쿠 제외 추가적 약속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사 제외.			사: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CPC 7511**)가 민영화되는 때에 그 서비스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개방될 것임.
서류, 통상 우편물 및 소포의 취급으로 한정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쿠리어 서비스(CPC 7512)</u> 바: 복합 쿠리어 서비스에 한정(목적지가 외국인 경우에 한정, 서신 제외) 카: 육상 기반 국제 쿠리어 서비스에 한정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카: 외국인 공급자의 수는 1995 년 3 월 수준(6 개사)으로 동결됨.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사: - 외국 특급배달 운영자는 특급배달 활동에 대하여 우체국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을 것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C. 통신 서비스 제 1 부: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 취해진 약속은 다음의 WTO 문서에서 제공된 양허 원칙에 기초함: 기본 통신 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표 작성을 위한 노트(S/GBT/W/2/Rev.1) 및 전파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S/GBT/W/3). - 기본 통신에 대한 이 양허표는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아: 기본 통신에 대한 이 양허표는 전파 면허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상이한 사안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통신 및 통신디지털정부규제청(TDRA) 규제 체계에 따라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⁴ 오: CPC 코드에 대한 언급은 오만에 적용되지 않음. 쿠: 통신정보기술규제청(CITRA)의 설립을 규율하는 「2014년 법률 제37호」 및 관련 수정 및 조례에 대한 고려가 의무적임. 기본 통신에 대한 이 양허표는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무선 전송 서비스는 공중에 의하여 직접 수신되도록 무선 통신을 전송하거나, 위성 또는 지상을 불문한 송신국을 통하여,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선 통신을 전송하는 것임. 이 서비스는 소리 또는 텔레비전(시각적) 전송 또는 다른 종류의 전송을 포함할 수 있음			
	3) 아: 아랍에미리트에 설치된 모든 네트워크는 아랍에미리트에 등록되고 외국인 지분이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된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		
a. 음성전화 서비스(CPC 7521) 바: 다음 하위 분야 포함: - 공중전화 서비스(CPC 75211) - 공중 장거리 전화 서비스(CPC 75212)	1) 아,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이러한	

⁴ “방송 서비스”는 소리 전송, 텔레비전 전송 또는 그 밖의 유형의 전송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통신 서비스로 정의된다. 아랍에미리트의 「통신법」에서 방송은 기본 통신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동전화 서비스(CPC 75213)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다음 요건이 적용됨: 국적 및 거주 조건, 기술 이전, 언어 조건, 토지 또는 재산 소유권 금지, 자격요건 차별, 면허 기간, 등록 및 교육.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1) 아,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이러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1) 아,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텔렉스 서비스(CPC 7523**) 쿠 제외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전신 서비스(CPC 7522**) 쿠 제외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1** + 7529**) 쿠 제외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전용회선 서비스(CPC 7522** + 7523**) 쿠 제외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전자메일(CPC 7523**)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쿠: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쿠: 제한 없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음성메일(CPC 7523**)	1) 아,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바, 오: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1.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CPC 7523**)	1) 아: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해당 없음)	1) 아,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 아, 바: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바: 통신 서비스 제공은 바레인에서의 면허 획득을 조건으로 하며, 이는 바레인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국경 간 공급은 바레인에 있는 통신 면허 소지자와의 상용계약을 통하여 가능함. 오: 제한 없음. 2) 아: 거주자는 한국 및 아랍에미리트의 규제 체계에 따라 한국 영역에서 통신 서비스의 구매가 허용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복점. TDRA 는 복점에 추가되는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되며 49 퍼센트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조건으로 함. 바: 상업적 주재는 다음을 통할 것임. (i) 지점 사업소, 또는 (ii) 100 퍼센트까지의 외국인 지분으로 바레인에 설립된 회사.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쿠: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2)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쿠: CITRA 는 기존 공급자 외에 추가 공급자의 타당성을 고려할 것임. 하위 분야 a (음성전화 서비스)의 내국민 대우 열에 있는 공급형태 (3)의 요건이 이 하위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기타: 오에 한정 ● 이동 및 개인 통신 서비스 및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시스템 ● 다음 서비스 포함: ○ 이동/셀룰러 서비스 ○ 아날로그/디지털 서비스 ○ 개인 통신 서비스 ○ 무선 데이터 서비스 ● 무선폭출 서비스 ● 인터넷 ● 공중전화 및 전화 카드 서비스	3)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로 제한됨. 완전 외국인 소유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통신 서비스 제 2 부: 사 수평적 양허: 이 하위 분야에 대한 일반 조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하여 취해진 약속은 다음의 WTO 문서에서 제공된 양허 원칙에 기초함: 기본통신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표 작성을 위한 주해(S/GBT/W/2/Rev.1) 및 전파 이용가능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S/GBT/W/3).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약속은 다음의 일반 조건에 따름: - 상업적 주재 기반(공급형태 3)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급되는 통신 서비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회사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하며, 그 회사의 외국인지분은 아래에 언급된 비율 수준으로 제한됨. - 기본통신에 대한 이 양허표는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⁵ - 국경 간 공급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신정보기술위원회(CITC)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승인된 법적 실체/실체들과의 상용계약을 조건으로 함.			
1. <u>기본 통신 서비스</u> — 공공 유선 - 설비 기반 a. 음성전화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i. 음성메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공 통신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 합자주식회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외국인 지분은 60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는 점 외에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공공 유선 - 비(非) 설비 기반</u> <u>민간 유선 - 설비 기반 또는 비(非) 설비 기반</u> a. 음성전화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i. 음성메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는 점 외에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u>공공 또는 민간 유선 - 설비 기반 또는 비(非) 설비 기반</u> 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는 점 외에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⁵ 방송 서비스는 소리 전송 및 텔레비전 전송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의 직접 수신을 의도하여 전송되는 무선통신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방송국과 송신기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의 일부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전용회선 서비스 - 부가 서비스 h. 전자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o. 무선호출 p. 인터넷 서비스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u>기타</u> 이동전화 서비스 A.1. 공공 이동 - 설비 기반 a. 음성전화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i. 음성메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설비 기반 공공 통신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모바일 음성 서비스는 공공 합자주식회사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 제한 없음. 외국인 지분은 6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A.2. 민간 이동[설비 기반 또는 비(非) 설비 기반] 및 공공 이동 비(非) 설비 기반 a. 음성전화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i. 음성메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되는 점 외에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위성 서비스: - VSAT - GMPCS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성 용량을 사용하도록 CITC 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승인된 법적 실체에 위성 용량 판매.	약속 안함.	약속 안함.	
D. 시청각 서비스 제 1 부: 사			
1.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아래의 언급은 비디오테이프 및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비디오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2. 이 약속의 어떠한 것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시청각 서비스의 전시 또는 전송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a. 영화 및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배급 서비스(CPC 96113) 공공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다른 산업에 판매 또는 임대, 또는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 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 2 부: 바, 오, 카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 서비스(CPC 9611) 바: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 명확성의 목적을 위하여, 배급은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 판매/임대를 포함하지 않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오,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⁶ 명확성 목적을 위하여, 이 약속은 배급, 즉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 라이선싱에만 관련되며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의 텔레비전 방송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영화관 소유 및 운영(CPC 9612) 카 제외 바: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오, 카: 외국인 지분은 51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부: 아			
D. <u>시청각 서비스(방송 제외)</u>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	1)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되고,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미디어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권한 있는 아랍에미리트 당국으로부터 면허 및 승인 획득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u>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u>			
A. <u>빌딩관련 일반건설업(CPC 512)</u>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쿠: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쿠: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i)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억 5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바: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토목관련 일반건설업(CPC 513)</u>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쿨: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쿨: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바: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아: (i)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 억 5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 억 5 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만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할 외국 회사의 자격에 대한 조사는 관련 건설회사 및 모건설회사의 평판, 자원 및 자산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설치 및 조립 작업</u> (CPC 514 + 516)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쿠: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쿠: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바: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아: (i)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 억 5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 억 5 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만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할 외국 회사의 자격에 대한 조사는 관련 건설회사 및 모건설회사의 평판, 자원 및 자산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u>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쿨: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바: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1) 아, 카: 약속 안함*. 바, 사, 쿨: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 (i)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 억 5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 억 5 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만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할 외국 회사의 자격에 대한 조사는 관련 건설회사 및 모건설회사의 평판, 자원 및 자산을 고려할 것임.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타: 쿠 제외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CPC 511) 전문건설공사(CPC 515) 운영자를 동반하는 빌딩 또는 토목작업의 건설 또는 철거 장비 관련 임대 서비스(CPC 518) 카: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CPC 511)	1) 아: 약속 안함*. 바, 사: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 제한 없음. 아: (i)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 허용됨. (ii) 공항, 고속도로 및 스포츠 시설과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미화 4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까지 허용됨.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ii)에 따라	1) 아: 약속 안함*. 바, 사: 상담 및 자문 관련 서비스 외에 약속 안함*. 오,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설립된 외국 회사는 미화 4억 5천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임. 바: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 및 “전문건설공사”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운영자를 동반하는 빌딩 또는 토목작업의 건설 또는 철거 장비 관련 임대 서비스”에 대하여: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3 천만 SDR 또는 그 밖의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51 퍼센트 이상의 카타르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점 외에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 서비스			
A. 위탁 중개인 서비스(CPC 621) 아, 사, 카 제외 바: CPC 62113 제외	1)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쿠: 제한 없음. 바: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2) 바, 오: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허용됨: (i) 기업은 3 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음. (ii) 모회사의 자본금이 2 천만 바레인 디나르임, 그리고 (iii) 첫해 내에 바레인에 2 백만 바레인 디나르가 투자됨.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 서비스(CPC 622) 바: CPC 62271 제외 사: CPC 6111, 6113, 6121 포함 사: 이 양허표의 목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도매 서비스는 제품 및 서비스를 도매로 판매하는 데 민간 국민인 개인을 계약 기반으로 관여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 노력과 그 밖의 계약된 민간 국민인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판매 지원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쿠: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쿠: 약속 안함. 3) 쿠: 제한 없음. 바: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허용됨: (i) 기업은 3 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음. (ii) 모회사의 자본금이 2 천만 바레인 디나르임, 그리고 (iii) 첫해 내에 바레인에 2 백만 바레인 디나르가 투자됨. 사: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최소 외국인 투자는 각 서비스 공급자 당 2 천만 사우디 리알임, - 매장의 최소 규모가 규정될 수 있음.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쿠: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쿠: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피고용인의 최소 15 퍼센트가 훈련되어야 함. -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아,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서비스 - 식품 소매 서비스(CPC 631) - 비식품 소매 서비스 (CPC 632) 바, 쿠: CPC 63297 제외 사: 이 양허표의 목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매 서비스는 소매점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계약 기반의 민간 국민인 개인을 관여시키는 것이 포함되며, 판매 노력 및 다른 계약된 민간 국민인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판매 지원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3) 쿠, 카: 제한 없음. 바: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허용됨: (i) 기업은 3 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음. (ii) 모회사의 자본금이 2 천만 바레인 디나르임, 그리고 (iii) 첫해 내에 바레인에 2 백만 바레인 디나르가 투자됨. 사: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최소 외국인 투자는 각 서비스 공급자 당 2 천만 사우디 리알임, - 매장의 최소 규모가 규정될 수 있음.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피고용인의 최소 15 퍼센트가 훈련되어야 함. -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아: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자동차 판매 (CPC 6111) -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의 판매 (CPC 6113) 쿠 제외 -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과 관련 부품 및 부속품 판매 (CPC 6121) 사: 이 양허표의 목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매 서비스는 소매점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계약 기반의 민간 국민인 개인을 관여시키는 것이 포함되며, 판매 노력 및 다른 계약된 민간 국민인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판매 지원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3) 카: 약속 안함. 쿠: 제한 없음. 바: 바레인 파트너가 요구되며, 그 지분율은 주주에 의하여 결정됨. 완전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허용됨: (i) 기업은 3 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음. (ii) 모회사의 자본금이 2 천만 바레인 디나르임, 그리고 (iii) 첫해 내에 바레인에 2 백만 바레인 디나르가 투자됨. 사: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최소 외국인 투자는 각 서비스 공급자 당 2 천만 사우디 리알임, - 매장의 최소 규모가 규정될 수 있음. -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피고용인의 최소 15 퍼센트가 훈련되어야 함.	1)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쿠, 카: 약속 안함.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아: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자동차 연료 소매 판매(CPC 613) 사에 한정 이 양허표의 목적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매 서비스는 소매점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계약 기반의 민간 국민인 개인을 관여시키는 것이 포함되며, 판매 노력 및 다른 계약된 민간 국민인 개인에 의한 추가적인 판매로 이어지는 판매 지원 서비스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최소 외국인 투자는 각 서비스 공급자 당 2 천만 사우디 리알임, - 매장의 최소 규모가 규정될 수 있음. - 매년 사우디아라비아 피고용인의 최소 15 퍼센트가 훈련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프랜차이즈</u> (CPC 8929) 쿠 제외	1) 바, 오: 제한 없음. 아, 사,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바: 제한 없음.	1) 바, 오: 제한 없음. 아, 사, 카: 약속 안함. 2) 바, 사, 오: 제한 없음. 아,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사, 오: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 외국인은 자국에서 프랜차이징을 수행하도록 승인받거나, 중단 없이 5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승인된 회사의 파트너여야 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아, 카: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4) 아, 바,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4) 아, 바,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5. <u>교육 서비스</u>			
A. <u>초등 교육 서비스</u> (CPC 921) 사에 한정 B. <u>중등 교육 서비스</u> (CPC 922) C. <u>고등 교육 서비스</u> (CPC 923) 바 제외 D. <u>성인 교육</u> (CPC 924) E. <u>그 밖의 교육 서비스</u> (CPC 929) 사: 기술 교육 한정 (CPC 929 의 일부) 바 제외	1) 아, 사, 오, 카: 제한 없음. 바, 쿠: 약속 안함. 2) 바, 아, 사, 오, 카: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쿠: 약속 안함. 아: (i) 제한 없음. (ii) 한국의 자연인은 교육기관을 설립 및 지휘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이는 또한 학교시설의 적합성 요건 및 양질의 교육 수준 보장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1) 아, 사, 오, 카: 제한 없음. 바, 쿠: 약속 안함. 2) 아, 사, 오, 카: 제한 없음. 바, 쿠: 약속 안함. 3) 아, 바, 사, 오, 카: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 카: 공교육 제외	바, 사, 카: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아,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쿠: 약속 안함.	4) 아,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쿠: 약속 안함.	
6. <u>환경 서비스</u>			
A. <u>폐수 서비스 (CPC 9401)</u> 바: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평가 및 상담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오염 저감 서비스, 분석 및 샘플링 수집 서비스에 한정 사, 오: CPC 94010 에 한정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 참여는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 참여는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바, 사, 쿠, 카: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2)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u>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u> 사: CPC 94020	1)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1)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 참여는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u>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u>	1)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 참여는 70 퍼센트까지	1)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0) 사: CPC 9404	1) 아, 사, 쿠,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아, 사, 쿠,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염된 토양 및 수질의 처리와 개선 (CPC94060 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외국인 지분참여는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카: 제한 없음. 4)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4) 아,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0)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아,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0)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오, 아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아: 외국인 지분 참여는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0) - 바: 점검, 통제 및 피해 평가에 한정 (CPC 9409) - 사: 환경 영향 평가 포함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바, 사, 카: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 참여는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이 협정 발효일부터 7 년 후,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될 것임.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1) 아, 사, 오: 제한 없음.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카, 쿠: 약속 안함. 2) 카,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쿠: 약속 안함. 3)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쿠: 약속 안함. 4)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 서비스			
수평적 양허:			
아: 상업적 주재는 다음 활동을 위하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에서 외국인 지분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은행 서비스(투자 은행, 기업 은행 및 민간 은행), 자본 시장(지분, 채무증서, 파생상품 및 상품의 거래), 자산 관리와 자금 등록, 보험과 재보험, 이슬람 금융 그리고 사업 절차 운영과 부수 서비스 바: 일반 조건: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모든 면허 및 건전성 요건과 특정 유형의 금융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형태와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바레인의 모든 국내법의 준수를 조건으로 함. - 바레인 내 서비스 소비자가 해외에서 서비스를 소비/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이 부재한 경우, 이는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가 바레인 영역에서 구매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의미하지 않음.			
제 1 부: 아, 바, 오, 카, 쿠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수평적 양허:			
아: 일반 조건: - 아랍에미리트 내 서비스 소비자가 한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능력에 대한 어떠한 제한의 부재도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가 아랍에미리트 영역에서 구매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의미하지 않음. - 상업적 주재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법에 포함된 외국 회사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름. - GATS의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 2 항가호의 맥락 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및 영업 활동을 위한 승인과 같은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음. 카: 일반 조건: - GATS의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 2 항가호의 맥락 내에서, 카타르는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및 영업 활동을 위한 승인과 같은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음.			
(i)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a) 생명보험 서비스	1) 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아, 바: 생명 및 건강 보험 서비스	오: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아:	바, 카: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 CPC 81211 및 CPC 81212	쿠: 약속 안함.	쿠: 개인 보험 증권은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연금기금운용 제외 쿠: 연금, 장애소득보상, 상해 및 건강 보험 서비스만 포함	2) 아, 카: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 투명한 경제적 수요 심사는 새로운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 및 기존 외국 보험 회사의 새로운 지점의 상업적 주재에 적용됨. 이러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보험서비스 공급, 현지 수요 증가 및 국제 표준과의 합치와 같은 기준에 기초함. - 외국인 지분은 아랍에미리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 자본의 25 퍼센트까지 허용됨. 바: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지점도 허용됨. 카: 약속 안함. 쿠: 시장 접근은 다음의 수단만을 통합: - 쿠웨이트 대리인의 임명 - 쿠웨이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및 그 쿠웨이트 파트너의 주식이 자본금의 최소 60 퍼센트.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아, 카: 약속 안함. 바, 오,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쿠: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b) 손해보험 서비스	1) 아: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	1) 아: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상업적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 CPC 8129 상해보험 서비스 포함 쿠: 다음만을 포함: - 장애 소득 보상 - 상해 및 건강 보험과 신원보증 계약 - 이행 보증 또는 유사한 보증 계약 - 해상 및 항공 보험 서비스(MAT).	주재가 요구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카: 카타르에 위치한 자산은 오직 카타르에 상업적 주재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만 부보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쿠: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바, 오, 카, 쿠: 제한 없음. 아: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아: - 투명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 및 기존 외국 보험 회사의 새로운 지점의 상업적 주재에 적용됨. 이러한 경제적 수요심사는 새로운 보험서비스 공급, 현지 수요 증가 및 국제 표준과의 합치와 같은 기준에 기초함. - 아랍에미리트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와의 합작투자 설립은 허용되지 않음. 바: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지점도 허용됨.	주재가 요구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오,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바, 오, 카, 쿠: 제한 없음. 아: 해상 및 항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해상 및 항공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카: 지점 운영을 통해서만 또는 합작 투자로서 외국인 지분이 25 퍼센트까지로 제한된 법인 설립에 의해서만 가능함. 쿠: 시장 접근은 다음의 수단만을 포함: • 쿠웨이트 대리인의 임명 • 쿠웨이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및 그 쿠웨이트 파트너의 주식이 자본금의 최소 60 퍼센트.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아: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보험 서비스 (CPC 81299)	1) 아, 바, 오, 쿠: 제한 없음. 카: 카타르에 위치한 자산은 오직 카타르에 상업적 주재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만 부보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지점도 허용됨. 카: 지점 운영을 통해서만 또는 합작 투자로서 외국인 지분이 25 퍼센트까지로 제한된 법인 설립에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의해서만 가능함 쿠: 시장 접근은 다음의 수단만을 포함: • 쿠웨이트 대리인의 임명 • 쿠웨이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및 그 쿠웨이트 파트너의 주식이 자본금의 최소 60 퍼센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i) 중개 및 대리 서비스와 같은 보험 중개 아: 직접 보험을 취급하는 중개인에 한정⁷ (CPC 8140**)	1) 아: 해상 및 항공 보험과 재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보험과 재보험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바, 카, 쿠: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바, 쿠, 오: 제한 없음. 아: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카: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쿠: 시장 접근은 다음의 수단만을 포함:	1)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카, 쿠: 약속 안함. 오: 제한 없음. 2) 바, 쿠, 오: 제한 없음. 아: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오, 쿠: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보험”이란 다음을 말한다: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서비스(CPC 81211 및 CPC 81212)(연금기금운용 제외) 및 손해보험 서비스(CPC 8129)(상해보험 포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쿠웨이트 대리인의 임명 • 쿠웨이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및 그 쿠웨이트 파트너의 주식이 자본금의 최소 60 퍼센트. • 손해사정인 및 공동해손사정인은 지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오: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지점도 허용됨.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iv)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서비스 쿠: 계리, 손해사정인, 공동해손사정인 및 상담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 부수 서비스에 한정 아 제외(아의 약속은 아래에 기재됨)	1) 오: 제한 없음. 카: 카타르에 위치한 자산은 오직 카타르에 상업적 주재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만 부보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바,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바: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지점도 허용됨. 카: 지점 운영을 통해서만 또는 합작 투자로서 외국인 지분이 25 퍼센트까지로 제한된 법인 설립에 의해서만 가능함.	1) 오, 카: 제한 없음. 바,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시장 접근은 다음의 수단만을 포함: • 쿠웨이트 대리인의 임명 • 쿠웨이트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및 그 쿠웨이트 파트너의株式이 자본금의 최소 60 퍼센트. • 손해사정인 및 공동해손사정인은 지정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보험 상담(CPC 81402) 아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보험계리 서비스(CPC 81404) 아에 한정	1)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등록 요건은 외국인 공급자가 자국 영역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자본 참여는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손해 사정, 위험 평가 및 보험금 청산 서비스 (CPC 81403)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에 한정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			
수평적 양허:	3) 오: (i)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그러나 외국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완전 외국인 소유인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태로의 상업적 주재는 허용됨. (ii) (a) 개인 및 그의 관계 당사자, (b) 법인 및 그 관계 당사자, 또는 (c) 합자주식회사 또는 지주 회사 및 그 관계 당사자가 현지에서 설립된 은행(완전 외국인 소유인 자회사는 제외)에 보유한 총 보유액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v)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오: 제한 없음.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제한 없음. 카, 쿠: 시장접근 열에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상사법」의 규정이 「통화, 쿠웨이트 중앙은행, 은행업의 조직 및 그 개정에 관한 1968 년 법률 제 32 호」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상사법」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은행업은 공개 청약을 통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합자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쿠웨이트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공동 설립된 은행 및 쿠웨이트에서 운영되도록 면허를 받은 외국 은행 지점은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이전 단락에 기재된 제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음. - 외국 은행은 쿠웨이트 중앙은행 이사회가 관련하여 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른 그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쿠웨이트에 1 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음. 그 외국 은행은 쿠웨이트에서 본점으로 여기는 지점을 특정해야 함. 그 동일한 외국 은행의 쿠웨이트에 기반한 모든 지점은 「통화, 쿠웨이트 중앙은행, 은행업의 조직 및 그 개정에 관한 1968 년 법률 제 32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은행으로 의제됨. 쿠웨이트 내 외국 은행의 지점에 할당된 자금은 1,500 만 쿠웨이트 디나르 이상이어야 하며, 쿠웨이트 중앙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음. 쿠웨이트 중앙은행 이사회는 쿠웨이트에서 운영 중인 외국 은행들의 지점들을 쿠웨이트 중앙은행이 이와 관련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은행의 활동에 의하여 결정된 자본 비율 요건 규제 또는 그 밖의 비율 규제로부터 면제할 수 있음. 쿠웨이트 중앙은행 이사회는 쿠웨이트 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 은행의 지점 운영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칙 및 규정을 정함 -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은행 설립을 위한 신청은 중앙은행 이사회가 필요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 -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이사회는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특히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무소가 대표하는 외국 은행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도록,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 개설을 승인할 수 있음. 다만, 그 대표사무소의 활동은 쿠웨이트 중앙은행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쿠웨이트 내 외국 은행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한됨. 그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는 어떠한 은행업 또는 금융업도 수행할 수 없음. - 비(非)쿠웨이트 투자자는 쿠웨이트 증권거래소(KSE)에서 은행 주식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됨. 국내 은행 주식의 5 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됨. 이는 상호 소유 또는 통합 경영에 의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수단이나 공동의 이익으로 연결된 모든 개인 투자자 또는 투자자 집단에 적용되며, 이들은 단일한 투자자 실체로 간주될 것임. 비(非)쿠웨이트 투자자의 소유는 쿠웨이트 중앙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각료회의의 승인을 획득한 후, 개별 국내 은행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의 은행 등록부에 등록된 기관 외의 기관은 은행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주소, 출판물 또는 광고에 “은행,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은행업자, 은행 소유주” 라는 용어 또는 그 기관의 성격에 관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그 밖의 표현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중앙은행의 은행 등록부 또는 투자 회사 등록부에 등록된 기관 외의 기관은 제 3 자로부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수령할 수 없음. 「자본시장청의 설립 및 증권 활동 규제에 관한 2010 년 법률 제 7 호」 및 「 2011 년 각료결의 제 38 호」 에 따라 자본시장청(CMA)은 투자 회사 감독을 담당하며, 이러한 회사에 대한 쿠웨이트 중앙 은행의 역할은 이들이 수행한 금융 활동의 감독에 한정됨.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⁸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⁸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위의 공급형태(3) “쿠” 에 기재된 경우 - 은행의 전체 노동력에 대한 그 은행 내 쿠웨이트 국민 노동력의 비율이 64 퍼센트 또는 각료회의에서 정한 비율 중 더 높은 비율 이상이어야 할 것임. 외국 은행 지점은 쿠웨이트에서 운영하도록 면허를 받은 날부터 3 년 내에 해당 비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카: 약속 안함.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오: 제한 없음. 바: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⁹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 금융 리스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⁹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⁰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경우 -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⁰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인이 회사 자본의 지분 100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는 쿠웨이트 회사 설립을 위한 면허가 발행될 수 있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쿠웨이트 또는 외국 자본의 리스 및 투자를 위한 회사 설립에 대한 면허는 발행될 수 있음. 리스 및 투자 회사의 본사는 쿠웨이트에 위치해야 할 것임. 설립자는 쿠웨이트 상공부(MOCI)와 쿠웨이트 중앙은행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되기 위하여 각서 및 정관을 실행함. 4) 바, 오, 아: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바, 오, 아: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i)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오: 제한 없음.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1) 바, 오, 쿠: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¹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하위 분야 (vii)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경우 -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외국인이 회사 자본의 지분 100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는 쿠웨이트 회사 설립을 위한 면허가 발행될 수 있음. 4) 아, 바, 오,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카: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x) 보증 및 약정	1) 바, 오, 쿠: 약속 안함.	1) 바, 오, 쿠: 약속 안함.	

¹¹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²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아, 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쿠: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²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하위 분야 (vii)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A. 단기금융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포함) B. 외환 C.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D.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E. 양도성 증권 F.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바, 오: 제한 없음.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³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하위 분야 (vii)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 바, 오: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쿠: 「자본시장법의 설립 및 증권 활동 규제에 관한 2010년 법률 제7호」에 따라 "증권 활동"으로 여겨져 CMA에 의하여 면허 발급이 요구되는 주간사로서의 모집	1) 바, 오: 약속 안함.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카: 제한 없음.	

¹³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아, 오, 카, 쿠: 제한 없음. 바: 바레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제한 없음.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2) 아, 오, 카, 쿠: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⁴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하위 분야 (vii)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경우. • MOCI 에 의하여 발급되는 면허 또한 요구되는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1)에 기재된 경우.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금중개업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¹⁴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 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⁵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하위 분야 (vii)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¹⁵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i) 자산운용(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그리고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및 운용으로 한정)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약속 안함. 쿠: CMA로부터 면허 획득이 요구되는 집합투자기구의 마케팅은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오,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⁶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자본시장청의 설립 및 증권 활동 규제에 관한 2010 년 법률 제 7 호」에 따라 CMA 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산 운용 면허 및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MOCI 에 의하여 허가된 법적 실체의 설립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 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v)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아 제외	1) 카: 제한 없음. 바: 상호간의 특권을 제공하는 거래소에서 청산될 수 있고 바레인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교차 상장 주식은 제외하고 약속 안함. 오: 약속 안함.	1) 카: 제한 없음. 바, 오: 약속 안함.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⁶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CMA 에 의하여 발급되는 면허를 요구하는 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오: 제한 없음. 바: 바레인 디나르 수표 및 바레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바레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바레인 청산소를 통하여 청산되어야 함.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⁷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오,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⁷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하위 분야 (vii)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v)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1) 아, 오,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바, 오: 제한 없음.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1) 아, 오,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대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⁸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하위 분야 (vii)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vi)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v)호부터 (xv)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오: 금융정보 서비스 및 금융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그 외에는 약속 안함.	1) 아, 카: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오: 금융정보 서비스 및 금융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그 외에는 약속 안함.	

¹⁸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CMA 에 의하여 발급되는 면허를 요구하는 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i)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ii) 은행 지점 운영을 위한 신규 면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ii) 기존 금융 기관의 활동 확장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iv)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오: 제한 없음. 카: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외국 은행 기관의 지점 수(「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점 제외)는 1995년 3월 수준으로 동결됨. (8개 지점), 그리고 (ii) 「카타르 금융 센터에 관한 법 [2005년 법률 제(7)호]」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규정된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 서비스¹⁹를 공급하는 모든 실체(외국 은행 기관 포함)는 각료회의에 의하여 카타르 금융 센터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에 각료회의의 승인,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바, 오, 카: 제한 없음. 쿠: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3)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¹⁹ 이는 다음을 포함하여 카타르에서 제공되도록 허용된 모든 은행 및 금융 서비스(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제외)를 포함한다. (i) 이슬람 은행업 및 전자은행업뿐만 아니라 투자 은행, 기업 은행, 도매 금융 은행이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금융업, 모든 성격의 은행업 및 투자업, (ii) 귀금속, 주식, 채권, 증권의 거래 및 취급,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그 밖의 금융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단기 금융업, 증권 거래업 및 상품 시장업, (iii) 자금 및 자산 운용업, 투자 기금업, 모든 사업 분야의 프로젝트 금융 및 기업 금융 제공, 이슬람 은행업 및 금융업, (iv) 펀드 사무 관리, 펀드 자문 및 모든 종류의 수탁업, (v) 연금 기금업 및 신용회사업, (vi) 증권 중개업 및 그 밖의 모든 금융중개업, (vii) 금융 대리업, 기업 금융 제공업, 그 밖의 금융 자문, 투자 자문 및 모든 종류의 투자 서비스, (viii) 금융 보관 서비스 제공 및 법적 수탁자로서 행위하는 사업.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인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함. 쿠: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CMA에 의하여 발급되는 면허 및 MOCI에 의하여 승인되는 법적 실체의 설립을 요구하는 점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바,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쿠: 하위 분야 (v)호의 시장접근 열에 있는 공급형태(4)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제 2 부: 사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협동조합 보험 서비스에 한정하여 시장 접근이 허용됨)			
a. 보호 및 저축 보험 ²⁰ b. 손해 보험 (일반 보험 및 건강 보험)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d. 보험 중개 (중개 및 대리) e. 보험 부수 서비스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 포함)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d. 중개 및 대리 e. 보험 부수 서비스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 2) 제한 없음. 3) 'a호', 'b호' 및 'c호'의 경우, 상업적	1)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b.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 포함)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 -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c. 재보험 및 재재보험 d. 중개 및 대리 e. 보험 부수 서비스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²⁰ 장수에 대비한 보호를 포함하여, 2004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협동조합 보험회사 관리법 시행 규정」 제 3:1-3 편 제 3 조의 정의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주재는 현지에서 설립된 협동조합 보험 공공 합자주식회사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협동조합 보험 제공자로서 운영하는 국제보험 회사의 직영점의 형태로 허용될 수 있음.²¹ 사우디아라비아 내 공공 합자주식회사에 대한 비(非)사우디아라비아인 지분은 60퍼센트까지 허용됨. ‘d 호’의 경우, 상업적 주재는 현지에서 설립된 합자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허용될 수 있음. 비(非)사우디아라비아인 지분은 60 퍼센트까지 허용됨. ‘e 호’의 경우, 손해사정 서비스 및 위험 평가를 위한 상업적 주재는 현지에서 설립된 합자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허용될 수 있음. 비(非)사우디아라비아인 지분은 60 퍼센트까지 허용됨. 계리 및 상담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는 자연인 또는 법인체로서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보험 제외)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c. 금융 리스 d. 신용, 선불 및 직불카드,	1) ‘l 호’, ‘k 호’ 및 ‘i 호’의 집합 투자 기구를 포함하여 기관에 의하여 기관 고객에게 제공되는,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 투자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i 호’의 연금기금운용과 ‘j 호’의	1)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공적 연금 제도에 보완적인 연금 제도가 사우디 금융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는 공급형태 (2)와 (3)에 한정하여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개방될 것임.

²¹ 추가적 명확성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협동조합 보험 제공자로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 보험 회사의 지점은 공공 합자주식회사로서 운영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e. 보증 및 약정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포함) - 외환 -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피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h. 자금중개업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k.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 호부터 l 호까지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MA)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국내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이는 또한 내국민 대우를 제한함. 3)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 은행의 상업적 주재는 현지에서 설립된 공공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또는 국제 은행의 지점으로서 허용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내 합자주식회사의 비(非)사우디아라비아인 지분은 60 퍼센트까지 허용됨. -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i 호'의 자산 운용 및 'k.호'의 자문 서비스가 비상업 은행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상업 은행에 의하여 제공될 것임. - 'i 호'의 연금기금운용은 약속 안함. 이는 또한 내국민 대우를 제한함. - 'j 호'의 SAMA 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국내 결제 및 청산 서비스는 약속 안함. 이는 또한 내국민 대우를 제한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8. <u>보건 및 관련 사회 서비스</u> (1.A.h-j.에 기재된 것은 제외)			
A. <u>병원 서비스 (CPC9311)</u>	1) 아, 오, 카, 쿠: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사: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아: (i) 해당 지역의 병원과 의료 및 보건 센터의 수를 고려한 경제적 수요 심사에 기초하게 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가 허용됨. (ii)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바: 제한 없음. 사: 외국 병원 회사와 면허를 취득한 사우디 의료 전문가 간 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오: 병상 50 개를 초과하는 병원에 한정.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제한 없음.	1) 아, 오, 카, 쿠: 제한 없음. 바: 약속 안함. 사: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쿠: 제한 없음. 4)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4) 바,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바, 카: 약속 안함.	
B. <u>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u> (CPC 93191 을 제외한 CPC 9319) 바: 의료 실험실 서비스(CPC93199)에 한정	1) 아, 바, 쿠: 제한 없음. 오, 카: 약속 안함. 사: 약속 안함*. 2)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카: 약속 안함. 3) 아: (i) 해당 지역의 병원과 의료 및 보건 센터의 수를 고려한 경제적 수요 심사에 기초하게 될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외국인 지분은 100퍼센트가 허용됨. (ii) 외국인 지분 참여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서 100 퍼센트까지 허용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오, 카: 약속 안함. 바, 쿠: 제한 없음. 사: 외국 보건 회사와 면허를 취득한 사우디 의료 전문가 간 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하는 점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1) 아, 바, 쿠: 제한 없음. 오, 카: 약속 안함. 사: 약속 안함*. 2)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카: 약속 안함. 3) 오, 카: 약속 안함. 아, 바, 사, 쿠: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카: 약속 안함.	4)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카: 약속 안함.	
C. <u>사회 서비스</u> (CPC 933) 쿠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u>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터링 포함)</u> (CPC 64110, 64120 및 642) 아, 사: CPC 643 포함 사: 주점,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카: CPC 641-643 포함 쿠: 레스토랑과 케이터링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i) 호텔: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 허용됨. 호텔 경영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오직 70퍼센트까지 허용됨. (ii) 레스토랑: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 허용됨. 바, 사: 제한 없음. 카: 4성급 및 5성급 호텔에 한정해서 제한 없음. 오: 100 퍼센트까지 외국인 지분이 허용되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은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쿠: 경제적 수요심사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CPC 7471)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움라(Umra)와 하지(Hajj)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제외(즉, 이슬람 순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사: 움라(Umra)와 하지(Hajj)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카: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사: 오직 여행사에만 적용되는, 총 인구에 대한 여행사 수 비율에 근거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쿠: 제한 없음. 아: 약속 안함. 4) 아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아: 약속 안함. 4) 아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0) 카: CPC 7472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움라(Umra)와 하지(Hajj)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제외(즉, 이슬람 순례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 사: 움라(Umra)와 하지(Hajj) 제외	1)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2)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3) 아: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로 제한됨. 바, 사, 카, 쿠: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4)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약속 안함.	1)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2)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3)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약속 안함. 4)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오: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제외)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연극,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 포함) (CPC 9619) 아, 바, 쿠에 한정 연극,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로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쿠: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뉴스 제공 서비스 (CPC 962)	1)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1)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아: 두바이 미디어 시티 내로 한정	사, 오: 제한 없음. 2)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오: 제한 없음. 3) 아,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사: 제한 없음. 2) 사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제한 없음. 3)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오: 제한 없음. 4) 사, 오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오: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u>스포츠 및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CPC 964)</u> 아, 사, 쿠: CPC 96491 에 한정 (공원 및 공공 정원 서비스에 한정)	1)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쿠: 제한 없음. 2) 바,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사, 쿠: 제한 없음. 3) 아, 바,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사, 쿠: 제한 없음. 아: 외국인 지분은 75 퍼센트까지로	1)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사, 쿠: 제한 없음. 2) 바,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바, 사, 쿠: 제한 없음. 3)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카: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한됨. 4)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아, 사, 쿠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약속 안함. 아, 사, 쿠: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제 1 부: 아, 바, 카 (사, 오, 쿠의 약속은 제 2 부에 있음)			
국제운송 화물 및 여객(CPC 7211 및 7212, 연안운송 서비스 제외) 바: 선원 포함 선박 대여 (CPC 72130) 포함 아: 선박 유지 및 보수 포함	1) 아,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아,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i) 화물: 외국인 지분은 49퍼센트까지 허용됨. (ii) 여객: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 허용됨. (iii) 선박 유지 및 보수: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아,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아,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아, 바: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 바: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 도선 • 예선 지원 •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 선석 배정 서비스 • 항행원조 서비스 •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비상보수시설 -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해운 부수 서비스 -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 ²² - 창고업 (CPC742) -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²³ - 해운 대리업 서비스 ²⁴ - 해상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²⁵ 이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49 퍼센트까지 허용됨. ²⁶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A. 해상 운송 서비스			
제 2 부 : 사, 오, 쿠			
사: a. 여객 운송 (CPC 7211) b. 화물 운송 (CPC 7212) c. 선원 포함 선박 대여 (CPC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항구 및 수로 운영 서비스(화물 취급

²² “해상화물 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²³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란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또는 내륙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²⁴ “해운대리업 서비스”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²⁵ “화물운송주선 서비스”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²⁶ 운영과 기능은 공공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운영자가 규정한 특정 서비스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2130) d. 선박 유지 및 보수	약속 안함.	약속 안함.	제외) • 도선 및 선박 접안 서비스 • 항행 원조 서비스 • 선박 구조 및 인양 서비스 • 그 밖의 모든 수운 지원 서비스
쿠: a. 여객 운송 (CPC 7211) b. 화물 운송 (CPC 7212) c. 선원 포함 선박 대여 (CPC 72130) d. 선박 유지 및 보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 도선 • 예선 지원 •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 선석 배정 서비스 • 항행원조 서비스 •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 그 밖의 모든 수운 지원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서비스
오: 화물 및 여객 (CPC 7211 및 72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함. • 도선 • 예선 지원 •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 선석 배정 서비스 • 항행원조 서비스 •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 비상보수시설
C. <u>항공 운송 서비스</u>			
1A)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유지 및 보수 바: 비행 전 운항정비 제외 사: “항공기 부품” 제외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B)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6) 사에 한정	3)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2) 판매 및 마케팅 바, 오, 쿠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쿠: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오,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1)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2)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3)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제한 없음. 카: 약속 안함. 4) 카를 제외한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카: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사, 아에 한정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c. 화물 입환 서비스 (CPC 7113) d. 철도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8868) e.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 제한 없음. 사: 건설, 운영 및 이전(BOT) 방식 약정 형태의 외국인 투자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파이프라인 운송 사에 한정 a. 연료 운송 (CPC 7131) b. 그 밖의 상품 운송 (CPC713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국내 해상 연안 운송 및 항공 운송 제외²⁷²⁸) 사, 바, 오에 한정 바: CPC 742 에 한정 사: 해상 운송 서비스, 철도 운송 서비스 및 GATS의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른 항공 운송 서비스로 제한됨			
a. 화물 취급 서비스 (CPC 7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²⁷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이 분야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약속은 GATS의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따른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²⁸오만의 경우, 이 분야에 따른 오만의 약속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보관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바,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 제한 없음. 오: 외국인 지분은 70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타 (CPC 743-747) 오에 한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51 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CPC 749) 오에 한정 추가적 약속 열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사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지분은 70퍼센트까지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사: CPC 749 와 관련된 서비스는 현재 공공 부문에 의하여 제공됨. CPC 749 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이 사우디 법에 따라 민간 실체에게 허용되는 경우,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약속 안함.	약속 안함.	것임.

제9장 디지털 무역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인이란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 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각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따라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학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²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정부 데이터란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비독점적 데이터를 말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9.2조

목적

1. 당사국들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9.3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제9.12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서비스무역) 및 그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4. 제9.11조 및 제9.14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든 제한 및 조건, 또는

나.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5. 당사국들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신의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위원회로 회부함으로써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6.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무역은 소비자와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거래를 포함한다.

제9.4조

중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³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 나. 무역 서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9.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³ 이는 당사국들 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9.7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당사국들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구현 및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체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 또는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 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
 - 다. 보다 폭넓은 국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사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9.8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국들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당사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당사국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국들은 요청하지 않은 메시지와 광고의 사전 수신 동의 및 사후 수신 거부에 대한 수신자의 재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9.10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당사국들은 전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⁴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국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4. 당사국들은 기업이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자신의 정책과 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9.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⁵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⁶.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⁵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⁶ 이 호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이행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12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당사국들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독려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정부 데이터가 대중에 의하여 자유롭게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 되는 것을 허용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공개된 형식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13조

디지털 정부

1. 당사국들은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정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자국 시민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정부 운영 및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중점을 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절차를 채택한다.
 - 나. 디지털 의제 문제에 대하여 범분야적 및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증진한다.
 - 다. 디지털 포용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절차, 서비스 및 정책을 형성한다.
 - 라.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공공재 및 공공

디지털 조력자를 증진한다.

- 마. 자연재해,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하여 신생 기술을 활용한다.
- 바. 공공 정책의 효율적인 계획, 전달 및 점검을 위하여 정부에서 인공지능과 다른 신생 기술을 활용한다.
- 사. 신생 기술의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하여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개발한다. 그리고
- 아. 일반 대중과 정부 인력 모두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당사국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정부 및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한다.
- 나. 디지털 정부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달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그리고
- 다.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디지털 정부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

제9.14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⁷

2. 제1항은 제12장(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국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15조

관세

1.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국의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WTO의 관련된 각료회의 결정의 변경에 합치하도록 자국의 관행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디지털 방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16조

전자송장

1. 당사국들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⁷ 제9.14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당사국들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국가법과 법적 체계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각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국들은 관련 국제 체계를 고려하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는 촉진한다.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채택을 장려한다.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9.17조

전자지급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과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지급 시스템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상호연결성을 증진한다.

나.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한다.

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자국 영역에 설립된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라.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제9.18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디지털 무역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제 체계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이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제 체계에 의하여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제9.19조

사이버보안

당사국들은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 나.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여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및 추가 협력 강화,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의 적발 및 경감에 대한 협력 강조

제9.20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당사국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무역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9.21조

인공지능

1. 당사국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무역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증진한다.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9.22조

협력

당사국들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관련된 법, 규정 및 그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나. 개인 데이터 보호

다. 디지털 무역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마.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식재산 우려사항
- 바.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 사. 디지털 정부
- 아. 디지털 신원
- 자. 핀테크, 그리고
- 차.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

제10장 정부조달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CPC) 중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면으로 또는 **서면**이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둘 모두를 제출할 것을 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부속서 10-가, 10-나 및 10-다에 열거된 정부조달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청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다음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

- 1)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한 과정 및 방법, 또는
- 2) 조달될 서비스 또는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한 그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과정 또는 방법,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제10.2조

목적

당사국들은 법, 규정 및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며 당사국들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무

역관계에서의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3조

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

1. 이 장은 한국, 바레인왕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레인왕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말한다.
2.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 가. 구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않는 임차 또는 리스를 포함한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나. 제6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당시 부속서 10-가 또는 부속서 10-나 또는 부속서 10-다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다.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라. 이 협정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않는 것

준수

4.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수행에서 자국의 조달기관이 이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조달 기관도 이 장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조달을 준비 또는 설계하거나 달리 구성하거나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않으며, 또는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허표

5.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부속서 10-다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다.

- 가. 제1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중앙정부기관
- 나. 제2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지방정부기관
- 다. 제3절에는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모든 기관
- 라. 제4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상품
- 마. 제5절에는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 바. 제6절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건설서비스
- 사. 제7절에는 일반 주해, 그리고
- 아. 제8절에는 정보의 공표

가액산정

6.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다음을 고려하여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쳐 추정되는 최대 총 조달가액을 포함한다.

- 가. 세금, 관세, 물류 지원, 자금 조달 비용, 직원 및 보수율과 같이 그 계약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

나. 선택 조항의 가액, 그리고

다. 동일한 조달에 따라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

7.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보조금, 재정적 유인 및 후원 약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라. 공공고용계약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1)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조달

2) 국제기구에 의하여 또는 외국의 또는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국제기구 또는 공여자의 조달 절차 또는 조건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 3)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하에서 수행되는 것

제10.4조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 조달과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하거나 그러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 조달, 또는

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불가결한 조달

2.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들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게 되거나 당사국들 간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재소자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제10.5조

일반원칙

1. 당사국들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 무역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 정부조달의 역할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조달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을 수행한다.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2.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3.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의 대외 제휴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의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추가 협상

4. 이 협정의 발효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접근에 관한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조달 방법

5. 조달기관은 제10.9조 또는 제10.10조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적용대상조달을 위하

여 공개입찰 절차를 이용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6. 당사국들은 조달 정보, 공고 및 입찰서류의 공표, 그리고 입찰의 접수를 위하여 적용대상조달 수행 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7. 전자적 수단으로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참가신청 및 입찰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8. 각 당사국은 조달 계획, 공급자 선정 및 계약의 낙찰을 포함하는 조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일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원산지 규정

9.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같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르거나 불합치하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응구매

10.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및 부속서 10-다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10.6조

조달 정보의 공표

1. 각 당사국은 정부 조달에 관한 자국의 법과 규정, 절차,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자국의 법 또는 규정으로 정한 표준 계약 조항을 공개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갱신한다.
3. 각 당사국은 요청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을 제공한다.

제10.7조

공고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및 부속서 10-다에 기재된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무료인 단일 접근 창구를 통하여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공고는 최소한 공고에 응답하기 위한 기간의 만료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정보가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입찰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관련 서류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적절한 경우,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그리고 선택 사항에 대한 기술,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라.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마.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바.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 입찰서 또는 참가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언어
- 사.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는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그리고
- 아. 조달기관이 제10.9조에 따라 입찰 참가를 청하는 대상으로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조달계획공고

- 3. 조달기관은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의 공표 계획일을 포함해야 할 향후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이하 “조달계획공고”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제10.8조

참가조건

- 1.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그 조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

한 법적 및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정한다.

2.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조달기관은

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조달의 대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해당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관련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공급자 자격심사

등록제도와 자격심사 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하고 특정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급자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도 자국의 조달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를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입찰

3.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가. 적격 공급자에게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참가 신청을 제출하도록 청하는 조

달예정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조달예정공고에 제10.7조제2항가호, 나호, 라호, 사호 및 아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4. 조달기관은

- 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조달에 대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달에 대한 공고를 충분히 사전에 공표한다.
- 나. 조달기관이 제10.1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통보하는 적격 공급자에게 최소한 제10.7조제2항 다호, 마호, 및 바호의 정보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 다.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또는 정당한 이유를 기술하지 않는 한, 모든 적격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5. 입찰서류가 제3항에 언급된 공고의 공표일부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은 경우, 조달기관은 제4항다호에 따라 선정된 모든 적격 공급자에게 입찰서류가 동시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유자격자 명부

6.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유자격자 명부에의 등재를 신청하도록 청하는 공고를 매년 발행하거나, 달리 전자적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 나. 유자격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하여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조건과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공급자의 그러한 조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 다. 조달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 조달기관에 접촉하고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 라. 유자격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유자격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그리고
- 마. 적용 가능한 경우,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제출 마감시한

7.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제6항에 언급된 공고에 규정된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8.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에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10.15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그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조건으로 조달기관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자를 그 조달과 관련하여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제10.10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제한입찰을 이용하는 경우, 조달의 성격에 따라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0.11조, 제10.12조, 제10.13조, 제10.14조 또는 제10.1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달기관은 다음의 상황에서만 제한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전 공고, 참가 요청 또는 입찰 요청에 대하여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거나 참가를 신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 3)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다만,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적인 요건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특허, 저작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인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 또는 그의 인증 받은 대리인이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 1)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

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기술적 이유로 또는 원 공급자의 보증에 따른 조건으로 인하여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2)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중복을 초래할 경우

- 라. 원자재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리고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한시적 이용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시제품이나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그 후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 바.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원 입찰 서류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러나 추가적인 서비스에 낙찰된 계약의 총 가액은 최초 계약의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며 각 당사국의 법과 법률에 따른다.
- 사. 기초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신규 서비스의 경우로, 그 기초 사업의 최초 계약이 낙찰되었으며, 그 조달기관이 최초 서비스에 관한 조달예정공고에 그러한 신규 서비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 입찰절차가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경우
- 아. 이례적인 처분, 청산, 파산 또는 법정관리와 같이 매우 단기간에만 발생하

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매의 경우.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는 경우

차. 엄밀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카. 적용 가능한 기존의 법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입찰의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조달기관의 명칭,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기록을 유지한다.

제10.11조

협상

1.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의 맥락에서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제1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가격 또는 그 밖의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그리고

다.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달기관은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로운 또는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시한을 제시한다.

제10.12조

기술 규격

1. 조달기관은 다른 당사국들 공급자의 참가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 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 규격을 규정할 때,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3.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4.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 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조달기관이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환경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적용 가능한 경우, 그러한 규격은 국제 표준에 기초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이 그 당사국 영역 밖에서 정부의 민감한 정보의 보관, 호스팅(hosting) 또는 처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격을 포함한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제10.13조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그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공한다.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그리고 알려진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그 조달 그리고 기술규격, 적합성 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

다. 계약 낙찰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그 밖의 요건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바. 입찰 평가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날짜

2. 적용 가능한 경우 요금을 조건으로, 조달 기관은 관련 입찰 서류를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또는 컴퓨터 기반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조달기관은 조달될 상품의 인도 날짜 또는 서비스의 공급 날짜를 정할 때, 조달의 복잡성,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공급지점으로부터 상품을 생산하고 실어내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4. 조달기관은 관심 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해

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정

5. 조달기관이 계약의 낙찰 전에 조달예정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 규정한 평가 기준 또는 요건을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하거나 재발행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러한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조달에 참가 중인 모든 공급자를 조달기관이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그러한 공급자가 최초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제10.14조

기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서류를 획득하고 참가신청서와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자국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 계약의 범위, 그리고

다. 전자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점에서 비전자

적 수단으로 입찰서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마감시한

2. 적용대상조달을 위한 기간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10.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의 취급

1. 조달기관은 모든 입찰서를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과 입찰서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개찰하며 취급한다.
2. 공급자의 입찰서가 입찰서 접수에 대하여 명시된 시각 후에 접수된 경우, 그 조달기관은 지연이 오로지 그 조달기관 측의 잘못된 취급 때문인 경우 그 공급자를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3.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의 낙찰

4.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조달기관이 계약을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조달기관은, 충분히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하는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6. 이 장의 조건에 합치되게, 조달 기관은 공급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일반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조달기관은 그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제10.16조 낙찰 후 정보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의 계약 낙찰 결정을 서면으로 알린다.

2.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제10.17조에 따라, 조달기관은 요청 시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그 낙찰되지 않은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기록의 유지

3. 조달기관은 제10.10조에 규정된 기록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입찰 절차 및 계약의 낙찰과 관련된 서류, 기록과 보고서를 계약 낙찰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한다.

제10.17조 정보의 공개

당사국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1. 한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달 기관에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적용 가능한 경우 낙찰에 성공한 입찰서의 특징과 상대적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달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 장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얻은 후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어떠한 공급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의 비공개

2.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법이 요구하는 한도 또는 그 정보를 제공한 공급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공급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밀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당사국(조달기관, 당국 및 심사기구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법 집행을 방해하게 될 경우

나.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한 인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지식재산의 보호를 포함한다)을 저해하

게 될 경우, 또는

라.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될 경우

제10.18조

조달의 수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정부 조달에서 부패를 다루기 위한 형사 또는 행정 조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다고 그 당사국이 판단한 공급자들에 대하여, 무기한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그 당사국 조달에 대한 참가 자격이 없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또한 조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인들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제10.19조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1. 당사국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여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중소기업을 위한 특혜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적격성 기준을 포함하여 그 조치가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가. 중소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조달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단일 전자 포털에서 제공한다.

나. 모든 입찰서류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다. 조달을 전자적 수단 또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수행한다. 그리고

라. 중소기업에 의한 하도급의 이용을 포함하여 조달의 규모, 설계 및 구조를 고려한다.

제10.20조 재정적 의무

1. 이 장은 당사국들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0.21조 언어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제10.6조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공표할 때, 제10.6조에 언급된 정보가 영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제10.22조 검토

제16.1조(공동위원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향후 각 당사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이 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3년 내에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대로 이 장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23조

연락처

1. 정보 교환과 협력은 다음 연락처를 통하여 촉진된다.
 -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그리고
 - 다. 바레인의 경우, 상공부
2. 각 당사국은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10.24조

협력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 각각의 정부조달 체계와 시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고 조달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들의 법, 규정 및 절차 그리고 그 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나. 이 장의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달의 장려
- 다. 정부조달 체계 내 전자적 수단의 사용에 대한 경험의 공유, 그리고
- 라. 잠재적 공급자 또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 간에 이 장에 대한 이해와 인

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계 및 기업 간 관계를 증진

제10.25조
정부조달위원회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조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장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 및 점검
 - 나. 정부조달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논의
 - 다. 공동위원회에 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 라. 제16.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수행

부속서 10-가
한국의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기준가

이 장은 조달가액이 다음 금액과 같거나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장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된다.

모든 상품 기준가: 130,000 SDR

모든 서비스 기준가: 13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1. 감사원
2. 국무조정실
3. 국무총리비서실
4. 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외교부
8. 통일부
9. 법무부
10. 국방부
11. 행정안전부(이 장의 제10.4조에 규정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12. 문화체육관광부
13. 농림축산식품부
14. 산업통상자원부
15. 보건복지부
16. 환경부
17. 고용노동부
18. 여성가족부
19. 국토교통부
20. 해양수산부
21. 중소벤처기업부
22. 공정거래위원회
23. 금융위원회
24. 국민권익위원회
25. 방송통신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인사혁신처
28. 법제처
29. 국가보훈부
30. 식품의약품안전처
31. 국세청
32. 관세청
33. 조달청
34. 통계청
35. 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 (이 장의 제10.4조에 규정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매는 제외한다)
39. 국가유산청
40. 농촌진흥청
41. 산림청
42. 특허청
43. 기상청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절에 대한 주해

1. 위의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조달청이 제2절 또는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기관의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제2절
지방정부기관

한국은 이 절에서 기관을 양허하지 않는다.

제3절
그 밖의 기관

기준가

상품	기준가: 400,000 SDR
서비스	기준가: 400,000 SDR
건설서비스	기준가: 15,000,000 SDR

기관 목록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조폐공사
4. 한국전력공사(HS 번호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의 구매는 제외함)
5. 대한석탄공사
6. 한국광해광업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한국도로공사
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4. 한국관광공사
15. 근로복지공단
16. 한국가스공사
17. 한국철도공사
18. 국가철도공단
19. 서울교통공사

20. 인천교통공사
21. 부산교통공사
22. 대구교통공사
23. 대전교통공사
24. 광주교통공사

제3절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에 위한 할당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은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의한 다음의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NS/W/120 CPC 코드 설명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B.	8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1.F.e.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m.	8675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633	
1.F.n.	8861-	철 제품, 기계류 및 장비에 부수되는 수리 서비스
	8866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2.C.

7523

통신 서비스(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포함)

4. 이 협정은 국가철도공단에 의한 조달 중 다음에만 적용된다.
 - 일반철도 시설의 건설 및 조달
 - 일반철도 설계를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일반철도 시설의 감독
 - 일반철도 시설의 관리
5. 한국은 이 절에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양허하지 않는다.

제4절 상품

1. 이 장은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 조달에 적용된다.
2.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의한 조달의 경우, 이 장은 다음의 군급번호(FSC) 분류품목에만 적용된다.

<i>FSC</i>	<i>설명</i>
2510	차량의 운전실, 차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2520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2590	그 밖의 차량 구성품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연료계통 구성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전기계통 구성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 공기 및 기름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부수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4110	냉장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4520	공간 난방장치 및 온수기
4940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5120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수공구
5410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및 단판
5660	울타리재료, 울타리, 문 및 구성품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6840	살충소독제
6850	각종 특수화학물
7310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용구
7350	식탁용 식기
7360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듈
7530	문방구 및 기록용지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깡통
9150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9310	종이와 판지

제5절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i>GNS/W/120</i>	<i>CPC</i>	설명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프로세싱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E.a.	83103	선박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항공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그 밖의 운송기기(15인승 미만의 승용차로 한정함)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E.d.	83106, 83108,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83109	
	83107	건설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함)
	86764	기술적 진단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8814*	임업부수서비스(공중 소화 및 병해충 방제는 제외함)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장비의 유지 및 보수
	8862, 8863	
	8864, 8865	
	8866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숙기 서비스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함)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는 제외함)
2.D.e.	—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B.	9402*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함)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서비스는 제외한 서비스)
	9406*, 9409*	환경분야 시험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만 해당함)
9.A	641	호텔 및 그 밖의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제공 서비스
9.A	6431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음료제공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함)
9.B	7471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정부 운송요청은 제외함)
11.A.b.	7212*	카보타지는 제외한 국제운송
11.A.d.	8868*	선박 유지 및 보수
11.F.b.	71233*	카보타지는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11.H.c	748*	화물운송대행서비스
		- 해운대리업 서비스 - 해상화물 운송주선 서비스 - 해운중개 서비스 - 항공화물 운송대리업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화물 주선

제5절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최초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정된 조건부 양허안에 자세히 기재된 대로 “일부분”을 가리킨다.

제6절 건설서비스

이 장은 각 절 및 제7절에 대한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 및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CPC 51에 분류된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제6절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한국은 이 절에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양허하지 않는다.

제7절
일반 주해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8절
정보의 공표

1. 법과 규정
 - 대한민국 정부 관보
 -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 <http://gwanbo.moi.go.kr>, 또는
 - 한국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3. 공급자 등록: <http://www.g2b.go.kr>

부속서 10-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기준가

모든 상품	기준가: 130,000 SDR
모든 서비스	기준가: 13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5,000,000 SDR

기관 목록

1. 재무부
2. 기후변화 및 환경부
3. 에너지 및 인프라부
4. 청년부
5. 경제부
6. 인적자원 및 에미라티제이션(Emiratization)부
7. 법무부
8. 산업 및 선진기술부
9. 지역사회개발부
10. 보건 및 예방부
11. 아랍에미리트 우주청
12. 교육부
13. 관용 및 공존부
14. 연방평의회업무부

15. 국가상담청
16. 연방지리정보청
17.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행정청
18. 정부부통령실
19. 에미리트학교연합
20. 에미리트국영통신사
21. 체육국
22. 회교국 관리 및 기부국
23. 연방정부인적자원국
24. 연방조세청
25. 연방주민등록세관항만보안청
2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척결 전략위원회
27. 내무부

제2절
지방정부기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제3절
그 밖의 기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제4절
상품

이 장은 제7절에 따라 명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5절 서비스

이 장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5절에 대한 주해

건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조달은 제8장(서비스 무역)에 따라 규정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을 따른다.

제6절 일반 주해

1. 이 장은 다음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연방 정부를 위한 디지털 조달 정책에 관한 2022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정 제1호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개정하는 후속 법과 규정에 따른 국가 보안 서비스
- 나. 건설 프로젝트 및 계약
- 다. 내무부 또는 안보나 군사적 성격의 연방기관이 수행하는 군사적 성격의 모든 구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 1) 무기
 - 2) 사격 통제 장비
 - 3) 유도탄
 - 4) 항공기
 - 5) 선박
 - 6) 엔진, 터빈, 그리고
 - 7)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 라. 모든 의약품 구매
- 마. 2019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4/8호, 2017년 아랍에미리트 내각 결의 제1/1호 그리고 그러한 결의를 개정하는 후속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민간 부문과의 모든 파트너십 계약, 그리고
- 바. 아랍에미리트 내각의 결정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우주청과 관련된 조달

2. 다음과 같은 특정 범주를 위한 법에 의하여 구속력 있는 특권이 있다.

- 가. 중소기업

중소 프로젝트 및 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 중소기업에 관한 2014년 연방법 제2호의 행정규정에 관한 2016년 내각 결의 제35호 및 디지털 조달 정책에 관한 2022년 내각 결의 제1호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길 때 10퍼센트의 추가 보너스가 중소기업의 최종 점수에 가산될 것이다.

나. 국내가치(ICV) 증명서 보유자

국가 부가가치 프로그램에 관한 2021년 내각 결의 제72호 및 디지털 조달 절차 매뉴얼에 근거하여, 국가 부가가치 증명서(ICV)가 있는 공급자는 입찰 평가 시 국가 부가가치(ICV) 지침에 따라 25퍼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는다.

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국내 녹색 공급자 및 원산지가 국내인 녹색 제품에 대하여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주해의 목적상,

- 1) 녹색 공급자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고려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 2) 녹색 상품이란 공동체 안전성,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존 간 발전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국제 우수 관행에 따른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그린 어플리케이션(green application)을 보유한 상품을 말한다.

제7절
정보의 공표

1. 법과 규정
- <https://mof.gov.ae/general-revenue-and-expenditure/>
2. 디지털조달플랫폼
- <https://mof.gov.ae/government-procurement-operations/>
3. 공급자 등록
- <https://mof.gov.ae/supplier-registration-in-federal-supplier-register/>

- 외국 공급자 등록 요건

서류	외국 공급자	유효 기간 (일)	만료 전 경고 (일)
세금등록증명서	해당됨	365	30
수익 소유자의 여권 사본	해당됨	365	30
계약 성립(파트너십의 경우)	적용 가능한 경우	365	30

부속서 10-다
바레인왕국의 정부조달 양허표

제1절
중앙정부기관

기준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다음의 기준가에 따라 이 절에 열거된 기관에 의한 조달에 적용된다.

모든 상품	기준가: 140,000 SDR
모든 서비스	기준가: 140,000 SDR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6,000,000 SDR

기관 목록

1. 라시드 승마 및 경마 클럽
2. 체육총국
3. 정보 및 전자정부청
4. 내각업무부
5. 국방부(제1절에 대한 주해1)
6. 교육부
7. 전기수도부
8. 재정 및 국가경제부
9. 외교부(제1절에 대한 주해2)
- 10.보건부
- 11.주택도시계획부
- 12.상공부
- 13.공보부(제1절에 대한 주해3)
- 14.내무부(제1절에 대한 주해1)

- 15.법무, 이슬람 업무 및 기부부
- 16.노동부
- 17.법제부
- 18.지방자치사무 및 농업부
- 19.석유환경부
- 20.사회개발부
- 21.슈라(Shura)위원회 및 하원 업무부
- 22.지속가능개발부
- 23.교통통신부(제1절에 대한 주해4)
- 24.관광부
- 25.건설부
- 26.청년부
- 27.토지조사등록국
- 28.입찰위원회

제1절에 대한 주해

1. 국방부와 내무부

가. 상품: 이 장은 다음의 미국 군급번호(FSC) 범주의 상품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SC 11	핵병기
FSC 18	우주비행체
FSC 19	함선, 소형선, 폰툰(pontoon) 및 부선거
FSC 20	함선 및 해상장비
FSC 2350	궤도식 전투, 공격 및 전술용 차량
FSC 51	수공구
FSC 52	측정공구
FSC 60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FSC 8140	탄약 및 핵병기 상자, 포장 및 특수용기

주의: 상품이 이 주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위의 오른쪽 열에 규정된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

나. 서비스: 이 장은 공통분류체계 및 WTO 분류 체계 MTN.GNS/W/120에 기재된 다음 범주의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사시스템 및 장비의 설계, 개발, 통합, 시험, 평가, 유지, 보수, 수정, 재건 및 설치

다. 이 장은 다음의 미국 군급번호(FSC) 범주의 상품 조달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FSC 10	무기
FSC 12	사격 통제 장비
FSC 13	탄약 및 폭발물
FSC 14	유도탄
FSC 15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 구성품
FSC 16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FSC 17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FSC 19	함선, 소형선, 폰툰(pontoon) 및 부선거
FSC 20	함선 및 해상장비
FSC 28	엔진, 터빈 및 구성품
FSC 31	베어링
FSC 58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FSC 59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FSC 70	자동자료처리장비, 소프트웨어, 보급품 및 지원 장비
FSC 83	직물류, 피혁류, 모피류, 의복, 구두, 텐트, 깃발류
FSC 84	의복, 개인장구 및 기장
FSC 87	농업용 보급품
FSC 88	살아 있는 동물
FSC 89	생필품(식료품)

2. 외교부: 이 장은 바레인 영토 밖의 공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공보부: 이 장은 CPC 84170에 기술된 프로그램된 자료의 취득, 개발이나 제작 또는 방송 시간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교통통신부: 이 장은 민간항공청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지방정부기관

바레인왕국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지 않음.

제3절 그 밖의 기관

기준가

모든 상품	기준가: 200,000 SDR
제5절에 명시된 모든 서비스	기준가: 200,000 SDR
제6절에 명시된 모든 건설서비스	기준가: 7,500,000 SDR

이 장은 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 의한 또는 기관을 대신한 조달에 적용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은 이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에 종속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기관 목록

1. 바레인 전략국제에너지연구센터 (DERASAT)
2. 바레인 폴리테크닉 (Polytechnic)
3. 바레인 관광전시청
4. 대표자회의
5. 경제개발위원회
6. 지방의회
7. 국가감사원
8. 국정자문회의 (Shura Council)
9. 사회보험기관(주해 1)
10. 통신규제청
11. 헌법재판소
12. 바레인대학교

제3절에 대한 주해

사회보험기관: 이 장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절

상품

이 장은 각 절에 대한 주해 및 일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5절
건설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목록 중 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포함된다.(그 밖의 것은 제외됨)

<u>MTN/W/120</u>	<u>CPC</u>	<u>설명</u>
1.F.n.	6112, 6122, 633, 886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1.F	712	육로 운송 서비스
2.B	7512, 87304	쿠리어 서비스
11.C.a,b	73	항공 운송 서비스
11.C.b, 11.E.b	71235, 7321	육로 우편물 운송
7.A	812, 814	보험 및 연금 서비스
1.B	8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866	경영 컨설팅 서비스*
1.F.d	866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1.A	867	건축,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1.F.a	871	광고 서비스
1.F.o	874	빌딩 청소 서비스
1.D	82201부터 82206까지	자산 관리 서비스**
1.F.r	88442	인쇄, 출판***
6.A	94	폐수 서비스
2.C	7522	사업 네트워크 서비스
2.C.b,c	7523	데이터 및 메시지 전송 서비스

*중재 및 조정 서비스 제외

**정부 소유 시설 관리 제외

***수입 인지, 지폐 및 종교 자료의 인쇄 제외

제6절 건설서비스

1. 이 장은 각 절의 주해, 일반 주해 및 이 절의 주해를 조건으로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이 조달하는 모든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종교를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한 건설서비스(CPC 54129)

나.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토목공사(CPC 542) 일반 건설서비스

제6절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바레인의 한 정부기관이 바레인의 다른 한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은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절 일반 주해

1.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일반 주해는 이 양허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규제 지침 발행을 위한 2022년 내각 결의 제30호에서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계약.

나.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2022년 내각 결의 제2679-11호에 따라 국내가치(Takamul) 증명서를 보유한 공급자에 대하여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국방부, 내무부 또는 안보나 군사적 성격의 기관이 수행하는 군사적 성격의 조달

라. 의약품 또는 약품의 조달

마. 조달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 계약에 부수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

바. 농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급식 프로그램(예: 긴급구호를 포함한 식량원조)의 증진을 위한 농산물의 조달

사. 바레인의 한 정부기관이 바레인의 다른 한 정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취득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그리고

아. 비적용대상기관을 대신하여 적용대상기관이 하는 조달

3.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2017년 내각 결의 제2416-06호와 2019년 내각 결의 제2516-0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10퍼센트 가격 특혜를 적용할 수 있고 정부 조달 및 입찰 가치의 할당비율에 대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4. 정부가 부속서 10-다의 제1절과 제3절에 열거된 기관에 대하여 통제 또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경우, 그러한 기관의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장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에 의한 조달의 경우, 이 장은 그 조달의 상품 또는 서비스 요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8절
정보의 공표

1. 조달예정공고 및 낙찰 후 공고의 공표 그리고 선택입찰 절차의 경우 적격 공급자 명부에 대한 정보의 연간 공표

<http://www.tenderboard.gov.bh>

2. 제1절(중앙정부기관)에 열거된 기관들에 대한 정부조달에 관한 법, 규정, 사법적 결정, 행정판정 및 절차는 다음의 웹사이트에 공표된다.

공식 관보

<http://www.tenderboard.gov.bh>

제11장 중소기업 증진 협력

제11.1조 목적

당사국들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협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이 장의 규정과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1.2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국은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의 설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과 관련된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당사국들 간 지식,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공유 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의 전문

나. 그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그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그 밖의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제11.3조

협력

이 장에 따른 당사국들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기업 간 파트너십의 증진 및 촉진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에 대한 접근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개선하는 것
- 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증진하는 것
- 다. 당사국들의 기업 프로그램 간의 경험 교류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
- 라. 혁신 및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것
- 마.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체계에 대한 인식, 이해 및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하는 것
- 바.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규정,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우수관행을 공유하는 것
- 사.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과 한국 중소기업이 무역 및 투자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
- 아. 무역 박람회, 방송 매체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 자.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차. 중소기업이 시장의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제11.4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2.1조 지식재산의 범위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에 언급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반도체 지형학) 및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2.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들은 이 장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가입한 지식재산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보장하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에서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보호 및 집행은 이 장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장하는 다자 협정에 규정된 예외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보호¹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¹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이용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2) 제12.3조제2항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 금지, 그리고 (3) 제12.3조제3항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

4.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되거나²,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5. 제1.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당사국들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6. 당사국들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의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서 수립된 원칙을 인정한다.

제12.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가. 대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대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대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음반에 고정된 실연과 음반을 각각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대중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제공한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 규정 또는 절차를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이 항의 공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

2.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하여 해당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각 당사국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인, 가능,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³를 권한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인으로부터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4. 당사국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를 위한 적절한 단체의 설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단체들이 사용료⁴의 징수 및 분배에 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기록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적으로 투명하고 그 단체들의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한다. 이에 더하여,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간 콘텐츠의 보다 쉬운 이용허락을 상호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장려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각국의 집중관리단체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2.4조

상표

1. 당사국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권자에게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한다.

³ 이 장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저작물·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대중 전달이나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대중 전달 또는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저작물·저작자·저작물에 관한 권리자 또는 실연자·실연자의 실연·음반 제작자·음반, 실연이나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공평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려”는 당사국이 집중관리단체 간 계약 약정을 중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소리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냄새표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당사국들이 사용에 기반하여 권리를 이용 가능하게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제12.5조

유명 상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67) (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⁶로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12.6조

악의적 상표

⁶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한다.

제12.7조

산업디자인

1. 각 당사국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한다. 당사국은 디자인이 알려진 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현격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러한 보호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에 의하여 요구되는 디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산업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되는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12.8조

부정경쟁

1. 각 당사국은 파리협약에 따라 부정 경쟁 행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 외관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 외관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양도, 대여,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한다.

제12.9조

국가명

각 당사국은 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국가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제12.10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1.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에 관련되는 민사, 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저작자·출판자·실연자·제작자 또는 방송국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민사 및 형사 구제를 포함하여 자국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절차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그리고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저작권과 저작권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제12.11조

협력 및 협의

1.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은 무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시정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한다. 무역상황에 영향을 주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

제13장 경쟁

제1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경제부 경쟁 및 소비자보호국
- 다. 바레인왕국의 경우, 경쟁 촉진 및 보호 당국
- 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경우,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독점적 관행의 방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
- 마. 오만왕국의 경우, 상공투자진흥부 경쟁 보호 및 독점 방지 센터
- 바. 카타르국의 경우, 상공부 경쟁보호국, 그리고
- 사. 쿠웨이트국의 경우, 경쟁보호국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 나. 걸프협력회의의 경우, 걸프협력회의 각 회원국의 경쟁에 관한 국가 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걸프협력회의의 경우, 걸프협력회의 각 회원국의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 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제13.2조

목적 및 일반 원칙

- 1.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영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 2.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합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인수 및 합병에 특별히 주목하는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제13.3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입법 체계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과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고 그러한 법과 규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달리 기술되지 않는 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 그리고 그러한 법과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국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 언급된 어떠한 근거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이나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이나 실체에게 그 당사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3.4조

협력

당사국들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각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각국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요청에 따라, 요청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논의하는 것
- 나. 요청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 다.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들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 라. 요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집행 활동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

제13.5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장은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피요청 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요청의 목적

나. 요청된 정보의 사용 목적, 그리고

다. 정보의 비밀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피요청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은 목적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요청 당사국의 모든 법 또는 규정

3. 어떠한 당사국들 간 비밀정보의 공유 및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해당 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다.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한다.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해당 당사국들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제공받은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실체 또는 인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제13.6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다자적으로 또는 양자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의 관심사임에 동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경쟁법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 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 라.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 마.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13.7조

소비자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당사국들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당사국들 각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제13.8조

협의

당사국들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어느 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요청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 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해당 당사국들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3.9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1.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장의 의미에서 어떠한 관행이 무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쪽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사안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장 일반 협력

제14.1조 목적 및 범위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과 하나 이상의 관심이 있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들은 다음 분야에서의 협력에 특별히 주목하여, 모든 형태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가. 정보통신기술

나. 시청각 서비스

다. 항공 서비스

라.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기여하는 상용 방문

마. 과학 및 기술

바. 보건의료 산업

사. 산업 협력

아. 농림수산업

자. 에너지 및 자원

차.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카. 바이오경제, 그리고

타. 스마트팜

제14.2조

협력 형태

1. 당사국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형태로 제14.1조제2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가. 경험 및 우수 관행 교환

나. 당사국들의 각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

다. 소비자,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신생 서비스 이용 증진

라.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마.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 수행

2.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협력의 특정 분야 및 형태를 규정할 수 있다.

제14.3조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영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하게 발전함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이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협력한다.

제14.4조 상용방문 협력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상용 방문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설립 전 방문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그러한 방문과 교류를 증진한다.

제14.5조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협력

1.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건설 및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다.

2.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및 산업공장 건설

나. 인프라 개발

다.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 그리고

라.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3.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협력을 증진한다.

가. 새로운 기술 및 소재의 적용, 그리고

나.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활동

제14.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14-가
선진산업

1. 당사국들의 경제 개발에서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선진산업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 산업 및 융합의료기기를 포함한 생물학 산업

나. 항공우주산업

다.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 전환 및 이러닝(e-learning)

라.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기술

마.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바. 스마트 공장, 기술 및 정책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 그리고

사. 공급망 관리

3. 산업 정책 분야에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새로운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의제 확인

나. 산업 개발에서의 우수 관행 공유 및 교환

다.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그리고 정부 간(G2G) 협업 증진

라. 공동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제공

마. 공동 산업 정책의 개발 증진, 그리고

바.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 수행

부속서 14-나
에너지 및 자원

1.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사용에서 효율성 개선을 증진하는 것

나. 에너지 및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

다. 천연가스,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대체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라. 에너지 및 자원에서의 투자와 신기술 적용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에너지 및 자원의 공동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3.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하여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나.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콘퍼런스, 전시회 및 연구 프로젝트를 증진하는 것

다. 투자를 포함하여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라. 우수 관행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마.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

부속서 14-다
시청각 서비스와 공동제작

시청각 서비스

1. 당사국들은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특히 훈련, 정보교환, 전문성 및 경험 교류,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과 이전 분야에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시청각 분야의 발전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술 지원과 시청각 분야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류를 촉진할 기회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협력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된다.

시청각 공동제작

4. 당사국들은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시청각 공동제작이 당사국들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그리고 이해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협상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공동제작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 오로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6.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을 준수하는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부속서 14-라

바이오경제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바이오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바이오경제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바이오의약품

나.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다. 바이오환경 및 바이오의료기기

라. 바이오장비

마. 바이오기기, 그리고

바. 바이오자원

3.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바이오경제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가.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의 개발에 대한 협업

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인력 훈련 및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다.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4. 당사국들은 바이오경제 분야의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바이오경제 분야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부속서 14-마
스마트팜

1.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들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할 수 있다.

가. 스마트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민간 부문 내 협업을 위한 기회 증대

다. 스마트 농업 관련 훈련 수행

라. 당사국들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마.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부속서 14-바
보건의료 산업

1.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3.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제품 품질 개선, 기술 무역 등

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라. 당사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마. 한쪽 당사국의 의료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바.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맥락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아래 정의가 적용된다.

- 가. **중재패널**은 이 장의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을 말한다.
- 나. **제소 당사국**은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 다. **분쟁 당사국**의 대표란 당사국의 정부 부서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정부 기관이 임명한 피고용인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라. **피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 마. **협의 당사국**은 제15.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 바. **분쟁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 또는 피소 당사국을 말한다.

제15.2조 목적

이 장은 가능한 경우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3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어느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경우의 분쟁에 대하여 또는 이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차이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이 장은 비위반제소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15.4조

연락처

1. 분쟁이 발생하면,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개시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지정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된다.

제15.5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은 당사국들이 당사국인 그 밖의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다. 이 협정 및 당사국들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 무역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 또는 사안과 특정 조치가 불합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이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하고 이 장 또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으면, 그 당사국은 그 특정 조치에 대하여 우선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가 관할적 또는 절차적인 이유로 분쟁 중인 쟁점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밖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제15.9조에 따라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WTO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이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6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한 때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조의 제2항과 무관하게, 분쟁 당사국¹이 이 장 또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분쟁 당사국은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하나의 분쟁해결 절차를 결정한다.

5.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다른 분쟁해결 절차에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15.6조

정보 요청

제15.7조 또는 제15.8조 각각에 따라 협의, 주선, 조정 및 중개 요청 전에,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의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제출될 서면 응답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7조

¹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분쟁 당사국”, “분쟁의 당사국”, “제소 당사국”, “피소 당사국”이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들이 분쟁에 관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주선, 조정 및 중개²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절차 동안 분쟁 당사국들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비구속적이고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와도 무관하다.
3.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이 장에서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 내내 계속될 수 있다.
4. 분쟁 당사국들은 그들이 주선, 조정 및 중개에 회부한 모든 분쟁을 가능한 한 조속히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절차의 결과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5.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게, 분쟁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한 경우 공동위원회에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의 접수 시 그에 맞춰 행동한다.

제15.8조

협의

1.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른다는 목적으로 신의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비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될 수 있다.

² 중개 절차 수행 시,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의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된다.

2.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진술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이하 "협약 당사국들"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3. 협약은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개최될 수 있다.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으로 개최되는 경우에 협약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협약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신속하게, 그러나 요청의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답변한다.
5. 협약은 협약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개시된다. 부패성 상품에 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약은 협약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내에 개시된다.
6. 당사국들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약은 협약 요청일부터 60일 내에 또는 긴급 사안은 30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협약이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최되지 않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장의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8.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운영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국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9. 협약과 협약 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와 당사국들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유지된다. 당사국들은 협약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 정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표시한 대로 취급한다.
10. 협약은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와 무관하다.

11. 협의에 관련된 협의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공동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12.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요청의 접수일부터 제4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협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이가 제5항 또는 제6항 각각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국들이 협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또는 협이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국이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협의를 구한 당사국은 제15.9조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9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중재패널 설치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되는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제15.8조에 따라 협이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문제가 되는 조치를 적시하며 그러한 조치가 관련 대상 규정과 어떻게 불합치하는지 제시하고 제소의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기재한다.

2. 둘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둘 이상의 피소 당사국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단일 중재패널이 그 동일한 사안과 관련된 제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제15.10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중재패널은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별적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3. 분쟁 당사국들이 각각의 중재인을 임명한 경우, 중재인들은 그들 중 두 번째 중재인의 임명으로부터 15일 내에 상호 합의로 세 번째 중재인을 지정한다. 어떠한 분쟁 당사국이 세 번째 중재인 지명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의가 있는 경우, 지명일부터 7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에 대한 이의와 그 사유를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두 명의 중재인에게 통보한다.

4. 하나 이상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7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 지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분쟁의 당사국 요청에 따라 그러한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WTO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명을 한다. WTO 사무총장이 이 항에 따라 필요한 지명을 할 수 없거나 이 협정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임명된다. 의장은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 내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의장은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이전에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6.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는 원 중재인을 임명하기 위하여 따랐던 선정 절차에 따라 15일 내에 선정되며, 후임 중재인은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는 이 기간 동안 중지되며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후임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시작한 때 재개된다.

7. 임명된 중재인은 법,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와 제후관계에 있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이해 충돌에 있거나 갖지 않는다. 중재인은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중재패널 구성원

에 대한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8. 중재패널의 구성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이다.

9.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와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계속해서 알린다.

10.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안과 관련하여 제15.7조에 따라 당사국들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한 인은 그 사안에서 패널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제15.11조

중재패널의 절차

1.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이 장과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재패널의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나.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이 개최하는 모든 심리에 초청을 받는다.

다. 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입장 및 의견은 분쟁 당사국들에 이용 가능하다.

라.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비밀로 한다. 그리고

마.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의 평등과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3.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당사국³은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통보를 전달했을 때, 중재패널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고 분쟁 당사국들의 서면 입장(부속서를 포함한다)을 받을 수 있으며 심리에 참석할 수 있고 구두진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4.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과정에서 공개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절차, 심리 및 심의, 최초 보고서 및 모든 서면입장은 비밀로 유지된다.

5.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대상 규정에 비추어 제15.9조에 따라 중재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과 판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며,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를 하는 것"

6. 분쟁 당사국들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7. 중재패널의 기능은 중재패널의 설치 요청에 비추어,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이 협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조치의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을 포함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8.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정을 컨센서스로 내리며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어떠한 구성원도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별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구성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당사국은 분쟁 당사국들은 아닌, 이 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15.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업무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업무와 절차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정지된 경우, 중재패널의 분쟁 심리 권한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실효된다.
2. 분쟁 당사국들은 판정의 제출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의장은 그러한 종료를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것이다.

제15.13조
원만한 해결

1. 중재패널은 판정의 제출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패널 절차 동안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는 경우,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와 패널 의장에게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에 따라, 패널은 종료된다.
3. 각 당사국은 합의된 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모든 조치를 합의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15.14조

중재패널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사실과 분쟁 당사국들이 제기한 주장의 서술적 부분과 자신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중재패널 구성일부터 9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최초 보고서의 접수부터 15일 내에, 분쟁의 당사국은 중재패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패널은 서면 의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들과 추가 회의를 개최한다. 최초보고서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받은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최초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구성일부터 135일 내에 분쟁 당사국들에 판정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 최초보고서에 대한 의견 접수를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떠한 의견도 패널에 의하여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 최초보고서는 패널의 판정으로 간주되며, 신속하게 분쟁 당사국들에 회람되고 공동위원회에 전달된다.
3. 부패성 농산물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중재패널 설치부터 60일 내에 판정을 제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중재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을 그 설치부터 10일 내에 내릴 수 있다.
4.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게 상이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시기에 별도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국제공법에 관한 해석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린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 기구가 채택한 보고서의 관련 해석을 또한 고려할 수 있지만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정은 이 협정의 규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6. 최초보고서와 판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과 주장의 요약

나. 사실의 조사결과,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조사결과와 결론에 대한 근거

다. 문제가 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 또는 제15.11조(중재패널의 절차)제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에 요청된 그 밖의 판정, 그리고

마. 분쟁의 해결과 판정의 이행을 위한 권고가 있을 경우 권고

7. 패널 판정의 조사결과에는 최초보고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8.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판정이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되고 15일 후에, 비밀 정보의 보호를 저해함이 없이 공표될 수 있다.

제15.15조

판정의 준수

1. 중재패널의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에 통보된 날부터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2. 피소 당사국은 판정의 결정을 신속히 준수한다. 즉시 준수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그렇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판정의 제출부터 30일 내에 또는 긴급한 사건은 15일 내에,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의 당사국은 그 사건의 특정한 정황에 비추어 원 중재패널에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또는 긴급한 사건은 15일 내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3. 판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중재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4. 피소 당사국은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중재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5. 피소 당사국이 이행 기한의 만료 전에 중재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거나 이 협정에 따른 판정을 달리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보다 늦지 않게,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6. 판정을 준수하는 조치의 존재나 그 조치가 판정과 합치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15.16조(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따라 보상이 구해질 수 있거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가 적용될 수 있기 전에, 그러한 의견 불일치는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중재패널이 결정한다. 중재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재설치부터 45일 내에 판정을 내린다.

제15.16조

보상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판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제15.15조의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또는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가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중재패널이 판단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개시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정지하고자 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그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 15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가. 피소 당사국이 판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수준

이다. 그리고

나. 이 협정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발생하는 양허로 제한된다.

3.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한다.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할 초래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⁴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정지할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선정할 때,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것들을 고려한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판정에 판단된 조치의 관련 대상 규정과의 불합치가 제거되거나, 당사국들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또는 필요한 보상에 합의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부터 15일 내에 제소 당사국이 통보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수준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판단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과 동등한 것인지 여부 및 제안된 정지가 이 조의 제2항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원 중재패널에 판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요청의 접수부터 30일 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내릴 때까지 양허나 그 밖의 의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⁴ 이 항의 목적상, "분야"란 (1) 상품에 대하여 모든 상품을 말한다. (2) 서비스에 대하여 주요 분야를 확인하는 현재의 "서비스분야별분류목록"에 적시된 그러한 분야를 말한다.

6. 피소 당사국이 중재패널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가. 제15.16조에 따라 제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보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종료한다. 또는

나. 필요한 보상에 합의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보상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다.

7. 당사국들이 통보 접수일 후 30일 내에 제6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판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원 패널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피소 당사국과 공동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된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의 제출일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들에 통보된다. 제6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판정과 합치한다고 중재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적용은 결정일 후 15일 이내에 종료된다. 통보된 조치가 판정의 부분적 준수만을 달성한다고 중재패널이 결정하는 경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또는 보상의 수준은 중재패널의 결정에 비추어 조정된다.

제15.17조 그 밖의 규정

1.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제15.15조 및 제15.16조에 언급된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렸던 동일한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원 중재패널의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대체 중재인의 임명은 제15.10조에 따라 수행된다.

2. 분쟁해결 절차 과정에서 모든 서면입장, 요청,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와 전자문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지정하고 통보한 각각의 연락처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장에 언급된 기간은 분쟁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
4. 중재패널이 이 장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알리고 추가로 필요한 시간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추가로 필요한 시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5.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행동 규범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된다.
6. 부속서 15-나에 규정된 절차 규칙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된다.
7. 분쟁 당사국들은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절차 규칙을 달리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부속서 15-가
중재패널 구성원의 행동 규범

정의

1. 이 행동 규범에서

- 가. **구성원** 또는 **중재인**이란 분쟁해결 장의 제9조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후보자**란 분쟁해결 장의 제10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 다. **보조인**이란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 라.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분쟁해결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 마. **직원**이란 구성원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구성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행동 규범

2. 모든 후보자와 구성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진실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공개 의무

3. 중재패널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은 당사국들의 검토를 위하여 이 행동 규범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만 전달한다.

5. 일단 선정되면, 구성원은 이 부속서의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구성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당사국들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중재인의 임무

6.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7.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이 행동 규범에 포함된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중재인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의사소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10.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2.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중재인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 판단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4.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부속서 15-나

절차 규칙

기한 계산

1. 이 부속서에 따라 규정된 모든 기간은 그 기간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부터 달력상의 일로 계산된다.
2. 기간 계산의 목적상, 그러한 기간은 서면 통지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첫번째 근무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의 기산 동안 발생하는 공휴일이나 비근무일은 기간 계산 시 포함된다.
3. 어느 분쟁 당사국이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중개

1.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을 중개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들은 그러한 합의부터 10일 내에 공동으로 중개자를 임명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중개자 임명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위원회의 의장에게 중개자를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개자는 분쟁 당사국들 중 어느 한 쪽의 국민도 아니다.
2. 중개자는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과 회의를 소집한다. 중개자는 회의 전 15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제공받을 것이고 분쟁 당사국들과 회의 후 4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중개자의 의견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중개자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중개절차 및 중개 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된다.

중재 개시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들은 WTO 기준을 따르는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들 또는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내에 중재패널과 회합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1. 중재패널의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준비를 할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의 행정사항,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2. 심리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비디오 연결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패널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4.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5. 이 규칙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는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서면 입장

1.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일 후 25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장을 포함한 최초 서면 입장을 중재패널에 전달하고 동시에 피소 당사국에 사본을 보낸다.
2.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 입장을 접수한 날 후 25일 이내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장을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반박 서면입장을 중재패널에 전달하고 동시에 제소 당사국에 사본을 보낸다.

3. 제3자는 반박 입장의 접수 후 늦어도 15일 내에 자신의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4.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의 의견을 접수한 후 분쟁 당사국들로부터 어떠한 추가 서면입장이 요구되는지 또는 제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러한 서면입장을 전달하는 기간을 정한다.

심리

1. 분쟁 당사국들은 중재패널의 심리 장소 및 일시에 대하여 합의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패널의 심리는 중재패널의 다른 구성원과 협의하여 중재패널의 의장이 결정한 장소 및 일시에서 수행된다. 다만, 그 장소는 제소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지 않아야 한다.
2. 의장은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를 열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4. 3명의 중재인은 모든 심리에 참석한다.
5. 다음의 인은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 가. 분쟁 당사국들의 대표
 - 나. 분쟁 당사국들의 자문인
 - 다. 행정 직원, 통역사 및 번역가, 그리고
 - 라. 중재인의 보조인
6. 분쟁 당사국의 대표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7. 각 분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분쟁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사람과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전달한다.

8.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변론

가. 제소 당사국의 변론

나. 피소 당사국의 변론

반박 변론

가. 피소 당사국의 반박 변론

나. 제소 당사국의 재반박 변론

9.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든지 심리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국 또는 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10.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분쟁 당사국들에 전달한다.

11. 심리일 후 15일 내에 각 분쟁 당사국은 심리 동안 발생했던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또는 양 분쟁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2. 중재패널이 서면 질문을 제시한 한쪽 분쟁 당사국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서면 답변의 사본을 전달한다.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의견의 접수 후 10일 내에 그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비밀유지

각 분쟁 당사국은 절차와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그 분쟁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일방적 접촉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분쟁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2.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중재인의 참석 없이, 어떠한 분쟁 당사국과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측면을 논의할 수 없다.

전문가의 역할

1.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중재패널의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정보와 기술적 조언은 분쟁 당사국들에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된다.
2.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요청 접수일부터 중재패널이 보고서를 접수한 날까지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판정

중재패널의 판정은 분쟁 당사국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정보와 절차에서 진술된 것에 비추어 초안이 작성된다.

통보

1. 분쟁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은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수령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택배, 팩스, 텔렉스, 전신 또는 그 접수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전달한다.(전자 문서는 각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쪽 분쟁 당사국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언어, 번역 및 통역

1. 각 분쟁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하기 전에, 자국의 서면 및 구두 입장이 어떠한 언어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른 쪽 분쟁 당사국과 중재패널에 통보한다.
2. 한쪽 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입장 또는 서면입장을 다른 쪽 분쟁 당사국이 선택한 언어로 번역하도록 주선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3. 이 규칙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패널 절차는 분쟁 당사국들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로 수행된다.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재패널이 사용될 언어를 결정한다. 번역 비용은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4.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판정은 영어로 작성된다.

중재패널의 비용과 경비

중재패널의 경비는 그 구성원의 보수를 포함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분쟁의 각 당사국은 중재와 관련되어 발생한 자국의 법무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장

제도 및 최종 규정

제16.1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국들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장에 따라 특정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이 설치되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임무 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설 또는 임시 소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그 후,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전반적인 운영을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 회기로 2년에 한 번 회합하거나 당사국들이 달리 상호 결정한 바에 따라 회합한다. 정기 회기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특별 회기 또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될 수 있다.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회기는 요청일부터 30일 내에 요청 당사국에서 개최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대면회의에 더하여 또는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영상회의 및/또는 전화회의로 수행될 수 있다.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의장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사용될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한 세부 사항, 회의일시를 포함하여 화상회의에 관한 적절한 통보를 공동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4. 한국 그리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중 한 국가가 공동위원회 회의의 공동의장이 된다.

5. 협정의 다른 곳에 명시된 기능에 더하여,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

나. 협정의 전반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다. 협정을 적용하는 동안 획득한 경험과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협정의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라.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

마. 어떠한 당사국도 제안할 수 있는, 협정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화 및 개정을 검토하는 것

바.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

사.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것

아. 협정의 범위와 목적 내에서 당사국들로부터 할당받은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자.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권고를 채택하는 것

6.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한다.

7.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제16.2조

의사소통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한달 내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연락처는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16.3조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¹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부속서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4조

개정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검토와 승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¹ 부속서한은 그것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언급하는 서한이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 각 당사국들의 헌법 요건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 제출된다.

4.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6.7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

제16.5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개정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당사국들은 제16.4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6.6조

가입

1. 걸프아랍국가협력회의 헌장에 가입하는 어떠한 국가도 가입 국가와 당사국들 간 합의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가입의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그 국가의 가입을 규정하기 위한 이 협정의 개정이 종결되고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 국가에 적용된다.

3.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개정의 발효는 제16.7조를 따른다.

제16.7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국들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대한민국과 걸프협력회의 사무국이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더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제16.8조

탈퇴 및 종료

1. 걸프아랍국가협력회의 헌장을 탈퇴하는 국가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이 협정의 당사국임이 중단된다. 그 국가와 걸프협력회의 사무국은 한국에 그 국가의 탈퇴를 즉시 알린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한국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그리고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경우 한국이 그 회원국의 종료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의 제2항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이 이 협정의 참여를 종료하더라도 이 협정 범위 내의 계약, 프로젝트 또는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이러한 계약, 프로젝트 또는 활동의 유효성과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히즈라력으로 []에 해당하는 [] 년 [] 월 []일에 []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걸프아랍국가협력회의 정부들을
대표하여